

DIGITAL SEXUAL CRIMES
TASK FORCE TEAM ·
EXPERT COMMITTEE
ACTIVITIES AND ACHIEVEMENTS

디지털 성범죄 등 대응 TF· 전문위원회 활동과 성과



법무부
Ministry of Justice

목 차

CONTENTS

위원장 소회

발간사

Part I 'N번방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을 시작으로

Starting with the sexual exploitation case of 'Nth room' in Telegram

- | | |
|----------|----|
| 1. 추진 배경 | 10 |
| 2. 추진 경과 | 10 |

Part II 법무부에 전담팀(TF)을 만든다

Set up task force team at the ministry of justice

- | | |
|---------------------------------------------------|----|
| 1. TF 기본 방향 | 14 |
| 2. 논의 의제 | 15 |
| 3. 주요 업무 추진 실적 | 16 |
| 1) 디지털 성범죄 등 대응 TF 출범('21. 7.) | 16 |
| 2) 「N번방 그 후 1년」 화상 세미나('21. 9.) | 17 |
| 3) 군(軍) 내 성폭력 피해자 지원을 위한 법무부-국방부 업무협약('21. 10.) | 19 |
| 4) 디지털 성범죄 보도 등 기준 정립을 위한 토론회('21. 11.) | 20 |
| 5) 법무-문화-보건부간 '대중문화 예술인 대상 성범죄 대응 방안' 마련('22. 3.) | 21 |
| 6)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한 정책간담회('22. 4) | 22 |
| 7) 정책 홍보 | 22 |
| - 이제 우리가 '캡처합시다' 홍보영상 제작 등 | 22 |
| - (기획 홍보) • 경향신문 • YTN 김혜민의 이슈앤피플 | |
| • MBC 표창원의 뉴스하이킥 • KBS 시사기획 창 등 | 23 |
| ※ (붙임) 법무부 전담팀(TF) 보도자료 | 24 |

Part III 디지털 성범죄 전문가들이 힘을 합치다

Digital sexual crime experts join forces

| | |
|------------------------------------|----|
| 1. 전문위원회 구성(위원 명단, 전체회의 및 소위원회 활동) | 56 |
| 2. 주요 활동 사항 | 59 |
| 3. 회차별 권고 및 이행 상황 | 62 |
| 4. 기대 효과 | 63 |

Part IV 회차별 권고안

Recommendations

| | |
|-------------------------------------------------|-----|
| 1. 제1차 성범죄 피해자 통합지원 시스템 구축 | 66 |
| 2. 제2차 불법 영상물 삭제·차단을 위한 '응급조치' 신설 | 77 |
| 3. 제3차 디지털 성범죄 등 홍보물 가이드라인 제정 및 전담기구 마련 | 83 |
| 4. 제4차 합리적 양형을 위한 양형 조건 개정 및 성범죄 피해자 진술권 강화 | 94 |
| 5. 제5차 메타버스(가상현실) 내 성범죄 대응을 위한 '성적 인격권' 침해 신설 등 | 110 |
| 6. 제6차 재판절차에서 성폭력 피해자 보호 방안 | 128 |
| 7. 제7차 피해 영상물 효율적 압수 및 재유포 방지방안 | 142 |
| 8. 제8차 '성적수치심' 등 부적절한 용어개선 | 152 |
| 9. 제9차 디지털 성범죄 압수 및 몰수 등 개선, 피해자 경제적 지원 강화 | 161 |
| 10. 제10차 범칙 피해자의 진술권 및 알권리 보장을 위한 통지제도 개선 | 172 |
| 11. 제11차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를 위한 형사배상명령제도 개선 | 184 |

위원장 소회



변영주 | 이화여대 법학 학사 • '12 올해의 여성영화인상 • <아시아에서 여성으로 산다는 것>등 다수 작품 연출

디지털 성범죄 전문위원회 활동을 하며

처음 법무부에서 현장의 소리를 전달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기성세대로서 'N번방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에 대한 부채감을 갖고 있던 저는 각계각층의 전문가들과 함께 정의를 실현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고자 결심 하였습니다.

시민단체·법조계·학계·IT 등 여러 분야에서 활동하시는 전문가로 구성된 디지털 성범죄 등 전문위원회는 온라인 상에서 아동·청소년 및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새로운 유형의 성범죄를 포함하여 전반적인 성범죄 대응 체계를 점검하고, 피해자의 일상으로의 회복에 집중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TF와 함께 논의 의제를 선정하고 총 40여회에 걸친 분과별 소위원회와 전체 회의의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개선 권고안을 제안하였고, 수사·재판·보호관찰 등 형사사법체계 전반적 개선 뿐 아니라, 범죄 피해자 인권 보호를 위한 통합지원 시스템 구축, 신속한 피해

영상물 삭제에 위한 응급조치 도입, 피해자 진술권 보장 개선 및 경제적 지원 강화 등을 권고하였습니다.

또한 회복적 사법 실현 및 피해자 관점이 반영된 양형 조건 개선, 실효적인 처벌을 위한 압수·수색 등 범죄 수익 환수 방안, 메타버스 등 가상현실에서 성적 인격권 신설을 통한 처벌 근거 신설 등 대책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짧은 9개월간의 여정 중에 11차례 개선 권고안을 발표하여 약 60여개 조문에 대한 개정 방안을 제출하였으며, 이 중 법무부 내부에서 실현 가능한 2건을 이행 완료하고, 대부분의 권고안이 의원 입법 발의되는 등 실질적인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상황 등 어려운 환경에서도 각자 맡은 소임에 사명감을 갖고 임해주신 전문위원 및 자문위원 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항상 위원회를 물심양면으로 지원해준 서지현 TF 팀장, 정미란 검사, 정길수 사무관, 김지영 주무관께도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미래의 청소년들이 밝게 웃고 즐길 수 있는 디지털 환경을 만들기 위해 고민하는 시간 속에서, 우리가 함께 고민하고 노력한다면 디지털 성범죄를 예방하고, 가해자를 제대로 처벌하고, 피해자들의 고통을 덜어줄 수 있다는 희망과 가능성을 보았습니다.

앞으로도 법무부가 사회 정의가 바로 서고, 피해자들이 일상으로 회복할 수 있는 대응체계를 제대로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기를 바라며 계속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 5월
디지털 성범죄 등 전문위원회 위원장 **변영주**

발간사



2020년 알려진 일명 ‘N번방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은 전 국민을 충격과 분노에 빠뜨렸습니다. 그 후, 법령이 개정되고, 주범들이 중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디지털 성범죄는 여전히 피해자들의 일상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공간에서 발생하는 디지털 성범죄는 시공간의 구애받지 않아 무한 전파 위험이 크고, 익명성을 악용해 추적이 어려우며, 오프라인상 성범죄로 연결되거나 영상물 유포 협박 등 더 큰 피해로 이어지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극심한 고통을 가하는 심각한 범죄입니다.

형태가 더욱 다양화 되고 전파속도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디지털 성범죄에 대응하기 위해서, 인권 보호와 형사사법의 책임 부서인 법무부가 피해자 인권의 관점에서 국가가 최전선에 나서서 피해자를 제대로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해 「디지털 성범죄 등 대응 TF」를 구성하여, 형사사법체계를 전면 재점검하고 실효적인 대응 방안을 만들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언론·시민사회·예술·법조·IT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전문위원 10명, 자문위원 12명으로 구성된 「법무부 디지털 성범죄 등 전문위원회」는 수사·재판·집행 및 보호관찰뿐 아니라, 관련 보도, 피해자 지원 및 형사배상명령 등 디지털 성범죄 관련 형사사법체계 전반을 점검해 정책 개선 권고안을 제시하였습니다.

법무부는 위 권고에 따라 범죄 피해자가 한 번의 신청으로 경제적·심리적 지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원스탑(ONE-STOP) 통합 지원’ 시스템을 구축 등 피해자 지원제도를 시작하였고, 인권과 성인지 감수성 제고를 위한 ‘디지털 성범죄 등 보도 가이드 라인’을 제정하고, 이를 점검하기 위한 ‘인권·젠더 데스크’를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디지털 성범죄 등 대응 TF」의 노력으로 국방부 내 성폭력 피해자 지원 강화를 위한 법무부-국방부 간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대중문화 예술계 내 성폭력 피해자 보호를 위한 법무부-문화체육관광부-보건복지부 간 공동 성범죄 대응 방안을 마련하여, 피해자 보호를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의미 있는 업무체계도 마련하였습니다.

『디지털 성범죄 등 전문위원회』 활동에 헌신해주신 전문위원 및 자문위원님과 TF팀의 열정과 노력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논의·권고된 내용들이 정부 부처, 민간단체, 국회, 해외 관련기관 등이 디지털 성범죄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실질적인 보탬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앞으로도 법무부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를 포함한 범죄 피해자를 두텁게 보호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청년들을 포함한 정책 관계자들의 의견을 폭넓게 경청하여 국민들이 공감하는 따뜻한 정책을 담아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 5월

법무부 장관 **박 박 기**

**디지털
성범죄 등
대응 TF·
전문위원회
활동과 성과**

DIGITAL SEXUAL CRIMES
TASK FORCE TEAM ·
EXPERT COMMITTEE
ACTIVITIES AND ACHIEVEMENTS

A hand holding a smartphone with bokeh lights in the background.

PART I

‘N번방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을 시작으로

Starting with the
sexual exploitation case of
‘Nth room’ in Telegram

PART I

'N번방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을 시작으로

1. 추진 배경

- 2020년 텔레그램을 이용한 N번방, 박사방 사건과 같은 온라인 상에서 새로운 유형의 디지털 성범죄가 알려져* 국민적 공분을 일으킴

* 2019년 9월 추적단 불꽃에 의해 최초 보도
 '박사방' 관련 공범만 약 3만명 추정
 '엄중처벌' 국민청원 동의 7,690,000명 1위

- 이에 정부는 관계 부처 합동으로 "처벌은 무겁게, 보호는 철저히" 「디지털 성범죄 근절대책」(국무총리 주재)을 심의·확정하여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해 ① 무관용 원칙 확립 ② 아동·청소년에 대한 보호 강화 ③ 처벌 및 보호의 사각지대 해소 ④ 중대 범죄라는 사회적 인식 확산 원칙을 설정하여 4대분야 17개 중과제 및 41개 세부과제 마련
- 법무부에서도 이에 따라 디지털 성범죄 처벌강화를 위해 법정형량 상향, 중대 성범죄 예비·음모죄 신설, 강화된 사건 처리 및 구형 기준 마련, 범죄수익 환수 강화, 소지·구매 등 수요자 처벌로 수요 차단 및 인식 개선등을 위해 노력

2. 추진 경과 ('22. 4. 25. 현재)

| 정책과제 | 이행 현황 |
|--------------------------------------|-------|
| 1. 처벌의 실효성 강화 | |
| ① 제작·판매·광고행위 처벌 강화 입법 | |
| 디지털 성범죄물 제작·판매 등에 대한 법정형 상향 (성폭력처벌법) | 완료 |

| 정책과제 | 이행 현황 |
|-------------------------------------------------------------------|-------|
| 광고행위 처벌 신설(성폭력처벌법) | 완료 |
| ② 중대 성범죄 예비음모죄 신설 | |
| 합동강간, 미성년자강간 예비·음모죄 신설(성폭력처벌법 등) | 완료 |
| ③ 양형기준 강화 | |
| 디지털 성범죄 유형별 구속 및 사건처리기준 세분화, 구형 등 처벌기준 강화 | 완료 |
| 법원 양형기준 마련(양형위) | 완료 |
| 디지털 성범죄 구형·선고 사후 모니터링 * 협조 과제 | 미추진 |
| ④ 범죄수익 환수 강화 | |
| 독립몰수제도 도입(범죄수익은닉규제법) | 추진중 |
| 범죄수익 추정 규정 신설(범죄수익은닉규제법) | 완료 |
| 경찰의 기소 전 추정보전 신청권 부여(마약거래방지법) | 완료 |
| ⑤ 신상공개 확대 및 취업제한 | |
| 피의자 신상공개 적극 이행 | 추진중 |
| 아동·청소년 이용 성착취물 제작·판매·배포·소지 등 범죄자를 신상공개 대상에 포함(청소년성보호법 개정) * 협조 과제 | 완료 |
| 2. 아동·청소년에 대한 확실한 보호 | |
| ① 온라인 그루밍, 협박, 강요에 대한 처벌 신설 | |
| 성적 영상물 유포 협박죄, 성착취 영상 촬영 강요죄 신설(성폭력처벌법) | 완료 |
| ② 미성년자 의제강간 연령 상향 | |
| 미성년자 의제강간 연령 상향(형법) | 완료 |
| ③ 잠입수사 도입 및 온라인상 청소년 유인행위 사전 감시 | |
| 잠입수사 활성화(수사 가이드라인 마련, 성폭력처벌법 개정) | 완료 |
| 해외 수사기관과 공조 강화 | 추진중 |
| ④ 신고포상금제 도입 | |
| 신고포상금제 도입(성폭력처벌법) | 완료 |
| 3. 수요차단 및 인식개선 | |
| ① 소지·구매행위 법정형 강화 | |
| 성인 대상 성범죄물 소지에 대한 처벌 신설(성폭력처벌법) | 완료 |
| ② 소지사범 구형기준 강화 | |
| 일반 소지자 구형기준 강화 | 완료 |

**디지털
성범죄 등
대응 TF·
전문위원회
활동과 성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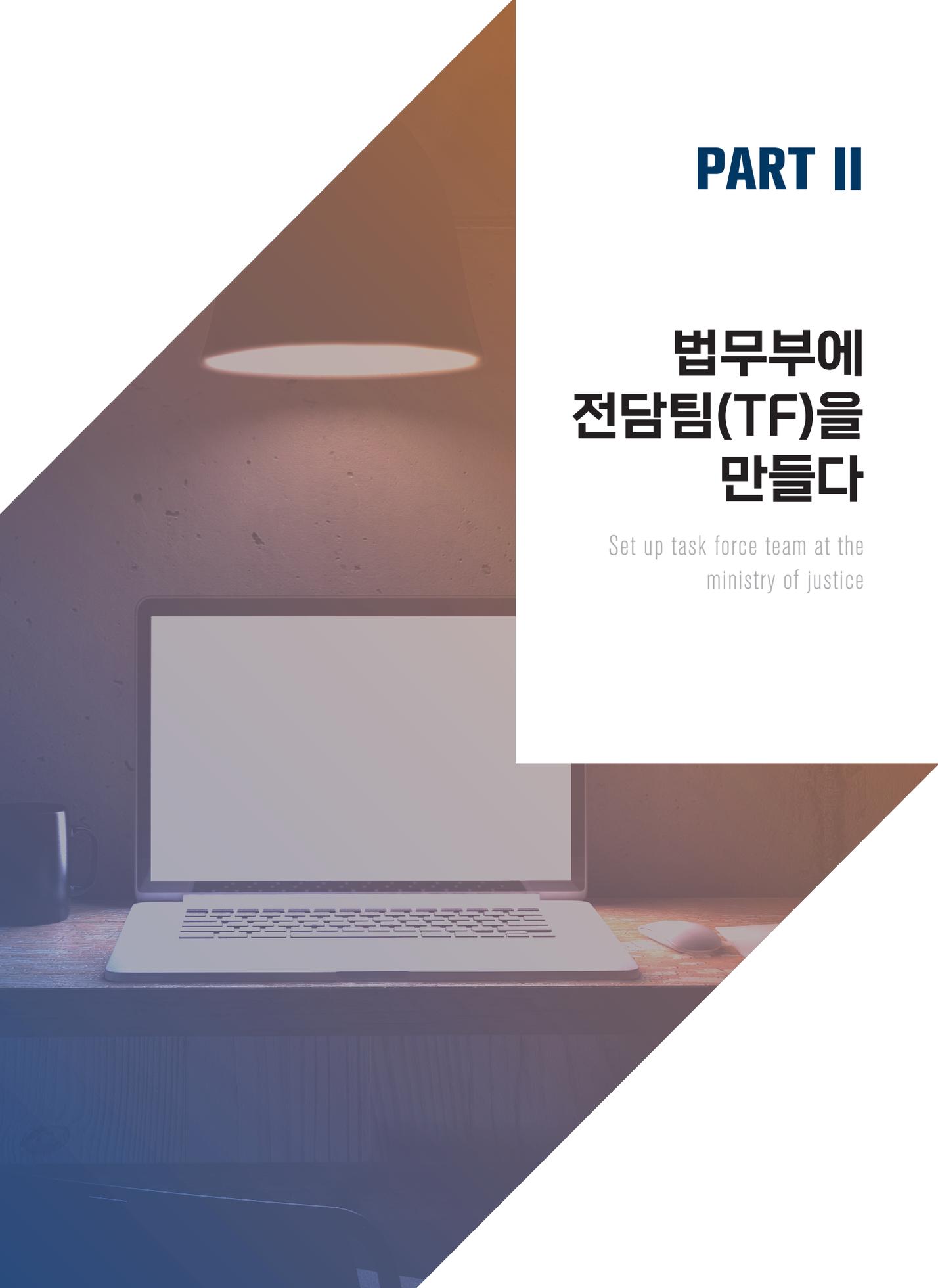
DIGITAL SEXUAL CRIMES
TASK FORCE TEAM ·
EXPERT COMMITTEE
ACTIVITIES AND ACHIEVEMENTS



PART II

법무부에 전담팀(TF)을 만들다

Set up task force team at the
ministry of justice



PART II 법무부에 전담팀(TF)을 만들다

1. TF 기본 방향

- **(배경)** 일명 'N번방 사건'으로 다수 법률이 개정되었음에도, '21, 일명 '윤○○ 사건'* 등 온라인 상에서 아동·청소년 및 여성을 성적 대상화·착취하는 새로운 유형의 디지털 성범죄 지속 발생하고 더욱 음성화(ex : 다크웹), 다양화(ex : 디스코드 등 플랫폼 확장), 고도화 되어 확대 진화 → 「성폭력범죄 처벌법」 소관 부처이자 인권보호와 형사사법의 책임부서인 법무부가 피해자 인권의 관점에서 디지털 성범죄 등 성범죄 대응 체계 전반을 재점검하고, 신속한 수사와 피해영상물 삭제, 죄에 상응하는 처벌, 피해자 보호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범죄에 대한 강력한 대책 강구

*윤○○ 사건 : 다크웹에서 피해자 신상 공개된 성착취물 100여편 살포 후 자살

추진 경과

- '21. 7. 전담팀 인력 구성 및 사무실 마련 후 현판식 개최
- '21. 8. 「디지털 성범죄 등 대응 전문위원회」 위촉 및 운영
- '21. 10. 「디지털 성범죄 등 대응 자문위원회」 위촉
- '21. 10. ~ '22. 4. 총 11차례 권고안 발표

- **(인원 및 예산)** 디지털 성범죄 등 대응 TF는 성범죄 전담 검사 및 양성평등정책 특별자문관 으로 전문적인 업무역량을 갖춘 서지현 팀장과 검사 1명, 사무관 1명, 주무관 1명 등 법무부 내 다양한 직렬의 실무진으로 구성되어 법무부 정부과천청사 8층 805호 사무실 배치, 한시적 TF로 별도 예산 없이 기획재정담당관실 예산 일부로 업무 추진

2. 논의 의제 [3대 목표]

- **효과적인 성범죄 대응을 위한 형사사법 대응 체계 확립**
 - 수사(수사 지휘)·기소·재판·형 집행 등 형사사법 체계 전반을 점검, 변화하는 기술에 대응하는 신속·정확하고 효율적인 대응 체계 확립
- **효율적 피해 영상물 삭제·폐기 방안**
 - 피해 발생 즉시 경찰·검찰이 수사 및 형 집행의 일환으로 신속하게 피해 영상물을 차단·삭제·폐기할 수 있는 방안 마련
- **특화된 맞춤형 피해자 보호체계 구축**
 - 디지털 성범죄 등 특성을 반영한 실효적 피해자 지원 강화로 피해자의 일상으로의 회복 지원



3. 주요 업무 추진 실적

제1절 디지털 성범죄 등 대응 TF 출범

▶ 추진 배경 및 경과

- 2020년 대검찰청 범죄분석 등에 따르면 4대 강력범죄(흉악) 중 성범죄 비율이 91.7%에 달하고, 그 중 디지털 성범죄 비율이 약 23%일 뿐 아니라, 디지털 성범죄는 급성장 중인 다크웹, 암호화페 등과 결합하여 더욱 음성화·다양화 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응이 중요한 사회 문제로 대두됨

| 강력 범죄(흉악) 죄명별 발생 현황

{출처: 대검찰청 범죄분석, 단위: 건(%)}

| 연도 | 죄명 | 합계 | 살인 | 강도 | 방화 | 성폭력 |
|------|----|--------|----------|------------|------------|--------------|
| 2015 | | 35,139 | 958(2.7) | 1,472(4.2) | 1,646(4.7) | 31,063(88.4) |
| 2016 | | 32,963 | 948(2.9) | 1,181(3.6) | 1,477(4.5) | 29,357(89.1) |
| 2017 | | 36,030 | 858(2.4) | 990(2.7) | 1,358(3.8) | 32,824(91.1) |
| 2018 | | 35,272 | 849(2.4) | 841(2.4) | 1,478(4.2) | 32,104(91.0) |
| 2019 | | 35,066 | 847(2.4) | 845(2.4) | 1,345(3.8) | 32,029(91.3) |
| 2020 | | 32,817 | 805(2.4) | 692(2.2) | 1,215(3.7) | 30,105(91.7) |

| 성폭력 범죄 유형별 발생 현황

| 연도 | 강간 | 강제추행 | 강간등 | 강간 등 살인/치상 | 강간 등 상해/치상 | 특수 강간 등 | 카메라 이용촬영 | 성적 목적의 장소 침입 | 통신매체 이용음란 | 공중밀집 장소추행 | 허위 영상물 편집·반포등 | 촬영물등 이용협박·강요등 | 계 |
|------|--------------|---------------|-----------|------------|------------|-----------|--------------|--------------|-------------|-------------|---------------|---------------|--------|
| 2016 | 5,412 (18.4) | 14,339 (48.8) | 192 (0.7) | 8 (0.0) | 736 (2.5) | 56 (0.2) | 5,249 (17.9) | 477 (1.6) | 1,115 (3.8) | 1,773 (6.0) | - | - | 29,357 |
| 2017 | 5,555 (16.9) | 15,981 (48.7) | 144 (0.4) | 7 (0.0) | 716 (2.2) | 34 (0.1) | 6,615 (20.2) | 422 (1.3) | 1,265 (3.9) | 2,085 (6.4) | - | - | 32,824 |
| 2018 | 5,826 (18.1) | 15,672 (48.8) | 182 (0.6) | 8 (0.0) | 655 (2.0) | 43 (0.1) | 6,085 (19.0) | 646 (2.0) | 1,378 (4.3) | 1,609 (5.0) | - | - | 32,104 |
| 2019 | 5,845 (18.2) | 15,766 (49.2) | 157 (0.5) | 2 (0.0) | 653 (2.0) | 42 (0.1) | 5,893 (18.4) | 685 (2.1) | 1,454 (4.5) | 1,532 (4.8) | - | - | 32,029 |
| 2020 | 5,825 (19.3) | 14,486 (48.1) | 102 (0.3) | 9 (0.0) | 574 (1.9) | 274 (0.9) | 5,005 (16.6) | 697 (2.3) | 2,070 (6.9) | 906 (3.0) | 32 (0.1) | 125 (0.4) | 30,105 |

- 온라인 상에서 아동·청소년 및 여성을 대상으로 성적 착취를 하는 새로운 유형의 성범죄 등을 포함, 성범죄에 대한 전반적인 대응 체계를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2021. 7. 27. '디지털 성범죄 등 대응 TF'(이하 디지털 성범죄 TF, 팀장 서지현 검사)를 신설·운영



법무부 주요 간부 현판식(21. 7.)

한국경제

2021/07/28 수요일
A25면 사회

법무부, 디지털성범죄 TF 신설
팀장 서지현 검사... 위원회도 운영

법무부는 아동·청소년·여성을 겨냥한 디지털 성범죄 급증에 대응하기 위해 '디지털성범죄 등 대응 태스크포스(TF)'를 신설·운영한다고 27일



관련 보도

제2절 「N번방 그 후 1년」 화상 세미나

▶ 추진 배경 및 경과

- 일명 N번방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 이후에도 끊임없이 발생하는 디지털 성범죄 양상에 직접 현장에서 활동하는 활동가들의 경험 사례를 공유하여 현 실태를 점검하고,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성폭력 예방 교육 일환으로 2021. 9. 15. 양성평등정책담당관실과 공동으로 주관
- 코로나 19의 어려움 속에서도 대화와 소통을 지속하기 위해 대검찰청 등과 협력하여, 전국 검찰청 여성아동범죄 조사부장 및 일선 법원 판사가 함께 하는 화상 세미나로 추진

※ 오프라인 : 법무부 장·차관, 실국장 및 간부 등 30여명

온 라 인 : 대검찰청 형사부장관과 전국 검찰청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 인천지방법원 판사 등 총 23명 온라인 참여



세미나 현장 모습('21. 9.)



세미나 포스터

화상세미나 주요 내용

- **디지털 성착취물, 오늘도 유포 중**
- 딥페이크 및 불법 합성 범죄 유형, 스토킹성 불법 촬영
- **디지털 성범죄, 어디에서 발생하나(제2의 N번방들)**
- 더욱 음성화되면서 보안이 강화된 디스코드, 다크웹 등으로 이동
- **디지털 성범죄, 어떻게 유포되나**
- 금전거래, 자료 교환 등 불특정 다수 또는 개인간 유통 방법
- **디지털 성범죄자, 그들은 누구인가**
- 여성의 타자화(他者化), 성범죄 근절운동 조롱 등

▶ 평가 및 발전 방향

- N번방 사건 이후 1년이 지난 현재, 그동안 디지털 성범죄를 지속적으로 추적해 온 활동단체들과 정부 부처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더욱 다양화된 플랫폼에서 한층 음성화되고 진화된 방법으로 여전히 디지털 성범죄가 행해지고 있는 현실을 생생하게 공유하고, 모두가 함께 대책을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짐
- N번방 사건 이후, 정부 각 부처가 많은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디지털 성범죄로 수많은 피해자들이 고통받고 있는 가슴 아픈 현실을 마주함 → 일선 실무자들이 더욱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갖는 계기가 됨

제3절 군(軍) 내 성폭력 피해자 지원을 위한 법무부-국방부 업무협약

▶ 추진 배경 및 경과

- 법무부는 국방부 성추행 피해 여중사 사망사건과 관련하여, 군(軍) 내 성폭력 피해자의 보호 및 지원 강화를 위해 다양한 성폭력 피해자 지원을 하고 있는 법무부가 국방부와 함께 군(軍) 내 성폭력 방지를 위해 상호 협력하고, 피해자 회복 지원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추진하기로 함

| 법무부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제도 |

| | |
|------------------------------------------------------------------------------------------------------------------------------------------------------------------------------------------------------------------------|-----------------------------------------------------------------------------------------------------------------------------------------------------------------------------------------------------------------------------------|
| <p style="text-align: center;">피해자 신변보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변보호 조치 ▪ 가명조서 ▪ 피해자 보호시설 ▪ 임시안전숙소 ▪ 이전비 ▪ 스마트워치(위치확인장치) | <p style="text-align: center;">형사절차상 피해자 보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범죄피해자 의견진술 ▪ 범죄피해자에 대한 통지 ▪ 형사사법 정보제공 ▪ 신뢰관계 있는 자의 동석 ▪ 피해자 국선번호사 ▪ 진술조력인 |
| <p style="text-align: center;">신체·생명·재산상의 피해회복 지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범죄피해구조금 ▪ 주거 지원 ▪ 경제적 지원 ▪ 범죄피해자지원 법인을 통한 지원 ▪ 스마일센터를 통한 지원(심리치료) | <p style="text-align: center;">가해자로부터의 손해배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배상명령 ▪ 형사소송절차에서의 화해 ▪ 형사조정 ▪ 「법률홍탁터, 대한법률구조공단, 대한변협 법률구조재단,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

▶ 세부 추진 사항

- 군(軍) 내 성폭력 피해자도 사건 발생 초기부터 신속하게 전문성을 가진 국선번호사로부터 법률적인 조력을 받게 되며, 피해자 의사에 따라 국방부 또는 법무부의 성폭력 피해자 지원 제도를 선택하여 지원받을 수 있게 됨. 특히, '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 적극 연계하고, 범죄피해 트라우마 심리치유 기관인 '스마일센터'를 통해 전문적인 심리치료를 진행하는 등 피해자가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적극적 지원
- 양 부처는 협력 방안들을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이행상황을 점검하며, 상호 협의를 통해 이견을 조정해 나가고 있음



법무-국방부간 업무협약 체결식(21. 10.)

제4절 디지털 성범죄 보도 등 기준 정립을 위한 토론회

▶ 추진 배경 및 경과

- 성범죄 사건과 관련한 보도 준칙으로 「성폭력 범죄 보도 세부권고기준」(‘12. 12. 한국기자협회 발표), 「성폭력·성희롱 사건보도 공감기준 및 실천요강」(‘18. 10. 한국기자협회, 여성가족부 공동 발표) 등이 존재하나, 언론의 미준수로 피해 사실을 희화화하거나 선정적으로 보도하고, 피해자를 특정하는 등 2차 피해 다수 발생
- 국내 디지털 성범죄 관련 보도 기준은 전무한 실정이고, 법무부 내 성범죄 사건 관련 보도·홍보·교육 관련 특별한 기준이나 가이드 라인 부재 → 디지털 성범죄 관련 보도·홍보·교육자료 작성·배포시 기준 제정으로 피해자를 두텁게 보호하는 방안 마련

▶ 토론회 개요

- **일시** : 2021. 11. 11.(목) 10:30
- **장소** : 서울고등검찰청 의정관실
- **참석자** (총 13명)
 (외부) 한겨레 신문 젠더데스크 이정연 팀장, 민주언론시민연합 신미희 사무국장, 정혜선 변호사, 법무부 디지털 성범죄 등 전문위원 3명
 (내부) 법무부 부대변인, 대검 4과 검사, 검찰청 인권 보호담당관(2명), TF 팀장 등

- 현행 신문사 및 방송사 등 성범죄 보도 관련 실태 점검
 - '불법 촬영'을 '몰카'로 명명, 피해자다움을 강조하는 기사
 - 피해자의 신상이 특정되고 가해자에게 서사를 부여하는 보도 등
- 디지털 성범죄 보도 등 기준 정립
 - 디지털 성범죄에 특화된 보도 등 관련 기준 논의
 - 법무부 보도·홍보·교육 관련 자료 작성·배포시 준수 기준 제시
- 보도 기준 준수 점검을 위한 전담 기구 설치의 필요성 논의



디지털 성범죄 보도 등 기준 정립을 위한 토론회('21. 11.)

제5절 법무-문화-보건부간 '대중문화 예술인 대상 성범죄 대응 방안' 마련

▶ 추진 배경 및 경과

- 대중문화 예술인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 악성 댓글, 사이버불링 등(온라인 집단괴롭힘)이 대중문화 예술인 자살의 중요 원인으로 사회 문제화 되고 있음 → 이에 대한 효율적 대응 및 피해자 보호 강화를 위해 문화체육부 고시인 대중문화예술인 표준전속계약서 양식에 기획업자의 보호의무를 명시하고, 성범죄 대응 매뉴얼 제작·배포 및 대응 교육 강화 등 방안 마련
- 세 부처가 합동으로 대중문화 예술인에 대한 인식을 개선,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고, 개별 부처의 피해자 지원 제도를 통합적으로 활용하도록 하는 등 피해자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방안임

제6절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한 정책간담회

▶ 추진 배경 및 경과

-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을 공론화한 추적단 불꽃 출신이자, 법무부 디지털 성범죄 등 전문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한 더불어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 주관으로 간담회 개최, 법무부 디지털 성범죄 등 전문위원회에서 권고한 개선안들의 신속한 법률 제정 방안을 논의
- 간담회 개요

- **일시** : 2022. 4. 7.(목) 14:00 ~ 16:00
- **장소** : 국회 본관 당대표회의실(205호)
- **참석자** (총 13명)
 (국회) 박지현 비대위원장, 송기현 정책위 수석부위원장, 박주민 법사위 간사, 권인숙 여가위 간사, 홍정민·강선우 의원 등
 (외부) TF팀장, 심대여성인권연합 조진경 대표, 틱톡내일 이현숙 대표, 디지털 성범죄등전문위원 4명, 담당 사무관 등
- **내용** : 참석자 모두 발언, 법무부 TF 팀 권고안 추진 경과 및 권고 내용 발표, 토론



정책간담회 사진

제7절 정책 홍보

▶ 이제 우리가 '캡처합시다' 홍보영상 제작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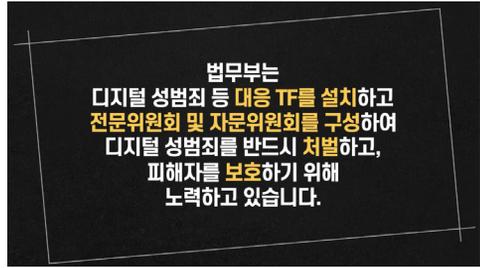
- 디지털 성범죄 예방과 대국민 인식 변화를 촉구하기 위해 디지털 성범죄 전문위원들이 직접 출연하여 나날이 다양화되고 있는 디지털 성범죄를 근절하자는 취지의 홍보영상
- '세상을 바꾸는 시간'(세바시 강연)에서 '변하지 않는 세상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 주제로 국민에 안전을 위한 디지털 성범죄 관련 법무부 추진 정책 설명



법TV 디지털 성범죄 근절, 국민과 법무부와 함께 합니다. "캡처합시다."
 법무부TV · 조회수 2.7만회 · 2주 전



세바시 바뀌지 않는 세상 앞에서 절망하지 않으려면 | 서지현 : 현 검사, 법무부 디지털성범죄 등 대응 TF 팀장 | ...
 세바시 강연 Sebasi Talk · 조회수 2.5만회 · 3주 전



정책홍보 영상 사진 자료

※ '22. 3. 1. ~ 3. 31. 1개월간 전국 전광판 홍보 시행(15,000곳)

▶ 기획 홍보 등

- '경향신문'(21. 8.), 'YTN 김혜민의 이슈 앤 피플'(21. 8., 12. 2회), 'MBC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21. 9.), 'KBS 시사기획 창'(21. 10.) 등 기획 인터뷰 및 브리핑



“N번방이 가능했던 한국 사회, 그걸 조직적으로 뒤집을 것”

이슈가 만만하진 않다. 하지만...
김혜민은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로서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디지털 성범죄의 심각성을 알리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그녀는 "N번방이 가능했던 한국 사회, 그걸 조직적으로 뒤집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혜민은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로서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디지털 성범죄의 심각성을 알리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그녀는 "N번방이 가능했던 한국 사회, 그걸 조직적으로 뒤집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혜민은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로서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디지털 성범죄의 심각성을 알리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그녀는 "N번방이 가능했던 한국 사회, 그걸 조직적으로 뒤집을 것"이라고 말했다.

경향신문(21. 8.)



YTN 김혜민의 '이슈 앤 피플'(21. 8.)



MBC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21. 9.)

※ (붙임) 법무부 전담팀(TF) 보도자료

| | | | | | |
|----------------------------------------------------------------------------------------------|-----------------|------------------|----------------------------|-------------------------------------------------|--|
|  법무부 | | <h1>보 도 자 료</h1> | | 국민이 공감하는 공존의 정의 민생에 힘이 되는 법무행정 | |
| 보도일시 | 배포 즉시 보도 | | | 총 4쪽 / 사진 있음 | |
| 배포일시 | 2021. 7. 27.(화) | 담당부서 | 법무부 디지털성범죄 등 대응 TF | | |
| 담당팀장 | 서 지 현 검사 | 담당자 | 출입국관리사무관 정길수(02-2110-4364) | | |

법무부, 「디지털성범죄 등 대응 TF」 출범
 - 음성화·다양화되는 성범죄 유형에 대한 형사사법체계의 능동적인 변화 -

□ **법무부(장관 박범계)**는 온라인 상에서 아동·청소년 및 여성을 대상으로 성적 착취를 하는 새로운 유형의 성범죄 등을 포함, 성범죄에 대한 전반적인 대응 체계를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7. 27.(화) ‘디지털성범죄 등 대응 TF’(이하 디지털성범죄TF, 팀장 서지현 검사)를 신설·운영합니다.

※ 7. 27. 「법무부 디지털성범죄 등 전문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정」(법무부 훈령) 시행
 ※ '20. 4. 구성된 「법무부 디지털성범죄 대응 TF」는 '21. 2. 공식 종료됨

□ 2020년 대검찰청 범죄분석 등에 따르면 **4대 강력범죄(흉악) 중 성범죄 비율이 91.3%**에 달하고, 그 중 **디지털 성범죄 비율이 약 23%**일 뿐 아니라, 디지털 성범죄는 급성장 중인 다크웹, 암호화폐 등과 결합하여 더욱 음성화·다양화 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응이 중요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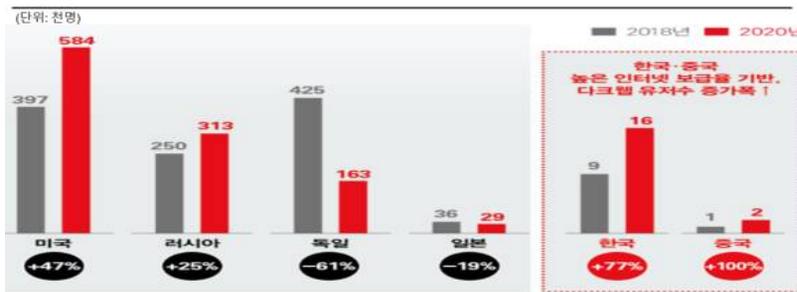
※ **강력범죄(흉악) 죄명별 발생 현황** {출처: 대검찰청 범죄분석, 단위: 건(%)}

| 연도 \ 죄명 | 합계 | 살인 | 강도 | 방화 | 성폭력 |
|---------|--------|----------|------------|------------|-----------------------|
| 2015 | 35,139 | 958(2.7) | 1,472(4.2) | 1,646(4.7) | 31,063(88.4) |
| 2016 | 32,963 | 948(2.9) | 1,181(3.6) | 1,477(4.5) | 29,357(89.1) |
| 2017 | 36,030 | 858(2.4) | 990(2.7) | 1,358(3.8) | 32,824(91.1) |
| 2018 | 35,272 | 849(2.4) | 841(2.4) | 1,478(4.2) | 32,104(91.0) |
| 2019 | 35,066 | 847(2.4) | 845(2.4) | 1,345(3.8) | 32,029(91.3)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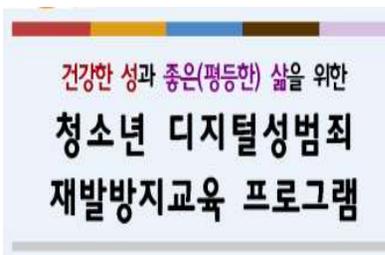
※ 성폭력범죄 유형별 발생 현황 {출처: 대검찰청 범죄분석, 단위: 건(%)}

| 연도 | 강간 | 강제추행 | 강간등 살인 차사 | 강간등 상해차상 | 특유도 강간등 | 카메라등 이용촬영 | 통신매체 이용음란 | 상추위력 장소포악 | 공공장소 장소추행 | 계 | |
|------|-----------------|------------------|-----------------|-------------|--------------|--------------|-----------------|----------------|--------------|----------------|--------|
| 2015 | 5,274 (17.0) | 13,266 (42.7) | 283 (0.9) | 6 (0.0) | 849 (2.7) | 72 (0.2) | 7,730 (24.9) | 1,139 (3.7) | 543 (1.7) | 1,901 (6.1) | 31,063 |
| 2016 | 5,412 (18.4) | 14,339 (48.8) | 192 (0.7) | 8 (0.0) | 736 (2.5) | 56 (0.2) | 5,249 (17.9) | 1,115 (3.8) | 477 (1.6) | 1,773 (6.0) | 29,357 |
| 2017 | 5,555 (16.9) | 15,981 (48.7) | 144 (0.4) | 7 (0.0) | 716 (2.2) | 34 (0.1) | 6,615 (20.2) | 1,265 (3.9) | 422 (1.3) | 2,085 (6.4) | 32,824 |
| 2018 | 5,826 (18.1) | 15,672 (48.8) | 182 (0.6) | 8 (0.0) | 655 (2.0) | 43 (0.1) | 6,085 (19.0) | 1,378 (4.3) | 646 (2.0) | 1,609 (5.0) | 32,104 |
| 2019 | 5,845 (18.2) | 15,766 (49.2) | 157 (0.5) | 2 (0.0) | 653 (2.0) | 42 (0.1) | 5,893 (18.4) | 1,454 (4.5) | 685 (2.1) | 1,532 (4.8) | 32,029 |

※ 다크웹 주요 국가별 유저 추이 (자료 제공: S2WLab)



□ 이에 법무부는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해 보호관찰 중인 청소년을 대상으로 '디지털성범죄 재발방지교육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고(범죄예방 정책국), 비접촉 무차별 신종 디지털 성범죄자에 특화된 심리치료 프로그램 개발·적용하는(교정본부)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20. 9. 범죄예방정책국 프로그램

법무부

보도 자료

국민이 공감하는 **공존의 정의**
인생의 힘이 되는 **법무행정**

| | | | |
|------|-------------------|-----------------|-----------------------|
| 보도일시 | 바로 즉시 보도 | 총 4쪽 / 사진 1쪽 포함 | |
| 배포일시 | 2021. 4. 28.(수) | 발달부서 | 법무부 교정본부 심리치료과 |
| 담당과장 | 이희호(02-2110-3890) | 담당자 | 박경희 사무관(02-2110-3892) |

재범 고위험군에 대한 섬세한 심리치료!
우리 사회를 더욱 안전하게 하겠습니다.

□ 재범 고위험군 성범죄자, N번방 사건 등 비접촉 디지털 성범죄자, 알코올·마약 등 중독범죄자 등에 대한 범죄 유형별 치료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재범을 획기적으로 낮추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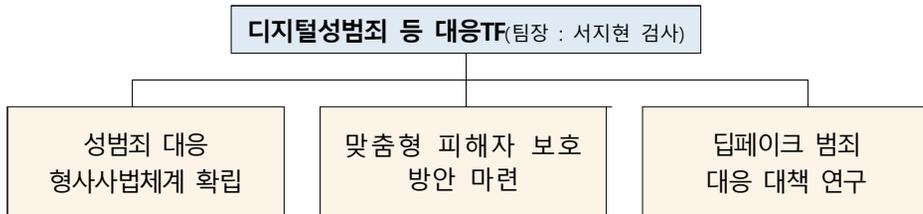
'21. 4. 교정본부 보도자료

□ 그러나, 이러한 대응에도 불구하고 디지털 성범죄의 형태가 더욱 다양화되고 전파속도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 인권보호와 형사사법의 책임부서인 법무부가 **피해자 인권의 관점**에서 전반적인 성범죄 대응체계를 재점검하고 **종합적이고 신속한 조치**를 위한 **개선 방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 디지털성범죄 등 대응 TF는 성범죄 전담 검사 및 양성평등정책 특별자문관으로 전문적인 업무역량을 갖춘 서지현 팀장과 검찰·교정·출입국 등 법무부 내 다양한 직렬의 실무진으로 구성하였으며, 성범죄 대응 형사사법체계 확립, 맞춤형 피해자 보호방안 마련 및 *딥페이크 범죄 대응 대책 연구 등 **형사사법과 인권보호 시스템 점검**의 역할을 담당합니다.

*딥페이크(DeepFake) : 인공지능기술(AI)을 활용해 인물의 얼굴 등을 합성한 영상편집물

【조직 및 주요 업무】



□ 또한, 법조·언론·IT·예술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10여 명으로 구성된 ‘**디지털성범죄 등 전문위원회**’를 운영할 예정(명단 추후 공개)이며, 디지털 성범죄 중 딥페이크 범죄의 최대 피해자가 케이팝(K-pop) 여성 가수인 점을 감안, 핫펠트(HA.TFELT, 前 원더걸스 예은)도 함께 할 예정입니다.

※ 네덜란드 AI연구소 센서티(Sensity) 발간 보고서에 따르면 '20. 7.까지 텔레그램에서 전세계 104,852명의 여성이 나체사진에 얼굴이 합성되는 피해를 입었음. 2019. 제작된 14,678건 **딥페이크 영상 중 96%가 음란물**이고, 비서양 영상 중 **25%는 한국 K-Pop 여성 연예인이 피해자**였음

□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이날 TF 직원 간담회에서 “작년에 N번방 사건이 발생해 국민들에게 큰 충격을 안겨주었는데, 그 후 일부 법률 등이 정비되었으나, 여전히 진화된 양태의 성범죄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 그럼에도 이에 대한 국가적 대응과 피해자들에 대한 보호가 부족한 면이 있었다” ,

“디지털 성범죄는 평온하게 살아가던 한 개인의 일상을 송두리째 빼앗아가고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히는 심각한 범죄행위다. 법무부·검찰·경찰 등 국가기관이 그 근절과 예방 뿐 아니라, 피해자들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전폭적으로 지원하는데 앞장서야 한다” 고 강조하였습니다.

□ 또한 “앞으로도 디지털 성범죄 등 신종 범죄에 대한 대응체계를 더욱 견고하고 촘촘히 하기 위해서 법무부가 관계기관들과 적극 협업해야 할 것” 이라고 직원들에게 당부하였습니다.

| | | | | |
|----------------------------------------------------------------------------------------------|-----------------|-----------------------|--------------------------------------|-------------------------------------------------|
|  법무부 | | <h1>보도자료</h1> | | 국민이 공감하는 공존의 정의 민생에 힘이 되는 법무행정 |
| 보도일시 | 배포 즉시 보도 | 총 6쪽(붙임 2쪽 포함)/ 사진 있음 | | |
| 배포일시 | 2021. 8. 12.(목) | 담당부서 | 법무부 디지털성범죄 등 대응 TF | |
| 담당과장 | 서지현 팀장 | 담당자 | 검사 정미란 출입국관리사무관 정길수 02) 2110-4364 | |

법무부, 디지털성범죄 등 전문위원 위촉

- 젊은 전문가의 시각으로

피해자의 일상을 회복하는 실효적인 대응방안 모색 -

□ 법무부(장관 박범계)는 '21. 8. 12.(목) 디지털성범죄 등 관련 각계 전문가 10명을 '디지털성범죄 등 전문위원 (이하 전문위원)'으로 위촉하고 위촉식 및 제1회 전문위원회를 개최하였습니다.

※ 위촉 근거 : 「디지털성범죄 등 전문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정」(법무부훈령 제1368호)

□ 법무부는 지난 7월, 디지털기기 등을 매개로 온·오프라인에서 성적 착취를 하는 새로운 유형의 성범죄를 포함, 성범죄에 대한 전반적인 대응체계를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디지털성범죄 등 대응 TF(전담팀)'를 출범하였습니다.

※ '21. 7. 27.자 '법무부, 디지털성범죄 등 대응 TF 출범' 보도자료 참조

○ '디지털성범죄 등 대응 TF(전담팀)'는 다크웹, 암호화폐 등과 결합하여 더욱 음성화, 다양화 되고 있는 디지털성범죄 등에 실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형사사법과 인권보호 시스템 전반을 면밀히 점검하고, 피해자 인권의 관점에서 종합적이고 신속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통합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입니다.

□ 발전하는 범죄 수법에 대한 실효성 있고 근본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형사절차 뿐 아니라 각계 분야에서 깊이 있는 이해를 갖춘 **전문가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 이에, 법무부는 ‘디지털성범죄 등 전문위원’에 언론·시민사회, 예술, 법조, 정보기술(IT)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10명을 위촉하였습니다.

※ 전문위원 현황 : 언론·시민사회 4명, 예술 2명, 법조 3명, IT 1명 【붙임1】 전문위원 명단 참조

- 디지털성범죄는 네트워크 기술을 악용하여 반사회적으로 빠르게 진화하고 있고, 그 주된 피해자는 10~30대* 아동·청소년·청년입니다. 이러한 피해자들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젊은 사람들의 치열한 고민과 문제의식을 깊이 공감하며, 디지털성범죄에 새로운 방식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열정 있는 청년 전문가 다수를 위원으로 위촉하여 평균 연령 36세의 젊은 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 사이버성폭력 유통사범 집중 단속(’ 21. 3. ~ 6.) 결과 연령대별 피해자 현황

| 구분 | 총계 | 10대 | 20대 | 30대 | 40대 | 50대 이상 |
|--------|-----|--------|------|-----|-----|--------|
| 비율(%) | 100 | 50.2 | 38.9 | 9.5 | 0.5 | 0.8 |
| 총인원(명) | 378 | 190 | 147 | 36 | 2 | 3 |
| | | 98.6 % | | | | |

(출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 ‘언론·시민사회’ 분야에서는 탐사 취재로 텔레그램 ‘N번방’의 존재를 최초로 세상에 알리고 현재도 디지털성범죄를 감시·제보하고 있는 ‘추적단블꽃’, N번방에 잠입하여 수사 협조를 하고 정부 각 기관 등에 디지털성범죄 실태 등을 활발하게 알리고 있는 활동단체 ‘리셋’, 미디어에서 양성평등에 대해 적극적인 목소리를 내온 **박정훈** 기자, 성교육 전문가로 활동하며 성폭력

예방 교육을 위해 노력해온 **이한** 위원을 위촉하여 현장 전문가들의 귀중한 경험을 바탕으로 디지털성범죄의 근본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예술’** 분야에서는 사회적 약자의 인권 문제에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다수의 작품을 연출한 **변영주 영화감독**, 현재 제작·유포되는 음란 딥페이크의 최대 피해자인 케이팝(K-POP) 가수들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는 **싱어송라이터 ‘핫펠트(前 원더걸스 예은)’**를 위촉하여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반영한 제도 마련이 이루어지도록 하였습니다.

○ **‘법조’** 분야에서는 풍부한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성폭력 문제 해결과 피해자 지원을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오지원 변호사 및 박예안 미국 뉴욕주 변호사**, 국내·외 형사절차 체계 등에 대한 비교법적 고찰을 통해 깊이 있는 연구를 해온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박경규 연구위원**을 위촉하여 국내 뿐 아니라 해외 각국의 사례와 연구 결과를 토대로 국제적이고 전문적인 시각에서 실효적인 대응책을 모색하고자 하였습니다.

○ **‘정보기술(IT)’** 분야에서는 국내 주요기관에 보안 관련 솔루션을 제공해온 **이지원** 위원을 위촉하여 네트워크 기술에 기생하는 범죄 특성을 철저히 분석하고, 이에 대응하는 기술적 방안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자 하였습니다.

□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이날 위촉식에서 위원들에게 “디지털 성범죄는 익명성에 편승하여 평범한 개인의 인격을 말살하는 중대한 범행이다. 이에 대한 **대응과 피해자의 보호는 국가의**

책무임에도 그동안 피해자가 일상을 회복하는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하는 등 부족한 면이 있었다.”

“더 이상 일상으로의 회복이 피해자만 오롯이 부담할 몫이 되지 않도록 국가가 피해 회복의 최전선에 나서서 보호와 지원의 사각지대를 없애고, 디지털성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근본적이고 종합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

“디지털성범죄 관련 분야의 전문가로서 다양하고 좋은 의견을 개진하셔서 법무부가 디지털성범죄 등 성범죄 대응체계의 획기적 전환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며 당부하였습니다.

또한 “전문위원들이 디지털성범죄 근절을 위한 법제도의 개선 방안을 제안하는 것 뿐만 아니라 디지털성범죄 관련 수사권을 가지고 있는 경찰, 검찰 등 관계자들과 소통하여 수사기관의 인식개선과 적극적인 수사를 촉구해달라.”고 주문하였습니다.

□ 위촉식 이후 이어진 **전문위원 회의**에서는 디지털성범죄 등 대응 TF(전담팀)의 출범 배경과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공유하고, 앞으로의 전문위원 **활동 방안**에 대한 **폭넓은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 법무부는 전문위원들이 제시하는 의견을 경청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정책과 제도가 마련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 | | | | |
|----------------------------------------------------------------------------------------------|-----------------|-------------------------|-------------------------------------|-------------------------------------------------|
|  법무부 | | <h1>보 도 자 료</h1> | | 국민이 공감하는 공존의 정의 민생에 힘이 되는 법무행정 |
| 보도일시 | 배포 즉시 보도 | 총 10쪽(붙임 6쪽 포함) / 사진 없음 | | |
| 배포일시 | 2021. 9. 15.(수) | 담당부서 | 법무부 디지털성범죄 등 대응 TF | |
| 담당과장 | 서지현 검사 | 담당자 | 정미란 검사 정길수 출입국관리사무관 02)2110-4364 | |

디지털성범죄 사례 발표 화상 세미나 개최

- 'N번방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 그 후 1년' 주제로
디지털성범죄 現 실태 점검 -

□ 법무부(장관 박범계)는 9월 15일(수) 「N번방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 그 후 1년」을 주제로 화상 세미나를 개최하여, 현재의 디지털 성범죄 실태를 점검·공유하고 향후 대책을 논의하였습니다.

○ 특히 이번 세미나는 코로나 19의 어려움 속에서도 대화와 소통을 지속하기 위해 대검찰청 등과 협력하여 전국 검찰청 여성아동범죄조사 부장 및 일선법원 판사가 함께 하는 화상 세미나를 개최 하였습니다.

※ 대검찰청 김지용 형사부장과 전국 검찰청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 인천지방법원 판사 등 총 23명 온라인 참여

○ 2020년 발생한 일명 'N번방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은 그동안 '가상세계의 실체없는 행위' 정도로 가볍게 여겨져 온 디지털 성범죄의 잔혹성과 심각성을 여실히 드러내 국민적 공분을 불러일으켰고, 딥페이크 및 성착취물 소지·시청행위 등 처벌규정을 신설하는 등 사회적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 N번방 사건 이후 1년이 지난 현재, 그동안 디지털 성범죄를 지속적으로 추적해 온 활동단체들과 정부 부처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더욱 다양화된 플랫폼에서 한층 음성화되고 진화된 방법으로 여전히 디지털 성범죄가 행해지고 있는 현실을 생생하게 공유하고, 법무부 장관을 비롯한 법무부 간부, 검찰청 전담 검사, 일선법원 판사 등 실무자들이 함께 대책을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붙임 1】 강사 프로필

세미나 목차

- ▶ 디지털 성착취물, 오늘도 유포 중
 - 딥페이크 및 불법 합성 범죄 유형, 스토킹성 불법 촬영
- ▶ 디지털 성범죄, 어디에서 발생하나(제2의 N번방들)
 - 더욱 음성화되면서 보안이 강화된 디스코드, 다크웹 등으로 이동
- ▶ 디지털 성범죄, 어떻게 유포되나
 - 금전거래, 자료 교환 등 불특정 다수 또는 개인간 유통 방법
- ▶ 디지털 성범죄자, 그들은 누구인가
 - 여성의 타자화(他者化), 성범죄 근절운동 조롱 등

【붙임 2】 세미나 주요 내용 요약본

- 박범계 장관은 “N번방 사건 이후, 정부 각 부처가 많은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디지털 성범죄로 수많은 피해자들이 고통받고 있는 가슴 아픈 현실을 마주하고 있다.

이 화상 세미나를 통해 일선의 실무자들이 더욱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갖게 되어, 디지털성범죄 근절을 위해 노력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하면서

- “법무부도 피해자 인권의 관점에서 수사, 공판, 교정, 보호관찰 등

형사사법 대응 체계 전반을 진단해 피해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고, 디지털성범죄 근절을 위해 경찰·검찰·법원뿐 아니라 여성가족부·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 관련 부처와 원활히 협업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하였습니다.

- 앞으로 법무부는 국가형사사법체계의 책임기관으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실효적인 대응체계 마련과 피해자 인권을 최우선 순위에 둔 피해자 보호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



보도자료



| | | | |
|------|------------------|------|---------------------------------------------|
| 보도일시 | 배포 즉시 보도 | | 총 5쪽(붙임 2쪽 포함) / 사진 추후 배포 |
| 배포일시 | 2021. 10. 14.(목) | 담당부서 | 법무부 디지털성범죄등대응TF 법무부 인권구조과 국방부 양성평등정책과 |
| 담당과장 | 법무부 서지현 TF팀장 | 담당자 | 출입국관리사무관 정길수(02-2110-4364) |
| | 법무부 김종현 과장 | | 행정사무관 윤지원(02-2110-3642) |
| | 국방부 박순향 과장 | | 중령 이숙자(02-748-5171) |

법무부-국방부 업무협약 체결

- 군(軍) 성폭력 피해자 지원 강화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 -

□ 법무부(장관 박범계)와 국방부(장관 서욱)는 2021. 10. 14.(목) 국방부 본관에서 군 내 성폭력 피해자 지원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 이번 협약은 양 부처가 성폭력 피해자를 보다 더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채널이 필요하다는 데 합의하여 이뤄졌으며,

○ 법무부가 범죄피해자에게 지원하고 있는 제도들을 군 내 성폭력 피해자도 활용할 수 있도록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붙임】 법무부-국방부 업무협약서 전문 1부

□ 이에 법무부와 국방부는 군 내 성폭력 방지를 위해 상호 협력하고, 피해자의 회복지원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함께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 이를 통해 군 내 성폭력 피해자는 법무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피해자 국선변호사」, 「심리치료서비스」 등 피해자의 회복 지원을 위한 다양한 지원 제도들을 제공받게 됩니다.

※ 법무부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제도

| | |
|------------------------------------------------------------------------------------------------------------------------------------------------------------------------------------------------------------------------|-------------------------------------------------------------------------------------------------------------------------------------------------------------------------------------------------------------------------------------------------|
| <p style="text-align: center;">피해자 신변보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변보호 조치 • 가명조서 • 피해자 보호시설 • 임시안전숙소 • 이전비 • 스마트워치(위치확인장치) | <p style="text-align: center;">형사절차상 피해자 보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범죄 피해자 의견진술 • 범죄 피해자에 대한 통지 • 형사사법 정보제공 • 심리관계 있는 자의 동석 • 피해자 국선변호사(개정 법 시행 이후) • 진술조력인 |
| <p style="text-align: center;">신체·생명·재산상의 피해회복 지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범죄피해구조금 • 주거 지원 • 경제적 지원 • 범죄피해자지원 법인을 통한 지원 • 스마일센터를 통한 지원(심리치료) | <p style="text-align: center;">가해자로부터의 손해배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배상명령 • 형사소송절차에서의 화해 • 형사조정 • 「법률홈닥터, 대한법률구조공단, 대한변협 법률구조재단,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

※ 상세 내용은 법무부 범죄피해자 지원제도 안내(www.moj.go.kr/cvs/index.do) 참고

- 구체적으로는 사건 발생 초기부터 신속하게 피해자 의사에 따라 군 내 또는 법무부의 성폭력 피해자 지원제도를 선택하여 법률적·경제적·의료적·보호적 지원 등 폭넓은 지원을 받을 수 있고, 전문성을 가진 국선변호사에게 법률적인 조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특히, 이번 협약을 통해 성폭력 피해자 발생시 ‘범죄피해자 지원 센터’에 적극 연계하고, 범죄피해 트라우마 심리치유 기관인 ‘스마일센터’를 통해 전문적인 심리치료를 진행하는 등 피해자가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 아울러 법무부와 국방부는 이러한 협력 방안들을 제대로 이행하고 원활히 추진 될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이행상황을 점검하며, 상호 협의를 통해 이견을 조정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법무부는 앞으로 군 내 성폭력 피해 회복을 위한 지원과 협력을 아끼지 않고, 국방부 내 성폭력 피해자 지원제도 개선을 위해 적극 협조할 것” 이라고 강조하며, “오늘 이 협약이 성폭력 피해자를 빨리 일상으로 회복시키고 보호할 수 있는 든든한 울타리가 되기를 희망한다” 고 하였습니다.
- 또한, 서욱 국방부 장관은 “성폭력 피해자가 군으로부터 충분히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피해 발생부터 회복에 이르기까지 모든 단계에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며 “오늘 법무부와 이루어진 협약으로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사각 지대가 존재하지 않는, 그래서 모든 인원들이 안전하고 행복한 근무환경에서 근무하길 기대한다” 고 하였습니다. <끝>

| | | | | | |
|----------------------------------------------------------------------------------------------|------------------|--------------------------|-------------------------|-------------------------------------------------|--|
|  법무부 | | <h1>보 도 자 료</h1> | | 국민이 공감하는 공존의 정의 민생에 힘이 되는 법무행정 | |
| 보도일시 | 배포 즉시 보도 | 총 19쪽(붙임 14쪽 포함) / 사진 없음 | | | |
| 배포일시 | 2021. 11. 22.(월) | 담당부서 | 디지털성범죄 등 대응 TF | | |
| 담당과장 | 서지현 검사 | 담당자 | 검 사 정미란 출입국관리사무관 정길수 | 02)2110-4364 | |

『법무부 간행물 성폭력·성희롱 가이드라인 마련』 권고
- 디지털성범죄 전문위원회 제3차 권고 발표 -

□ 법무부 디지털성범죄 등 전문위원회(위원장 변영주)는 2021. 11. 12.(금) 『성폭력·성희롱 간행물 제작 가이드라인 마련』에 관해 심의 의결하고, 다음과 같이 세 번째 권고안을 발표하였습니다.

권고 개요
- 성폭력·성희롱 간행물 제작 가이드라인 마련 -

1. 기본 방침

○ 법무부는 인권 보호의 주무 부처로서,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대내외적으로 공표되는 미디어 콘텐츠와 관련하여 **인권과 성인지 감수성을 바탕으로 명확한 기준에 의해 참고할 수 있도록 표준화된 가이드 라인을 마련하여 실천할 것을 권고합니다.**

2. 구체적 내용

가. 간행물 등에 성범죄 관련 내용을 포함시키는 경우 **정확한 개념과 올바른 용어를 사용·표기할 것을 권고합니다.**

나. 간행물 등을 통해 대내외적으로 정보를 제공·공표함에 있어, 성범죄에 대해 올바른 인식을 유도하고 피해자들의 2차 피해를 방지할 수 있도록 **기획·제작·발행의 전 과정에서 준수하여야 할 구체적인 기준을 명시한 준칙을 마련할 것을 권고합니다.**

다. 간행물 등의 기획·제작·배포의 각 단계마다 **핵심적인 내용이 간과되지 않도록 체크리스트를 작성하여 관리하는 등 보도·홍보 준칙 실천 방안을 강구할 것을 권고합니다.**

라. 법무부 간행물 등과 관련하여 **체계적인 사전점검을 수행하고, 대내외적 이슈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전담 창구를 마련할 것을 권고합니다.**

3. 기대효과

가. 언론·방송 및 공공 분야 간행물 등의 **잘못된 용어 사용, 부적절한 콘텐츠로 인한 성범죄 피해자의 2차 피해 유발·확산 예방**

나. **법무부 간행물 및 이를 인용·참조하는 언론·방송의 성폭력·성희롱 관련 보도 콘텐츠의 양질화**

다. 언론·방송·공공 분야 **인권·성인지 감수성 제고 및 성폭력·성희롱의 본질에 대한 사회 전반의 공감 및 이해도 증가**

- 이번 권고안은,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미디어에서 디지털성범죄 등 성범죄를 **희화화** 하거나, **피해자의 고통을 흥미 위주의 자극적인 소재로 사용하고 2차 피해를 유발하여,**

- 성범죄의 근본적 원인을 보지 못하게 하는 등 문제가 지적되어 왔는바,
- **인권 보호의 주무부처인 법무부가 보도·홍보·교육 등의 목적으로 대내외적으로 배포하는 간행물·미디어 콘텐츠 등의 제작시 준수해야 할 가이드라인과 체계적인 실천 방안을 모색하여 타 부처 및 언론 등에 제시할 수 있는 선도적이고 모범적 표준안을 마련하는데 의미가 있습니다.**
 - 구체적으로는 ① 디지털성범죄 등 성범죄 관련 보도 및 법무부 간행물 등과 관련하여, 피해자의 2차 피해 예방을 위해 콘텐츠 제작 시 준수하여야 할 구체적인 기준과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② 법무부 간행물 등의 기획·제작·배포 각 단계에서 인권 및 성인지 감수성을 고려한 체계적인 사전점검을 바탕으로, 관련 이슈에 긴밀히 대응할 수 있는 전담 창구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을 주된 내용으로 담고 있습니다.
 - 발표에 앞서, 법무부는 지난 11일 서울고등검찰청에서 토론회를 개최하여 일선 검찰청의 전문공보관과 디지털성범죄 전문위원을 비롯한 언론, 법조 및 시민단체 등 각계 전문가들로부터 의견을 청취하였습니다.

디지털성범죄 보도 등 기준 정립을 위한 토론회 개요

- **일시·장소** : 11. 11.(목) 10:30, 서울고등검찰청 의정관실
- **참석자(총12명)** :
 - 민주언론시민연합 사무처장, 한겨레신문 젠더데스크, 정혜선 변호사
 - 법무부 3명(부대변인, 「디지털성범죄 등 대응 TF」 팀장 등), 디지털성범죄 전문위원 3명(리셋, 추적단불꽃, 박정훈 기자)
 - 검찰청 전문공보관(서울서부지검 인권보호관, 의정부지검 인권보호관), 대검찰청 연구관

- 이번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언론의 **성범죄 보도 실태와 규제 현황을 공유하고**, 그로 인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인권 보호 주무부처인 법무부가 노력할 필요성에 공감하며, ▲ **디지털성범죄 피해 특성 등을 반영한 미디어 가이드라인 마련** ▲ **법무부 보도·홍보·교육 관련 간행물 작성·배포시 준수 기준 마련** 필요성 등에 관하여 심도 있게 논의하였습니다.
- 이날 토론회에서 의정부지방검찰청 김지연 인권보호관은, “**개별적 성범죄 사건 보도와 관련하여, 일반 국민의 알 권리 보장 및 유사 범죄 재발 방지라는 공익과 피해자의 2차 피해 방지라는 공익이 상충하는 지점에서 계속 고민을 할 수밖에 없다**”며, “**모범적인 보도 사례를 분석하여 언론이 성범죄의 근본적인 대응방안에 대해 공론의 장을 제공하여 바람직한 역할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 그 밖에도, 토론회에서는 미디어 콘텐츠 가이드라인의 **실효성**

있는 실천 방안에 대해서도 활발하게 논의하였습니다.

- 법무부는 앞으로도 피해자 인권의 관점에서 디지털성범죄 등 성범죄 대응 형사사법체계를 면밀히 점검하는 한편, 관련 분야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다양한 관점에서 연구와 논의를 진행하여 성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법무부

보도자료

국민이 공감하는 공존의 정의
민생에 힘이 되는 법무행정

| | | | |
|------|----------------|------|------------------------------------|
| 보도일시 | 배포 즉시 보도 | | 총 8쪽(붙임 5쪽 포함) |
| 배포일시 | 2022. 2. 7.(월) | 담당부서 | 디지털성범죄등대응TF 인권정책과 양성평등정책담당관실 |
| 담당과장 | 서지현 TF팀장 | 담당자 | 정길수 출입국관리사무관 02-2110-4364 |
| | 정소연 인권정책과장 | | |
| | 김윤전 담당관 | | |

성인지 감수성을 반영한 법무부 홍보물 가이드라인 제정

- 인권·성인지 감수성 제고를 위한 가이드라인 제정 및
정부 최초 인권-젠더데스크 설치 및 운영 -

□ 법무부(장관 박범계)는 2월 7일부터 **인권-젠더데스크**를 설치하고, 「인권·성인지 감수성 제고를 위한 홍보물 등 제작·배포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을 시행합니다.

○ 법무부 디지털성범죄전문위원회 3차 권고('21.11.22) 「법무부 간행물 성폭력·성희롱 가이드라인 마련」에 따라 인권과 성인지 감수성을 바탕으로 명확한 기준에 의해 법무부에서 홍보물 등 제작·배포시 피해자 보호 등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표준화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였습니다.

○ 그동안 법무부는 2021년 11월 언론사, 시민단체 등과 함께 ‘디지털 성범죄 보도 등 기준정립을 위한 토론회’를 거친 후, 관련 부서가 협업하여 가이드라인을 마련, 2022년 1월 부내 의견수렴을 통해 최종안을 확정했습니다.

【붙임 1】 인권·성인지 감수성 제고를 위한 가이드라인 1부

□ 인권 보호의 주무 부처인 법무부가 보도·홍보·교육 등의 목적으로 대내외 알리는 홍보물·미디어 콘텐츠 등 제작시 준수해야 하는 **인권 보호와 성폭력(디지털성범죄 포함) 피해자 보호 등에 초점을 맞추어 가이드라인**을 제정하였습니다.

※ 가이드라인은 실제 보도·홍보 등 현장에서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붙임 2** 법무부 홍보물 제작·배포 사전 체크리스트」, 「**붙임 3** 디지털성범죄 보도·홍보 사전 체크리스트」를 별도 제공

가이드라인 주요 내용

- (일반원칙) 성범죄 관련 정보제공시, 인권침해 방지하고 인권 및 성인지 감수성을 제고하기 위함
- (인권보호) 홍보물 등 지역·인종·장애·국적·성별·나이·종교 등 특정 집단이나 그 구성원들을 부정적이거나 열등한 대상 표현 방지
- (성평등) 성 평등과 성 역할에 대한 부정적 편견 또는 성차별적 표현 금지 등
- (성폭력피해자 보호) 성범죄 관련 정보제공시 피해자 인권 존중과 2차 피해 방지
 - 인적사항 비공개, 신상 특정될 수 있는 정보 제한
 - 성폭력 사건의 범행 수법 묘사 지양
 - 가해자 중심의 성 관념 용어 및 피해자 성적 대상화 표현 자제
-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보호) 범죄 특성에 맞는 피해자 보호
 - 음란물과 구분되는 성착취물 등 정확한 용어 사용
 - 피해영상을 유포된 인터넷 사이트 정보 차단
- (사전점검) 자체점검 → 내부전문가 감수 → 필요시 외부 전문가 협조
 - 감수 대상, 점검 내용, 기간 등 명시

□ 그 구체적 실현을 위해 법무부 홍보물(보도자료, 간행물 등)에 대한 **성범죄 관련 올바른 용어 사용, 성인지 감수성 제고 등을 위한 단계별**

감수 절차를 만들어 운영할 예정입니다.

〈 단계별 감수 방안 등 〉

① 자체 1차 감수

- 보도자료·홍보물 기획 단계부터 가이드라인 활용
- 1차 체크리스트 확인 후, 내부 전문가에 송부

② 내부 전문가 2차 감수

- 보도자료 : 대변인실
- 홍보물 등 : 인권정책과, 양성평등정책담당관실

※ 공동 논의가 필요한 중요 사안인 경우, 1·2차 감수 부서간 의견 불일치가 있는 경우 등은 합동 협의체 구성 후 감수 및 외부 전문가 협조

○ 정부 부처 최초로 실국 통합 ‘인권·젠더 데스크’ 를 운영하면서 젠더 이슈와 성범죄 관련 보도자료와 홍보물을 상시 점검하여 인권 및 성인지 감수성을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또한, 양성평등 교육 및 인권 교육시 프로그램에 관련 내용을 반영하여 실질적인 업무 수행시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범죄 피해자 보호는 우리 사회 공동의 책무이며, 인권보호 주무 기관인 법무부가 이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고 강조하며, “이번에 가이드라인 제정과 인권·젠더 데스크 설치는 그 첫걸음으로 현장에서 적극 활용되어 피해자 인권 보호 뿐만 아니라 젠더평등을 실현하는데 기여하기를 바란다.” 고 하였습니다.

| | | | | | |
|----------------------------------------------------------------------------------------------|----------------|---------------|-----------------------------------------------------|-------------------------------------------------------------------------------------------------------------|--|
|  법무부 | | <h1>보도자료</h1> | |  대한민국 대전환 한국판뉴딜 | |
| 보도일시 | 배포 즉시 보도 | | 총 5쪽/첨부 1쪽 | | |
| 배포일시 | 2022. 3. 7.(월) | 담당부서 | 법무부 디지털성범죄등대응TF 문화체육관광부 대중문화산업과 보건복지부 자살예방정책과 | | |
| 담당과장 | 법무부 서지현 TF팀장 | 담당자 | 출입국관리사무관 정길수(02-2110-4364) | | |
| | 문화체육관광부 안미란 과장 | | 대중문화산업과 사무관 안승연(044-203-2462) | | |
| | 보건복지부 원소윤 과장 | | 자살예방정책과 사무관 박소영(044-202-3891) | | |

법무부-문화체육관광부-보건복지부간
「대중문화예술인 대상 성범죄 대응방안」 마련
 - 표준전속계약서에 '성범죄로부터의 보호 강화' 규정 마련 등
 피해자 보호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 -

- 법무부(장관 박범계),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황희) 및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2022. 3. 7.(월) **대중문화예술인 대상 성범죄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피해자 보호를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 최근 **대중문화예술인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 악성 댓글, 사이버불링**(온라인 집단 괴롭힘) 등(이하 '성범죄 등' 이라 함)이 대중문화예술인 자살의 중요 원인으로 지목되면서 사회 문제로 대두되었습니다.
- **주로 온라인상**으로 행해지고 있는 이러한 성범죄는 유튜버 등 공개적 활동을 하는 **유명인에게까지 대상이 확장***되고, 기사·게시물·개인 사회 관계망 서비스(SNS) 등의 댓글뿐 아니라, 개인 메신저(DM)를 통한 메시지 전송 등을 통한 저속한 성적 표현, 불법 성적 합성물(일명 '딤페이스물') 제작·유포 등 **경로 및 방식이 다양화**되고 있습니다.

* 인터넷방송 스트리머 자살사망사건(' 22. 2. 5), 프로배구 선수 자살사망사건(' 22. 2. 4)

※ 네덜란드 인공지능(AI)연구소 센서티(Sensity) 발간 보고서에 따르면 ' 20. 7.까지 텔레그램에서 전세계 104,852명의 여성이 나체사진에 얼굴이 합성되는 피해를 입었음. 2019. 제작된 14,678건 **딥페이크 영상 중 96%가 음란물**이고, 비서양 영상 중 **25%는 한국 케이팝(K-Pop) 여성 연예인**이 피해자였음.

○ 이와 같은 대중문화예술인 등 대상 성범죄는 **개인에게 극심한 고통**을 줄 뿐 아니라, 일반 대중에게도 성범죄를 놀이나 장난처럼 인식하게 하거나, 범죄 의식을 완화시키고 모방 범죄에 이르게 하는 등 **사회적 악영향**을 끼쳐 왔습니다.

□ 이에 법무부, 문화체육관광부 및 보건복지부는 **소속사(기획업자)**가 대중문화예술인 등을 성범죄로부터의 보호하고, 개별 부처의 피해자 지원제도를 **통합적으로 활용**하도록 하는 등 피해자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 대중문화예술인에 대한 성범죄 대응 방안 >

- ▶ 대중문화예술인 표준전속계약서에 기획업자의 '성범죄로부터 보호 강화' 규정
- ▶ 성범죄 대응 매뉴얼 제작·배포 및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 교육에 추가
- ▶ 핫라인 구축으로 법무부 등의 다양한 피해자 지원 제도 활용

○ 「대중문화예술인(가수·연기자) 표준전속계약서」(문화체육관광부 고시 '18.11.28. 제정, 제2018-47호)를 개정하여 **소속사(기획업자)의 '성범죄로부터의 보호 강화'**를 규정하여 **대중문화예술인이 성범죄로부터 두텁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 법정교육**에 대중문화예술인에 대한 성범죄 발생시 대응 방안을 추가하고, **성범죄 대응 매뉴얼**을 제작·배포하여 신속하게 성범죄로부터 대중문화예술인을 보호

하겠습니다.

- **피해자 지원을 위한 핫라인(Hot-Line)을 설치·구축**, 법무부·문화체육관광부·보건복지부에서 개별적으로 실시 중인 다양한 피해자 지원 제도들을 대중문화예술인 성범죄 피해자들이 종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성범죄 발생 초기부터 재판 절차 및 사후 회복에 이르기까지 피해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 첨부 : 각 부처별 피해자 보호·지원 제도

- 아울러 각 부처는 이러한 협력 방안들을 제대로 이행하고 원활히 추진 될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이행상황을 점검**하며, 상호협의를 통해 이견을 조정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법무부는 대중문화예술인에 대한 성범죄를 예방하고, 피해 회복을 위한 지원과 협력을 아끼지 않을 것” 이라고 강조하며, “오늘 이 공동대응 방안이 **대중문화예술인 대상 성범죄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피해자를 두텁게 보호할 수 있는 든든한 울타리가 되기를 희망한다**” 고 하였습니다.
- **황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체육관광부는 대중문화예술인 대상 성범죄의 심각성 인식과 신속한 대응을 위한 기반 마련에 최선을 다할 것” 이라고 강조하며 “이번 공동대응 방안이 보다 **실효적인 대중문화예술인 보호 수단이 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

고 하였습니다.

- 권덕철 보건복지부장관은 “성범죄로 인한 대중문화예술인의 자살 사망은 사회 전반의 우울감 증가 등 파급효과가 큰 상황”이라고 말하며, “관계부처와 함께 자살유발정보 모니터링 강화, 문화예술인 안심클리닉 운영 등을 통해 대중문화예술인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하였습니다.

<끝>

| | | | | | |
|-----------------------------------------------------------------------------------|-----------------|-------------------------------------|----------------------|-------------------------------------------------|--|
|  | | <h1 style="margin: 0;">보 도 자 료</h1> | | 국민이 공감하는 공존의 정의 민생에 힘이 되는 법무행정 | |
| 보도일시 | 배포 즉시 보도 | | | 총 5쪽(붙임 2쪽 포함) | |
| 배포일시 | 2022. 3. 31.(목) | 담당부서 | 디지털성범죄등대응TF 인권구조과 | | |
| 담당과장 | 서지현 TF팀장 | 담 당 자 | 출입국관리사무관 정길수 | 02-2110-4364 | |
| | 김중현 인권구조과장 | | 행정사무관 윤지원 | 02-2110-3642 | |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이제 한 번의 신청으로!’
 -분산된 피해자 지원 체계의 통합·연계로
 법률·경제·의료 등 다양한 피해자 지원을 원스톱(ONE-STOP)으로-

□ 법무부(장관 박범계)는 4월 1일부터 **범죄피해자가 한 번의 신청으로 범죄피해구조금·치료비·생계비 등 경제적 지원, 피해자 국선변호사 진술 조력인의 법률적 지원 그리고 심리적 지원 등을 통합하여 신청할 수 있는 원스톱(ONE-STOP) 지원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 현행 범죄피해자 지원제도는 여러 기관에 산재되어 있어 범죄 피해자가 **개별적으로 지원을 신청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어, '21. 10. 6. 법무부 디지털성범죄등 전문위원회는 ‘성폭력 피해자 뿐 만 아니라 모든 범죄피해자에 대한 원스톱 지원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권고를 한 바 있습니다.

○ 이에 따라 법무부는 성범죄 피해자 등 범죄피해자가 검찰청, 범죄 피해자지원센터*, 대한법률구조공단, 스마일센터 등 각각의 기관에 지원을 신청하던 방식을 개선하여 **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통해 한 번에 주요 지원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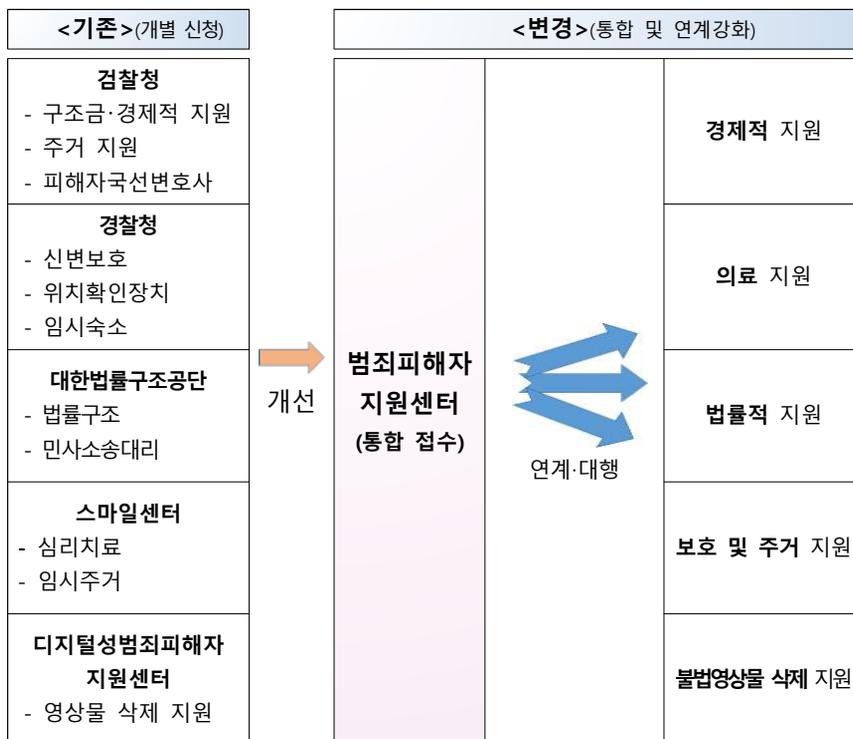
* 법무부 등록 범죄피해자 지원 법인(전국 59개 설치)

※ [붙임2] 범죄피해자 지원 센터 현황 참고

- 법무부는 범죄피해자가 주요 지원제도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범죄피해자 지원 체크리스트**」를 마련하여 **범죄피해자지원센터** 내에 비치하여, 피해자가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한 번 방문하는 것만으로 여러 지원 제도를 **한 번에 안내받고, 누락 없이 신청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붙임1] 범죄피해자 지원 체크리스트

- 체크리스트에 포함된 **큐알코드(QR code)**를 통해 **범죄피해자 지원제도 상세 안내 홈페이지를 쉽게 확인**하도록 함으로써 **지원 제도에 대한 접근성을 향상**시켰습니다.



○ 개선된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제도」에 대한 이해와 접근성이 향상되고, 지원 제도 신청의 편의성이 향상되어 보다 기존 신청자를 포함하여 신규 신청자까지 많은 피해자들이 지원 제도를 이용하여 신속하고 효과적인 피해 회복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하여 일상으로 회복하게 하는 것은 국가의 당연한 의무이자 역할이며, 이를 위한 인권 주무부처인 법무부의 다양한 노력의 일환이다” 고 강조하면서,

○ “이번 피해자 원스톱(ONE-STOP) 통합 지원은 한 번의 신청으로 피해자 지원 제도를 전부 이용할 수 있게 연계하는 정책 서비스로 앞으로도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제도 개선과 눈높이에 맞는 정책을 개발해 나가겠다.” 고 하였습니다.

□ 법무부는 인권옹호의 주무부처로서 앞으로도 검찰청, 경찰청 등 범죄피해자 지원 유관기관 간 협업을 강화해, 보다 효과적으로 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디지털 성범죄 등 대응 TF· 전문위원회 활동과 성과

DIGITAL SEXUAL CRIMES TASK FORCE TEAM •
EXPERT COMMITTEE ACTIVITIES AND ACHIEVEMENTS

**디지털
성범죄 등
대응 TF·
전문위원회
활동과 성과**

DIGITAL SEXUAL CRIMES
TASK FORCE TEAM ·
EXPERT COMMITTEE
ACTIVITIES AND ACHIEVEMENTS

PART III

디지털 성범죄 전문가들이 힘을 합치다

Digital sexual crime experts
join forc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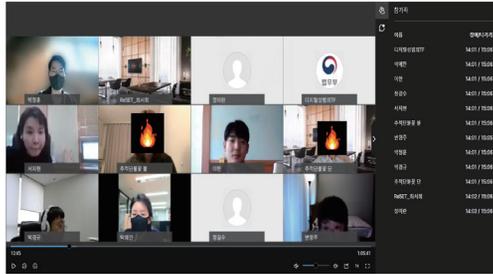
PART III 디지털 성범죄 전문가들이 힘을 합치다

1. 전문위원회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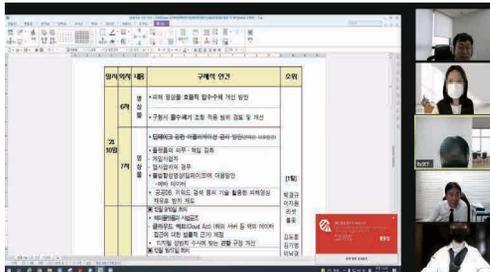
- 디지털 성범죄는 정보네트워크(ICT) 기술을 악용하여 반사회적으로 빠르게 진화하고 있고 그 주된 피해자는 10~30대 아동·청소년·청년들인바, 피해자들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새로운 시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열정 있는 청년 전문가 다수를 위원으로 위촉하여 평균 연령 36세의 「디지털 성범죄 등 전문위원회」 발족(21. 8. 13.)
- IT·시민사회·언론·법조계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위원을 위촉하고, 디지털 성범죄 관련 연구 및 자문 경험이 있는 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위촉(21. 10. 6.), 전문위원 및 자문위원으로 구성된 법률·기술 1·2·3소위원회, 교육·홍보 소위원회에서 총 30회 회의를 통해 디지털 성범죄 처벌의 실효성 강화 및 효율적 피해자 지원 등을 위한 다양한 개선안을 전문위원회에 제안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전문위원회는 총 15차례 전체 회의를 통해 11차례 권고안 발표



제1차 전문위원회 전체회의



전문위원회 화상회의



디지털 성범죄 소위원회 화상회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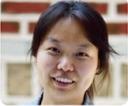


제1차 자문위원 전체회의

디지털 성범죄등 전문위원 명단('21.8. 위촉)

| 연번 | 사진 | 성명 (나이) | 현직 | 약력 |
|----|-------------------------------------------------------------------------------------|------------------|---------------|-------------------------------------------------------------------------------------------------------------------------------------|
| 1 |  | 변영주 (54, 위원장) | 영화감독 | <ul style="list-style-type: none"> '12 올해의 여성영화인상 <아시아에서 여성으로 산다는 것>등 다수 작품 연출 |
| 2 |  | 박경규 (44) | 박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국 형사·법무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독일 괴팅겐대학 형사법 석·박사 |
| 3 |  | 박예안 (41) | 변호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미국 뉴욕주 변호사)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활동 |
| 4 |  | 박정훈 (34) | 기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오마이뉴스 기자 '18. 양성평등 미디어상 최우수상 <친절하게 웃어주면 결혼까지 생각하는 남자>등 저자 |
| 5 |  | 햇펠트 (32) | 가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前 원더걸스 (소속사 JYP) 現 햇펠트 (소속사 아메바컬처) 싱어송 라이터 |
| 6 |  | 오지원 (45) | 변호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前 수원지법판사(사연 34기) 한국성폭력상담소 법정책 자문위원 대한변협 여성아동특별위원회 위원 |
| 7 |  | 이지원 (40) | (주)S2W 부대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터폴 공식 협력 보안업체(국내 유일) 국내 주요 기관 및 암호 화폐 거래소 솔루션 제공 |
| 8 |  | 이한 (29) | 활동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남성들을 위한 성교육 전문가 성폭력 예방 교육 강사 |
| 9 |  | 추적단불꽃 (20대) | 비영리 익명단체 | <ul style="list-style-type: none"> 텔레그램 N번방 탐사 취재 제22회 국제엠네스티 언론상 특별상 |
| 10 |  | 리셋 (20대) | 비영리 익명단체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성착취 단체방 수사 공조·정책 제안 '20. 여성가족부·기획재정부 장관 표창 |

| 디지털 성범죄 등 자문위원 명단('21.10. 위촉)

| 연번 | 사진 | 성명 (나이) | 현직 | 약력 |
|----|-------------------------------------------------------------------------------------|-------------|------------|------------------------------------------------------------------------------------------------------------------------------------------------|
| 1 |  | 김기범 (46) | 교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성균관대 과학수사학과 교수 국제사이버범죄 연구센터 센터장 인터폴 사이버범죄 전문가 그룹 회원 |
| 2 |  | 김도훈 (45) | 대표이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아르스 프락시아 대표이사 「N번방 이용자의 대화 및 인식체계분석」 등 관련 연구 다수 |
| 3 |  | 류경은 (41) | 교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려대 교수 前 대법원 재판연구관(사연 36기) |
| 4 |  | 백소윤 (37) | 변호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변8회)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법률자문 텔레그램성착취사건 피해자 대리인단 |
| 5 |  | 오민애 (34) | 변호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법무법인 올림 변호사(변4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여성인권위원회 위원 |
| 6 |  | 이남경 (50) | 에트리 연구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現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미디어지능화연구실장 NIA 인공지능데이터구축사업 미디어분과 자문위원 디지털 성범죄 대응 관련 다수 국책과제 수행 |
| 7 |  | 이순옥 (43) | 교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앙대학교 형사법 교수 前 검사(사연 35기) UK, Cambridge University Visiting Scholar |
| 8 |  | 이현민 (34) | 변호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법무법인 다담 변호사(변5회) |
| 9 |  | 장다혜 (45) | 연구위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온라인 성폭력 범죄의 변화에 따른 처벌 및 규제 방안」 등 성범죄 및 피해자 지원 관련 논문 다수 |
| 10 |  | 최준혁 (47) | 교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하대학교 교수 「성폭력범죄에 대한 최근 법률과 판결의 변화」 등 성범죄·양형·죄수 관련 논문 다수 |
| 11 |  | 최호진 (52) | 교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단국대학교 교수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보호법익에 따른 해석 기준에 대한 검토」 등 관련논문 다수 |
| 12 |  | 한주현 (33) | 변호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주현 법률사무소 변호사(변3회)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법률자문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여성인권위원회 위원 |

2. 주요 활동 사항

제1절 디지털 성범죄 등 전문위원회 전체회의

| 회차 | 일자 | 논의사항 |
|-----|--------------|--------------------------------------------------------------------------------------------------------------------------------------------------------------------------------------------------|
| 1차 | '21. 8. 12.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디지털 성범죄 등 전문위원회 운영 방안 및 장·단기 안건 결정 |
| 2차 | '21. 9. 7.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디지털 성범죄 등 전문위원회 분과별 소위원회 구성(교육·홍보, 법률, 기술) 회차별 의제 논의 및 확정(총 34개 의제) |
| 3차 | '21. 9. 15.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디지털 성범죄 사례 발표 화상 세미나 개최, 전문가의 실제 경험사례 발표 및 토론 |
| 4차 | '21. 10. 6.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성범죄 피해자 지원 현황 및 문제점 논의 통한 원스톱(ONE-STOP) 통합지원 권고 디지털 성범죄 영상물 차단·삭제 관련 '응급조치' 안건 시연 및 대응 방안 논의·권고 |
| 5차 | '21. 10. 20.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보호 위한 응급조치 신설 방안 논의·권고 |
| 6차 | '21. 11. 12.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디지털 성범죄 등 성범죄 관련 보도·홍보 기준 논의 법무부 내 성범죄 관련 보도·홍보 준칙 제정 권고 |
| 7차 | '21. 11. 25.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디지털 성범죄 등 성범죄 양형 실태 및 문제점 검토, 양형 관련 개선방안 논의·권고 |
| 8차 | '21. 12. 7. |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현행 디지털 성범죄 및 성폭력 범죄 처벌의 한계 검토 유흥력을 매개로 하지 않는 성적 괴롭힘, 사이버 공간에서의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처벌 법제화 권고 성범죄 피해자 보호 및 2차 피해 방지 위한 근거 규정 신설 논의·권고 |
| 9차 | '22. 1. 27.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재판절차상 피해자 보호 및 피해영상물 효율적 압수·수색 방안 논의·권고 |
| 10차 | '22. 2. 4.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딥페이크 허위영상물 범죄 실태 및 현황 조사, 연예인 대상 딥페이크 범죄에 대한 기획업자의 조치 의무 명시 논의 청소년 대상 성폭력 예방교육 강화 방안 마련 논의 |
| 11차 | '22. 2. 11. |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현행 법률상 아동성범죄 피해자 진술 확보 및 보호 방안 논의·권고 딥페이크 대응 방안 추가 논의 디지털 성범죄 신고 및 정보수집 관련 개선방안 논의 |
| 12차 | '22. 2. 25. | <ul style="list-style-type: none"> 피해영상물의 효율적인 압수·수색 및 몰수·폐기 방안 추가 논의·권고 디지털 성범죄 관련 교정 및 보호관찰 개선방안 논의·권고 |
| 13차 | '22. 3. 4.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유럽평의회 사이버범죄협약' 가입 등을 통한 사이버 범죄의 효과적인 소추 및 처벌 방안 논의·권고 디지털 성범죄 관련 교정 및 보호관찰 추가 논의 |
| 14차 | '22. 3. 11. |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현행 법규상 '성적 수치심' 용어 개정 논의·권고 성범죄 사건에서 형사배상명령 활성화 방안 논의·권고 형사절차에서 피해자 보호 및 경제적 지원 활성화 방안 논의·권고 |
| 15차 | '22. 3. 25. |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형사절차상 범죄피해자 진술권 및 알권리 보장 위한 통지제도 개선방안 논의·권고 |

제2절 분과별 소위원회 회의

| 분과 | 일자 | 주요 논의사항 |
|-------------|---------------------------------------------------------------------------------------------------------------------------|-------------------------------------------------------------------------------------------------------------------------------------------------------------------------------------------------------------------------|
| 교육·홍보팀 | '21. 10. 13.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법무부 내 법조인 대상 성평등 교육 강화 법무부 연 계 타 정부부처 및 기관 디지털 성범죄 예방 교육 미디어 등 디지털 성범죄 관련 가이드라인 제시 디지털 성범죄 문제 개선 위한 대외 홍보 및 심층 보도 기획 제안 |
| | '21. 10. 26.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법무부 내 직원 대상 성평등 교육 강화 권고 디지털 성범죄 가이드라인 제시 위한 토론회 개최 및 보도준칙 교육 실시 방안 논의 디지털 성범죄 문제 개선 위한 인스타그램, 만화, 영상 제작 등 홍보 아이디어 제시 |
| | '21. 12. 7.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디지털 성범죄 문제 경각심 환기 위한 대외 홍보 방안 모색 법무부 내 직원 디지털 성범죄 및 성인지 감수성 교육 강화 방안 논의 |
| | '22. 3. 28.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디지털 성범죄 등 대응TF 활동 홍보 기획안 작성 및 오마이TV, 국회의원실 유튜브 채널 등 배포 통한 전문위원회 활동 및 권고안 홍보 법무부 주관 모의재판대회, 공모전, 학술행사 등 디지털 성범죄를 주제로 행사 제한 청소년에게 안전한 디지털 공간 조성 방안 논의 |
| | '22. 4. 8. | <ul style="list-style-type: none"> TF 활동 전반, 권고안 소개 등 홍보 방안 기획 디지털 성범죄 예방 교육 시수 상향 및 교육 전달 시스템 마련 논의 |
| | '22. 4. 18.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디지털 성범죄 등 TF 활동 홍보 계획 논의 청소년을 위한 안전한 디지털 공간 만들기 위한 디지털 성폭력 예방 교육 강화 논의 |
| 법률·기술 1팀 | '21. 10. 2.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디지털 성범죄 관련 응급조치 신설 방안 검토 및 논의 |
| | '21. 10. 5.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디지털 성범죄 관련 불법영상물 삭제·차단 지원 제도 검토 및 개선방안 논의 불법영상물 공공DB 현황 파악 및 구체적 활성화 방안 논의 |
| | '21. 10. 12.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디지털 성범죄 관련 응급조치 신설 권고안 최종 검토 |
| | '21. 11. 11.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디지털 성범죄 수사단계에서 토지관할 관련 개선방안 논의 |
| | '21. 11. 19.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디지털 성범죄 피해영상물 관련 보전명령 제도 도입 논의 다크웹에서 피의자 신원 추적 기술 현황 점검 |
| | '21. 11. 23.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디지털 성범죄 키워드 검색 현황 및 문제점 파악, 키워드 필터링 위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논의 |
| | '21. 11. 25.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디지털 성범죄 관련 데이터 보전명령 및 제출명령 도입 트래픽 데이터 실시간 수집 논의 |
| | '21. 12. 3.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구글, 트위터 등 해외플랫폼에 피해영상물 삭제 요청 관련 문제점 파악 |
| | '21. 12. 9.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불법영상물 유포 및 삭제 위한 해외플랫폼에 대한 규제방안 논의 |
| | '21. 12. 16.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디지털 성범죄에서 토지관할 권고안 추가 논의 해외플랫폼의 불법영상물 삭제 조치 관련 제재 방안 논의 |
| | '22. 1. 24.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디지털 성범죄 불법영상물 압수·수색 제도 개선방안 논의 |
| | '22. 2. 7. | <ul style="list-style-type: none"> 피해영상물 보전명령제도 도입 방안 추가 논의 딥페이크 허위영상 대응방안 논의 |
| '22. 2. 23.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불법영상물 압수·수색 제도 관련 외국 입법례 추가 논의 디지털 성범죄 관련 교정 및 보호관찰 분야 개선방안 논의 | |

| 분과 | 일자 | 주요 논의사항 |
|-------------|--------------|--------------------------------------------------------------------------------------------------------------------------------------------------------------------------------------------------------------------------------------|
| 법률·기술 2팀 | '21. 10. 8.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성범죄 피해자 진술권 보장, 통보 절차 개선방안 등 피해자 지원 방안 논의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현황 파악 및 범죄수익 환수금 운용방안 논의 |
| | '21. 10. 15.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디지털 성범죄의 개념 및 비접촉 성범죄 등 처벌 공백 논의 디지털 성범죄 처벌 관련 통합 법률 마련 방안 논의 |
| | '21. 10. 22.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디지털 성범죄 피해영상물 삭제 지원 조치 문제점 검토 유포 영상물의 채증 방식 일원화 필요 |
| | '21. 11. 4.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성범죄 피해자 배상명령 제도 활성화 방안 논의 메타버스 상 성적 침해 등 다양한 형태의 성범죄 관련 처벌 공백 입법 방안 논의 |
| | '21. 11. 24.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성폭력처벌법상 성적인격권 침해 규정 신설 및 피해자 보호명령제도 도입 관련 권고안 초안 논의 |
| | '21. 12. 16.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디지털 성범죄 등 성범죄 양형 관련 개선방안 권고안 검토 형사절차에서 피해자 보호 방안 권안 검토 피고인에 대한 배상명령 활성화 권고방안 검토 |
| | '22. 1. 28.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배상명령제도 활성화 권고안 검토 디지털 성범죄 등 성범죄 사건 관련 현행 형사절차의 피해자 보호 방안 개선안 제시 |
| 법률·기술 3팀 | '21. 11. 14.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성범죄 관련 현행 양형기준 및 양형 실태 점검 통한 개선방향 논의 |
| | '21. 11. 23.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재판 실무 과정에서 양형 조사제도의 활성화, 증거보전절차 제도 적극 활용 방안 등 논의 |
| | '21. 12. 14. | <ul style="list-style-type: none"> 피해자 재판기록 열람 절차 등 현행 재판절차상 피해자보호 제도 검토 및 개선방향 제시 피해영상물 증거조사 방식 개선방안 논의 성범죄 형사재판 피해자 증인신문 절차 문제점 및 개선방안 논의 |
| | '21. 1. 5.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성범죄 피해자 부적절한 증인신문사항 제한 및 절차적 선택권 부여 방안 논의 재판절차상 미성년 피해자 보호 강화 방안 마련 디지털 성범죄 증거조사방식 개선 통한 2차 피해 방지 방안 논의 제한적 소송기록 열람등사제도 개선 및 소송기록 공개에 따른 2차 피해 방지 방안 논의 |

3. 회차별 권고 및 이행 상황 ('22. 4. 25. 현재)

| 구분 | 권고 주요 내용 | 이행 상황 |
|-----|-------------------------------------------------------------------------------------------------------------------------------------------------------------------|-------------------------------------------------------------------------------------------------------------------------------|
| 1차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성범죄 피해자 통합지원 시스템 구축 법무부 내 피해자 지원신청 창구 일원화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권고('21. 10. 6.) 법무부 통합지원 실시('22. 4. 1.) |
| 2차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불법 영상물 삭제·차단을 위한 응급조치 신설 성폭법, 정보통신망법, 전기통신사업법에 수사기관이 해당 영상물 삭제·차단 요청 및 경고 등 권한 부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책브리핑 및 권고('21. 10. 28.) 홍정민 의원발의('21. 12. 28.) |
| 3차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디지털 성범죄 등 홍보물 가이드라인 제정 및 전담기구 마련 성범죄 관련 간행물 등 가이드라인 제정 및 인권·젠더 데스크 운영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언론사 토론회 및 권고('21. 11. 22.) 가이드라인 등 실시('22. 2. 8.) |
| 4차 |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합리적 양형을 위한 양형 조건 개정 및 성범죄 피해자 진술권 강화 형법 양형조건, 형사소송법 피해자진술권, 성폭법 판결전조사 등 개정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권고('22. 1. 6.) 송기현 의원발의('22. 1. 28.) 홍정민 의원발의('22. 4. 6.) |
| 5차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메타버스(가상현실) 내 성범죄 대응을 위한 성적인격권 침해 신설 등 성폭법상 성적괴롭힘 신설, 보호관찰법상 디지털 성범죄자 특별준수사항 추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권고('22. 1. 28.) |
| 6차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재판절차에서 성폭력 피해자 보호 방안 형사소송법상 부적절한 신문제한 및 증거조사방식 개선, 성폭법상 사적정보유출 제한 및 기록 열람제도 개정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권고('22. 2. 28.) 이수진 의원발의('22. 3. 31.) |
| 7차 | <ul style="list-style-type: none"> 피해 영상물 효율적 압수 및 재유포 방지방안 성폭법상 원본삭제방식 압수, 보전명령, 토지관할 특례 규정 및 사이버범죄협약(유럽평의회) 가입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권고('22. 3. 17.) 박주민 의원발의('22. 4. 20.) |
| 8차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성적수치심' 등 부적절한 용어 개선 성폭력처벌법 등 14개 법안 및 인권보호수사규칙 등 개정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권고('22. 3. 24.) 권인숙 의원발의('22. 4. 15.) |
| 9차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디지털 성범죄 압수·수색 및 물수·추징 개선, 피해자 경제적지원 강화 성폭력처벌법 등에 필요적 물수추징 신설, 경제적지원업무처리지침 개정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권고('22. 4. 12.) |
| 10차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범죄 피해자의 진술권 및 알권리 보장을 위한 통지제도 개선 형사소송법상 피해자 신청과 무관하게 수사진행상황 등 통지 의무화 개정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권고('22. 4. 15.) |
| 11차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를 위한 형사배상명령제도 개선 방안 소송촉진법상 디지털 성범죄 전반을 형사배상대상에 포함, 일부인용 및 직권배상명령 명시, 피해자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익명송달 도입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권고('22. 4. 20.) |

4. 기대 효과

- 디지털 성범죄 처벌의 실효성 강화 및 피해자 보호
 - 「형법」, 「성폭력처벌법」 등 관련 법률 개정과 '피해자 통합지원 시스템 구축' 등 정책 개선 등 성범죄자에 대한 보다 강력한 처벌 방안 및 실질적인 피해자 보호 방안 마련
- 디지털 성범죄 피해 영상물의 철저한 삭제·차단 및 압수·수색·몰수·추징
 - 범죄 특성에 부합하는 신속한 삭제,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 도입 및 재유포 방지 방안으로 불법 영상물을 철저히 삭제, 의무적 몰수·추징으로 범죄로 인한 수익차단
- 국민 인식 개선 관련 정책홍보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청소년 등 국민의 의식 변화

**디지털
성범죄 등
대응 TF·
전문위원회
활동과 성과**

DIGITAL SEXUAL CRIMES
TASK FORCE TEAM ·
EXPERT COMMITTEE
ACTIVITIES AND ACHIEVEMENTS

PART IV

회차별 권고안

Recommendations



디지털 성범죄 등 전문위원회 제1차 권고안

- 성범죄 피해자 통합지원 시스템 구축 -

권고 개요

1. 기본 방침

- 현재 법무부·경찰청·여가부 각 부처간 분산되어 개별 지원하고 있는 성범죄 피해자에 대해 체계적·통합적인 원스탑(ONE-STOP) 지원이 가능하도록 각 부처 내 지원 체계를 정비하고, 각 부처간 협의체를 구축할 것을 권고합니다.

2. 권고사항

- 가. 법무부 내 피해자 지원 신청 접수창구를 일원화하고, SNS 활용 상담, 온라인 지원 신청이 가능하도록 제도·기술 개선 작업에 착수할 것을 권고합니다.
- 나. 각 부처간 정보 공유 및 공동 대책이 가능한 피해자 지원 협의체를 구축하고, 지원 내용에 관한 정보를 종합한 통합 안내문 및 신청서를 마련하여 피해자에게 제공하고, 신청서가 각 지원 기관별 원스탑(ONE-STOP) 창구에 인계·접수되도록 업무매뉴얼 등을 정비할 것을 권고합니다.
- 다. 중장기적으로 별도 독립기구를 신설하여 피해자 중심의 통합 지원을 위한 구조적 체계를 수립할 것을 권고합니다.

3. 기대효과

- 가. 성범죄 피해자 지원 서비스 인지도 및 피해 회복의 실효성 제고
- 나.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체계적·통합적 지원 시스템 구축
- 다. 성범죄 피해자 지원정책 내실화 및 국민 신뢰 제고

1 권고 배경

- 성범죄 피해자를 보호하고 체계적·실효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국가의 당연한 책무로 우리나라는 범죄피해자의 구조청구권을 헌법상의 권리로 명시¹하고, 중앙행정기관과 민간 등에 의해 다양한 피해자 보호·지원 제도를 시행 중임
- 현재 법무부(검찰), 경찰, 여성가족부 등에서 성범죄 피해자 지원을 실시하고 있으나, 일원화된 지원 체계 및 홍보 부재로 피해자가 어느 곳에 어떤 지원을 신청하여야 할지 알지 못하거나 어려운 상황임

※ 2019년 여성가족부 '성폭력 안전실태조사 연구'결과, ① 성폭력 방지를 위해 관련 법률을 마련하고 각종 제도가 시행 중인 것을 있는지에 대해 여성 중 72%는 '들어본 적은 있지만 내용은 잘 모른다'고 응답하고, 13.7%는 전혀 모른다고 응답 ② 성폭력 피해기관에 도움을 요청한 적이 없다고 답한 이유에 대해 36.4%는 '피해가 심각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응답하고, 22.0%는 '관련기관의 존재를 몰라서'라고 응답

1 (헌법 제30조) 타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명·신체에 대한 피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로부터 구조를 받을 수 있다. ⇒ 1987년 제9차 개정 헌법에서 최초로 범죄피해자 구조청구권을 기본권으로 규정

- 성범죄 피해자를 두텁게 보호하고 피해 발생 초기부터 적시에 피해자를 위한 맞춤형 지원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각 부처간 신속히 정보를 공유하고 공동 대책 수립을 할 수 있도록 통합적·체계적 피해자 지원 체계를 갖출 필요 있음

2 성범죄 피해자 지원 현황 및 문제점

가. 성범죄 피해자 지원 현황

▶ 일반적 지원

- 현행 법제상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지원 근거는 범죄피해자보호법, 법률구조법, 성폭력처벌법, 성폭력방지법 등에 규정되어 있고, 각 법령의 소관부처인 법무부(검찰), 경찰, 여성가족부에서 피해자 지원 업무를 각각 수행함
- 구체적 내용은 ▲ 피해자 국선변호사, 진술조력인 등 법률적 지원, ▲ 범죄피해구조금, 생계비 지급 등 경제적 지원, ▲ 심리치료, 의료비 지급 등 의료적 지원, ▲ 보복의 우려시 신변보호, 숙소 제공 등 보호적·주거 지원으로 구성됨

| 부처별 피해자 지원 내용 |

(2021. 9. 현재 기준)

| | 법무부(검찰청) | 경찰 | 여성가족부 |
|--------------|---------------------------------------------------------------------------------------------------------------------------------------------|---------------------------------------------------------------------------------------------------------------------------------------------|---------------------------------------------------------------------------------------------|
| 법률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해자 국선변호사 • 진술조력인 • 법률구조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료법률지원 (해바라기센터 종합 상담·지원) (경찰 24시간 배치) |
| 경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범죄피해구조금(사망·중상해시) • 생계비·학자금·장례비 • 취업지원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강력범죄 현장정리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돌봄 비용 (피해자 자녀 등) |
| 의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치료비 • 심리치료(스마일센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해자 전담 경찰관 • 피해자 심리전문요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료비 • 간병비 • 치료회복 프로그램 |
| 보호·주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전가옥(4개)·임시주거(스마일센터) • 주거지원, 이전비 • 위치확인장치 지급 • 법정 동행 등 증인 지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시숙소 (449개) • 주거지 순찰·CCTV·번호등록 • 위치확인장치 지급 • 수사관서 동행 등 진술 지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거지원 |

▶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삭제 지원

- 성착취물 유포, 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는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일반적인 지원 외에 불법영상물 삭제 지원 및 가해자에 대한 삭제 비용 구상이 가능(성폭력방지법 제7조의3)

- 디지털 성범죄 피해지원센터², 검찰, 경찰,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성폭력상담소, 여성긴급전화 등에서 삭제 지원 업무를 수행
 - ※ 유포된 불법영상물에 대해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가 직접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삭제요청 하거나, 지원 기관을 통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삭제 요청 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삭제 또는 접속 차단 조치 명령

나. 현행 지원 체계의 문제점

▶ 통합 피해자 지원 체계 부재

- 경찰·검찰·여성가족부 각 부처간 정보 공유나 협의 없이 별도 지원(2-가 참조)하고, 지원 절차, 지원 내용 등에 대한 정보가 공유되지 않아 각 부처간 타 부처 지원 제도 및 절차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고, 피해자들에게 정보 제공이 미흡하며, 지원의 공백 또는 중복 우려 있음

▶ 통일된 피해자 지원 신청 서식 부재

- 각 부처별 피해자 지원 안내서 및 신청서 양식이 다르고, 각 부처 내에서도 신청 내용에 따라 신청서 양식 달라, 수개의 지원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수개의 별도 신청서 작성 필요

ex) 법무부 범죄피해지원센터에 치료비·이전비·경제적 지원 신청시, 신청서 양식이 각각 달라 별도로 3개의 신청서 작성 필요

▶ 각 부처 내 원스탑(One Stop) 창구 부재

- 각 부처 내에도 원스탑(One Stop) 창구의 부재로, 피해자가 각각의 기관에 별도로 직접 연락해서 신청하여야 함

ex) 법무부 내 제도를 이용하기 위해서도 피해자 국선변호사는 검찰청 피해자 지원실, 경제적 지원은 범죄피해지원센터, 심리적 지원은 스마일 센터, 법률상담은 대한법률구조공단 등에 피해자가 각각 연락하여 별도의 신청절차를 거쳐야 함

² 여성가족부 산하 한국여성인권진흥회에 설치('18. 4.)되어 삭제 지원, 피해자 상담, 수사법률 지원 및 의료 지원 연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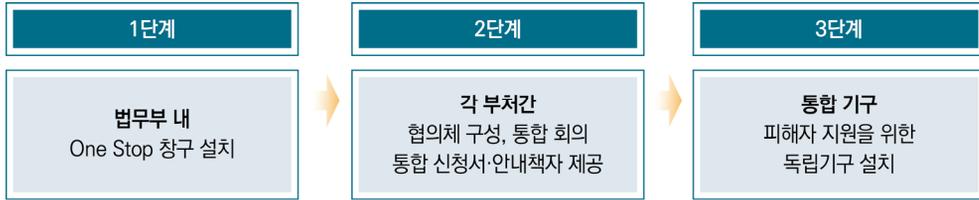
| 법무부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제도 안내서 |

| 신청기관 | 지원제도 |
|-------------------------------------------------------|----------------------------------------------------------------------------------------------------------------------------------------------|
| 검찰청 피해자지원실 T. 1577-2584 | 진술조약인 피해자국선변호사 신뢰관계 있는 자의 동석 가영조서 스마트워치 이음매 피해자 보호시설 범죄피해구조금 경제적 지원(치료비, 생계비, 학자금, 장애비 등) 주거지원 배상운영 형사조정 |
| 범죄피해자지원센터 (hvc.or.kr) T. 1577-1296 | 경제적 지원(간병비, 요양치료비, 휴식지원 등) 상의지원, 취업지원, 병정동행 등 요청 |
| 스마일센터 (resmile.or.kr) T. 02-472-1295 | 상의치료 및 임시 주거시설 ※ 성폭력 피해자의 경우 행복리안센터 (1899-3075), 아동학대 피해자의 경우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02-558-1391) 에서도 상담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 검찰청 피해자지원경찰 T. 102 | 진술조약인, 피해자 국선변호사, 범죄현황조사, 신변보호조치(신변경호 등), 입차권전속, 신뢰관계 있는 자의 동석, 가 영조서, 스마트워치 |
| 대한법률구조공단 (www.lhav.or.kr) T. 132-0000 | 법률상담 및 소송구조 |
| 가정법률상담소 (www.lsvhome.or.kr) T. 1644-7077 | |
| 법률홍익터 T. 02-2110-4263 | 법률상담 및 법교육 |

▶ 정책 개발, 전문성 및 역량 강화를 위한 장기적 계획 수립 어려움

- 분산된 지원 체계로 인해 피해자에 대한 신속하고 통합적인 지원이 어렵고, 온라인과 결합하여 새로운 형태와 방식으로 진화하는 성범죄 피해 특성을 반영한 피해자 중심의 맞춤형 지원 역량 강화, 전문성 축적에 한계가 존재
- 실제 피해자 지원 업무는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스마일센터 등 민간 단체 중심으로 지원하고 있으나, 전담 및 총괄 기구 부재로 새로운 정책 개발 부재 등 실효적 지원이 곤란

3 권고 사항



가. (1단계) 법무부 내 피해자 지원 신청 원스탑(One-Stop) 접수 창구 설치

- 기존에 성범죄 피해자가 검찰청, 범죄피해자지원센터, 법률구조공단 등에 각각 지원 신청하던 방식을 한 개 창구로 통합하여 일원화할 것을 권고함
- 신청 창구 일원화와 함께 SNS를 활용한 상담, 온라인 지원 신청이 가능하도록 기술적 개발을 추진할 것을 권고함

※ 현 제도상 검찰·경찰, 법률구조공단, 지자체, 소방·교육 기관 및 단체 등과 1,600건 이상의 MOU를 체결하여 피해자 통합지원 네트워크를 구축한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위주로 신청 창구를 통합하는 방안이 실효성 측면에서 적합

| 전국 범죄피해자지원센터 네트워크 협약체결 현황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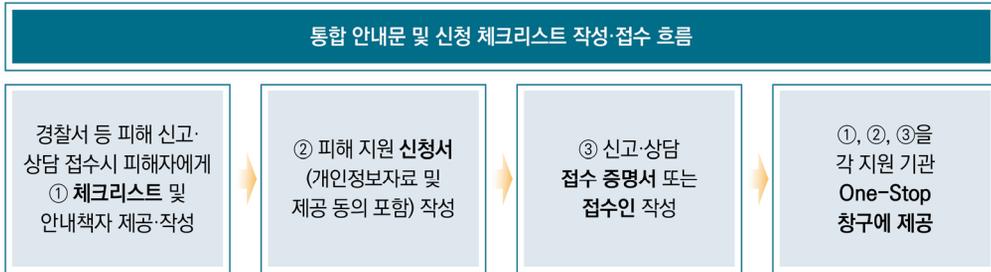
| 협약(MOU) 체결 현황 | | | | | | | | | | | | | | | |
|---------------|-------|-----|-----|-----|----|-----------|----|--------|------|-----|----|----|----|----|-------|
| 구분 | 검찰·경찰 | 지자체 | 의료 | 다문화 | 교육 | 아동·노인·장애인 | 건강 | 상담심리치료 | 보호시설 | 복지 | 법률 | 소방 | 노동 | 기타 | 합계 |
| 건 | 223 | 164 | 212 | 113 | 78 | 77 | 12 | 334 | 74 | 138 | 73 | 48 | 11 | 63 | 1,620 |

나. (2단계) 각 부처간 협의체 구성, 통합 신청서 작성·제공 및 통합 회의 개최

- (협의체 구성) 법무부(검찰), 경찰청, 여가부 간 업무 협의체를 구성하고, (각 부처 내 One-Stop 창구 마련)
- (통합 신청서 및 안내책자 작성·제공) 피해자가 국가의 성범죄 피해자 지원 제도 전반에 관한 정보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각 부처간 지원 내용에 관한 정보를 종합하여 한 개의 통합 신청서(신청서·체크리스트 별첨) 및 통합 안내 책자를 제작해 비치하고(정부 24 등 정부 또는 관련 부처 홈페이지에 통합 신청서 및 통합 안내문 게시하고, 인터넷 신청 서비스 제공),

- (One-Stop 피해자 지원 신청) 피해자가 경찰·해바라기센터 등 1차적 신고·상담기관에서 원스탑(One-Stop)으로 정보(안내 책자)를 제공받고 통합 신청서에 의해 피해자 지원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절차 마련하고,
 - (각 부처 연계) 1차적 신고·상담기관에서 피해자 지원 신청서가 작성된 경우, 각 지원 기관별 One-Stop 창구에 해당 신청서가 인계, 접수되도록 업무 매뉴얼, 지침 등을 통합 정비하고,
 - (통합 피해자 지원 회의)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통합 피해자 지원회의를 통해 각 부처간 협력하여 종합적으로 피해자를 지원하는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함
- ※ 피해자에 대한 정보 제공이 신속하고 풍부할수록 형사사법체계에서 피해자의 권리실현 가능성이 높아지고 피해 회복의 속도도 빨라짐

| 「범죄피해자 지원 신청서 및 신청 체크리스트(예시)」 별첨 |



다. (3단계) 피해자 지원 통합 기구 마련

- 중장기적으로, 피해자 중심의 통합 원스탑(One-Stop) 서비스가 지원될 수 있도록 별도 독립기구를 신설하여, 피해자 지원 역량을 끌어올리고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체계적이고 지속 가능한 지원 체계를 수립할 것을 권고함

※ 호주는 독립기관인 '디지털안전위원회(eSafety Commissioner)'에서 불법 영상물 모니터링, 삭제, 조사, 피해자 지원, 정책 수립 등 사이버범죄 대응 컨트롤타워 역할

디지털안전위원회(eSafety Commissioner)

- 온라인 환경을 규제하기 위해 온라인안전강화법(Enhancing Online Safety Act 2015)을 근거로 호주 연방 정부 차원에서 설립한 독립 규제기관
- 사이버 괴롭힘, 디지털 성범죄 등 온라인 폭력과 관련된 불법 영상물 모니터링, 삭제 지원, 플랫폼 등에 직접 삭제 지시 명령(불이행시 처벌) 등 조사·규제 업무와 피해자 지원 교육·예방 및 정책수립 활동을 포괄적으로 수행하는 온라인 안전 총괄 대응

4 기대 효과

가. 성범죄 피해자 피해 회복의 실효성 제고

- 피해자에게 피해 발생 초기에 국가의 지원 제도에 관한 종합적인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피해자의 범죄피해 구조청구권을 실질적으로 실현하고,
- 지원 서비스에 대한 인지도 및 효율을 높여 피해 회복의 신속성 및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나.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체계적·통합적 지원 시스템 구축

- 접수 창구 일원화로 각 부처별 신속한 정보 공유가 가능하고 상호 기능이 유기적으로 연계되고,
- 성범죄 피해자 지원을 위한 체계적·통합적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다. 성범죄 피해자 지원정책 내실화 및 국민 신뢰 제고

- 성범죄 피해자 지원을 전담하는 기구 또는 협의체를 통해 다각적인 지원 정책 개발, 피해자 지원 활동의 활성화와 더불어 국가의 역할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 첨부)

피해자 지원 신청 체크리스트 (가연)

| 구분 | | 지원 제도 | 구체적 내용 | 신청 (체크) |
|----------------|-----------------|----------------|-------------------------------------------------------|--------------------------|
| 법률적 지원 | 법무부 | • 피해자 국선변호사 | 수사~재판 전 과정에서 전문적 법률 조력 제공 | <input type="checkbox"/> |
| | | • 진술조력인 | 13세 미만이나 장애로 의사소통 어려운 경우 | <input type="checkbox"/> |
| | | • 법률구조 | 무료 법률상담, 민사소송 대리 | <input type="checkbox"/> |
| | 여가부 | • 무료 법률지원 | 형사적·민사적 법률 지원 제공 | <input type="checkbox"/> |
| 경제적 지원 | 법무부 | • 범죄피해구조금 | 피해자 사망·장해·중상해시 구조금 | <input type="checkbox"/> |
| | | • 생계비 | 범죄피해로 생계 곤란시 (월 50만원 이상) | <input type="checkbox"/> |
| | | • 학자금 | 필요시 학자금 (초·중·고·대학 각 30~100만원) | <input type="checkbox"/> |
| | | • 장례비 | 피해자 사망시 장례 비용 (최대 400만원) | <input type="checkbox"/> |
| | | • 취업지원비 | 취업을 위한 교육 비용 | <input type="checkbox"/> |
| | 경찰청 | • 특정범죄신고자등구조금 | 신고자(피해자) 및 친족 등이 보복 우려나 손실시 방범시설 설치비, 보호경호비, 위자료 등 지급 | |
| | 여가부 | • 강력범죄 현장정리비 | 피해현장 정리비 (6평 이하 최대 65만원, 6평 이상 최대 400만원) | <input type="checkbox"/> |
| | | • 돌봄 비용 | 13세 미만 피해자 및 피해자 자녀, 장애인 등 돌봄비용 | <input type="checkbox"/> |
| 의료 지원 | 법무부 | • 치료비 | 5주 이상 치료 필요시 실비 (연 1,500만원, 최대 5천만원) | <input type="checkbox"/> |
| | | • 심리치료 | 범죄 피해 트라우마 무료 심리 치료(스마일센터) | <input type="checkbox"/> |
| | 경찰청 | • 피해자 전담 경찰관 | 동성 전담 경찰관 지정하여 조력 | <input type="checkbox"/> |
| | | • 피해자 심리전문요원 | CARE, 위기개입상담관 등의 심리지원 | <input type="checkbox"/> |
| | 여가부 | • 의료비 | 신체적·정신적 치료, 낙태·출산비, 감염검사 등 | <input type="checkbox"/> |
| | | • 간병비 | 입원중인 피해자 간병 비용 | <input type="checkbox"/> |
| | | • 치료회복 프로그램 | 집단상담, 미술치료, 심신회복캠프 등 프로그램 | <input type="checkbox"/> |
| 보호·주거 지원 | 법무부 | • 안전가옥 | 보복우려 거주지 이전시 주택·오피스텔 거주 | <input type="checkbox"/> |
| | | • 이전비 | 보복우려 거주지 이전시 이사 실비 | <input type="checkbox"/> |
| | | • 임시주거 | 스마일 센터 심리 치료시 임시 거주 | <input type="checkbox"/> |
| | 경찰청 | • 임시숙소 (449개소) | 보복 우려 거주지 이전시 임시숙소 제공 | <input type="checkbox"/> |
| | | • 위치확인장치 지급 | 보복우려시 응급 호출 장치 지급 | <input type="checkbox"/> |
| | | • 신변보호 | 맞춤형 순찰, 주거지 CC-TV, 피해자 번호 112 등록 등 | <input type="checkbox"/> |
| | 법무부 여가부 | • 주거지원 | 한국토지주택공사(LH) 보유 임대주택 임대 연계 | <input type="checkbox"/> |
| 삭제 · 방심위 | 여가부 · 방심위 | • 삭제 지원 | 디지털 성범죄 피해 영상물 삭제 지원(한국여성인권진흥원, 방송통신심의위원회) | <input type="checkbox"/> |

※ 각 항목은 전부 중복 신청 가능합니다. 최종 지원 여부는 심사를 통해 결정됩니다.

기타 피해자 보호 신청 체크리스트 (가안)

| 구분 | 지원 제도 | 구체적 내용 | 신청 (체크) | |
|---------------|-------------------|------------------------------------------------------------------------------------------------------------------------------------------------------------------|------------------------------------------|--------------------------|
| 형사절차 정보 제공 | • 권리 고지 확인 | 범죄피해자의 권리·지원에 관한 정보 제공 | <input type="checkbox"/> | |
| | • 형사사법포털 정보제공 서비스 | 형사사법포털사이트(KICS)를 통해 정보 제공 | <input type="checkbox"/> | |
| | • 소송기록 열람등사 | 재판 계속 중인 사건의 소송기록 열람·등사 | <input type="checkbox"/> | |
| | • 절차 통지 | <input type="checkbox"/> 처분결과통지 <input type="checkbox"/> 공판개시통지 <input type="checkbox"/> 재판결과통지 <input type="checkbox"/> 구금상황통지 <input type="checkbox"/> 출소통지 | <input type="checkbox"/> | |
| 형사절차 참여 | • 범죄피해 의견진술서 | 수사 과정에 피해자 참여, 의견 진술 | <input type="checkbox"/> | |
| | •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참여 | 구속 전 피의자신문 과정에 피해자 참여, 의견 진술 | <input type="checkbox"/> | |
| | • 공판절차 피해자진술 | 재판 과정에 피해자 참여, 의견 진술 | <input type="checkbox"/> | |
| | • 신뢰관계인 동석 | 수사·재판 과정에 피해자 진술시 신뢰관계인 동석 | <input type="checkbox"/> | |
| | • 동성 조사관 조사 | 성폭력 피해 여성 조사시 전담 여성조사관 조사 | <input type="checkbox"/> | |
| 신변보호 지원 | 신원 보호 | • 가명조서 | 조서 등 수사서류에 피해자 인적사항 전부·일부 미기재 | <input type="checkbox"/> |
| | | • 비공개 장소에서 조사 | 성폭력 피해자 조사시 공개되지 않은 장소에서 조사 | <input type="checkbox"/> |
| | | • 진술 비공개 | 피해자 법정 진술 비공개 | <input type="checkbox"/> |
| | | • 비공개 증언 | 피해자 법정 증언시 비공개 신문 진행 | <input type="checkbox"/> |
| | 신변 보호 | • 수사기관 동행 (경찰청·여가부) | 수사기관 출석시 동행 지원 | <input type="checkbox"/> |
| | | • 법정 동행 (법무부) | 법원 출석시 동행 지원 | <input type="checkbox"/> |
| | | • 증인 지원관 (법원) | 피해자 증인 출석시 재판 절차 등 안내, 상담, (필요시) 신변보호 제공 | <input type="checkbox"/> |
| 복지지원 | • 긴급 복지 | 범죄 피해로 생계유지 곤란시 지자체 긴급복지 제도 지원 연계 - 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급여 제공, 복지시설 입소 등 | <input type="checkbox"/> | |
| | • 기초생활수급자 지정 | 범죄 피해로 생계유지 곤란시 지자체 기초생활수급자 지정 연계 | <input type="checkbox"/> | |

디지털 성범죄 등 전문위원회 제2차 권고안

- 불법 영상물 삭제·차단을 위한 '응급조치' 신설 -

권고개요

1. 기본 방침

- 디지털 성범죄에 있어 초기에 신속히 피해 확산을 막을 수 있도록 성폭력처벌법 등에 피해 영상물 삭제·차단과 관련된 응급조치 규정을 신설할 것을 권고합니다.

2. 구체적 내용

- 가. 성폭력처벌법에 수사기관이 디지털 성범죄 피해 신고를 받거나 범죄 현장 등을 발견한 경우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에겐 불법영상물 삭제·차단 요청」, 「범죄행위 제지 및 처벌 경고」 등 즉각적인 피해 영상물 확산 차단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가정폭력처벌법 등에 준하는 응급조치를 도입할 것을 권고합니다.
- 나. 다크웹 등 폐쇄적 플랫폼에 「범죄행위 제지 및 처벌 경고」를 현출할 수 있도록 기술적 조치를 점검, 개발하고, 전문인력 배치 및 세부 매뉴얼 마련 등 응급조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것을 권고합니다.

3. 기대효과

- 가. 디지털 성범죄 특성을 반영한 실질적인 피해자 보호 장치 작동
- 나. 신속한 피해영상물 삭제 절차 개시로 치료적 사법 실현
- 다. 2차 피해 확산 방지로 디지털 성범죄 대응을 위한 사회적 비용 절감

1 권고 배경

- 디지털 성범죄는 기술 발달과 결합하여 피해영상물의 무한 복사, 소지 가능성이 있으며, 피해자는 영상물의 존재로 인해 영구적인 불안 상태에 놓임
- 촬영되는 순간 다양한 경로로 원본과 동일 수준으로 재생산되어 온라인상 유포되는 디지털 성범죄 특성상 피해영상물의 초기 차단·삭제가 매우 중요
- 피해 발생 초기에 신속하게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해 수사기관이 신고·발견 즉시 영상물 차단·삭제 관련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입법적 보완이 필요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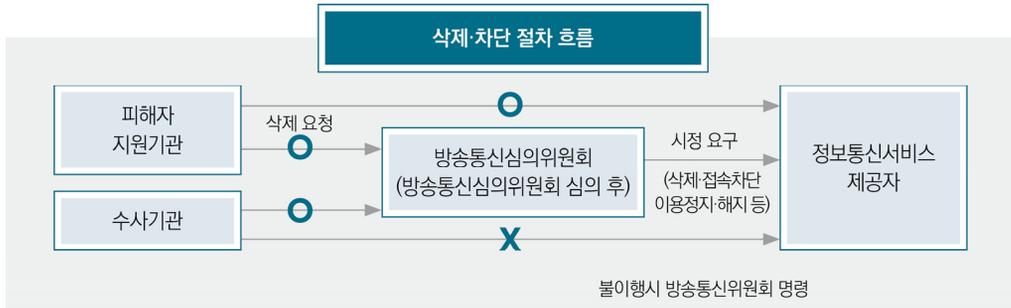
2 현행 디지털 성범죄 피해영상물 삭제·차단 체계의 문제점

가. 수사기관의 피해 영상물 삭제·차단 권한 부재

- 현행 법제상 피해 영상물의 삭제·차단 주체는 해당 영상물이 유통된 플랫폼을 운영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임

※ 현행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방송통신위원회법 등에 의하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피해자의 요청 또는 임의로 삭제·임시차단 조치를 하거나,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시정요구 등에 따라 삭제·차단 조치를 함

-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자율규제조치를 요구하거나, 심의를 거쳐 시정요구를 하고, 불이행시 방송통신위원회가 삭제 등 명령



* 법률상 방심위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삭제 등 요청이 있는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심의를 거친 후 서비스제공자 등에게 시정요구를 하고, 불응시 방통위가 시정명령

** 방통위의 '전자심의지원시스템' 도입(2019. 9.)으로 디지털 성범죄 정보에 대한 '24시간 상시 심의지원'체계를 갖추었으나, 시정요구 불응을 전제로 시정명령 가능하고 명령에 앞서 의견 제출 기회를 부여해야 하는 등 실제 삭제 등 조치 완료시까지 상당 시일 소요

- 수사기관은 신고 등으로 비교적 사건 초기에 피해사실을 인지하나, 불법영상물에 대한 삭제·차단 요청 권한이 법률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불법영상물을 직접 삭제·차단하거나, 이를 직접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등에게 요청하지 않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삭제·차단 요청

→ 신속성 저해, 피해자 부지 상태 또는 수사 등 사법절차 진행 과정에서 불법 영상물이 계속해서 유포 위험에 노출됨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디지털 성범죄 정보 심의 현황 |

| 구분(년) | 심의(건) | 시정요구(건) | | | |
|-------|--------|---------|-------|-----|--------|
| | | 접속차단 | 이용 해지 | 삭제 | 계 |
| 2018 | 17,486 | 17,248 | - | 123 | 17,371 |
| 2019 | 25,992 | 25,896 | - | 4 | 25,900 |
| 2020 | 35,603 | 35,526 | 2 | 22 | 35,550 |

나. 기초 자료 확보의 어려움

- 디지털 성범죄는 영상물 유통 플랫폼의 음성화, 빠른 유포 속도로 인해 피해자가 피해 규모 뿐 아니라 피해 발생 사실 조차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피해자가 신고를 하거나 플랫폼 사업자 또는 지원기관을 통해 삭제 등 요청하더라도 기초 자료 제공을 위해 불법영상물을 직접 찾아야 함

⇒ 피해 실태 확인 과정에서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 및 사설업체에 삭제·모니터링 의뢰 비용을 감당해야 하는 경제적 부담* 가중

* 디지털 장의 비용은 삭제 난이도에 따라 적게는 월 50만 원에서 300만 원 이상으로 알려짐

다. 디지털 성범죄 관련 신속한 응급조치 부재

▶ 현행 법률상 응급조치

- 가정폭력범죄, 아동학대범죄, 스토킹범죄 발생 시 사법경찰관리 또는 전담 공무원의 현장 초기 대응 조치로 응급조치 규정

※ 주 내용은 범죄행위 제지, 행위자와 피해자 분리, 피해자 보호시설에 인도, 가해자 처벌 경고 등 현장에서 신속히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임

| 현행 법률상 응급조치 |

| | 가정폭력처벌법 (제5조) | 아동학대처벌법 (제12조) | 스토킹처벌법 (제3조) | 청소년성보호법 (제36조) |
|-------------------|---------------------------------------------------------------------------------------------------------------------------------------------------------------------------------------------------------|-------------------------------------------------------------------------------------------------------------------|----------------------------------------------------------------------------------------------------------------------------------------------------------------------------------------|--------------------------------------------------------|
| 조치 상황 · 주체 | 진행 중인 범죄에 대해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우 즉시 |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 또는 현장을 발견한 경우, 현장 이외에서 학대 피해가 확인되고 재학대의 위험이 급박한 경우 즉시 | 진행 중인 범죄에 대해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우 즉시 | 범죄자와 피해자가 가족구성원 관계이고, 진행 중인 범죄에 대해 신고를 받고 현장 출동한 경우 즉시 |
| | 사법경찰관리 | 사법경찰관리· 아동학대전담공무원 | 사법경찰관리 | 사법경찰관리 |
| 내용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위 제지 • 행위자·피해자 분리 • 현행법 체포 등 수사 • 상담소·보호시설 인도 • 의료기관 위탁 • 재발시 임시조치 신청 통보 • 피해자보호명령·신변안전조치 고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위 제지 • 행위자 격리 • 보호시설 인도 • 의료기관 인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위 제지 • 향후 행위 중단통보 • 처벌경고 • 행위자·피해자분리 • 수사 • 긴급응급조치· 잠정조치요청 안내 • 상담소·보호시설 인도 | 가정폭력사건 응급조치와 동일 |

▶ 디지털 성범죄 관련 응급조치 제도 부재

- 디지털 성범죄도 행위 제지 등을 통한 현장 초기 대응이 필요하나 현행 법률상 제도 부재
- 오프라인 범죄에 대한 행위의 제지, 가해자 처벌 경고 등의 응급조치를 온라인 범죄에도 구현하여, 위 가, 나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고 범죄 발생 초기에 최대한 신속하게 범행 확산을 막고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디지털 성범죄에 피해 영상물 삭제·차단과 관련된 응급조치를 도입할 필요성 시급

3 권고 사항

가.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응급조치 조항 신설 추진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등에 수사기관이 신고를 받거나 범죄 현장 또는 의심 사실을 발견한 경우, 조기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즉각적인 피해영상물 확산 차단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응급조치 도입을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할 것을 권고
- 구체적 내용

① 주체

- 디지털 성범죄 또는 의심 사실을 발견하거나 피해 신고를 받은 사법경찰관리

② 응급조치 종류

① 영상물 채증 및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직접 영상물에 대한 삭제·차단 요청

: 신고 또는 인지 등을 통해 디지털 성범죄 **피해 영상물임이 확인**되거나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범죄 수사 전문가인 사법경찰관리가 해당 영상물에 관한 자료 확보 등 채증** 및 별도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요청하여 심의를 거치지 않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직접 영상물에 대한 삭제·차단 요청**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설립목적은 '방송 내용의 공공성 및 공정성을 보장하고 정보통신에서의 건전한 문화를 창달하며 정보통신의 올바른 이용환경 조성'으로(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 범죄행위 수사 및 행위 제지와 직접적 관련성이 없는바, **범죄 수사 전문가인 사법경찰관리가 디지털 성범죄 피해물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전문성·객관성·공정성 등에서 방심위보다 부족하다고 보기 어려움**

*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위와 같은 설립 목적에도 불구하고 성범죄 피해물에 대한 삭제 등 시정요구 여부를 심사를 해온 것은 종래에는 성범죄 피해물을 음란물과 동일시하여 음란물 여부를 심사하던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성범죄 피해물을 심사해 왔기 때문인바, **성범죄 피해물을 음란물과 구분할 필요가 있음**

* 또한, 피해자는 직접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삭제 요청 가능하고, 삭제요청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지체없이 삭제·임시조치 등 필요조치를 하여야 하는바(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피해자의 신고를 받은 사법경찰관 역시 삭제 요청 가능성이 합리적임

② 범죄행위의 제지 및 처벌 경고

: 오프라인 범죄에 대한 '범죄 행위의 제지'*를 온라인 범죄에 구현하는 방법으로 피해 영상물이 유포 중이거나

유료 의심되는 플랫폼 채널에 **경고 문구**(행위의 불법성·처벌 고지, 중단 요청 등 포함) **현출**하여 **영상물 유통 채널 비활성화** 유도

* 가정폭력처벌법·아동학대처벌법·스토킹처벌법·아동청소년성보호법 등에서 응급조치 방법으로 공통적으로 '범죄 행위의 제지'를 규정하고 있음

③ 피해자에게 보호 및 삭제지원 절차 안내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7조의 3)은 촬영물 등에 관한 국가의 삭제지원 의무 규정

④ 보호시설 등으로 피해자 인도 (피해자 동의시)

*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일반 성범죄 피해자에 준하여 보호시설 등으로 피해자 인도

③ 법률적 검토

- 응급조치는 가해자에게 불이익처분을 내리기 위한 형사처분이 아니라 피해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피해자 보호조치**이고(법적 성격), 실제적 내용에 있어서도 서비스제공자나 이용자의 기본권 제한 등 불이익을 내포하지 않으므로 타 법률상 응급조치와 동일하게 **별도 사법통제 불요**

※ 다른 응급조치와 같이 조치 후 지체 없이 응급조치결과보고서 작성(사건처리시)하거나 인계서 작성하여 관계기관에 인계(사건 미처리시)

④ 구체적 법률 내용(안)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다음과 같이 근거 규정 신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제14조의 4 (응급조치) 제13조 내지 제14조의 3에 기재된 범죄에 대하여 신고를 받거나 위반 또는 위반 의심 사실을 발견한 사법경찰관리는 즉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피해 영상물 **채증** 및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또는 게시판 관리·운영자 등에게 해당 영상물 또는 게시판에 대한 **삭제·차단 요청**
2. 범죄행위의 **제지 및 처벌 경고**
3. 피해 신고·삭제 요청 등 관련 **절차 안내**
4.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로의 **피해자 인도**(단, 피해자가 동의한 경우에 한한다)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도 동일 취지 조항 신설 필요

- 사법경찰관리의 삭제·차단 요청 **불응시 벌칙 조항** 신설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73조) 및 전기통신사업법(제95조의 2, 동 시행령 제30조의 5)에 사법경찰관리의 삭제·차단 요청에 불응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에 대한 벌칙 조항 추가 신설

나. 응급조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시스템 구축

- 다크웹 등 각종 폐쇄적 플랫폼에 처벌 경고를 효율적으로 현출할 수 있도록 기술적 조치를 점검·개발하고,
- 온라인상 응급조치 가능 대상 플랫폼 확대를 위한 전문인력 배치, 추가 범행을 실질적으로 억제할 수 있는 세부 매뉴얼 마련 등 응급조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것을 권고함

4 기대 효과

- 피해자 지원의 실효성 강화
 - 불법영상물 삭제·차단 없이는 피해 회복이 어려운 디지털 성범죄 피해 특성을 반영한 실질적인 피해자 보호 장치가 작동될 것으로 기대함
- 신속한 삭제 절차 개시로 치료적 사법 실현
 - 피해자 신청시 지원하던 소극적 지원 방식에서 탈피하여 초동 수사단계에서 능동적이고 신속한 삭제 지원 절차가 개시되고,
 - 피해자에게 심리적 안정 및 절차적 만족감을 제공하여 범죄 피해로부터 일상으로의 회복을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 2차 피해 확산 방지로 사회적 비용 절감
 - 형사사법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불법영상물 유포로 인한 2차 범행을 억지하여 추가 피해 확산을 방지하고,
 - 유포된 영상물 추적·삭제에 투입되는 시간과 인력 등 디지털 성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소요되는 사회적 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기대함

디지털 성범죄 등 전문위원회 제3차 권고안

- 디지털 성범죄 등 홍보물 가이드라인 제정 및 전담기구 마련 -

권고개요

- 1. 기본 방침**
 - 법무부는 인권 보호의 주무 부처로서,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대내외적으로 공표되는 미디어 콘텐츠와 관련하여 인권과 성인지 감수성을 바탕으로 명확한 기준에 의해 참고할 수 있도록 표준화된 가이드 라인을 마련하여 실천할 것을 권고합니다.
- 2. 구체적 내용**
 - 가. 간행물 등에 성범죄 관련 내용을 포함시키는 경우 정확한 개념과 올바른 용어를 사용·표기할 것을 권고합니다.
 - 나. 간행물 등을 통해 대내외적으로 정보를 제공·공표함에 있어, 성범죄에 대해 올바른 인식을 유도하고 피해자들의 2차 피해를 방지할 수 있도록 기획·제작·발행의 전 과정에서 준수하여야 할 구체적인 기준을 명시한 준칙을 마련할 것을 권고합니다.
 - 다. 간행물 등의 기획·제작·배포의 각 단계마다 핵심적인 내용이 간과되지 않도록 체크리스트를 작성하여 관리하는 등 보도·홍보 준칙 실천 방안을 강구할 것을 권고합니다.
 - 라. 법무부 간행물 등과 관련하여 체계적인 사전점검을 수행하고, 대내외적 이슈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전담 창구를 마련할 것을 권고합니다.
- 3. 기대효과**
 - 가. 언론·방송 및 공공 분야 간행물 등의 잘못된 용어 사용, 부적절한 콘텐츠로 인한 성범죄 피해자의 2차 피해 유발·확산 예방
 - 나. 법무부 간행물 및 이를 인용·참조하는 언론·방송의 성폭력·성희롱 관련 보도 콘텐츠의 양질화
 - 다. 언론·방송·공공 분야 인권·성인지 감수성 제고 및 성폭력·성희롱의 본질에 대한 사회 전반의 공감 및 이해도 증가

1 권고 배경

- 뉴스 등 미디어에서 디지털 성범죄 등 성범죄를 희화화 하거나 피해자의 고통을 자극적인 소재로 사용하여 2차 피해를 유발하고 성범죄의 근본적 원인을 보지 못하게 하는 등 문제가 지적되어 있음
- 언론사 및 언론기구 등에 다수 성범죄 보도 준칙이 존재하나*, 강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음

성범죄 관련 언론 보도 준칙

- ▶ 인권보도준칙³
- ▶ 성폭력 범죄보도 세부 권고기준⁴
- ▶ 신문윤리실천요강⁵
- ▶ 인터넷신문 기사심의 규정⁶
- ▶ 성폭력·성희롱 사건보도 공감기준 및 실천요강⁷
- ▶ 인터넷신문 윤리강령⁸ 등

※ 외주 콘텐츠의 경우 보도 준칙이 적용되기는 더 어려운 것이 현실임

※ 최근 삽입곡 '동 났았네'로 유명세를 탄 EBS 애니메이션 '포텐독'이 폭력성 있는 장면들(불법촬영, 유포 협박 등)을 포함하고 있다는 지적이 국정감사에서 제기됨

- 국가기관은 사회 및 언론에 미치는 영향력이 매우 큰바⁹, 인권보호의 주무부처인 법무부가 내부 홍보 자료 및 외부 보도 자료 등 작성·배포시 성범죄 관련 보도 기준을 마련하고, 사전 점검을 수행하는 전용 창구를 마련해 피해자 인권을 보다 두텁게 보호할 필요가 있음

2 성범죄 보도 현황 및 사례

가. 언론과 방송의 보도 현황

- 언론중재위원회의 최근 5년간 시정권고 현황에 의하면, 성폭력 피해자 신원공개가 93건, 성폭력 피해자 피해 상태 및 범행 수법 등 묘사가 383건으로 전체 시정권고의 39.1%를 차지함

[최근 5년간 침해 유형별 시정권고 현황]

| 연도 | 침해 유형 계 (%) | 개인적 법익 침해 | | | | | | | | | | 사회적 법익 침해 | | | | | | | | | | | | | |
|------|----------------|------------|---------|------------|---------------|------------|---------------|--------------------|--------------|----------------|--------------------|-----------|----------|----------------|------------|------------|----------|------------|------------|------------|--------|------|----------|-------|--|
| | | 사생활 침해 등 | 명예 훼손 | 피고인 신원 공개 | 피해자 목격자 신원 공개 | 피해자 고소발 보도 | 성폭력 피해자 신원 공개 | 성폭력 피해자 피해 상태 등 묘사 | 정신질 환자 신원 공개 | 복합 이탈 주민 신원 공개 | 성폭력 가해자 범행 수법 등 묘사 | 아동청소년의 보호 | 보도 윤리 | 음란 포악 진위 범죄 묘사 | 범죄수 법상세 묘사 | 성 관련 보도 | 자살 관련 보도 | 미약 및 약물 보도 | 폭력 묘사 | 충격, 혐오감 | 기사형 광고 | 차별금지 | 여론 조사 보도 | 기사 제목 | |
| 2016 | 912 (100) | 134 (14.7) | | 43 (4.7) | 4 (0.4) | 262 (28.7) | 20 (2.2) | | 4 (0.4) | 75 (8.2) | | | 4 (0.4) | 22 (2.4) | 5 (0.5) | 124 (13.6) | 28 (3.1) | 14 (1.5) | 173 (19.0) | | | | | | |
| 2017 | 1,034 (100) | 217 (21) | 4 (0.4) | 280 (27.1) | 70 (6.8) | | 27 (2.6) | 5 (0.5) | 2 (0.2) | | | 3 (0.3) | 57 (5.5) | 2 (0.2) | 1 (0.1) | 84 (8.1) | 13 (1.3) | 1 (0.1) | 70 (6.8) | 198 (19.1) | | | | | |

3 한국기자협회, 국가인권위원회 공동 제정(2011년)

4 한국기자협회, 국가인권위원회 공동 제정(2012년)

5 한국신문협회,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한국기자협회 공동 제정(1957년), 2016년 개정

6 인터넷기자협회 제정(2014년), 2019년 전면개정

7 한국기자협회, 여성가족부 공동 발표(2018년)

8 인터넷신문위원회 자율심의 기준

9 최근, 일명 '레깅스 촬영 사건(버스에서 레깅스를 입은 여성의 신체를 동의 없이 촬영)' 판결문에서 카메라등이용촬영죄를 처벌하는 성폭력 조항의 입법취지와 관련하여 '물래카메라'라는 용어를 사용한 헌법재판소의 결정(2016헌바153)이 인용되었고, 주요 언론은 위 판결 내용에 대한 기사에 대부분 '물카'라는 표현을 사용함

| 연도 | 계 (%) | 개인적 법익 침해 | | | | | | | | | | 사회적 법익 침해 | | | | | | | | | | | | |
|------|-------------|------------|----------|-----------|-----------|----------|---------------|-----------------|-------------|----------------|-----------------|-----------|----------|----------------|-----------|------------|------------|------------|-----------|------------|------------|------------|----------|-------|
| | | 사생활 침해 등 | 명예 훼손 | 피고인 신원 공개 | 피해자 신원 공개 | 고소고발 보도 | 성폭력 피해자 신원 공개 | 성폭력 피해자 상태 등 묘사 | 정신질환자 신원 공개 | 북한 이탈 주민 신원 공개 | 성폭력 가해자 수법 등 묘사 | 아동청소년의 보호 | 보도 윤리 | 음란 포악 잔인 범죄 묘사 | 범죄수법상세 묘사 | 성 관련 보도 | 자살 관련 보도 | 마약 및 약물 보도 | 폭력 묘사 | 충격, 혐오감 | 기사형 광고 | 차별금지 | 어른 조사 보도 | 기사 제목 |
| 2018 | 1,275 (100) | 230 (18) | | 108 (8.5) | 1 (0.1) | | 54 (4.2) | | 4 (0.3) | 2 (0.2) | 285 (22.4) | | 7 (0.5) | 21 (1.6) | 31 (2.4) | 13 (1.0) | 287 (22.5) | | 23 (1.8) | 73 (5.7) | | 136 (10.7) | | |
| 2019 | 1,288 (100) | 458 (35.6) | 25 (1.9) | 101 (7.8) | | 19 (1.5) | | | 12 (0.9) | 47 (3.6) | 1 (0.1) | 1 (0.1) | 21 (1.6) | 68 (5.3) | 27 (2.1) | 77 (6.0) | 42 (3.3) | 12 (0.9) | 105 (8.2) | 132 (10.2) | 9 (0.7) | 123 (9.5) | 8 (0.6) | |
| 2020 | 935 (100) | 188 (20.1) | | 28 (3.0) | | | | | | 24 (2.6) | | 17 (1.8) | | 2 (0.2) | 43 (4.6) | 112 (12.0) | 30 (3.2) | 37 (4.0) | 66 (7.1) | 157 (16.8) | 110 (11.8) | 102 (10.9) | 19 (2.0) | |

출처 : 언론중재위원회

나. 사례

① 범죄의 심각성을 축소하거나 희화화하고, 피해자를 주목시키는 기사

- 성폭력처벌법에 규정된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범죄를 유희적 의미를 내포한 '몰카'로 약칭하거나, 성범죄나 가해자를 '몹쓸 짓', '늑대', '짐승'으로 표현하는 등 범죄의 위법성을 희석하거나 범죄 의식을 약화시키는 용어 사용
- 또한, 성착취물 피해 영상을 음란물적 의미를 띠는 '리벤지 포르노'라고 지칭하거나, 피해자 앞에 '00녀', '여00'와 같은 수식어를 붙이는 등 가해자 관점의 용어 또는 피해자를 주목시키는 자극적 표현 사용

※ 2018~2021 몰카 등 용어를 제목으로 사용한 언론 기사 통계(건수)(출처 : S2W)

| 연도별 | 용어 | 몰카 | 몹쓸 짓 | 리벤지포르노 |
|-------|----|-------|------|--------|
| 2018 | | 682 | 14 | 31 |
| 2019 | | 4,857 | 47 | 45 |
| 2020 | | 1,886 | 57 | 20 |
| 2021 | | 1,177 | 70 | 18 |
| Total | | 8,602 | 188 | 114 |

② 자극적이고, 피해자다움을 강조하는 삽화

- 성범죄 관련 보도에 첨부된 삽화들에 피해자다움이 강조되거나 당연한 가해자의 모습이 그려진 이미지 등장

ex) 남성들에게 둘러싸여 피해자를 손가락질 하는 이미지, 남성을 괴물 등으로 표현하고 여성은 웅크리고 있는 이미지, 가해자는 당당하게 서 있으나 피해자는 울고 있는 이미지 등

- 시각적인 묘사는 대중의 인식에 큰 영향력을 미치는바, 위와 같은 이미지는 보는 사람에게 디지털 성범죄의 원인을 피해자의 탓 또는 잘못으로 치부하는 왜곡된 인식을 심어줄 수 있음

※ 한국기자협회와 국가인권위원회가 발표한 「성폭력 범죄보도 세부 권고 기준」은 “언론은 사진과 영상 보도에서도 피해자 등이 2차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삽화, 그래픽, 지도 제공이나 재연 등에 신중”해야 한다고 권고

③ 피해자의 신상이 특정 가능한 내용을 기사에 명시

- 피해자의 신상을 특정할 수 있는 키워드를 포함하거나, 피해자의 주거지 주변이 노출된 영상이 송출된 사례가 있는바, 이는 그 자체로 2차 가해이며, 보도를 계기로 음지에 있던 피해 영상물이 외부로 나오기도 하므로 피해자의 신상은 조금이라도 특정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 필요

④ 가해자에게 지나친 서사(敍事)를 부여하는 보도

- 언론이 소수의 특정 가해자에게 이목을 집중시켜 지나치게 악마화하거나 가해자에 대한 동정심을 불러일으키는 경우 나머지 가해자들은 ‘잊혀짐 효과’를 누리고, 궁극적으로 사건의 본질인 성범죄의 근본적인 원인을 진단하고 대응방안을 모색하는데 걸림돌이 될 수 있음

※ 디지털 성착취 사건 보도와 관련하여 한국여성민우회는 “언론은 가해자의 일방적 주장을 받아 적는 스피커로 기능하지 않는다”, “언론은 성폭력을 일상과 분리된 범죄로만 부각하지 않으며 사회문화적, 구조적 측면을 주목한다(예: 가해자를 쉽게 정신이상이나 인면수심, 짐승으로 취급하고 비일상적인 인물로 묘사하지 않아야 함)”는 등의 가이드라인을 권고한 바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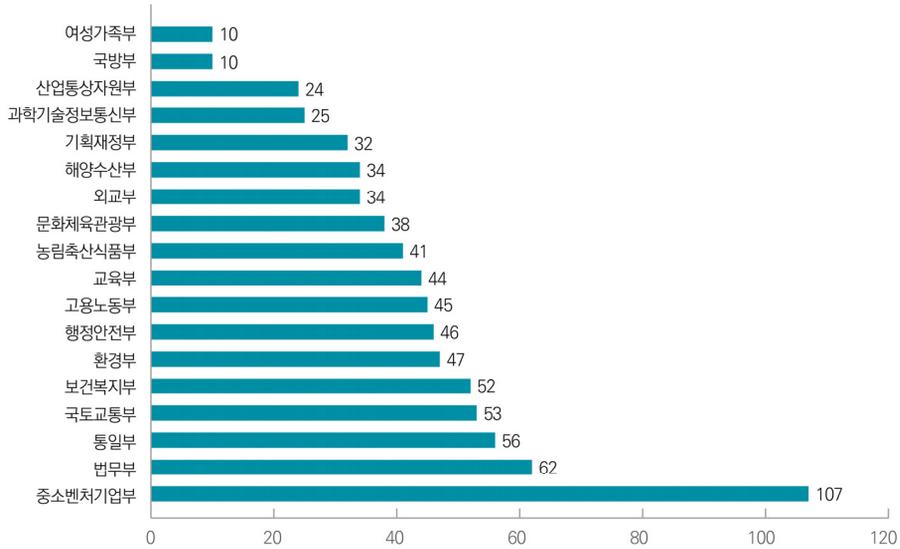
3 성범죄 관련 법무부 보도·홍보 기준의 필요성

- 정부 부처 및 기관, 공공단체 등 공적 영역에서 소통행정의 일환으로 정보제공 채널을 다양화시키면서, 보도·홍보·교육 등 목적으로 대내외적으로 발간·송출하는 간행물이나 영상(이하 ‘간행물 등’이라 함)이 증가하고 있음
- 이러한 공적 영역의 간행물 등은 포털을 통해 제공되어 실질적인 언론의 기능을 수행하고, 그에 대한 일반 대중의 신뢰도가 높으며, 언론·방송을 비롯하여 사회 각계 영역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음
- 그러나 이에 대해서는, 현행법상 ‘성평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계획이나 사업’과 관련이 있어 성별영향평가* 대상이 되는 경우에 한해 성평등 항목 위주로 제한적인 점검이 이루어지고 있음

* 법령이나 사업 등 정부 주요 정책 수립, 시행과정에서 해당 사업 등이 성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정책 개선에 반영하여 성차별적 요소를 제거하도록 하는 제도(양성평등기본법 제15조)

- 통상의 간행물 등은, 기획·제작·배포 과정에서 해당 콘텐츠에 대해 인권 또는 성인지 감수성을 바탕으로 자체 점검을 전담하는 전용 창구와 같은 체계적인 시스템이 부재하고 표준으로 삼을 수 있는 정형화된 가이드 라인도 별도로 존재하지 않으며, 그로 인해 의도치 않게 부적절한 콘텐츠가 포함된 간행물 등이 배포될 우려가 있음

※ 국가인권위원회의 '성별 관련 공공 홍보물의 성별영향평가 적용 및 차별표현 실태 모니터링' 보고서(2021. 7.)에 의하면, 18개 정부 부처의 게시물 등 홍보물에 대한 성차별표현 모니터링 결과, 전체 760건 가운데 법무부는 62건(8.25%)의 성차별 표현이 발견되어 두 번째로 높은 성차별적 표현 사용 비율을 보임



출처 : 국가인권위원회

- 법무부는 인권 보호의 주무부처로서, 내부적인 홍보·교육 등의 간행물 뿐만 아니라 직접 또는 언론·방송을 통해 외부로 배포되는 미디어 자료와 관련하여 기획부터 배포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에서 명확한 기준으로 참고하여 실천할 수 있는 표준화된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인권 보호 주무부처인 법무부의 이러한 노력은 타 부처 및 언론사 등에 관련 지침 등을 제정하는데 표준이 되고, 성폭력범죄 관련 인권의식을 고취시켜 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하는 모범적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됨

- 아울러, 현재 일부 방송 및 언론사에 젠더 전담기구*가 설치되어 콘텐츠 중 성폭력, 성평등 관련 적정성 여부를 내부적으로 점검하고 있는바, 법무부 내에도 이와 유사한 역할을 하는 젠더 전담 창구를 마련하여 간행물 등에 대한 자율 점검을 체계화하는 것이 바람직함

* ex) 한겨레 '젠더데스크', 서울신문 '젠더 연구소', KBS '성평등센터' 등

4 권고 사항

가. 정확한 개념 사용 및 표기

- 공공 분야 간행물 등에 사용된 표현은 언론을 비롯한 각계 분야에서 그대로 인용되거나 반영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성범죄 관련 내용의 문구나 표현에 있어 정확한 개념 사용 및 표기, 올바른 용어를 사용할 것을 권고함

【붙임 1】「자주 등장하는 용어의 올바른 표현 및 사용례」

나. 성폭력 관련 보도·홍보 준칙 마련

- 간행물 등을 통해 대내외적으로 정보를 제공·공표함에 있어, 디지털 성범죄 등 성범죄 전반에 대해 올바른 인식을 유도하고 피해자들의 2차 피해를 방지할 수 있도록 기획·제작·발행의 전 과정에서 준수하여야 할 구체적인 기준을 명시한 준칙을 마련할 것을 권고함

【붙임 2】「인권·성인지 감수성 제고를 위한 간행물 등 제작·배포 가이드라인(안)」

다. 보도·홍보 준칙 실천 방안 강구

- 간행물 등의 기획·제작·배포의 각 단계마다 항목별로 핵심적인 내용이 간과되지 않도록, ① 체크리스트를 작성하여 관리하고, ② 최종 간행물 등에 준칙 준수 여부를 표시하며, ③ 자료 배포시 언론사 등에 준칙 및 체크리스트를 함께 제공하여 이에 위반되지 않도록 촉구*하고, ④ 업무담당자를 상대로 지속적·정기적인 교육을 실시하여 준칙 내용을 숙지시키는 등 보도·홍보 준칙 실천 방안을 강구할 것을 권고함

【붙임 3】「법무부 간행물 제작·배포 전 확인 체크리스트(안)」

【붙임 4】「디지털 성범죄 보도·홍보 전 확인 체크리스트(안)」

* 언론사 등에 배포하는 체크리스트에는 자살 관련 기사에 병기되는 상담 안내 문구와 같이 '동일/유사 유형의 성범죄 사건 또는 피해 발생 시 신고 부처와 피해자 지원 정보(ex: 디지털성폭력 피해자 지원센터 등)'를 병기하도록 권고하여 신고 및 지원 절차 안내로 범죄 신고를 촉구하고 피해자를 두텁게 보호할 필요 있음

라. 법무부 내 전담 기구 설치

- 법무부 간행물 등과 관련하여 인권, 성인지 감수성을 바탕으로 명확한 기준에 의해 체계적인 사전 점검을 수행하고, 관련된 대내외적 이슈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전담 기구(ex: 젠더데스크)를 설치할 것을 권고함

5 기대 효과

- 언론·방송 및 공공 분야 간행물 등과 관련하여 부적절한 콘텐츠로 인한 성범죄 2차 가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 법무부 간행물 및 이를 인용·참조하는 언론·방송의 성폭력·성희롱 관련 보도 콘텐츠의 양질화를 기대함
- 인권 보호 주무 부처인 법무부가 미디어 콘텐츠가 지향해야 할 인권과 성인지 감수성의 가치를 가능할 수 있는 구체적 기준을 제시하여 각 정부 부처 및 사회 전반의 성폭력·성희롱의 본질에 대한 공감과 이해도가 제고하는 모범적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함

[붙임 1]

자주 등장하는 용어의 올바른 표현 및 사용례

| 잘못된 표현 및 사용례 | | 올바른 표현 및 사용례 |
|-------------------|-------------------------------------------------------------------|--------------------------------------------------------------------------------------------------------------------------------------------------------------------------------------------------------------------------------------------------------------------------------------------------------------------------------------------------------------------------------------------------------------------------------------------------------------------------------------------------------------------------------|
| 물가, 몰래카메라 | 이벤트나 장난 등 유화적 의미를 내포하여 범죄의식 약화 초래 | <div style="text-align: center; margin-bottom: 10px;">불법촬영</div> <div style="text-align: center; margin-bottom: 10px;">★ 피해자가 존재하는 범죄 피해영상물에 사용하지 않음</div> <div style="text-align: center; margin-bottom: 10px;">불법촬영물(촬영부동의 영상인 경우) 불법유포물(유포부동의 영상인 경우)</div> <div style="text-align: center; margin-bottom: 10px;">불법합성물</div> <div style="text-align: center; margin-bottom: 10px;">성인물 또는 음란물 ★ 피해자가 존재하는 범죄 피해영상물에 사용하지 않음</div> <div style="text-align: center;">× (사용자제)</div> |
| 음란물 | 범죄 피해영상물을 '음란물'로 지칭하는 것으로 잘못 사용됨 | |
| 리벤지포르노 | '리벤지'는 복수, 보복이라는 뜻으로 범죄의 책임을 피해자에게 전가하는 가해자 관점의 표현 | |
| 딥페이크 | '딥페이크'는 AI 기반의 이미지 합성 기술을 의미하나, 허위영상물 제작·유포 등 범행을 통칭하는 것으로 잘못 사용됨 | |
| 아동 | 성인물 또는 음란물을 뜻하는 은어 또는 비속어 | |
| 악마, 짐승, 늑대 | 가해자를 비정상적인 존재로 타자화 하여 성범죄를 비정상적인 특정인에 의해 예외적으로 발생하는 사건으로 인식하게 함 | |
| ○○녀, 여○○ | 피해자의 신상에 집중하게 만들어 사건의 본질을 흐리고 피해자에 대한 부정적 편견 형성 | |
| 몹쓸짓, 일탈 | 가해행위의 심각성을 축소시켜 범죄 경시 풍조 조장 | |
| 꽃뱀 | 여성 혐오적인 표현 | |
| 노예, 육변기 | 피해자에 대한 가해자들의 혐오 표현으로, 이를 그대로 인용하는 것은 피해자에 대한 그릇된 관념을 재생산 우려 있음 | |

[붙임 2]

인권·성인지 감수성 제고를 위한 간행물 등 제작·배포 가이드라인(안)

제1조(목적) 본 권고는 성폭력·성희롱 관련 정보 제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당한 인권침해를 방지하고, 법무부에서 보도·홍보·교육 등의 목적으로 대내외적으로 공표하는 간행물, 인터넷·사회관계망 게재물, 영상, 음향, 방송 기타 자료(이하 '간행물 등'이라 한다)의 제작·배포시 인권 및 성인지 감수성을 제고하기 위해 고려해야 할 기준을 정하여 실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방침) 성폭력·성희롱은 헌법상 보장된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 및 인격권을 침해하는 중대한 법익침해 행위임을 유념하고, 간행물 등으로 인해 성폭력·성희롱 및 피해자에 대한 왜곡된 인식과 통념이 생산 또는 확산되지 않도록 유의한다.

제3조(정확성) ① 간행물 등은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하여 정확하고 공정하게 제작·배포한다.
② 간행물 등 내용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위하여 각종 정보의 정확성을 검증하고 신뢰도를 확인한다.
③ 간행물 등에서 다른 매체의 보도를 인용하거나 자료를 사용할 때는 그 출처를 명시한다.

제4조(인권보호) 간행물 등은 부당하게 인권 등을 침해하지 않도록 하며, 지역·인종·장애·출신국가·성별 및 성 정체성·나이·종교·직업 등으로 구별되는 특정 집단이나 그 구성원들을 부정적이거나 열등한 대상으로 인식되거나 이들에게 불이익을 주는 내용이 포함되지 않도록 유의한다.

제5조(성평등) 간행물 등에서 성별과 성 역할에 대한 부정적 편견을 강화하거나 성별을 불필요하게 강조하는 표현, 성 역할을 이분법적으로 고정하는 성차별적 표현을 사용하지 않는다.

제6조(성폭력 피해자 보호) ① 간행물 등에서 성폭력 사건 관련 정보를 언급할 때 피해자와 그 가족의 인권을 존중하여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②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공개하여서는 안 되며, 피해자의 신상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가 공개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특히 삽화, 그래픽, 영상 등에 신중을 기한다.
③ 성폭력 사건의 범행수법을 지나치게 자세히 묘사하는 것을 지양한다.
④ 가해자 중심적 성 관념에 입각한 용어나 피해자를 성적 대상화하는 자극적인 표현을 사용하지 않는다.
⑤ 언론에 공개되거나 수사기관이 제공하는 정보라도 그 공개의 적절성 여부를 별도로 판단하여 보도 등 자료에 포함 여부를 신중히 결정한다.

제7조(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보호) ① 성착취물은 '음란물'과 구별되는 개념이므로 혼용하여 사용하지 않는다.
② 범죄 유형이나 태양 등을 기술하는 경우 법률상 규정된 용어 위주로 정확한 개념을 사용한다.
② 디지털 성범죄 피해영상물이나 피해영상물이 유포된 인터넷 사이트 등 온라인 플랫폼이 특정될 만한 정보를 기재하지 않는다.
디지털 성범죄의 피해자는 피해 영상물의 유포·확산에 관한 영구적 불안을 느낀다는 사실을 유념한다.

제8조(범죄사건 보도 등) ① 간행물 등에서 피고인 또는 피의자에 대한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을 때까지 단정적인 표현을 하지 않는다.
② 피고인·피의자 및 피해자, 고소·고발인의 성명 등 신상 정보는 원칙적으로 밝히지 않는다.
③ 피고인·피의자·범죄혐의자에 관한 내용을 다룰 때에는 범죄행위가 과장되거나 정당화되지 않도록 유의한다.

제9조(사전점검) ① 간행물 등의 배포에 앞서 발행 소관부서별 자체 감수 후 젠더전문창구를 경유하여 인권, 성인지 감수성 감수를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추가로 외부 전문가로부터 감수를 실시한다.
② 간행물 등에 감수 이행 여부 및 결과를 표기한다.

[붙임 3]

법무부 간행물 제작·배포 전 확인 체크리스트

| | 항 목 | 체 크 |
|----|-----------------------------------------------------------------------------------------------------------------------------------------------------------------------------------------------------------------|-----|
| 1 | 간행물 등은 객관적인 사실 에 근거하여 정확하게 작성되었는가? | |
| 2 | 다른 매체의 보도내용을 인용하거나 자료를 사용할 때 출처를 정확히 명시 하였는가? | |
| 3 | ‘몰카(몰래카메라)’, ‘야동’, ‘음란물’, ‘리벤지 포르노’, ‘몸살 짓’, ‘악마’, ‘00녀’, ‘꽃뱀’ 등 부적절한 단어를 사용하지 않았 는가? ex) 몰카(몰래카메라)→불법촬영, 음란물→★ 범죄 피해영상물에 사용하지 않음, 야동→ 성인물 (★범죄 피해영상물에 사용하지 않음), 리벤지 포르노→불법촬영물/불법유포물, 몸살 짓→성범죄 등으로 표기 | |
| 4 | 지역·인종·장애·출신국가·성별 및 성 정체성·나이·종교·직업 등으로 구별되는 특정집단이나 그 구성원들을 부정적이거나 열등한 대상으로 표현 하지 않았는가? | |
| 5 | 성 역할에 대한 부정적 편견을 강화하거나 성별을 불필요하게 강조하는 표현, 성 역할을 이분법적으로 고정하는 성차별적 표현 을 사용하지 않았는가? | |
| 6 | 피해자의 신원이 노출 될만한 내용, 혹은 정보(나이, 지역, 직업 등)를 포함하지 않았는가? | |
| 7 | 외모지상주의, 외모차별, 희화화 혹은 신체를 부각해 성적 대상화 하는 내용이 있지 않는가? | |
| 8 | 부부, 연인, 친구 등 가까운 사이의 성희롱, 성폭력, 성적괴롭힘 등을 개인 간의 문제나 사소한 문제 라고 가정하고 있지 않는가? | |
| 9 | 성범죄 발생 원인은 피해자에게 전가 하는 내용을 담고 있지 않은가? | |
| 10 | 간행물에서 성폭력 사건을 다룰 때 피해자와 그 가족의 인권에 2차 피해가 발생할 여지 가 있지 않은가? | |
| 11 |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공개하여서는 아니되며 피해자의 신상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 가 공개되지 않도록 조치 하였는가? | |
| 12 | 언론에 공개되거나 수사기관이 제공한 정보라도 공개의 적절성 여부를 별도로 판단 하여 자료에 포함 여부를 결정하였는가? | |
| 13 | 재판 중인 피고인 또는 피의자에 대해 확정판결이 있기 전에 단정적인 표현 을 하거나, 범죄행위를 과장 또는 정당화 시킬 여지가 있는 표현을 사용하였는가? | |

[붙임 4]

디지털 성범죄 보도·홍보 전 확인 체크리스트

| 항 목 | | 체크 |
|----------------------------------|-------------------------------------------------------------------------------------------------------------------------------------------------------------------------------|----|
| '디지털 성범죄'를 다룰 때의 주의사항 | | |
| 1 | 기사가 가지는 사회적 의미를 고려할 때 보도할 가치 가 있는가? | |
| 2 | 디지털 성범죄 발견 시 신고 부처와 피해자 지원 정보 가 명시되어 있는가? | |
| 3 | 선정적으로 제목 을 작성하지 않았는가? | |
| 올바른 단어를 통한 정확한 사실 전달 | | |
| 4 | '몰카', '음란물', '리벤지 포르노', '몸쓸짓' 등 부적절한 단어 를 사용하지 않았는가? ex) 몰카(몰래카메라)→불법촬영, 음란물→★ 범죄 피해영상물에 사용하지 않음, 야동→성인물 (★범죄 피해영상물에 사용하지 않음), 리벤지 포르노→불법촬영물/불법유포물, 몸쓸 짓→성범죄 등으로 표기 | |
| 피해자 보호 | | |
| 5 | 피해자의 신원 이 노출될만한 내용, 혹은 정보(나이, 지역, 직업 등)를 포함하고 있지 않은가? | |
| 6 | 피해자의 진술을 인용하는 경우 사전에 피해자의 동의 를 구하거나 확인 절차를 거쳤는가? | |
| 피해자 비난 및 2차가해 방지 | | |
| 7 | 피해자에게 범죄의 원인 이 있다는 내용이나 맥락상 그와 같이 인식할 만한 요소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가? | |
| 8 | 피해자다움 (무기력함, 나약함, 무결함 등)을 강조하는 내용을 담진 않았는가? | |
| 9 | 간행물 등에 사용된 사진, 이미지 등 시각자료 가 2차 피해를 유발하지 않는가? | |
| 피해자/성착취물 노출 경계 및 추가 범죄 방지 | | |
| 10 | 피해영상물이 유포되는 사이트, 플랫폼 에 대한 정보가 노출되어 있지 않은가? | |
| 가해자 이상화 및 모방범죄 방지 | | |
| 11 | 가해자에게 감정이입 할 만한 정보를 제공하여 동정 여론을 불러일으키지 않았는가? | |
| 12 | 가해자의 말을 그대로 따서 제목을 붙이는 등 가해자에게 '변론' 기회 를 제공하지 않았는가? | |
| 13 | 범행과정 및 수법 을 지나치게 상세하게 묘사하지 않았는가? | |

디지털 성범죄 등 전문위원회 제4차 권고안

- 합리적 양형을 위한 양형 조건 개정 및 성범죄 피해자 진술권 강화 -

권고개요

1. 기본 방침

- 디지털 성범죄 등 성범죄에 관해 객관적·합리적인 양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형법 및 형사소송법 등에 양형 조건 및 조사·심리에 피해자 보호 및 피해의 실질적 회복을 위한 요소를 적극 반영하고, 피해자 진술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할 것을 권고합니다.

2. 구체적 내용

- 가.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에 피해자의 연령, 피해의 결과 및 정도, 피해 회복 여부,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 등 회복적 사법 및 피해자 관점의 요소가 명시되도록 개정할 것을 권고합니다.
- 나. 성범죄 사건 양형조사시 피해자 관련 사항의 비중을 높이고, 양형인자 기초자료에 관한 객관적·균형적인 검증을 실시하여 양형기준이 적정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판결 전 조사'에 관한 성폭력처벌법 제17조 등을 개정하고, 디지털 성범죄 사건의 추가적 피해확산 방지를 위해 조사 실무를 정비할 것을 권고합니다.
- 다. 또한, 헌법상 보장된 피해자의 진술권의 실질적인 보장을 위해 형사소송법에 증인신문에 의하지 않는 피해자 진술권 보장에 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할 것을 권고합니다.

3. 기대효과

- 가. 가해자 양형 요인 중심으로 규정되어 있던 기존 형법상 양형 조건에 피해자 관점 및 회복적 사법(피해자 보호 및 피해 회복을 위한 요소)을 반영하여 충실한 양형 조사·심리 진행 및 양형기준의 적절한 적용을 실현하여 양형의 객관성·형평성 담보 및 사법 신뢰도 향상
- 나. 형사소송법상 양형심리에서 헌법상 보장된 피해자 진술권의 실질적인 구현을 통한 피해자 보호, 회복적 사법 실현
- 다. 피해 확산 방지 조치의 구체화·실질화를 통한 디지털 성범죄의 추가 피해 방지
- 라. 국민의 법 감정에 부합하는 엄정한 처벌로 디지털 성범죄 등 성범죄에 대한 범죄 억지력 제고

1 권고 배경

- 최근 보도된 백화점 성폭행 사건 집행유예 판결* 등 성범죄 전반에 대한 처벌이 솜방망이라는 비판이 지속되어 왔고, 특히 '진지한 반성'이나 '합의'가 주된 감경 사유로 작용하여 형량이 낮아지는 부분에 대해 편의적·가해자 중심적이라는 등의 문제 제기가 계속되어 왔음

* '21. 12. 29. 「대낮 쇼핑하던 여학생 성폭행... '반성문 75번' 쓴 20대 집행유예 받았다」 서울신문 등 다수 언론 보도 등

- 특히 디지털 성범죄의 경우, 최근 발생 건수가 증가하고 피해 내용이 심각해지는 추세 및 피해의 지속성·확장성 등에도 불구하고 벌금형 위주의 온정적 처벌이 계속됨에 따라 낮은 형량이 '숨은 범죄화'에 기여한다는 지적까지 제기됨

※ 2019년 서울특별시 『서울 여성의 디지털 성범죄 피해 실태 및 인식 조사』결과, 피해자 530명 중 353명(66%)이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았고, 그 이유로 처벌의 불확실성을 꼽음
 디지털 성범죄 예방을 위해 필요한 정책에 대해서는 '가해자 처벌 강화를 위한 법제 정비(78.5%)', '디지털 성범죄 및 온라인 이용 시민교육(57.3%)', '피해 감시 모니터링 및 단속(50.2%)', '유통 플랫폼 운영자 규제(35.2%)', '피해자 지원을 위한 상시기구 확충(34.2%)'순으로 응답

-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소위 'N번방 사건'이후,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의결(2020. 12. 7.), 2021. 1. 1.자로 새로운 양형기준이 시행되고 있으나, 여전히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되지 않았다는 비난이 있음
- 이에 디지털 성범죄를 중심으로 양형 현황과 문제점을 검토하고, 실질적인 개선이 이루어지기 위한 근본적인 방안을 모색, 권고하고자 함

2 디지털 성범죄 발생 실태와 양형 현황

가. 디지털 성범죄 발생 실태¹⁾

(단위 : 건(%))

| 연도 | 강간 | 강제 추행 | 강간등 | 강간 등 살인/치사 | 강간 등 상해/치상 | 특수 강도 강간 등 | 카메라등 이용촬영 | 성적목적장소 침입 | 공중 밀집 장소 추행 | 통신 매체 이용 음란 | 허위 영상물 편집·반포등 | 촬영물 등이용 협박·강요등 | 계 |
|------|--------------|---------------|--------------|------------|-------------|------------|--------------|-----------|-------------|-------------|---------------|----------------|--------|
| 2011 | 4,425 (20.0) | 8,535 (38.5) | 3,206 (14.5) | 8 (0.0) | 1,483 (6.7) | 285 (1.3) | 1,565 (7.1) | - | 1,750 (7.9) | 911 (4.1) | - | - | 20,168 |
| 2012 | 4,349 (18.6) | 10,949 (46.9) | 1,937 (8.2) | 13 (0.1) | 1,208 (5.2) | 209 (0.9) | 2,462 (10.5) | - | 1,332 (5.7) | 917 (4.0) | - | - | 22,376 |
| 2013 | 5,359 (18.4) | 13,236(45.5) | 1,186 (4.0) | 22 (0.1) | 1,094 (3.8) | 150 (0.5) | 4,903 (16.9) | 214 (0.7) | 1,517 (5.2) | 1,416 (4.9) | - | - | 29,097 |
| 2014 | 5,092 (16.7) | 12,849 (42.2) | 624 (2.0) | 8 (0.0) | 872 (2.9) | 123 (0.4) | 6,735 (24.1) | 470 (1.5) | 1,838 (6.1) | 1,254 (4.1) | - | - | 29,863 |
| 2015 | 5,274 (17.0) | 13,266 (42.7) | 283 (0.9) | 6 (0.0) | 849 (2.7) | 72 (0.2) | 7,730 (24.9) | 543 (1.7) | 1,901 (6.1) | 1,139 (3.7) | - | - | 31,063 |
| 2016 | 5,412 (18.4) | 14,339 (48.8) | 192 (0.7) | 8 (0.0) | 736 (2.5) | 56 (0.2) | 5,249 (17.9) | 477 (1.6) | 1,773 (6.0) | 1,115 (3.8) | - | - | 29,357 |
| 2017 | 5,555 (16.9) | 15,981 (48.7) | 144 (0.4) | 7 (0.0) | 716 (2.2) | 34 (0.1) | 6,615 (20.2) | 422 (1.3) | 2,085 (6.4) | 1,265 (3.9) | - | - | 32,824 |
| 2018 | 5,826 (18.1) | 15,672 (48.8) | 182 (0.6) | 8 (0.0) | 655 (2.0) | 43 (0.1) | 6,085 (19.0) | 646 (2.0) | 1,609 (5.0) | 1,378 (4.3) | - | - | 32,104 |
| 2019 | 5,845 (18.2) | 15,766 (49.2) | 157 (0.5) | 2 (0.0) | 653 (2.0) | 42 (0.1) | 5,893 (18.4) | 685 (2.1) | 1,532 (4.8) | 1,454 (4.5) | - | - | 32,029 |
| 2020 | 5,825 (19.3) | 14,486 (48.1) | 102 (0.3) | 9 (0.0) | 574 (1.9) | 274 (0.9) | 5,005 (16.6) | 697 (2.3) | 906 (3.0) | 2,070 (6.9) | 32 (0.1) | 125 (0.4) | 30,086 |

1 대검찰청 2021 「범죄분석」

나. 디지털 성범죄 처벌강화를 위한 법률 개정 (2020년, 2021년)

▶ 처벌규정 신설

| 법률 | 개정(신설)조항 | 주요 내용 |
|----------|-----------------------|-------------------------------------------------------------------|
| 형법 | 제305조② | 의제강간 기준 연령을 기존 13세 미만에서 16세 미만으로 상향 |
| 성폭력 처벌법 | 제14조④, 제14조의2, 제14조의3 | 처벌 규정 신설(성인 대상 불법 성적 촬영물 등 소지 등, 허위영상물 등의 반포 등,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
| | 제14조② | '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 포함 |
| 청소년 성보호법 | 제14조⑤, 제15조의2 | 상습범 가중 처벌, 예비·음모 처벌규정 신설 |
| | 제11조⑦, 제7조의2 | |
| | 제2조 6의2호 | 성매매 피해 아동·청소년을 '대상자'로 표현한 규정 삭제, 음란물을 '성착취 영상물'로 변경 |
| | 제13조③ | 16세 미만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가중처벌 |
| 정보통신망법 | 제15조의2 |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착취 목적 대화 (일명 '온라인그루밍') 처벌 신설 |
| | 제44조의9 | 서비스제공자 등에게 성착취물 유통방지 조치의무 부과 신설 |
| 전기통신사업법 | 제22조의5①, ② | |

▶ 법정형 상향

| 변경 법조 | 변경(상향) 전 | 변경(상향) 후 |
|---------------------------------------------|--------------------------|--------------------------|
|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제2항 촬영물 반포 등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3항 영리목적 촬영물 반포등 | 7년 이하의 징역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
|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제2항 영리목적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판매 등 | 10년 이하의 징역 | 5년 이상의 징역 |
|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제3항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배포 등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3년 이상의 징역 (벌금형 삭제) |
|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제5항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1년 이상의 징역 (벌금형 삭제) |
| 청소년성보호법 제13조 제2항 아동청소년 유인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다. 대법원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 (2021. 1. 1. 시행)

▶ 형량 범위

①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대유형1)

| 유형 | 구분 | 감경 | 기본 | 가중 |
|----|--------------|-----------|-----------|-----------|
| 1 | 제작 등 | 2년6월 - 6년 | 5년 - 9년 | 7년 - 13년 |
| 2 | 영리 등 목적 판매 등 | 2년6월 - 5년 | 4년 - 8년 | 6년 - 12년 |
| 3 | 배포 등 | 1년6월 - 4년 | 2년6월 - 6년 | 4년 - 8년 |
| 4 | 아동·청소년 알선 | 1년6월 - 4년 | 2년6월 - 6년 | 4년 - 8년 |
| 5 | 구입 등 | 6월 - 1년4월 | 10월 - 2년 | 1년6월 - 3년 |

※ 상습범에 해당하는 경우,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1유형)

② 카메라등이용촬영 (대유형2)

| 유형 | 구분 | 감경 | 기본 | 가중 |
|----|------------|-----------|-----------|-----------|
| 1 | 촬영 | 4년 - 10월 | 8월 - 2년 | 1년 - 3년 |
| 2 | 반포 등 | 4월 - 1년4월 | 1년 - 2년6월 | 1년6월 - 4년 |
| 3 | 영리 목적 반포 등 | 1년6월 - 4년 | 2년6월 - 6년 | 4년 - 8년 |
| 4 | 소지 등 | -8월 | 6월 - 1년 | 10월 - 2년 |

※ 상습범에 해당하는 경우,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4유형 제외)

③ 허위영상물 등의 반포 등 (대유형3)

| 유형 | 구분 | 감경 | 기본 | 가중 |
|----|------------|-----------|-----------|------------|
| 1 | 편집 등 | - 8월 | 6월 - 1년6월 | 10월 - 2년6월 |
| 2 | 반포 등 | - 8월 | 6월 - 1년6월 | 10월 - 2년6월 |
| 3 | 영리 목적 반포 등 | 4월 - 1년4월 | 1년 - 2년6월 | 1년6월 - 4년 |

※ 상습범에 해당하는 경우,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

④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대유형4)

| 유형 | 구분 | 감경 | 기본 | 가중 |
|----|----|-----------|---------|---------|
| 1 | 협박 | 9월 - 1년6월 | 1년 - 3년 | 2년 - 4년 |
| 2 | 강요 | 1년6월 - 4년 | 3년 - 6년 | 5년 - 8년 |

※ 상습범에 해당하는 경우,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

⑤ 통신매체이용음란 (대유형5)

| 유형 | 구분 | 감경 | 기본 | 가중 |
|----|----------|------|----------|-----------|
| 1 | 통신매체이용음란 | - 6월 | 4월 - 10월 | 8월 - 1년6월 |

▶ 주요 특별양형인자(가중/감경요소)^{2,3}

① 특별가중요소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고도의 지능적 방법 동원, 지금까지 알려지지 아니한 신종 전문수법을 창출하여 범행)
-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 전파성 높은 수단을 이용하여 성착취물을 유포한 경우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등

② 특별감경요소

- 피해확산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제작, 수입된 성착취물을 유포되기 전 즉시 삭제하거나 폐기, 유포된 성착취물을 상당한 비용·노력을 들여 자발적으로 회수한 경우)
- 촬영물, 편집물, 합성물 등의 내용을 쉽게 파악할 수 없거나 이에 준하는 경우
-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도달한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정도가 경미한 경우)
- 처벌불원 등

라. 디지털 성범죄 양형 현황

▶ 법원 선고 형종(形種) 비율

- 디지털 성범죄 사건이 최근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형 선고 비율은 저조한 반면, 벌금형은 (감소 추세이긴 하나) 평균적으로 전체 선고의 절반 이상(53.64%)을 차지하는 등 전반적으로 미온적임

2 감경사유로 자주 거론되는 피고인의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등은 일반양형인자이고, 처벌불원은 특별양형인자이다. 양형위원회는 '특별양형인자'는 당해 범죄유형의 형량에 큰 영향력을 갖는 인자로서 권고 영역을 결정하는 데 사용되는 인자이고, 일반양형인자는 그 영향력이 특별양형인자에 미치지 못하는 인자로서 권고 영역을 결정하는 데 사용되지 못하고 결정된 권고 형량범위 내에서 선고형을 정하는데 고려되는 인자이다.

위와 같이 특별양형인자만이 권고 영역을 결정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되므로, 어떤 인자를 특별양형인자로 설정할 것인지는 극히 중요한 문제이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양형실무에 대한 통계분석을 토대로 입법자의 의사, 국민의 양형에 대한 인식, 양형정책적 고려 등을 심도 있게 검토하여 특별양형인자를 추출하였다. 다만, 범죄군별로 개별적인 양형기준을 설정하는 이상 특별양형인자와 일반양형인자의 구별이 모든 범죄군에서 절대적일 수는 없으므로 어떤 범죄군에서 특별양형인자로 취급된 양형요소가 다른 범죄군에서는 일반양형인자로 취급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또한, 특별양형인자와 일반양형인자의 구별이 반드시 명확한 것은 아닌데, 그로 인한 문제점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권고 영역간 형량범위의 중첩을 통해 보완하도록 하였다'고 설명하고 있다 (https://sc.scourt.go.kr/sc/krsc/criterion/explan/stand/standard_03.jsp).

3 각 범죄유형별로 상이하나 주요한 공통요소들을 정리

| 디지털 성범죄 사건 1심 형종('16. ~ '20.) |

| 연도 | 건/% | 실형 | 집행유예 | 벌금 | 선고유예 | 무죄 | 기타 | 소계 |
|------|-----|-------|-------|-------|------|------|-------|-------|
| 2016 | 건 | 208 | 606 | 1,252 | 89 | 22 | 28 | 2,205 |
| | % | 9.4 | 27.48 | 56.78 | 4.03 | 1.0 | 1.26 | 100 |
| 2017 | 건 | 193 | 648 | 1,738 | 77 | 22 | 420 | 3,098 |
| | % | 6.22 | 20.91 | 56.10 | 2.48 | 0.71 | 13.55 | 100 |
| 2018 | 건 | 228 | 737 | 1,890 | 55 | 29 | 388 | 3,327 |
| | % | 6.8 | 22.15 | 56.80 | 1.65 | 0.87 | 11.66 | 100 |
| 2019 | 건 | 368 | 919 | 1,704 | 28 | 30 | 257 | 3,306 |
| | % | 11.13 | 27.80 | 51.54 | 0.84 | 0.90 | 7.77 | 100 |
| 2020 | 건 | 486 | 1,103 | 1,698 | 25 | 22 | 280 | 3,614 |
| | % | 13.44 | 30.52 | 46.98 | 0.68 | 0.60 | 7.74 | 100 |
| 평균 | % | 9.37 | 25.77 | 53.64 | 1.93 | 0.82 | 8.43 | 100 |
| | | | 81.34 | | | | | |

출처 : 법무부 「검찰사건 처분 통계 분석」

- 벌금형 위주의 선고 경향이 여전하며(카메라등이용촬영죄 : 5년 평균 60.8%, 통신매체이용음란죄 : 5년 평균 74.9%), 실형 선고 비율은 조금씩 증가하는 추세이나 여전히 낮고(카메라등이용촬영죄 : 2018년 8%, 통신매체이용음란죄 : 2018년 6.3%) 실형 선고의 81.7%가 10월 이하 징역에 집중되어 있음⁴

① 카메라 등 이용촬영죄

| 구분 | 징역 | | 벌금 | 선고유예 | 합계 | |
|-------|-------|------|------|------|-----|-------|
| | 실형 | 집행유예 | | | | |
| 2014년 | 인원 | 28 | 169 | 738 | 74 | 1,009 |
| | 비율(%) | 2.8 | 16.7 | 73.1 | 7.3 | 100 |
| 2015년 | 인원 | 49 | 248 | 721 | 98 | 1,116 |
| | 비율(%) | 4.4 | 22.2 | 64.6 | 8.8 | 100 |
| 2016년 | 인원 | 64 | 345 | 773 | 64 | 1,246 |
| | 비율(%) | 5.1 | 27.7 | 62.0 | 5.1 | 100 |
| 2017년 | 인원 | 69 | 411 | 693 | 44 | 1,217 |
| | 비율(%) | 5.7 | 33.8 | 56.9 | 3.6 | 100 |
| 2018년 | 인원 | 89 | 457 | 539 | 26 | 1,111 |
| | 비율(%) | 8.0 | 41.1 | 48.5 | 2.3 | 100 |
| 합계 | 인원 | 299 | 1630 | 3464 | 306 | 5,699 |
| | 비율(%) | 5.2 | 28.6 | 60.8 | 5.4 | 100 |
| | | | 94.8 | | | |

4 양형위원회, 2020. 9. 15. 양형기준안 설명자료 20면

② 통신매체이용음란죄

| 구분 | 징역 | | 벌금 | 선고유예 | 합계 | |
|-------|-------|------|------|------|-----|-------|
| | 실형 | 집행유예 | | | | |
| 2014년 | 인원 | 15 | 38 | 225 | 16 | 294 |
| | 비율(%) | 5.1 | 12.9 | 76.5 | 5.4 | 100 |
| 2015년 | 인원 | 8 | 48 | 216 | 19 | 291 |
| | 비율(%) | 2.7 | 16.5 | 74.2 | 6.5 | 100 |
| 2016년 | 인원 | 15 | 34 | 188 | 12 | 249 |
| | 비율(%) | 6.0 | 13.7 | 75.5 | 4.8 | 100 |
| 2017년 | 인원 | 11 | 34 | 144 | 5 | 194 |
| | 비율(%) | 5.7 | 17.5 | 74.2 | 2.6 | 100 |
| 2018년 | 인원 | 13 | 37 | 150 | 5 | 205 |
| | 비율(%) | 6.3 | 18.0 | 73.2 | 2.4 | 100 |
| 합계 | 인원 | 62 | 191 | 923 | 57 | 1,233 |
| | 비율(%) | 5.0 | 15.5 | 74.9 | 4.6 | 100 |
| | | | 95 | | | |

▶ 형량 분포

-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배포 등은 5년간 실형 선고 비율 26%에 불과하고⁵, 그 중 대부분이 법정형 하한인 징역 5년을 작량 감경한 2년 6월에 집중되어 있음⁶
 -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는 2021. 1. 1.부터 2021. 8. 31.까지 선고된 제1심 유죄 판결 주문을 조사한 결과, 선고유예 4건, 벌금 159건, 징역형 집행유예 239건, 실형 0건임. 개정법 시행 시기를 고려하여 2021. 5. 1.부터 2021. 8. 31.까지 선고된 사건들의 1심 유죄 판결 주문을 조사한 결과, 선고유예 8건, 징역형 집행유예 69건, 징역형 실형 0건임⁷
- ⇒ 법 개정 취지에 부합하는 형이 선고되고 있다고 보기 어려움
- 관련 판결문 세부 검토 결과 ‘피해자의 처벌 불원’, ‘진지한 반성’, ‘처벌전력 없음’, ‘사회적 유대가 양호한 점’ 등이 대부분 양형에 반영

5 법원 현대사회와 성범죄연구회, 2021 공개토론회자료 187면, 대법원이 이탄희 국회의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6.부터 2021. 6.까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 제작·배포 등)5) 혐의로 1심에서 유죄 판결(선고유예 포함)을 받은 가해자는 총 1,675명이었다. 연도별로 보면 2016년 111명에서 2017년 104명으로 소폭 하락했으나, 2018년 118명, 2019년 182명, 2020년 440명, 2021년 6월까지 720명으로 전반적인 증가세를 보였다. 그러나 같은 기간 아동 성착취물 관련 범죄의 피고인이 징역 등 자유형(실형) 처벌을 받은 경우는 평균 26.0%에 그쳤다.

6 양형위원회, 2021 양형기준안 설명자료 13면

7 법원 현대사회와성범죄연구회, 2021 공개토론회자료 196면

판결례

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고합1**(카메라이용등촬영등) : 피해자(15세)를 협박하여 채팅 어플을 이용해 18일간 50여회 성매매를 시키고 나체를 불법 촬영하여 단체 채팅방 등에 공유함
→ 선고형 : 장기 3년 6월 및 단기 3년,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2.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9고합**(아동·청소년성착취물제작·배포등) : 피해자(15세)로 하여금 성행위 장면을 촬영하게 하여 라이브방송 및 단체 채팅방에 동영상상을 실시간 전송
→ 선고형 : 징역 3년(취업제한명령 면제)
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1고단1**(카메라이용촬영등) : 248회에 걸쳐 다수의 피해자의 하체를 몰래 사진 촬영
→ 선고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4. 부산지법 서부지원 2019고합2**(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피해자(16세)에게 돈과 담배를 주고 성관계하고, 이후 성관계를 거부하는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
→ 선고형 : 징역 2년6월, 집행유예 3년
5.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20고합**(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을 통해 피해자(14세)에게 돈을 주고 2회 성관계
→ 선고형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 양형기준 적용 초기 단계로 아직 변경된 법정형에 따른 양형 실수가 형성되지 않은 점, 법률 제·개정으로 전반적인 법정형이 상승된 점 등에 비추어 앞으로의 선고형 추이를 지켜볼 필요는 있으나, 지난 5년간 성범죄 양형 추이에 비춰 보면 디지털 성범죄의 경우에도 벌금형 및 집행유예형 위주의 선고형 흐름은 큰 변화를 기대하기 어려워 보임

※ 참고

『성범죄 사건 양형 통계』

출처 : 사법연감, 2021. 1. 12. 전산자료

① 형법 강간과 추행의 죄(제1심)

| 구분 연도별 | 처리건수(인원수) | | | | | | | | | | | | | | | |
|-----------|-----------|-----------------|-------------|--------------|---------------|--------------|--------------|--------------|-------------|-----------------|-----------------|-------------|--------------|--------------|-------------|--------------|
| | 합계 | 자유형 | | | | | | | | 집행유예 | 재산형 | 집행유예(재산형) | 선고유예 | 무죄 | 공소기각판결 | 이송결정 등 |
| | | 계 | 부정기 | 1년 미만 | 3년 미만 | 5년 미만 | 10년 미만 | 10년 이상 | 무기징역 | | | | | | | |
| 2016 | 5,566 | 1,269 (22.8) | 4 (0.07) | 440 (7.9) | 500 (9.0) | 251 (4.5) | 67 (1.2) | 7 (0.13) | - | 2,077 (37.3) | 1,663 (29.9) | - | 111 (2.0) | 192 (3.4) | 8 (0.14) | 246 (4.4) |
| 2017 | 5,818 | 1,198 (20.5) | 3 (0.05) | 366 (6.3) | 510 (8.8) | 241 (4.1) | 67 (1.2) | 10 (0.17) | 1 (0.02) | 2,238 (38.5) | 1,769 (30.4) | - | 142 (2.4) | 203 (3.5) | 3 (0.05) | 265 (4.6) |
| 2018 | 6,210 | 1,365 (21.9) | 5 (0.08) | 377 (6.1) | 592 (9.5) | 300 (4.8) | 80 (1.3) | 9 (0.14) | 2 (0.03) | 2,185 (35.2) | 1,930 (31.1) | 14 (0.2) | 103 (1.7) | 228 (3.7) | 1 (0.02) | 384 (6.2) |
| 2019 | 6,048 | 1,535 (25.3) | 2 (0.03) | 434 (7.2) | 670 (11.1) | 320 (5.3) | 103 (1.7) | 6 (0.10) | - | 2,165 (35.8) | 1,640 (27.1) | 22 (0.4) | 58 (1.0) | 255 (4.2) | 2 (0.03) | 371 (6.1) |
| 2020 | 6,134 | 1,541 (25.1) | 2 (0.03) | 410 (6.7) | 720 (11.7) | 300 (4.9) | 96 (1.6) | 10 (0.16) | 3 (0.05) | 2,242 (36.6) | 1,676 (27.3) | 28 (0.5) | 68 (1.1) | 224 (3.7) | 2 (0.03) | 353 (5.8) |
| | | 18.4% | | | 3년 이상 6.71% | | | | | 65.5% | | | | | | |

②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제1심)

| 구분 연도별 | 처리건수(인원수) | | | | | | | | | | | | | | | |
|-----------|-----------|-----------------|-------------|--------------|---------------|--------------|--------------|-------------|-------------|-----------------|-----------------|-------------------|--------------|--------------|----------------|---------------|
| | 합계 | 자유형 | | | | | | | | 집행 유예 | 재산형 | 집행 유예 (재산형) | 선고 유예 | 무죄 | 공소 기각 판결 | 이송 결정 등 |
| | | 계 | 부정기 | 1년 미만 | 3년 미만 | 5년 미만 | 10년 미만 | 10년 이상 | 무기징 역 | | | | | | | |
| 2016 | 5,218 | 1,252 (24.0) | 55 (1.1) | 256 (4.9) | 262 (5.0) | 257 (4.9) | 339 (6.5) | 78 (1.5) | 5 (0.1) | 1,581 (30.3) | 1,861 (35.7) | - | 144 (2.8) | 108 (2.1) | 1 (0.02) | 271 (5.2) |
| 2017 | 5,093 | 1,259 (24.7) | 59 (1.2) | 242 (4.8) | 313 (6.1) | 263 (5.2) | 311 (6.1) | 69 (1.4) | 2 (0.04) | 1,661 (32.6) | 1,636 (32.1) | - | 134 (2.6) | 128 (2.5) | 1 (0.02) | 274 (5.4) |
| 2018 | 5,022 | 1,356 (27.0) | 50 (1.0) | 267 (5.3) | 331 (6.6) | 297 (5.9) | 336 (6.7) | 73 (1.5) | 2 (0.04) | 1,636 (32.6) | 1,567 (31.2) | 7 (0.1) | 84 (1.7) | 139 (2.8) | 1 (0.02) | 232 (4.6) |
| 2019 | 4,995 | 1,419 (28.4) | 51 (1.0) | 281 (5.6) | 412 (8.2) | 295 (5.9) | 293 (5.9) | 86 (1.7) | 1 (0.02) | 1,735 (34.7) | 1,348 (27.0) | 14 (0.3) | 45 (0.9) | 150 (3.0) | - | 284 (5.7) |
| 2020 | 4,807 | 1,437 (29.9) | 42 (0.9) | 272 (5.7) | 496 (10.3) | 294 (6.1) | 284 (5.9) | 48 (1.0) | 1 (0.02) | 1,778 (37.0) | 1,123 (23.4) | 17 (0.4) | 42 (0.9) | 94 (2.0) | 1 (0.02) | 317 (6.6) |
| | | | | 16% | | 3년 이상 13.02% | | | | 61.7% | | | | | | |

③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제1심)

| 구분 연도별 | 처리건수(인원수) | | | | | | | | | | | | | | | | |
|-----------|-----------|-------------|---------------|--------------|-------------|---------------|---------------|--------------|-------------|----------|---------------|---------------|-------------------|--------------|-------------|----------------|---------------|
| | 합계 | 생명형 | 자유형 | | | | | | | | 집행 유예 | 재산형 | 집행 유예 (재산형) | 선고 유 예 | 무죄 | 공소 기각 판결 | 이송 결정 등 |
| | | | 계 | 부정기 | 1년 미만 | 3년 미만 | 5년 미만 | 10년 미만 | 10년 이상 | 무기징 역 | | | | | | | |
| 2016 | 1,823 | - | 597 (32.7) | 66 (3.6) | 20 (1.1) | 212 (11.6) | 170 (9.3) | 120 (6.6) | 9 (0.5) | - | 771 (42.3) | 196 (10.8) | - | 11 (0.6) | 31 (1.7) | 2 (0.11) | 215 (11.8) |
| 2017 | 1,933 | - | 634 (32.8) | 71 (3.7) | 25 (1.3) | 215 (11.1) | 203 (10.5) | 105 (5.4) | 15 (0.8) | - | 795 (41.1) | 273 (14.1) | - | 18 (0.9) | 38 (2.0) | 2 (0.10) | 173 (8.9) |
| 2018 | 1,742 | 1 (0.06) | 574 (33.0) | 66 (3.8) | 29 (1.7) | 193 (11.1) | 141 (8.1) | 135 (7.7) | 10 (0.6) | - | 663 (38.1) | 247 (14.2) | - | 10 (0.6) | 65 (3.7) | 1 (0.06) | 181 (10.4) |
| 2019 | 1,597 | - | 589 (36.9) | 68 (4.3) | 18 (1.1) | 216 (13.5) | 153 (9.6) | 121 (7.6) | 13 (0.8) | - | 621 (38.9) | 164 (10.3) | 2 (0.1) | 6 (0.4) | 52 (3.3) | - | 163 (10.2) |
| 2020 | 1,779 | - | 716 (40.2) | 107 (6.0) | 18 (1.0) | 228 (12.8) | 188 (10.6) | 150 (8.4) | 25 (1.4) | - | 667 (37.5) | 176 (9.9) | 2 (0.1) | 1 (0.1) | 32 (1.8) | 2 (0.11) | 183 (10.3) |
| | | | | | 13.8% | | 3년 이상 20.4% | | | | 47.6% | | | | | | |

3 문제점

가. 낮은 양형으로 인한 범죄억지력 저하

- 낮은 양형은 피해자로 하여금 국가로부터 보호받지 못한다는 인식 및 처벌의 불확실성에 따른 보복 우려 등으로 신고를 주저하게 만들어 성범죄의 숨은 범죄화를 초래하고, 형벌의 일반 예방적 효과를 반감시키며, 범죄 증가로 이어질 수 있음

※ 앞서 언급된 서울시 조사 결과, 응답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66%가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았고, 그 이유로 '처벌의 불확실성'을 꼽음. 디지털 성범죄 예방을 위해 필요한 정책에 대해서는 '가해자 처벌 강화를 위한 법제 정비(78.5%)'가 1위로 뽑힘

나. 법정형 상향의 실질적 미반영

- 위 성범죄 사건 양형통계와 같이 성범죄 사건 집행유예 비율이 약 37%로 높고, 특히 디지털 성범죄는 앞서 본 바와 같이(P.6) 벌금형 위주 선고 경향이 뚜렷함
- 낮은 양형에 대한 국민적 반감 증가에 따라 국회는 엄중 처벌을 위해 처벌규정의 법정형을 상향하였으나,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의 기본영역 하한은 기존 판결의 양형 관행 및 작량감경을 고려하여 법정형 하한보다 낮게 설정되는 경우가 많고, 결과적으로 관행적 양형 경향이 지속됨

→ 국회 입법권에 대한 침해 소지 있고, 국민들의 불신과 불안 지속

※ 양형기준설정에서 권고형량범위는 통계분석을 기초로 종래(5년치) 선고형량범위의 중간부분, 즉 70~80%로 밀집도가 높은 범위로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보다 엄정한 양형을 바라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범죄에 관해서는 적절한 규범적 조정을 가하는 방식인바,⁸ 양형기준을 새로 만든다 하더라도 종래 선고형량 범위가 기준인 이상 관행적 양형이 계속될 뿐 새로운 양형관행을 바로 만들기에 역부족임

다. 피해자 소외로 피해 구제 및 정의 실현 공백

- 엄중한 양형에 대한 국민적 요청은 사회적 이슈가 되는 소수의 사례(ex: 박사방 주범 조주빈 징역 42년 확정)뿐 아니라, 사안이 경미하다는 등의 이유로 제대로 처벌되지 않는 대다수 사례에서 발생함
- 양형 인식의 격차는 피해자의 피해 사실에 공감하는 언론 및 대다수 국민의 법 감정과 재판 실무상 피고인의 사정을 주로 고려하게 되는 양형 판단 시스템의 괴리가 주 원인으로 판단됨

8 양형위원회, 2021 양형기준안 설명자료 10면

- 피해자 진술권은 헌법에 규정된 권리*임에도 형법 및 형사소송법상 재판 절차가 실질적으로 가해자에게 초점을 맞추어 규정되어, 피해자는 피고인이 범행 부인할 때만 증인으로 출석하는 등 실질적인 당사자로 인정받지 못하며 소외되는 측면이 있음

*** 헌법 제27조 제5항**

‘형사 피해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사건의 재판 절차에서 진술할 수 있다’

※ 특히 별도 양형심리 절차가 없는 상황에서 판사들은 실제 판단과 양형 판단을 엄격히 구분하기 어렵고, 양형 판단에 있어서도 실제 판단처럼 엄격증명의 원칙이나 무죄추정의 원칙과 유사한 태도로 접근하기가 쉬움 → 양형가중사유에 대해서는 엄격한 증명을, 감경사유에 대해서는 피고인 측의 소명 정도로 인정하게 됨(대법원 양형기준이 적용된 2019년 전체 성범죄 4824건 가운데 감경영역 안에서 형이 선고된 사건은 2016건(41.8%), 가중영역은 207건(4.3%), 나머지 2601건(53.9%)이 기본영역으로 구분⁹⁾)

- 그 결과 실질적인 피해 회복이나 진정한 사과 없이 형식적 또는 가장한 감경 요소를 이용하여 감형을 받으려는 감형 컨설턴트 시장까지 존재¹⁰⁾
- 이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의 반성(자백)과 합의에 지나치게 비중을 두고 감경한다는 비판이 존재하고, 피해 구제 및 정의 실현에 공백을 초래, 국민과 피해자들의 불신과 불안은 지속됨
→ 법률상 회복적 사법 및 피해자 관점의 양형 기준 및 피해자 진술권 보장 필요

라. 불명확한 양형심리 판단 기준으로 사법 불신 야기

- 디지털 성범죄 사건에서 피고인이 ‘진지한 반성’을 하였다는 양형자료로서 성폭력 피해자 지원 단체에 일명 ‘감형용 기부’를 하고 그에 대한 증명을 법원에 제출하는 경우가 빈번함¹¹⁾

※ 2019년 성범죄사건 판결 중 3420건(70.9%)이 감경사유로 진지한 반성 채택하였으나, 어떤 기준·심리 방법 등을 거쳐 진지한 반성이 감경사유로 인정되고 있는지 피해자 및 일반 국민들은 알 수 없는 상황임

-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의 회유·협박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진의에 의하지 않은 처벌 불원’에 이르는 문제가 제기되고, 특히 피해자가 아동인 경우 피해자의 부모가 아닌 실제 피해 아동의 처벌불원 의사를 직접 확인할 수 없는 등 양형심리절차나 양형사유에 대한 판단 기준이 불명확
- 즉, 양형기준이 존재하더라도 가중·감경요소의 판단기준과 내용, 심리절차 등이 법률상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별다른 사회적 논의 없이 개별 재판부의 재량에 따라 양형이 정해지는 이상 양형 판단의 부담은 가중되고 국민들의 불신은 해소되기 어려움

→ 구체적 양형 조건 및 양형판단을 위한 심리절차를 법률에 규정할 필요

9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양형위원회 젠더폭력범죄와 양형 심포지엄

10 <https://www.hani.co.kr/arti/society/women/1018662.html>

11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양형위원회, 2021년 공동심포지엄자료 69면

4 권고사항

가. 형법상 양형 조건 조항 개정

- 양형의 조건에 관한 현행 형법 제51조는 모두 가해자 양형요인 중심으로 양형 참작 사유를 규정하고 있는바(P.16 참조), 이는 형법 시행(1953. 10. 3.) 이래 67년 동안 단 한 번도 개정된 바 없음
- 양형에 관한 잦은 사회적 논란, 그 결과 초래되는 사법 불신의 심각성, 양형사유에 대한 예측가능성과 실질적 균형이 담보될 필요가 있고 국민들의 알권리, 실제 재판에서 양형 판단의 부담 등을 고려할 때, 양형에서 고려되는 주요 요소들과 판단기준을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서 사회 변화를 고려한 사회적 논의를 거쳐 직접 논의하고 법령상 규정하여 양형요소를 구체화하고 양형의 예측가능성과 균형을 담보함이 상당함
- 법령상 양형의 필요적 참작 조건에 피해자의 연령, 피해자에게 야기된 피해의 결과 및 정도, 피해 회복 여부, 피해자의 처벌 및 양형에 관한 의견 등 회복적 사법 및 피해자 관점의 요소가 명시되도록 형법 제51조를 개정할 것을 권고함
 - ※ 형량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감경사유(피고인의 진지한 반성,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 등)와 가중사유(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등)는 국민의 기본권 제한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명확한 법률상 근거 필요
 - ※ 현행 형법 및 형사소송법 등은 과거 고문, 가혹행위 등으로 침해되었던 피고인의 인권보호에 중점을 두고 확립되어 피해자 인권보호 규정이 적은바, 피해자 보호 관점에서 형법 및 형사소송법 체계를 정비할 필요 있음
 - ※ 피해자 보호 관점 요소가 형법 제51조상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결과 등에 일부 포함되고, 주요 특별양형인자로 고려되고 있기는 하나, 형법상 이를 명문화하여 피해자 관점의 고려를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 의미가 있음

| 현행 형법 | 개정안 |
|--------------------------------------------------------------------------------------------------------------------------------------------------------------------------------------------------------|-----------------------------------------------------------------------------------------------------------------------------------------------|
| <p>제51조(양형의 조건)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다음 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2. 피해자에 대한 관계 3.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4. 범행 후의 정황 | <p>제51조(양형의 조건)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다음 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p> <p>1~4. <좌 동></p> <p>5. 피해자의 연령, 피해의 결과 및 정도, 피해 회복 여부, 피해자의 처벌 및 양형에 관한 의견</p> |

나. 형사소송법상 '피해자 진술권'의 실질적 보장

- 현행 형사소송법은 '피해자 등의 신청이 있으면 법원은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하여야 하고, 이때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처벌에 관한 의견 등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여 증인신문 방식의 피해자 진술권 규정(제294조의2)

- 그러나, 증인신문 방식은 피해자가 적극적·주도적으로 진술하기 어려운 면이 있는바, 피해자 진술권 강화를 위해서는 증인신문 방식의 진술 외에 증인신문에 의하지 않는 의견 진술, 서면에 의한 의견 진술 등을 법률에 규정하여 함께 보장함이 상당함
 - ※ 현행 형사소송규칙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에 해당하지 않는 사항’에 관해 증인신문 방식에 의하지 않는 의견 진술 절차를 규정(제134조의 10, 134조의 11)하고 있으나, 헌법상 보장된 권리의 구체적 실현을 법률이 아닌 규칙으로 규정하는 것은 법률유보원칙에 위배 소지가 있고, 선언적 의미에 그치는 인상을 주는 등 피해자의 권리로서 진술권을 도입한 취지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상위 법령인 형사소송법에 규정할 필요 있음
- 따라서, 피해자 진술권에 관한 형사소송법 조항을 개정하여 피해자가 ‘양형에 관한 의견’을 증인신문에 의하지 않고도 법정 출석 또는 서면 제출 방식으로 진술할 수 있도록 하고, 이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이 양형에 참작될 수 있도록 법률에 근거를 마련할 것을 권고함
 - ※ ‘양형에 관한 의견’에는 처벌에 관한 피해자의 의사, 피해확산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 실질적 피해 회복 등 주요 양형 인자에 대한 심리를 포함하여, 감경 사유의 적용이 피고인의 일방적인 주장만으로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는 데에 의미가 있음
 - ※ 권고안은 이와 같은 피해자의 의견 진술권 보장 및 이를 양형에 반영할 것을 의무조항으로 규정하였는바, 입법 과정에서 법원측의 반대 우려 있으나, 실질적 당사자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당사자성이 배제되어 있는 피해자 지위의 현실적 보장은 반드시 필요한 점, 실질적 피해 회복,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 등은 양형 결정에 필수적인 요건인바 이를 의무적으로 반영하도록 하는 것이 재판의 독립을 해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여 의무 조항으로 규정함
- 아울러, 피해자가 재판절차 진술권을 적시에 적절하게 행사할 수 있도록 공판 개시 前 수사기관의 피해자에 대한 의견진술권 고지를 실질화하고, 공판 개시 後 법원의 피해자에 대한 정보 제공을 충실화하는 노력 필요

| 현행 법률(형사소송법제294조의2) | 개정안 |
|------------------------------------------------------------------------------------------------------------------------------------------------------------------------------------------------------------------------------------------------------------------------------------------------------------------------------------------------------------------------------------------------------------------------------------------------------------------------------------------------------------------------------------------------------------------------------------------------------------|------------------------------------------------------------------------------------------------------------------------------------------------------------------------------------------------|
| <p>제294조의2(피해자등의 진술권) ① 법원은 범죄로 인한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피해자등”이라 한다)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피해자등을 증인으로 신문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삭제(2007. 6. 1.) 2. 피해자등 이미 당해 사건에 관하여 공판절차에서 충분히 진술하여 다시 진술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피해자등의 진술로 인하여 공판절차가 현저하게 지연될 우려가 있는 경우 <p>②법원은 제1항에 따라 피해자등을 신문하는 경우 피해의 정도 및 결과, 피고인의 처벌에 관한 의견, 그 밖에 당해 사건에 관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p> <p>③법원은 동일한 범죄사실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인이 여러 명인 경우에는 진술할 자의 수를 제한할 수 있다.</p> <p>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인이 출석통지를 받고도</p> | <p>제294조의2(피해자등의 진술권)</p> <p>①~② <좌 동></p> <p>③ 법원은 직권 또는 피해자등의 신청에 따라 피해자등을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피해의 정도 및 결과, 피해 회복 여부, 피고인의 처벌 및 양형에 관한 의견 등 범죄사실의 인정에 해당하지 않는 사항에 관하여 증인신문에 의하지 아니하고</p> |

| 현행 법률(형사소송법제294조의2) | 개정안 |
|------------------------------------------------|---------------------------------------------------------------------------------------------------------------------------------------------------------------------------------------------------------------------------------------------------------------------------------------------|
| <p>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본다.</p> | <p>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줄 수 있다.</p> <p>④ 법원은 재판의 진행상황,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피해자들에게 제1, 3항의 의견진술에 갈음하여 의견을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p> <p>⑤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①내지 ④ 항에 따라 청취한 피해자들의 의견을 양형에 반영하여야 한다.</p> <p>⑥~⑦ <현행 조항 ③~④항과 동일></p> <p>※ 본 피해자 진술 절차는 법제화시 피고인 신문(제296조) 이후 조문으로 배치하는 것도 고려할 필요 있음</p> |

다. 양형조사제도 개선

▶ 성폭력처벌법 제17조 '판결전조사'등 개정

-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검찰 사건 처분 단계 및 법원 판결 단계에서 정확하고 공정한 양형을 위한 충분한 자료의 조사와 심리가 뒷받침되어야 함
- 이에 따라 현재 양형조사제도는 보호관찰관에 의한 판결전조사 및 결정전조사, 검찰 양형조사 담당관에 의한 양형조사, 법원 양형조사관에 의한 양형조사가 각 운용되고 있음
- 양형조사는 사건 처분 또는 판결 전 양형의 기초자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합리적인 양형을 보조하는 유용한 역할을 하므로, 피고인 관련 사항 뿐만 아니라 피해자 관련 사항도 조사 항목에 포함시켜 비중 있게 다루고, 나아가 피해자가 자신의 피해와 고통, 현재 상태, 양형에 관한 입장 등에 관하여 자세히 진술할 기회를 주는 것이 바람직함
 - ex) 현행 보호관찰관에 의한 양형조사서 서식은, ▲「검사 또는 법원 결정전 조사」의 경우 피의자 또는 피고인에 관한 사항은 여러 세부 항목으로 나누어져 있고, '성장과정', '향후 생활계획'과 같이 긍정적 요소들의 현출 가능성이 높은 내용의 구성인 반면 피해자 관련 사항은 별도 기재란이 없고, ▲「법원 판결전 조사」의 경우 피해자 관련 항목은 있으나 '범행 등에 관한 사항'항목 중 일부에 불과하여 그 비중이 매우 낮음
- 현행 법령상 규정된 보호관찰소 양형조사 항목에 피해자의 연령, 피해 회복 여부, 가해자 처벌 및 양형에 관한 피해자의 의견 등 피해자에 관한 사항이 명시되도록 성폭력처벌법 제17조 등을 개정하고, 양형 조사시 피해자 관련 사항을 비중 있고 충실하게 조사하도록 실무 체계를 정비할 것을 권고함

| 현행 성폭력처벌법 제17조 | 개정안 |
|---------------------------------------------------------------------------------------------------------------------------------------------------------------------------------------------------------------------------------------------------------------------------------------------------------------------------------------------------------------------------------------------------------------------------------------------------------------------------------------------------|---------------------------------------------------------------------------------------------------------------------------------------------------------------------------------------------------------------------|
| <p>제17조(판결 전 조사)</p> <p>① 법원은 성폭력범죄를 범한 피고인에 대하여 제16조에 따른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부과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법원의 소재지 또는 피고인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피고인의 신체적·심리적 특성 및 상태, 정신성적 발달과정, 성장배경, 가정환경, 직업, 생활환경, 교우관계, 범행동기, 병력(病歷), 피해자와의 관계, 재범위험성 등 <u>피고인에 관한 사항의 조사를 요구할 수 있다.</u></p> <p>② 제1항의 요구를 받은 보호관찰소의 장은 지체 없이 이를 조사하여 서면으로 해당 법원에 알려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피고인이나 그 밖의 관계인을 소환하여 심문하거나 소속 보호관찰관에게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p> <p>③ 법원은 제1항의 요구를 받은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조사진행상황에 관한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p> | <p>제17조(판결 전 조사)</p> <p>① <좌동> ----- ----- ----- ----- ----- 등 피고인에 관한 사항 및 <u>피해자의 연령, 피해의 결과 및 정도, 피해 회복 여부,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 등 피해자에 관한 사항의 조사를 요구할 수 있다.</u></p> <p>②~③ <좌 동></p> |

※ 청소년성보호법 제22조(판결 전 조사), 보호관찰법 제19조(판결 전 조사)도 동일 취지로 개정 필요

▶ 양형인자 기초자료 실질적 점검 방안 마련

- 양형기준상 양형인자에 해당하는 사항은 그 기초자료에 관하여 보호관찰관 등에 의해 객관적·균형적인 검증을 거치도록 함으로써 양형조사 단계에서 양형인자에 관한 사실을 정확히 확정하고 양형심리로 인한 절차의 불필요한 지연을 막을 수 있음
- 특히,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상 특별감경인자로 되어 있는 ‘피해확산방지 조치를 위한 실질적 조치’이행 여부는 디지털 성범죄에 있어서 추가 피해 방지 및 피해 회복을 위한 필수 요소로 중요성이 매우 높은 바, 양형조사 단계에서 피고인의 진술 또는 기 압수된 정보저장매체에서의 불법촬영물 삭제 외에 동일 영상물 또는 복제물 존재 및 삭제 여부를 필수적으로 직접 확인하여 추가적인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한 실질적 조치를 이행하였는지 여부를 명확히 점검하여야 함

※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피해자의 실질적인 처벌 불원 의사 확인할 필요

- 양형 기준의 실효성·적정성 확보를 위해 보호관찰소, 검찰 양형조사담당관, 법원 양형조사관에 의한 각 양형조사 과정에서 양형인자에 관련된 기초사실에 대해 공정한 절차에 따라 객관적인 검증을 실시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고, 조사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등 업무 매뉴얼을 정비할 것을 권고함

5 기대 효과

- 가해자 양형요인 중심으로 규정되어 있던 기존 형법상 양형 조건에 피해자적 관점을 반영하여 충실한 양형심리 진행 및 양형기준의 적절한 적용을 실현하여 양형의 객관성·형평성 담보 및 사법 신뢰도 향상
- 형사소송법상 양형심리에서 헌법상 보장된 피해자 진술권의 실질적인 구현을 통한 피해자 보호 및 회복적 사법 실현
- 피해 확산 방지 조치의 구체화·실질화를 통한 디지털 성범죄의 추가 피해 방지
- 국민의 법 감정에 부합하는 엄정한 처벌로 디지털 성범죄 등 성범죄에 대한 범죄 억지력 제고

디지털 성범죄 등 전문위원회 제5차 권고안

- 메타버스(가상현실) 내 성범죄 대응을 위한 '성적 인격권' 침해 신설 등 -

권고 개요

1. 기본 방침

- 성폭력처벌법에 '성적 인격권' 침해행위를 독자적인 범죄로 규정하는 입법 개선을 추진하고, 보호관찰법 개정을 통해 성범죄자에게 부과하는 보호관찰 특별준수사항을 개선할 것을 권고합니다.

2. 권고사항

- 가. 왜곡된 성편향의 표출로 현실 또는 디지털 공간에서 타인을 성적 대상화하는 행위를 성범죄로 규제할 수 있도록, 성폭력처벌법에 '성적 인격권' 침해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설할 것을 권고합니다.

- ▶ '성적 인격권'은 인격체인 개인이 그 의사에 반하여 성적 대상화가 되지 않을 권리를 의미하며 **헌법 제10조 일반적 인격권에 포함되는 기본적 인권**의 하나임
- ▶ '성적 인격권' 침해 범죄의 행위 태양은 **원치 않는 성적 표현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는 '성적 언동'**으로 규정되며,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 유발하는지 여부**가 판단기준이 될 수 있음
- ▶ 기술 발달에 따라 성적 대상화 방식이 비정형화·광범위화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하여, '성적 언동'은 **피해자에게 현실적·직접적으로 가해지는 경우** 뿐 아니라 온라인 공간에서의 캐릭터, ID 등 **피해자의 인격을 표상하는 물건 또는 정보를 대상으로 간접적으로 가해지는 것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정의

- 나. 성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은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해 다음과 같은 특별준수사항이 추가될 수 있도록 보호관찰법 개정을 권고합니다.

- ▶ **불법촬영물 등의 소지·보관·시청 금지**
- ▶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재범의 대상이 될 우려가 있는 사람 또는 그 인격을 표상하는 정보나 물건에의 접근 금지**

- 다. 가상현실 등 디지털 공간에서 일어나는 성적 인격권 침해행위와 관련하여 해당 플랫폼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사회적 역할과 책임에 상응하여 부담하는 협조·관리의무를 구체적·체계적으로 설정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을 권고합니다.

3. 기대효과

- 가. 사회와 기술의 변화에 따라 새롭게 등장한 온라인 공간에서의 성적 가해행위나 언어적 성폭력에 대해 침해의 속성 및 성범죄 특성에 맞는 형사적 대응
- 나. '정액테러' 등 비신체적 방법의 성적 침해행위를 성범죄 차원에서 규제하여 가해자 처벌·관리 및 피해자 보호의 공백 해소
- 다. 성적 자기결정권과 구별되는 '성적 인격권'에 대한 침해를 독자적인 범죄로 규정하여 인격권의 실질적인 보장 및 형사사법을 통한 헌법상 가치 실현
- 라. 변화된 범죄 환경에서 성범죄자의 재범 위험요인의 효과적인 통제,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 있는 협조·관리를 통해 실효적인 재범 방지, 신종 플랫폼을 포함한 온라인 공간에서의 성범죄 예방

1 권고 배경

- 최근 온라인 상에서의 언어적 성폭력, 메타버스 등 사이버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성적 가해 행위, 소위 '정액 테러'와 같은 비접촉 성범죄 등 새로운 유형의 성범죄가 증가하고, 인터넷 사용량이 많은 10대 층이 주된 피해를 입고 있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 '21. 12. 30.자 일요신문 『아이템 벗고 XX하라』메타버스 파고든 10대 성범죄』 등 다수 언론 보도

- 이와 같은 사이버 공간에서 벌어지는 새로운 형태의 성적 가해 행위에 대해 기존의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및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등이나 형법상 모욕죄 또는 명예훼손죄 등 현행 처벌법규로 대응하는 것에는 한계 존재
- 이와 같은 온라인상의 성적 괴롭힘은 오프라인상 성범죄와 같이 직접적인 유형력을 매개로 하지 않으나, 성적 대상화와 성차별적 인식을 노골적으로 표출하며 차별적·혐오적 표현을 지속적·반복적으로 전달하여 피해자에게 극심한 불안감과 공포심을 유발함
- 현실 세계에서 신체 접촉을 수반하지 않거나 디지털 환경에서 일어나는 성적 괴롭힘에 대해 피해자의 인격권 침해라는 관점에서 규제 필요성을 검토하고, 피해자 보호와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가해행위를 효과적으로 제지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2 현행 법제상 처벌의 한계 및 새로운 보호법익의 설정

가. 언어적·비신체적 성폭력에 대한 처벌의 한계

- 텔레그램 N번방 성착취 사건 등 디지털 성범죄 피해에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최근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형사정책적 대응은 피해자의 '성적 이미지'를 이용한 성범죄 처벌에 집중되고 있음

※ 2000년대 이후 이루어진 성폭력처벌법 개정은 제14조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처벌 흠결을 보완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짐

| 성폭력처벌법상 제14조 개정 경과 |



- 그러나, 성적 이미지를 이용한 디지털 성범죄와 달리 '언어'를 매개로 이루어지는 성적 폭력 및 괴롭힘은 통신매체이용음란죄(성폭력처벌법 제13조) 이외에 형법상 모욕죄 내지 명예훼손죄 등 비성범죄로 다루어지고 있을 뿐 피해 감정 내지 성범죄의 특성을 고려한 대응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실태조사*에 의하면, 성적 이미지가 아닌 언어를 매개로 이루어지는 온라인상의 성적 폭력 및 괴롭힘이 피해자들이 가장 빈번하게 경험하는 성범죄에 해당함

* 2018년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서 전국의 온라인 성폭력 피해자 2,000명을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촬영, 유포협박, 유포·재유포 피해 없이 온라인 성적 괴롭힘만을 경험한 피해자는 전체 2,000명 중 1,648명(82.4%)이고, 촬영 및 유포 등 성적 이미지를 이용한 피해자는 전체 중 352명(17.2%)이었음

- 그 유형에는 온라인 공간에서 원치 않는 성적 접근 및 언어적 성희롱 등 언어적인 형태만으로 이루어지는 방식 이외에도, 피해자의 일상 사진과 신상정보를 공개하면서 성적 비하와 모욕을 하거나, 공개된 신상정보를 통해 피해자의 성적 이미지를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등 피해자를 성적 대상화하고 스토킹하는 형태로 발전하는 사례들이 포함되며*, 그로 인해 피해자들은 SNS 등 온라인에서의 활동이 제한되거나 주변인들에 대한 신뢰 또는 일상생활의 안전에 대한 감각을 상실하는 등의 피해를 경험함

* 소위 'N번방' 사건 당시 박사방의 주범 조주빈은 인터넷상의 피해자 신상정보를 활용해 피해자에게 접근해 성적 이미지를 요구하거나 성적 비하를 하고, 피해자들의 개인 정보를 빼내는 등의 방식으로 범행을 진행시킴

※ 2018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에서 2017년 1월부터 2018년 10월까지 인터넷 댓글 및 SNS 게시물에서 온라인 성폭력 사례를 수집하여 온라인 성적 괴롭힘 유형을 분석한 결과, ① 성적 비하/모욕, ② 성적 농담/원치 않은 성적 대화 유도, ③ 성차별에 근거한 여성혐오 표현, ④ 신상공개, ⑤ 동의없는 음란물 전송으로 분류됨

- 특히, 최근에는 게임 사이트, 메타버스 등에서 여성캐릭터를 대상으로 성적인 행위를 하거나, 실제 유저가 여성임을 확인한 후 성적 대화를 유도하거나 성적 모욕, 여성 혐오 욕설을 하거나, 스토킹으로 발전하는 등 온라인상의 성적 폭력 및 괴롭힘 유형이 다양해지고 있음
- 그러나, 현재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해당 행위가 저속한 표현을 넘어 '음란물'의 정도를 충족¹해야 하며, 모욕이나 명예훼손죄는 '공연성'을 요건으로 하고 있어 성적 목적으로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행위를 처벌하지 못하는 등 성범죄의 특성을 고려한 처벌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공백이 발생함

나. 비신체적 성폭력의 처벌 법제화 시도

▶ 온라인상 비신체적 성폭력에 대한 규제 필요성

- 전통적으로 성범죄는 신체적 성폭력 행위(성기 삽입 내지 신체 접촉이 행위 양태) 위주로 형사적 규제가 이루어졌으나, 네트워크 기술의 발달과 통신매체를 이용한 의사소통이 확대됨에 따라 신체적 접촉 없이 온라인 네트워크를 이용하여 타인의 성적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들에 대한 형사적 제재의 필요성이 강력히 대두됨
- 이에 따라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등 비신체적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일부 성폭력 행위가 범죄로 규정되었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기존 법률의 한계로 여전히 처벌의 공백이 있어 온라인상 언어를 매개로 하거나 게임 캐릭터 등 피해자 정체성을 대상으로 하는 비신체적인 성폭력에 대해 법제화를 통해 성범죄로 규제할 필요성이 높음

▶ 언어적 성폭력의 처벌 법제화 시도

- 현행법상 언어적 성폭력, 소위 '성희롱'에 대한 처벌은 노인·아동·장애인 대상 성희롱에 관하여만 규정하고 있고, 직장 내 성희롱의 경우 가해자 처벌이 아닌 사업주에 대한 권고, 제재 등을 규정하고 있음

1 대법원 2016도21389 판결, 헌법재판소 2016헌바153 결정 등 다수 판례에서 '저속한 표현을 넘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하는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고 판시하였고, 이는 음란물에 대한 판단 기준과 동일함

성희롱 처벌 규정

[아동복지법]

제17조(금지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

제71조(벌칙) ① 제17조를 위반한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 1의2.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노인복지법]

제39조의9(금지행위) 누구든지 노인(65세 이상의 사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2.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폭행·성희롱 등의 행위

제55조의3(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39조의9제1호(폭행에 한정)부터 제4호까지 또는 제6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21. “괴롭힘 등”이라 함은 집단따돌림, 방치, 유기, 괴롭힘, 희롱, 학대, 금전적 착취,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 등의 방법으로 장애인에게 가해지는 신체적·정신적·정서적·언어적 행위를 말한다.

제32조(괴롭힘 등의 금지) ⑥누구든지 장애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거나 수치심을 자극하는 언어표현, 희롱, 장애 상태를 이용한 추행 및 강간 등을 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9조(차별행위) ①이 법에서 금지한 차별행위를 행하고 그 행위가 악의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법원은 차별을 한 자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②제1항에서 악의적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1. 차별의 고의성
2. 차별의 지속성 및 반복성
3. 차별 피해자에 대한 보복성
4. 차별 피해의 내용 및 규모

직장 내 성희롱 관련 규정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정의) 3.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 지역(출생지, 등록기준지, 성년이 되기 전의 주된 거주지 등을 말한다), 출신 국가, 출신 민족, 용모 등 신체 조건, 기혼·미혼·별거·이혼·사별·재혼·사실혼 등 혼인 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 형태 또는 가족 상황, 인종,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형의 효력이 실희된 전과(前科), 성적(性的) 지향, 학력, 병력(病歷) 등을 이유로 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 라. 성희롱[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공공기관(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초·중등교육법」 제2조, 「고등교육법」 제2조와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공직유관단체를 말한다)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그 직위를 이용하여 또는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한다] 행위

제45조(고발 및 징계권고) ② 위원회가 진정을 조사한 결과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가 있다고 인정하면 피진정인 또는 인권침해에 책임이 있는 사람을 징계할 것을 소속기관 등의 장에게 권고할 수 있다.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정의)

2. '성희롱'이란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나. 상대방이 성적 언동 또는 요구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그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이익 공여의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

제31조의2(성희롱 사건 발생 시 조치) ① 국가기관등의 장은 해당 기관에서 성희롱 사건이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국가기관등의 장이 해당 성희롱 사건의 행위자인 경우를 포함한다) 피해자의 명시적인 반대의견이 없으면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여성가족부장관에게 통보하고, 해당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제31조제1항에 따른 재발방지대책을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사건이 중대하다고 판단되거나 재발방지대책의 점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기관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점검 결과 시정이나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가기관 등의 장에게 **시정이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31조의3(성희롱 방지 조직문화 진단 및 개선 권고)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성희롱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가기관 등의 조직문화를 진단하고 개선권고를 할 수 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2조(정의)

2. '직장 내 성희롱'이란 사업주·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근로조건 및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한다.

제12조(직장 내 성희롱의 금지) 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 내 성희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7조(벌칙) ② 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14조 제6항을 위반하여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들에게 불리한 처우를 한 경우

제39조(과태료) ① 사업주가 제12조를 위반하여 직장 내 성희롱을 한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그러나, 위 규정 외 일상생활에서 행해지는 성적 괴롭힘²은 처벌 규정 없음 → 기존 성범죄로 처벌하기 어렵고*, 모욕죄 등 일부 비성범죄로 처벌할 수 있으나, (대부분 은밀히 행해지는 성범죄 특성상) 구성요건 해당성 여부가 불분명하거나 또는 해당하더라도 가볍게 처벌되어 가해자 처벌 및 피해자 보호에 공백 또는 불합리 발생

* '21. 5. 9. 「女 승객에게 성매매 제안한 택시기사, 처벌 근거 없어 미처벌」 국민일보 등 다수 언론 보도

- '성희롱'은 직접적인 성적 행위가 수반되지 않으나 타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훼손하는 간접적인 성적 행위로서 법의 침해행위가 그 본질이므로 근본적으로 성범죄의 차원에서 다룰 필요가 있음
- 특히, 최근 온라인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일명 '사이버 성희롱'은 현실 세계에서의 중대 성범죄를 예비·음모하거나 이를 조장·방조하는 수준에 이르는 등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사소한 침해'로 보기 어려우나, 성희롱을 일반적으로 처벌할 수 있는 독립된 근거를 마련하여 대응함이 상당함

2 성희롱이라는 용어는 자칫 성범죄를 희화화하고 범죄성을 희석시킬 우려가 있어 '성적 괴롭힘'이라는 용어로 대체함이 바람직함

- 프랑스 등 일부 국가는 형법에 성적 괴롭힘 규정을 두어 성적 또는 성차별적 언동에 대해 형사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성적 괴롭힘에는 언어적으로 이루어지는 침해행위가 포함됨

프랑스 형법(제222-33조)

- I. 성적 괴롭힘은 반복적으로 모욕적·굴욕적으로 존엄성을 훼손하거나, 위협적·적대적·공격적인 방법으로 성적 또는 성차별적 발언이나 행동을 하는 것을 말한다.
위법 행위는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1. 각각의 행위자들이 반복적으로 행동하지 않았더라도, 이러한 발언이나 행동이 여러 사람에 의해 동일한 피해자에게 행해지는 경우
 2. 공모가 없더라도 이러한 발언이나 행동이 반복적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여러 사람에 의해 동일한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행해지는 경우
- II. 성적 괴롭힘은 반복되지 않더라도 가해자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해서 실제적이거나 명백하게 성적인 목적으로 행해지는 심각한 압력을 의미한다.
- III. I, II는 2년의 징역 및 30,000 유로의 벌금에 처한다.
이러한 경우 3년의 징역 및 45,000 유로의 벌금으로 가중된다.
 1. 사람이나 지위에 부여된 권한을 남용하는 경우
 2. 피해자가 15세 이하의 미성년자인 경우
 3. 피해자의 나이, 질병, 허약, 신체적·정신적 결함, 임신으로 인해 취약성이 명백하거나 가해자가 이를 알고 있는 경우
 4. 피해자의 경제적·사회적 상황의 위험으로 인한 취약성· 의존성이 명백하거나 가해자가 이를 알고 있는 경우
 5. 주범 또는 공범으로 여러 사람에 의해 행해지는 경우
 6. 온라인 공공 커뮤니케이션 서비스를 사용하거나 디지털 또는 전자 매체를 통한 경우
 7. 미성년자가 현장에 있는 경우
 8. 직계 또는 피해자에 대해 법적 또는 사실상의 권한을 가진 자에 의해 행해지는 경우

- 21대 국회에서는 언어적 성폭력에 대한 처벌 공백 문제가 제기되면서 관련 법률 개정안이 발의되었는바, ① 형법상 모욕죄의 가중적 구성요건으로 특정 성별에 대한 혐오를 표현할 목적으로 성적 행위를 소재로 한 표현물을 이용하거나 성적 언동을 하는 행위를 추가하는 형법상 성적 모욕죄 신설안, ② 성폭력처벌법에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이외의 제13조의2를 신설하여 성폭력처벌법상 성희롱 형사처벌 규정 도입안 ③ 성폭력처벌법상 공중밀집장소추행죄의 추행 요건에 언어적 성폭력 행위 포함안 등이 제시되었음

| 법률제명 | 요지 | 법안 내용 |
|--------------------------|----------------------------------------------------------------------------|-------------------------------------------------------------------------------------------------------------------------------------------------------------------------------------------------------------------------------------------------------------|
| 형법 (이수진 외 13인) | 비동의 추행을 강제추행의 기본 구성요건으로 하고, 물질 등을 이용한 비동의 추행을 별도 행위 태양으로 처벌(1년↓ 또는 1천만 원↓) | 제298조(강제추행) ① 상대방의 동의 없이 추행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성적인 목적으로 물체, 물질 등을 이용해 상대방의 동의 없이 추행한 사람은 전항의 예에 의한다. ③ 폭행, 협박 또는 위계, 위력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한 사람은 전항의 예에 의한다. |

| 법률제명 | 요지 | 법안 내용 |
|---------------------------------|--------------------------------------------------------|---------------------------------------------------------------------------------------------------------------------------------------------------------------------------------------------------------------------------------------------------------------------------------------------------------------------------------|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백혜련 외 9인) | 성적 수치심 유발 물건을 이용한 음란행위 처벌규정 신설(2년↓ 또는 2천만 원↓) | 제13조의 2(물건을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물건을 상대방의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에 두어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김민기 등 10인) | 성적 수치심 유발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경우 음란행위로 처벌 (2년↓ 또는 2천만 원↓) | 제13조(통신매체 등을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다음의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 2. 직접 또는 택배, 퀵서비스, 그 밖의 배송수단을 통하여 상대방의 주거, 직장, 학교 등에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물건을 두어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 |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이성만 외 9인) | 성적 수치심 유발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경우 음란행위로 처벌 (2년↓ 또는 2천만 원↓) | 제13조(통신매체 등을 이용한 음란행위)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상대방의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에 두어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 물질 등을 이용한 비접촉 성폭력의 처벌 법제화 시도

- 최근 공공장소에서 초면인 여성 또는 특정 여성을 상대로 정액을 묻히거나 뿌리는 일명 '정액 테러'가 빈번하게 발생함*

* '21. 8. 20. 자 중앙일보 「몸이면 성범죄, 웃은 재물손괴... 외신도 조롱한 韓 정액테러」 등 다수 보도
* 백혜련 의원실에 따르면 '19~'20. 7. 총 44건의 정액 테러 사건 접수, 추행 또는 재물손괴죄로 기소

- 이와 같이 물질 등을 이용한 가해행위는 왜곡된 성편향이 외부로 표출되어 타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로 피해자가 존재하는 범죄이고, 행위자 또는 범행 특성상 중대 성범죄 또는 강력 사건의 전조인 경우가 많음에도 적절한 형사사법적 대응이나 이에 관한 본격적 대책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음
- 현행 실무상 정액을 ① 피해자의 소지품, 가구, 의복 등 물품에 묻히거나 음용수에 넣는 등 피해자의 공간에 둔 경우 재물손괴죄 또는 경범죄처벌법위반죄로 의율하고, ② 피해자의 신체(또는 입고 있는 의류)에 묻히거나 뿌린 경우 강제추행죄로 의율하고 있음

※ ② 유형을 폭행죄, 공연음란죄로 의율한 사례도 있으나, 법원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인 '기습추행'으로 인정³한 이후 강제추행 등 성범죄로 처벌하는 추세임

3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몸을 향해 사정한 사안에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기습적인 유형력의 행사로서 그 대소강약 및 접촉 여부와 무관하게 기습추행에서의 폭행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2015도6980 등)

- 그러나, 가해자가 초범이거나 다른 범죄사실과 경합이 없으면 대부분 벌금형 또는 집행유예 선고되고, 강제추행죄로 유죄 선고되더라도 신상정보 공개 또는 취업제한 명령이 면제되는 사례가 다수임
 - 21대 국회에서는 일명 ‘정액테러’ 등 신체 이외에 물건 등을 이용한 성폭력 범죄의 처벌 공백이 문제시되면서 법률개정안이 발의되었는바,
- ① 비동의 추행을 형법상 강제추행죄의 기본구성요건으로 하여 법정형을 낮추고, 성적 목적으로 물건 등을 이용한 비동의 추행을 강제추행에 준하여 처벌 규정 신설안, ② 성폭력처벌법상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물건을 상대방의 생활공간에 직접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포함시키는 안 등이 제안되었음

| 법률제명 | 요지 | 법안 내용 |
|-----------------------------------------|-----------------------------------------------------------------------------------------------|------------------------------------------------------------------------------------------------------------------------------------------------------------------------------------------------------------------------------|
| 형법 (강효상의원 등 10인) | 성적 비하, 여성혐오에 대한 처벌 흠결→특정 성별에 대한 혐오를 표현할 목적으로 신체 특정 부위 또는 성적 행위 관련 표현물 이용하거나 성적 언동을 하는 행위를 범죄화 | 제311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특정 성별에 대한 혐오를 표현할 목적으로 신체 특정 부위 또는 성적 행위를 소재로 한 부호·문헌·음성·화상·영상을 이용하거나 성적 언동을 하여 전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이명수의원 등 10인) | 모욕이나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은 언어적인 성희롱에 대한 처벌 흠결 | 제13조의2(언동에 의한 음란행위) 지속적으로 성적 언동 등을 하여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이원욱의원 등 12인) | 직장 외나 온라인 상에서 발생하는 언어적 성희롱 | 제13조의2(성적 언동에 의한 음란행위) 지속적으로 성적 언동을 하여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이하 “성희롱”이라 한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김수민의원 등 10인) | 이 모욕이나 명예훼손으로 처벌되어 성범죄라는 인식이 낮음 | 제13조의2(성적 언동 등에 의한 음란행위)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이하 “성희롱”이라 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성희롱을 한 경우도 포함한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박인숙의원 등 10인) | 공중밀집장소 언어적 성희롱이나 추행의 공모에 대한 처벌 흠결 | 제11조 중 “추행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을 “추행(성적 수치심을 주는 말 또는 행동을 포함한다)한 사람과 이를 공모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으로 한다. |

다. 비신체적 성폭력의 보호법익으로서 '성적 인격권'의 설정

- 사회 변화에 따라 인격성(personhood)이 인정되는 개인의 범위가 온라인상 가상 공간 또는 사적 이미지·물건 등으로 확대되면서 개인이 경험할 수 있는 침해의 범위 또한 신체적 영역에 한정되지 않고 비신체적 영역 등 다양한 양상으로 변화되고 있음
- 이에 대해 성폭력 관련 법령에 일부 구성요건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새로운 형태의 성적 침해행위에 관한 처벌의 흠결을 보완해 왔으나, 이러한 대응은 개인의 인격을 온전히 보호하고 사회 안전을 보장하는 데에 한계가 있음
- 사회 이목을 끄는 일부 행위에 초점을 두고 그때그때 처벌의 공백을 메꾸기보다는, 비신체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성적 행위로 인해 침해되는 법익을 기초로 범죄를 정의하고 그 특성에 맞게 형사사법 시스템이 실효적으로 작동될 수 있게 해야 할 것임
- 현행법상 비신체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성폭력 범죄인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및 카메라등이용 촬영죄의 보호법익에 대하여,

판례는 “성적 자기결정권과 일반적 인격권, 사회의 건전한 성풍속의 확립”이라고 판시하여, 성적 자기결정권만 보호법익으로 언급한 강간·강제추행 등과 차이를 두었고,

최근 대법원은 “인격체인 피해자의 성적 자유와 함부로 촬영 당하지 아니할 자유”로 그 보호법익을 구체화하며, 성적 자유를 “소극적으로 자기 의사에 반하여 성적 대상화가 되지 않을 자유”라고 판시하였음

• 성폭력처벌법 제13조에서 정한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성적 자기결정권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그림 등을 개인의 의사에 반하여 접하지 않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성적 자기결정권과 일반적 인격권의 보호, 사회의 건전한 성풍속 확립을 보호법익으로 한다(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9775 판결).

•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에서 정한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이른바 '몰래 카메라'의 폐해가 사회문제가 되면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는 촬영 및 반포 등의 행위를 처벌하기 위하여 신설된 조항으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 및 일반적 인격권 보호, 사회의 건전한 성풍속 확립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며(헌법재판소 2016. 12. 29. 선고 2016헌바153 전원재판부 결정 등 참조), 구체적으로 인격체인 피해자의 성적 자유와 함부로 촬영당하지 아니할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도7007 판결 참조). 여기에서 '성적 자유'는 소극적으로 자기 의사에 반하여 성적 대상화가 되지 않을 자유를 의미한다(대법원 2020. 12. 24 선고 2019도16258 판결).

- 강간 등 신체적 성폭력의 보호법익인 성적 자기결정권은 소극적으로 원치 않는 '성행위'를 하지 않을 자유를 의미하나, 비신체적성폭력은 직접적인 성행위가 아니라 '상대방을 성적 대상으로 삼아 이용하는 행위'가 수반됨

- 따라서, 판례가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보호법익을 “의사에 반하여 성적 대상화가 되지 않을 자유”라고 판시한 것은 강간죄 등과 구별되는 비신체적인 성폭력의 본질과 침해의 특성을 반영하여 보호법익을 정의한 것으로, 언어적 성폭력이나 사물을 대상으로 물질 등을 이용하는 성폭력 등 다른 비신체적 성폭력도 같은 맥락에서 보호법익을 설정함이 타당함
- 원치 않는 성적 대상화는 상대방에게 스스로의 가치관에 따라 사회공동체 안에서 인격을 형성·유지·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인 ‘인격권’에 중대한 침해를 초래하며, 특히 독자적인 성적 관념 하에 자기의 성적 정체성과 자아상을 결정하고 유지할 권리인 ‘성적 인격권’의 본질을 훼손하는 행위임
- 따라서, 사회 변화, 기술의 발달 등에 따라 새롭게 심각한 성적인 범죄행위로 인식되고 있으나, 법률의 미비로 제대로 성범죄로 처벌되지 않고 있는 언어적 성범죄, 메타버스 등 사이버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성적 가해 행위, 소위 ‘정액테러’와 같은 비접촉 성범죄 등 새로운 유형의 성범죄를 포섭할 수 있는 ‘성적 인격권 침해 행위’에 관한 처벌 규정을 마련하여야 함

3 신중 플랫폼 공간에서의 성범죄 방지를 위한 보안처분

- 기술 발전에 따라 성적 인격권 침해 범죄의 장소가 메타버스 등 신중 인터넷 공간으로 확대·진화되고 있는바, 그 주된 이용자가 10대 아동·청소년인 점을 고려할 때, 신중 플랫폼을 이용하여 웹상에서 원격으로 이루어지는 성범죄를 사전에 예방·차단할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필요함
- 현재 성범죄 예방 및 방지를 위한 사회 내 처우로 가해자 신상정보 등록, 보호관찰, 수강명령, 전자장치 부착 등 다양한 보안처분 제도가 실시되고 있으나, 성범죄 재범률은 감소하지 않고* 특히 디지털 성범죄의 재범률은 매우 높음(신상 정보등록사건 기준,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동일 죄명 재범율은 75%로** 성범죄 유형 중 최고)

1 *재등록 사건 현황(2008-2018 신상정보등록 사건 누계) |⁴

※ 단위 : 건(%)

| 연도 재등록 | 계 | 2008 | 2009 | 2010 | 2011 | 2012 | 2013 | 2014 | 2015 | 2016 | 2017 | 2018 |
|-----------|---|--------------|----------|----------|----------|-----------|-----------|-----------|------------|-------------|-------------|-------------|
| | 계 | 2,901 (%) | - 0.0 | 1 0.1 | 5 0.2 | 15 0.5 | 23 0.8 | 56 1.9 | 197 6.8 | 349 12.0 | 550 19.0 | 738 25.4 |

4 법무부 「2020 성범죄백서」

Ⅰ **재등록대상자 죄명 현황(2008-2018 신상정보등록 사건 누계) |⁵

※ 단위: 건(%)

| 재등록 1차 등록 | 계 | 강간 등 | 강제추행 | 공중밀집장소 추행 | 카메라등이용 촬영 | 통신매체이용 음란 | 음란물제작 배포 |
|--------------|-------|---------------|---------------|---------------|---------------|---------------|---------------|
| 계 | 2,901 | 422 | 1,361 | 372 | 508 | 49 | 12 |
| | (%) | (14.5) | (46.9) | (12.8) | (17.5) | (1.7) | (0.4) |
| 강간 등 | 815 | 263 | 408 | 32 | 52 | 6 | 1 |
| | (%) | (32.3) | (50.1) | (3.9) | (6.4) | (0.7) | (0.1) |
| 강제추행 | 1,106 | 116 | 777 | 100 | 75 | 11 | - |
| | (%) | (10.5) | (70.3) | (9.0) | (6.8) | (1.0) | - |
| 공중밀집 장소추행 | 332 | 96 | 96 | 204 | 22 | 1 | - |
| | (%) | (28.9) | (28.9) | (61.4) | (6.6) | (0.3) | - |
| 카메라등 이용촬영 | 4285 | 36 | 36 | 26 | 321 | 2 | - |
| | (%) | (8.4) | (8.4) | (6.1) | (75.0) | (0.5) | - |
| 통신매체 이용음란 | 56 | 11 | 11 | 2 | 8 | 27 | - |
| | (%) | (19.6) | (19.6) | (3.6) | (14.3) | (48.2) | - |
| 음란물 제작배포 | 16 | 5 | 5 | - | - | 2 | 6 |
| | (%) | (31.3) | (31.3) | - | - | (12.5) | (37.5) |

- 그 중 보호관찰은 대상자의 준수사항 이행에 대한 지도·감독을 통해 재범을 예방하는 제도로 디지털 성범죄를 비롯하여 성범죄 전반에 통상적으로 실시되나, 최근 6년간 보호관찰을 받은 성폭력사범의 재범률은 4.8%에서 6.2%로 증가하여(같은 기간 전체 보호관찰 대상자의 재범률은 7.6%에서 7.2%로 소폭 감소하였음) 성범죄에 있어 보호관찰의 실효성이 보다 강화될 필요성 있음

Ⅰ 성폭력사범 보호관찰 대상자 재범률 |⁶

| 구분 | 2015년 | 2016년 | 2017년 | 2018년 | 2019년 | 2020년 |
|---------|------------|------------|------------|------------|------------|------------|
| 실시사건(명) | 9,010 | 9,069 | 9,004 | 9,340 | 8,855 | 8,627 |
| 재범자(명) | 432 | 554 | 604 | 579 | 611 | 533 |
| 재범률(%) | 4.8 | 6.1 | 6.7 | 6.2 | 6.9 | 6.2 |

- 성범죄에서 현실 세계의 시·공간적 한계를 전제로 하는 기존의 준수사항*(Ex. '야간 시간대 외출 제한', '특정 장소 출입 금지' 등) 만으로는 재범 요인의 제거·약화를 기대하기 어려운 범죄 유형들이 늘고, '재범 우려 대상자에 대한 접근'이 메타버스 등 신종 온라인 공간을 매개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그에 대한 금지를 준수사항에 반영할 필요 있음

5 법무부 「2020 성범죄백서」

6 법무부 「2020 성범죄백서」

| *현행 보호관찰 대상자 준수사항(보호관찰법 제32조) |

| 일반준수사항(제2항) | 특별준수사항(제3항) ⁷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거지 상주 및 생업 종사 • 악행 및 우범자와 교제 등 금지 •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 준수, 방문시 응대 • 주거지 이전 또는 1개월 이상 국내외 여행시 사전 신고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야간 등 특정 시간대 외출 제한 • 특정 지역·장소에의 출입 금지 • 피해자 등 재범 대상 우려 특정인에의 접근 금지 • 범죄행위로 인한 손해 회복 노력 • 일정한 주거 없는 자의 주거지역 제한 • 사해행위 금지 • 음주 제한(일정량 이상 금지) • 마약 등 중독성 있는 물질 사용 금지 • 마약류 투약 등에 관한 검사 준수 • 기타 재범 방지를 위해 필요한 사항⁸ |

- 성범죄 유형이나 개별 보호관찰 대상자의 특성에 따라 법령상 소지 등이 금지된 영상 또는 재범 우려 대상자에 대한 온라인상 접근 차단이 근본적인 범죄요인의 근절로 평가되는 경우, 법원의 명령에 따라 구체적인 접근 금지를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의 기준으로 삼을 수 있도록 준수사항 부과 근거를 법률에 명문화함이 상당함

⁸ 미국은 사회내 처우인 보호관찰부 집행유예(probation), 가석방 후 보호관찰(Parole), 감독조건부 석방(Supervised Release)에 참가하는 대상자들에게 법원이 연방 법률 또는 양형지침서에 명시된 준수사항을 형에 부과하는데, 성범죄(Sex Offenses)로 유죄 인정된 대상자에게 양형지침서에 따라 특별준수 사항으로 ▲보호관찰소로부터 승인받은 성범죄자의 치료와 감시프로그램에 참석을 명령할 수 있고, ▲ 성범죄와 관련된 컴퓨터나 쌍방 대화형 컴퓨터서비스의 사용을 제한하며*, ▲ 준수사항 위반 등 불법적 행위에 관한 합리적 의심이 있을 경우 보호관찰관이 영장 없이 대상자의 신체, 소지품, 집, 컴퓨터 기타 전자통신기기, 데이터 저장장치 또는 미디어 등에 관해 수색할 수 있음

* 뉴욕주의 경우, 전자보안법(e-STOP⁹)을 제정하여 유죄판결을 받고 가석방 중인 성범죄자들의 온라인 게임 이용 및 커뮤니티 활동을 금지하는 '오퍼레이션:게임 오버(Operation: Gave Over)' 정책¹⁰을 2012년부터 시행 중 (※ 2012년 3,500명을 시작으로 2016년 기준 누계 총 18,000여 명의 등록된 성범죄자들이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페이스북 등 40여개 사이트 및 기술 서비스로부터 차단)

7 법원, 보호관찰심사위원회가 보호관찰대상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부과

8 **보호관찰법 시행령 제19조(특별준수사항)** : ① 운전면허 취득 전까지 운전 금지 ② 직업훈련, 학과교육, 성행 개선을 위한 교육, 치료 및 처우 등 보호관찰관의 지시 준수 ③ 범죄 관련 특정 업무 관여 금지 ④ 학교수업에 성실 참석 ⑤ 정당한 생활 수입원에 대한 자료의 정기적 제출 ⑥ 흉기 등 위험한 물건 보관·사용 금지 ⑦ 가족 부양 등 가정생활에서 성실한 책임 이행 ⑧ 기타 대상자가 준수할 수 있고 자유를 부당하게 제한하지 않는 범위에서 개선·자립에 도움 된다고 인정되는 구체적인 사항

9 The Electronic Security and Targeting of Online Predators Act

10 ① 성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자들은 의무적으로 자신의 전자메일 주소, 온라인 아이디, 닉네임 등 특정 네트워크 접속에 필요한 정보 일체를 주 사법당국에 제출(새로운 인터넷 사이트에 가입하거나 사용자 이름 변경시 해당 사실도 보고) ⇨ ② 주 사법당국은 온라인게임 업체들과 맺은 협정(게임 플랫폼에 성범죄자 접속을 제한하는 '오퍼레이션:게임 오버')에 따라 위 정보를 업체들에게 제공 ⇨ ③ 게임 업체들은 해당 정보를 활용하여 계정 삭제·차단 등 접근 금지 조치(매주 등록 정보 갱신)

4 권고사항

가. 성적 인격권 침해 범죄 신설

성폭력처벌법에 비신체적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성적 인격권 침해행위를 독자적인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처벌하는 근거 규정을 마련할 것을 권고함

- ‘원치 않는 성적 대상화가 되지 않을 자유’를 의미하는 성적 인격권에 대한 침해는 피해자와 그 인격을 표상하는 온라인상의 캐릭터, ID 등 디지털 데이터와 물건을 대상으로 하는 원치 않는 성적 표현을 모두 포함하며 법문상 ‘성적 언동’으로 규정될 수 있음
- ‘성적 언동’은 남녀고용평등법 및 국가인권위원회법 상 ‘성희롱’*에 관한 정의 규정(각 법률 제2조)에서 사용되는 개념이며, 법문상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는 행위”가 판단기준으로 명시되어 있고 다수의 판례에 의해 정립된 개념으로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지 아니함¹¹
 - * 다만, ‘성희롱’이라는 용어는 자칫 성범죄를 희화화하고 범죄성을 희석시킬 우려가 있어 ‘성적 괴롭힘’이라는 용어로 대체함이 바람직함
 - ** 한편, ‘성적 수치심’,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 등의 용어는 지나치게 가해자 중심적이거나, 피해자의 다양한 경험을 충분히 설명하지 못한다는 등의 비판이 있어 사용을 지양함
- 판례가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 여부의 판단기준으로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게 하는 행위”를 제시하는 것과 비교해 볼 때, ‘성적 언동’에서의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는 행위는 그보다 더 넓은 범주, 즉 언어적인 표현이거나 시각적인 행위 등 성적 대상화 방식의 광범위한 행위 유형을 포섭한다는 점에서 성적 자기결정권이 아닌 비신체적 인격까지 고려하는 성적 인격권 침해 범죄의 행위 태양으로 규정함이 상당함
- 또한, 성적 괴롭힘에 대해 구체적인 국가 형벌권을 작동시키는 근거가 되는 점을 고려하여 처벌 규정의 명확성을 확보하기 위해 구성요건에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 내지 만족’이라는 목적 요건을 추가함이 상당함

※ ‘지속성’요건에 관하여 찬성 및 반대 의견이 양립하여 1안, 2안으로 제시

11 성적괴롭힘 행위의 형사처벌을 반대하는 견해는 ①성적괴롭힘 행위가 사소한 침해이므로 비범죄해야 하고, ②현행법 해석을 통해서도 처벌 가능하고, 민사적, 행정적 제재가 가능하며, ③노인, 아동, 장애인 대상 성희롱 처벌은 적어도 성희롱이 성적 학대행위로 인정되거나 그것이 성폭행과 병렬적으로 판단될 수 있는 수준이거나 성희롱 행위를 이용한 추행 및 강간으로 나아갔을 때, 즉 현행법상 형사범죄의 수준에 이른 행위를 처벌의 대상으로 삼고 있으므로, 직장 내 성희롱 등과 같이 특별한 관계성을 바탕으로 한 성희롱행위 그 자체를 형사법의 규율대상으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 그러나, 찬성하는 견해는 ①성폭력범죄가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범죄라면 원치않는 성적괴롭힘도 여기에 해당하며, 사회 전반에서 다양한 형태의 성적 괴롭힘이 만연해 있고, 사이버상의 추행이나 성적괴롭힘 발생이 증가하는 등 그 정도가 심각하며, 모욕, 폭행 등이 그 정도가 사소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처벌할 수 있으므로 침해 정도가 경미하다고 반드시 비범죄화할 것은 아니고(다만 형사처벌되는 성적 괴롭힘 내용은 노동법 영역에서보다 좀더 제한적이어야 함), ②현행법상 적용되지 않는 영역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며, 노동법 영역에서 발생하는 성적괴롭힘 행위에 대한 형사 처벌과 함께 일상생활 영역에서 발생하는 성적괴롭힘 행위도 형사처벌 할 필요성이 있고, 성희롱 개념을 여러 법률에서 달리 규정할 입법목적이나 필요성은 보이지 않으며, ③현재 그 개념, 적용범위 등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 오히려 성희롱 해당 여부를 명확히 하여 법적용상 있을 수 있는 어려움을 없애기 위해서 통일된 개념이 필요하다고 주장(한국비교형사법학회 「비교형사법연구」 제22권 제4호 안경옥, 김희정 「성적 괴롭힘의 형사처벌 가능성에 대한 비교법적 검토」 참조)

- 구체적 법률 내용(안)

보호법의

- 성적 인격권

구체적 법률 내용(안)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다음과 같이 근거 규정 신설

(1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의2 (성적괴롭힘)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 내지 만족을 위한 목적으로 지속적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언동을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의2 (성적괴롭힘)

- ①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 내지 만족을 위한 목적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언동을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② ①항의 행위를 지속적으로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포괄적인 성적 인격권 침해의 행위 유형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법정형은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를 규정한 성폭력처벌법상 통신매체이용음란죄보다 낮게 설정하였음

나. 성범죄 보호관찰 대상자의 준수사항 개선

- 성범죄자에 대한 사회 내 처우로 보호관찰을 실시함에 있어 기술 발전에 따라 변화된 범죄 환경과 다양한 범죄 유형을 고려하여 개별적인 범행 특성에 따라 재범 위험요인을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준수사항이 부과될 수 있도록 법률적 근거를 마련할 것을 권고함
- 법원의 명령에 따라 보호관찰 대상자에게 부과할 수 있는 특별준수사항에, ① 불법촬영물 등(성폭법,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및 복제물, 불법합성물,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소지·보관·시청 금지 및 불법촬영물 등의 소지 등 여부를 점검하기 위한 보호관찰관의 지시(휴대폰, 컴퓨터 등 인터넷 기기에 불법촬영물 점검 프로그램 설치)에 따르도록 하는 내용을 추가하고, ② 현행법상 준수사항으로 규정된 '재범 대상 우려 있는 사람에 대한 접근 금지'와 관련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사람의 인격을 표상하는 온라인상의 캐릭터, ID 등 디지털 데이터와 물건에 접근하는 방식도 금지되도록 보호관찰법을 개정할 것을 권고함

| 현행 보호관찰법 | 개정안 ¹² |
|-----------------------------------------------------------------------------------------------------------------------------------------------------------------------------------------------------------------------------------------------------------------------------------------------------------------------------------------------------------------------------------------------------------------------------------------------------------------------------------------------------------------------------------------------------------------------------------------------------------------------------------------------------------------------------------------------------|----------------------------------------------------------------------------------------------------------------------------------------------------------------------------------------------------------------------------------------------------------------------------------------------------------------------------------------------------------------------------------------------------------------------------------------------------------------------------------------------------------------|
| <p>제32조(보호관찰 대상자의 준수사항)</p> <p>③ 법원 및 심사위원회는 판결의 선고 또는 결정의 고지를 할 때에는 제2항의 준수사항 외에 범죄의 내용과 종류 및 본인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면 보호관찰 기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특별히 지켜야 할 사항으로 따로 과(科)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야간 등 재범의 기회나 충동을 줄 수 있는 특정 시간대의 외출 제한 2. 재범의 기회나 충동을 줄 수 있는 특정 지역·장소의 출입 금지 3. 피해자 등 재범의 대상이 될 우려가 있는 특정인에 대한 접근 금지 4. 범죄행위로 인한 손해를 회복하기 위하여 노력할 것 5. 일정한 주거가 없는 자에 대한 거주장소 제한 6. 사행행위에 빠지지 아니할 것 7. 일정량 이상의 음주를 하지 말 것 8. 마약 등 중독성 있는 물질을 사용하지 아니할 것 9.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상의 마약류 투약, 흡연, 섭취 여부에 관한 검사에 따를 것 10. 그 밖에 보호관찰 대상자의 재범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p>제32조(보호관찰 대상자의 준수사항)</p> <p>③ <좌 동></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2. <좌 동> 3. <좌동>(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사람의 인격을 표상하는 온라인상의 캐릭터, ID 등 디지털 데이터와 물건에 접근하는 방식을 포함한다) 4.~9. <좌동> 10. 불법촬영물 등(성폭력처벌법 제14조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 동법 제14조의2에 따른 편집물 등, 청소년보호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소지·보관·시청 금지 11. 불법촬영물 등의 소지 등 여부를 점검하기 위한 보호관찰관의 지시(휴대폰 등 인터넷 기기 제출 요구 및 불법촬영물 차단 프로그램 설치 등)에 따르고 이를 방해하지 아니할 것 12. <좌동 :10.호> |

- 아울러, 온라인 환경에서의 재범 방지를 위해 현행법상 특별준수사항인 '재범의 기회나 충동을 줄 수 있는 특정 지역·장소의 출입 금지'를 디지털 공간에 구현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것을 권고함

* ex) 메타버스, 게임사이트 등 성범죄에 취약한 플랫폼 위주로 법무부와 플랫폼 사업자가 협력하여 성범죄자의 계정을 삭제·차단하는 체계 구축

다. 플랫폼 사업자의 협조·관리 의무 설정

- 일정한 범위의 불법 정보에 대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은 방송통신위원회의 심의에 따라 해당 정보의 처리를 거부·정지·제한하도록 되어 있는바(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 온라인 공간에서의 성적 인격권 침해 방지를 위해 법률상 유통 금지되는 불법정보에 성적 인격권을 침해하는 내용의 정보가 포함되도록 정보통신망법을 개정할 것을 권고함

12 '21. 2. 백혜련 의원 등 17인 보호관찰법 개정안 발의(불법촬영물 등 소지를 확인하기 위한 휴대전화 등 제출 요구 수용 및 불법촬영물 등 차단 프로그램 방해 금지)하였으나, 준수사항 중 필수인 불법촬영물 등 소지·보관·시청 금지 조항은 없음

| 현행 정보통신망법 | 개정안 |
|-----------------------------------------------------------------------------------------------------------------------------------------------------------------------------------------------------------------------------------------------------------------------------------------------------------------------------------------------------------------------------------------------------------------------------------------------------------------------------------------------------------------------------------------------------------------------------------------------------------------------------------------------------------------------------------------------------------------------------------------------------------------------------------------------------------------------------------------------------------------------------|-------------------------------------------------------------------------------------------------------------------------------------------------------------------------------------------------------------------------------------------------------------|
| <p>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 2.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사실이나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정보 3.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 4.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멸실·변경·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하는 내용의 정보 5. 「청소년 보호법」에 따른 청소년유해매체물로서 상대방의 연령 확인, 표시의무 등 법령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제공하는 내용의 정보 6. 법령에 따라 금지되는 사행행위에 해당하는 내용의 정보 6의2. 이 법 또는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령을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거래하는 내용의 정보 6의3. 총포·화약류(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폭발력을 가진 물건을 포함한다)를 제조할 수 있는 방법이나 설계도 등의 정보 7. 법령에 따라 분류된 비밀 등 국가기밀을 누설하는 내용의 정보 8. 「국가보안법」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수행하는 내용의 정보 9. 그 밖에 범죄를 목적으로 하거나 교사(敎唆) 또는 방조하는 내용의 정보 | <p>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p> <p>① <좌 동></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좌 동> 1의2. 성적 욕망 내지 만족을 위한 목적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연동(사람의 인격을 표상하는 캐릭터, 계정 등 디지털 데이터에 접근하는 방식을 포함한다)을 하는 내용의 정보 2.-9. <좌동> |

※ 동법 제74조 벌칙 규정에도 추가하여 실효성 확보할 필요 있음

- 또한, 가상현실 등 신종 플랫폼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자신이 관리하는 공간에서 일어나는 법익 침해 행위와 관련하여 그 역할과 책임에 상응하여 부담하는 일정 범위의 협조·관리 의무를 구체적·체계적으로 설정하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임
- 특히, 사업자가 플랫폼 내의 성범죄에 대해 잠재적 방조범이 아닌 수사와 증거보존의 협력자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입법적 설계를 하는 것이 범죄억지력 강화에 훨씬 실효적인 대안이 될 수 있음
- 따라서, ▲ 사업자가 유통방지 조치 의무 이행 및 스스로의 인지 등에 의해 범죄 정황 등을 발견한 경우 즉시 수사기관에 통지하도록 하는 신고 의무와(강선우 의원실 대표 발의) ▲ 수사 및 처벌에 필요한 증거로서 성착취 대화 등 불법영상물 및 이용자(가해자, 피해자)에 대한 기초적인 정보에 관하여 보존 조치를 취하도록 협조·관리 의무를 함께 법제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4 기대 효과

- 사회와 기술의 변화에 따라 새롭게 등장하였으나 기존의 모욕죄나 명예훼손죄로 포섭되지 않는 메타버스 등 온라인 공간에서의 성적 침해행위나 언어적 성폭력에 대해 성범죄 특성에 맞는 형사적 대응을 통해 범죄 억지력 제고
- ‘정액 테러’와 같이 비신체적 방법으로 행해지는 성적 인격권 침해 행위를 성범죄 차원에서 규제하여 가해자 처벌·관리 및 피해자 보호에 불합리 또는 공백 해소
- 성적 자기결정권과 구별되는 성적 인격권을 보호법익으로 인정하고 그에 대한 침해를 독자적인 범죄로 규정함으로써 인격권의 실질적 보장 및 형사사법을 통한 헌법상 가치 실현
- 성범죄자에 대해 변화된 범죄 환경을 고려하여 재범 위험요인을 효과적으로 통제하는 사회 내 처우 및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 있는 협조·관리를 통해 실효적인 재범 방지 및 신종 플랫폼을 포함한 온라인 공간에서의 성범죄 예방

디지털 성범죄 등 전문위원회 제6차 권고안

- 재판절차에서 성폭력 피해자 보호 방안 -

권고 개요

1. 기본 방침

- 재판절차에서의 성폭력 피해자 보호, 2차 피해 방지 및 진술권 보장을 위해 디지털 성범죄 등 성범죄 사건의 심리 절차와 방식을 개선하고, 피해자의 소송 기록에 대한 접근을 보장할 것을 권고합니다.

2. 권고사항

가. 증언 방식의 선택권 보장

- 수사·기소 및 증인 출석 등 절차에서 성범죄 피해자에게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신문 등 다양한 증언 방식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선택 기회를 보장할 것을 권고합니다.

나. 증인신문 절차 및 증거조사 방식 개선

-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증인 신문시, 사건과 무관한 피해자의 성적 이력·평판 등 사적 정보와 관련된 부적절한 신문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재판장이 소송지휘권을 행사하고, 이를 위반하는 질문에 관해 증거능력을 제한하는 규정을 형사소송법에 신설할 것을 권고합니다.
- 피해자의 신체 등이 촬영된 사진·영상물에 대한 증거조사시, 필수적으로 비공개로 진행되고, 현재의 대형 스크린 상영 방식이 아닌 개별 영상·음성 장치에 의해 재생되도록 성폭력처벌법에 특례규정을 신설할 것을 권고합니다.

다. 재판 중 획득한 피해자 사적 정보 유출 등 금지

- 재판 중 획득한 피해자의 사적 정보 유출 또는 공개를 금지하고, 피고인에 의한 2차 가해를 양형기준상 가중적 양형요소로 명시할 것을 권고합니다.

라. 피해자의 소송 기록 접근 보장

- 소송 기록 중 피해자 본인 진술·제출 서류 및 피해자의 신체 등이 촬영·녹음된 매체물에 대해 피해자의 원칙적 열람·등사를 허용하고, 불허시 이유를 고지하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할 것을 권고합니다.

3. 기대효과

- 가. 재판 절차에서 피해자 인권을 보호하고, 재판 절차 진술권의 실질적 보장
- 나. 법률에 근거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소송지휘권의 행사 기준 마련하고, 사건과 무관한 피해자의 사생활 공격 및 사적 정보 유출을 금지하여 재판 과정에서 2차 피해 방지
- 다. 디지털 성범죄 등 신종 범죄에 대응하는 선진형 재판 절차 확립
- 라. 2차 가해로 인한 실제 판단의 오류 가능성 감소에 따른 실체적 진실 발견 및 사법절차에 대한 신뢰도 향상

1 권고 배경

- 성폭력 사건 재판에서 피해자들이 겪는 2차 가해가 지속적으로 문제되어 왔으나,¹ 성폭력처벌법에 심리 비공개, 진술조력인의 재판 참여를 규정하는 등 재판 과정에서 성폭력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여러 제도가 마련되었음²

1 2011. 6. 11. MBC뉴스 「“판사가 모욕” 성폭행 피해 여성 자살… 유서 공개」

2 성폭력처벌법 제29조 제1항, 성폭력범죄 등 사건의 심리·재판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규칙 제2조 등

현행법상 성폭력 피해자 증인지원 제도

- 심리 비공개 (성폭력처벌법 제31조)
- 증인지원시설 설치·운영 (성폭력처벌법 제32조)
- 신뢰관계인 동석 (성폭력처벌법 제34조)
- 진술조력인의 재판 참여 (성폭력처벌법 제38조)
-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증인신문 (성폭력처벌법 제40조)
- 차폐시설 등 설치에 의한 증인신문 (형사소송법 제165조의2) 등

- 그러나, 여전히 무분별한 진술 내용 공개, 사건과 무관한 사생활 공격 등 현실적으로 피해자들의 법정 출석 및 증언 등을 어렵게 하는 다양한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고³, 디지털 성범죄의 경우 법정에서의 피해 영상물 재생에 의한 2차 가해*가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옴

* '19. 11. 25자 프레시안 「구00 누가 그를 죽음으로 내몰았나- '사법부도 공범이다' 비판 제기돼」등 다수 기사에서 변호인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법정에서 피해 영상물을 재생하였음을 비판

- 특히, 최근 성폭력처벌법상 미성년 피해자의 진술 영상물의 증거능력 특례조항에 관한 위헌 결정(2018헌바524)에 따라, 향후 재판 과정에서 아동 등 취약한 성폭력 피해자에 대해 보다 세심한 보호가 요구됨
- 이에 (1) 피해자에 대한 증언방식 선택권 부여, (2) 부적절한 증인신문 제한을 위한 증거신문 절차의 개선, (3) 디지털증거의 증거조사 방식 개선, (4) 피고인측의 사적 정보 유출로 인한 2차 가해 행위 금지, (5) 소송기록 열람·등사 제도 개선에 관하여 권고안을 제시함

2 현행 재판 절차상 성범죄 피해자 보호의 문제점

가. 증언방식 선택권 보장 미흡

- 피해자가 피고인과 같은 공간에서 차폐시설만 설치된 상태로 증언하도록 하는 방식은 피고인에 의한 증언 영향을 차단할 수 없는 등 실질적인 증언 지원 제도로 기능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음

※ 절차적으로 피해자들은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증언을 선호하나, 재판 실무상 피해자 의사와 무관하게 피고인 주변에 차폐시설을 설치한 채로 피해자가 피고인과 한 공간에서 증언하는 경우가 다수⁴

3 성폭력 피해자들은 증인소환장을 받고 재판에 출석하여 증언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 ①재판에 출석함으로써 자신의 성폭력 피해사실이 알려질 수 있다는 우려, ②피고인과 다시 대면할 수 있다는 두려움, ③형사소송과정과 절차에 대해 잘 알지 못한다는 사실 등으로 막대한 심리적 부담을 가지게 됨 [법원행정처, 「여성·아동·장애인 성폭력피해자 증인 보호와 그 실현방안에 관한 연구」(2012), 78쪽

4 “안0정 사건이나 이0택 사건 보면 헛기침 소리나, 숨소리 아니면 옆에 변호사하고 이야기하는 말소리 같은 게 다 피해자한테 들리는 거예요. 피해자분들이 ‘굉장히 얼음이 됐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2020. 4. 20. MBC뉴스 「가림막 너머로 쑥 쳐다본 ‘그놈’… 피해자 ‘소름’」)

-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신문은, 피고인의 반대신문권을 충실히 보장할 뿐 아니라, 피해자가 피고인, 판사, 법원 직원 등과 분리된 덜 위압적인 공간(증언실)에서 증언할 수 있어 증인 보호에 효과적이므로 적극적인 활용 방안을 마련할 필요 있음
- 법률상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증언 등 다양한 증인신문 방식이 규정되어 있고, 법원은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증인소환장 송달 시 <증인지원절차 신청서>*를 통해 증인신문방식을 안내하고 있으나, 피해자에게 특정 증언방식 선택 및 신청권이 부여되지 않아 실질적인 증언방식 선택권 보장에 미흡⁵

* 증인지원절차 신청서

(중략)

아래와 같은 절차를 시행하여 줄 것을 신청합니다.

- 아래 -

| | |
|-------------------|-----------|
| 증인신문 전후의 동행 및 보호 | ----- () |
| 비공개 심리(방청객 퇴장) | ----- () |
| 증언 도중 피고인과의 접촉 차단 | ----- () |
| 신뢰관계 있는 사람의 동석 | ----- () |

✓ ※ 동석할 신뢰관계 있는 사람의 인적사항

① 이름 : 김침지

② 증인과의 관계 :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가족, 동거인
 고용주, 변호사, 기타()

재판결과 통지

※ 아래 두 가지 항목에 대하여 **중복 신청이 가능합니다.**

✓ 1. 유무죄 여부 및 유죄 선고시 형량에 대한 간략한 통지 ----- ()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사용 (전화번호 : 010-)

이메일 사용 (이메일 :)

2. 판결문 사본의 송부 ----- ()

(송달받을 주소 :)

다만, 판결등본의 송부를 신청하고자 하는 피해자 등은 피해자 등 판결등본 송부신청서와 민원우편회송용 봉투를 제출하고 재판기록 열람·복사 규칙에 따른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 피해자에게 증언 방식에 관한 정보 제공을 충실히 하고, 실질적인 선택권을 부여할 필요 있음⁶

5 피해자 국선전담변호사 조현주, 2022. 1. 10.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의 수사과정에서의 진술 및 법정증언과 관련하여」 ‘차폐막 설치만을 허가하고, 중계장치에 의한 증언에 대해서는 불허하는 재판부 존재’(17쪽)

6 피해자 국선전담변호사 조현주 2022. 1. 10.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의 수사과정에서의 진술 및 법정증언과 관련하여」 ‘현재 사용하는 증인지원신청서에는 중계장치이용에 관한 항목이 없으므로 그에 대한 개선 필요’(19쪽)

나. 부적절한 증인신문

▶ 문제점

- 성범죄 피해자들은 증인신문 과정에서 ▲성관계 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묘사와 재연의 요구 ▲피해자에 대한 잘못된 통념에 근거한 비난 ▲반복적인 질문 ▲당해 사건과 무관한 질문(특히, 피해자의 성적 이력·평판 등 사생활 정보) 등 위협적이거나 모욕적인 질문을 경험^{7,8}
 - ※ 판사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90%가 '검사 또는 변호사가 성범죄 재판의 증인신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부적절한 질문을 한다고 생각한 적 있다'고 답변⁹
 - ※ 재판 과정에서 증인신문 뿐만 아니라 사건과 무관한 피해자의 사생활 관련 증거를 사실조회 신청 등의 방식으로 확보하여 가명 피해자의 신원, 과거 질병 정보 등으로 피해자를 압박하는 사례도 있음¹⁰
- 공개재판에서 피고인 반대신문권의 충실한 보장은 당연하나, 피해자의 사생활 및 성적 이력, 모멸감을 느끼게 하는 방식 등 부적절한 내용과 방식까지 반대신문권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볼 수는 없고, 이는 피해자의 증언 등을 주저하게 만들어 헌법상 보장된 피해자의 재판 절차에서의 진술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음

* 대한민국 헌법 제27조 ⑤

형사피해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사건의 재판절차에서 진술할 수 있다.

- 그럼에도 다수 피해자가 문제를 제기하는 '피해자의 성적 이력·평판 등 사생활 정보에 관한 부적절한 신문'을 제한할 수 있는 실질적 방안 부재¹¹
 - ※ 현행 증인지원은 증인신문 '방식'의 특례로 피해자의 심리적 안정 도모에 초점, 증인신문 '내용'에 관하여는 재판장 재량에 따른 소송지휘권 행사에 맡길 뿐 구체적인 제한 기준 설정되어있지 않음
 - ※ 「성범죄재판 실무편람(법원행정처 발행)에는 법관이 피고인 측으로부터 미리 반대신문사항을 제출받아 검토한 다음, 적절치 않은 부분을 특정하고 그 부분에 대한 피고인 측의 입증취지에 관한 의견을 들은 다음 신문 제한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¹² 하나, 실무상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 경우 있음
 - ※ UN 여성차별철폐협약¹³ 위원회는 한국의 국가보고서에 대한 8차 심의(2018. 2. 22.)를 통해 사법절차에서 피해자의 성적 이력(sexual background)의 증거 사용 금지를 권고한 바 있음¹⁴

7 법원행정처 「여성·아동·장애인 성폭력피해자 증인 보호와 그 실현방안에 관한 연구」(2012), 98-110쪽

8 2021. 6. 28. 한겨레21 「구제받지 못한 피해자의 모멸감」

9 2019. 4. 5. 대법원 전대법연구회 「미투, 그 이후 - 법정으로 온 성범죄 사건의 쟁점들」

10 성폭력 피해자가 가명으로 수사 및 재판을 진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측이 유무죄와는 무관한 피해자의 사생활 정보가 담겨있는 병원 의무기록에 관한 사실조회촉탁신청을 하였고, 법원이 위 신청을 허가하여 피해자의 실명, 주민번호, 과거 질병 정보 등이 모두 피고인에게 공개된 사례 존재 (2019. 9. 12. 오마이뉴스, 「피해자 정보' 건네준 고등군사법원, 이를 유출한 가해자들」)

11 형사소송법 제299조, 성폭력처벌법 제29조, 청소년성보호법 제25조, 형사소송규칙 제74조, 성폭력범죄 등 사건의 심리·재판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규칙 제2조 등이 간접적으로나마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과정에서의 부적절한 질문을 제한할 수 있는 규정으로 거론되나, 보다 구체적인 지침을 마련해야 한다는(여성가족부 주최, 「성폭력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세미나 - 수사기관·법원·언론·가해자 등에 의한 2차 피해를 중심으로」,30쪽)

12 사법정책연구원, 「성폭력 재판절차에서의 피해자 증인신문 재판참고사항에 관한 연구」 213쪽

13 양성평등 및 여성 지위 향상을 위해 유엔총회에서 채택, 1981년 발효된 국제조약으로, 당사국에 여성 인권 및 성평등 실현 의무 부과 및 국가가 취해야 할 조치 규정(189개 국가 기준, 우리나라는 1984년 기준)

▶ 해외 입법례

- (독일) 형사소송법에 재판장이 본안과 관련 없는 질문을 허용하지 않을 수 있다는 등의 일반적인 소송지휘권에 관한 규정(제241조) 및 증인의 인격권 보호를 위해 질문권을 제한하는 규정(제68조의a)*을 두고 있음

* 독일 형사소송법 제68조의a [인격권 보호를 위한 질문권의 제한] (1) 증인이나 그의 제52조 제1항에 따른 친족에게 불명예가 될 수 있는 사실 또는 그들의 사적인 생활영역과 관계있는 사실에 관한 질문은 불가피한 경우에만 해야한다.

- (미국) 연방 및 모든 주에서 성폭력 피해자 증인의 과거 성경험에 대한 신문 및 증거능력을 제한하는 '강간피해자보호법 (Rape Shiled Law)' 시행 중

▶ 연방증거규칙(Federal Rules of Evidence)은 성적 비행에 관한 민·형사 절차에서 ① 피해자가 다른 성적 행동을 하였음을 입증하기 위해 제출된 증거나 ② 피해자의 성적 취향을 입증하기 위해 제출된 증거는 그 증거로서의 허용성이 원칙적으로 부정되고(§412(a)(1)(2)), 피해자의 동의가 있었음을 입증하기 위한 경우 등 예외적인 경우에만 성적 이력 증거 제출이 허용

▶ 피해자의 성적 이력에 관한 증거의 증거능력 결정을 위해 피고인이 증거를 특정하여 제출 목적을 기재한 서면을 신청하면 법원은 이를 피해자나 당사자들에게 송부하고, 사전에 심문을 열어 피해자 등에게 의견 진술할 기회를 부여하며 신청서와 관련된 서류 및 심문조서는 봉인 유지(§412(c)(2))¹⁵

- (기타) 영국, 캐나다, 호주 등도 성폭력 피해자의 성적 이력 등에 관한 증거를 원칙적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 있음¹⁶

▶ 관련 발의 법안

- 지난 20대 국회에 성폭력 피해자의 성적 이력에 관한 진술 또는 신문에 관하여, 재판장이 소송지휘권에 근거하여 제한하거나 관련 증거의 증거능력을 배제하는 내용의 성폭력처벌법 등 개정안이 발의된 바 있고, 21대 국회에도 관련 법률 개정안이 계류 중임

| 발의일 (대표 발의 의원) | | 법률명 | 구체적 내용 | 경과 |
|-------------------|--------------------------|---------|---------------------------------------|---------------|
| 20대 | '16. 12. 20. (정춘숙 의원) | 성폭력처벌법 | 성폭력 피해자의 성적 이력 증거 사용 및 신문 배제 특례 | 폐기 (임기 만료) |
| | '18. 3. 28. (박경미 의원) | | | |
| | '18. 11. 2. (인재근 의원) | 청소년성보호법 |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 사건에서 피해자의 성 이력 증거 사용 금지 | |
| 21대 | '21. 6. 30. (송재호 의원) | 형사소송법 | 재판장의 피해자 성적 이력에 관한 신문 제한 | 소관위 계류 |

14 Committee on the Elimination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Concluding observations on the eighty periodic report of the Republic of Korea", p.5-6

15 조기영 「성폭력범죄 사건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 방식의 개선 방안」 132-133쪽

16 사법정책연구원 「성폭력 재판절차에서의 피해자 증인신문 재판참고사항에 관한 연구」

▶ 개선 방향

- 피해자의 사생활 관련 신문 및 증거신청을 제한할 수 있도록 재판장의 소송지휘권 및 증거능력 제한 근거를 형사소송법에 규정하여 소송절차의 일반 원칙으로 규율함이 바람직함^{17,18}
- 피해자가 부적절한 신문에 노출되는 상황을 법적 근거와 절차에 따라 사전 방지하기 위해 재판장이 피고인측으로부터 미리 신문사항을 제출받아 검토 후, 적절하지 않은 신문내용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성범죄재판실무편람'의 내용을 법률에 규정함이 상당

다. 디지털 증거 조사 방식의 문제점

▶ 피해영상물 증거조사 관련 현행 규정

형사소송법 제292조의3(그 밖의 증거에 대한 조사방식) 도면·사진·녹음테이프·비디오테이프·컴퓨터용디스크, 그 밖에 정보를 담기 위하여 만들어진 물건으로서 문서가 아닌 증거의 조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17 미국식 증거능력 제한 방식을 취하고 있었던 2016년과 2018년 개정 법률안보다, 증인신문 방식의 개선을 통해 성범죄 사건 피해자인 증인의 인격권을 보호하는 2021년 개정 법률안이 한국 형사소송법 체계에 더욱 부합한다는 의견(조기영, 「성폭력범죄 사건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 방식의 개선방안」, 134쪽)

18 사생활 관련 질문에 증거능력을 제한하는 내용의 개정안에 관하여 반대이견은 ①형사소송법상 증거배제 규정이나, 자유심증주의 원칙과 상충할 여지가 있고, ②심리나 재판 과정에서 성폭력 피해자를 보호배려하는 규정들을 이미 대법원 규칙으로 두고 있고(여가부 의견) 「성폭력범죄 등 사건의 심리 재판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규칙」 제2조(보호와 배려) 법원,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 그밖의 소송관계인은 심리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의 인격과 특성을 배려하고, 당해 사건과 무관한 피해자의 사생활에 관한 신문 또는 진술이 이루어지거나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 또는 공포감을 느낄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형사소송법 (제299조 재판장은 소송 관계인의 진술 또는 신문이 중복된 사항이거나 그 소송에 관계없는 사항인 때에는 소송관계인의 본질적 권리를 해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이를 제한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규칙(제74조제1호 위협적이거나 모욕적인 신문의 금지), 성폭력처벌법(제29조 제1항 '수사기관과 법원 및 소송관계인은 성폭력범죄를 당한 피해자의 나이, 심리상태 또는 후유장애의 유무 등을 신중하게 고려하여 조사 및 심리·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의 인격이나 명예가 손상되거나 사적인 비밀이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청소년성보호법(제25조제1항 수사기관과 법원 및 소송관계인은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당한 피해자의 나이, 심리상태 또는 후유장애의 유무 등을 신중하게 고려하여 조사 및 심리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의 인격이나 명예가 손상되거나 사적인 비밀이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등 다수 규정으로 기피 보호하고 있고, ④성 이력이 피·고소인 사이에서의 관계, 발생 경위, 사건 이후의 정황 등과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기초로 한 심리·재판이 불가피할 수 밖에 없어 일률적 증거 배제는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고(법무부 의견), ⑤수사 단계에서 실제적 진실 발견을 위한 광범위한 수사의 필요성이 있으나, 재판에서 증거로 할 수 없는 사항에 대해 과잉수사를 한다는 이유로 항의를 받는 등 수사상 애로사항이 발생할 여지가 있고(경찰청 의견), ⑥배심원 재판을 기본으로 하는 영미법계 형사재판 절차에서 배심원의 판단에 부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증거를 재판에서 배제하기 위한 제도가 우리 형사법체계와 조화될 수 있는지 검토가 필요하고, ⑦피고인의 방어권과 변호인의 변호권의 본질적인 권리를 해할 우려가 있는 등을 근거로 하고 있음
그러나, ①사건과 무관한 피해자 사생활 관련 질문 등 부적절한 질문에 관한 판사의 소송지휘권을 형사소송법에 명시하고, 이를 위반한 질문에 관하여 증거능력을 제한한다면 이는 형사소송법 체계나 자유심증주의에 반하지 않고, ②③과 같은 기존의 규정들이 성폭력 피해자들이 법정에서 사건과 무관한 질문에 의해 고통받는 것으로부터 보호함에 있어서 제대로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개별 재판부 성향에 따라 큰 차이가 있어 왔는데, 제대로 피해자를 보호하지 못하여 온 위 규정들의 존재를 이유로 보다 효과적으로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규정의 신설을 반대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며, ④⑤와 같이 실제적 진실의 발견을 위한 필요성은 그러한 경우 예외적으로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규정을 둬으로써 해결할 수 있고, ⑥증거능력 제한이 배심제에 필요한 제도로서 발생되었을 수는 있으나, 한 제도는 발생 연원에 한정되지 않고 다양한 효용을 가지며 새로운 방식으로 발전되어 가는바, 현 형사소송 체계에서 피해자에게 극심한 고통을 주고 적극적으로 신고·고소를 하거나, 재판절차에 참여하는 것을 두려워하게 하는 가장 큰 이유 중의 하나인 부적절한 사생활 폭로·음해 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방법으로서의 효용을 부인하는 이유로는 불충분하고, ⑦피고인의 방어권과 변호인의 변호권은 무제한의 권리가 아니며, 법정에서 사건과 무관한 사생활 공격이나 어떤 경우 진실이 아닌 무분별한 내용으로 피해자에게 의도적으로 고통을 주거나 모욕을 가하여 법정 출석 및 증언에 지장을 주어 실제적 진실 발견을 어렵게 하는 것은 피고인의 방어권이나 변호인의 변호권의 본질과 전혀 무관하고 이에 포함되어 있는 권리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형사소송법에 사건과 무관한 피해자의 사생활 등에 관한 증인신문법 판의 소송지휘권을 명시하고, 이에 위반한 질문에 관하여 증거능력을 원칙적으로 제한하되, 실제적 진실 발견을 위해 필요한 경우 등 예외 규정을 두는 방식으로 규정을 신설하여 피해자를 보호함이 상당함

형사소송규칙 제134조의4(영상녹화물의 조사) ③ 법원은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 봉인을 해제하고 영상녹화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재생하는 방법으로 조사하여야 한다. 이 때 영상녹화물은 그 재생과 조사에 필요한 전자적 설비를 갖춘 법정 외의 장소에서 이를 재생할 수 있다.

▶ **문제점**

1) 심리 비공개 여부 근거 규정 부재

- 피해영상물에 대한 증거 조사시, 대개는 방청석에 있는 사람을 퇴장시키는 등 비공개 심리를 진행하나, 이에 대한 명확한 근거 규정이 없어 공개 수위 등에 재판부별 편차가 존재함

※ 디지털 성범죄 사건 피해 영상물 증거조사는 성폭력처벌법(제31조-심리의 비공개)에 규정된 '심리'에 해당하지 않아 증거조사 방식이 재판장의 배려에 달려 있음

→ 증거조사시 비공개를 위한 명확한 근거를 법률에 규정하여 심리 진행에 관한 소송지휘권 행사 기준을 정립할 필요

2) 피해영상물 재생 방식 관련 규정 부재

- 불법촬영물 등 디지털 성범죄 피해 영상·사진(이하 '피해영상물')과 같은 디지털증거는 통상 법정 내 검사석 또는 피고인석 뒤에 설치된 대형 화면을 통해 피해영상물이 재생되면 이를 재판부와 검사, 피고인, 피고인의 변호인 등 사건 관계자들이 함께 시청하는 방식으로 증거 조사가 이루어짐

| 법정 스크린 사진 |



출처 : 법률신문, 2020. 2. 24.

- 법정에 있는 다수인 앞에서 영상물이 재생되는 구도로 피해자의 수치심, 불안감 등 2차 피해가 야기될 수 있으나, 디지털증거가 피해 영상인 경우 재생 방식, 장소 등을 정하는 구체적 규정 없이 재판장의 개별 소송지휘권 행사에 의존하는 한계 존재

* 법정 방청석에 사건과 무관한 사람들이 자리하는 상황에서 불법촬영 영상물 사본을 그대로 재생하는 방식으로 증거 조사가 이루어진 사례 다수 발생¹⁹

* 이른바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 등에 대한 재판시, 피해자 측에서 피해영상물을 법정이 아닌 판사 집무실에서 재생하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아니함²⁰

→ 피해자의 인격이나 명예, 사적인 비밀을 보호할 수 있는 피해영상물 재생 방식에 관한 근거 규정이 마련될 필요

가. 소송 기록 등 공개에 따른 2차 피해

- 디지털 성범죄 등 성범죄 사건의 수사 및 공판 진행 중 피의자나 피고인 또는 그의 제보를 받은 언론사가 보도를 통해 피해자의 사적 정보를 유출*함으로써 2차 피해 유발 상황이 지속적으로 발생

* 특히 피고인 또는 피해자가 유명인인 경우, 증인신문 과정에서 드러난 사생활 관련 내용이 언론에 부분별하게 보도되는 사례 빈번²¹

* '12. 나주 아동 성폭행 사건에서 언론을 통해 피해자의 집 내부 사진, 위성 사진, 지도 등 정보 노출, '21. 쇼트트랙 국가대표 선수 성폭행 사건에서 가해자 측의 소송 관련 자료 유출로 성폭행 사건과 무관한 피해자의 사적 메신저 대화 내용이 언론을 통해 공개됨²²

- 현행법상 재판 중인 사건과 관련하여 피해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소송 기록 자체’를 재판 대응 이외 목적으로 사용한 행위는 형사처벌 대상에 해당*하나, 소송 과정에서 알게 된 피해자의 사적 정보의 오·남용 행위에 대해서는 별도 명확한 제재 규정 부존재

* 열람·등사된 서류 등의 남용 : 1년 이하 징역 또는 5백만 원 이하 벌금(형소법 제266조의16)

* 피해자 신원·사생활 비밀 누설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성폭법 제50조, 제24조 제1항)²³

19 2021. 9. 3. 오마이뉴스 「방청석 모두가 봤다... '디지털 성범죄 영상' 공개 재생한 법원」

20 2020. 6. 12. 한겨레, 「'조주빈 성취취 영상' 증거 시청 놓고 고민 깊은 법정」

21 2018. 7. 26. 미디어오늘, 「안희정 재판 보도, 언론은 '안희정 조력자'였다」 등

22 2021. 10. 19. 미디어스 스포츠인권연구소 「심석희 선수 2차가해 보도 멈춰라」(<http://www.media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8001>)

23 **형사소송법 제266조의16(열람·등사된 서류등의 남용금지)** ① 피고인 또는 변호인(피고인 또는 변호인이었던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검사가 열람 또는 등사하도록 한 제266조의3제1항에 따른 서면 및 서류등의 사본을 당해 사건 또는 관련 소송의 준비에 사용할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교부 또는 제시(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제1항을 위반하는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성폭력처벌법 제24조(피해자의 신원과 사생활 비밀 누설 금지) ① 성폭력범죄의 수사 또는 재판을 담당하거나 이에 관여하는 공무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피해자의 주소, 성명, 나이, 직업, 학교, 용모, 그 밖에 피해자를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게 하는 인적사항과 사진 등 또는 그 피해자의 사생활에 관한 비밀을 공개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제1항에 따른 피해자의 주소, 성명, 나이, 직업, 학교, 용모, 그 밖에 피해자를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는 인적사항이나 사진

※ 독일 형법은 '법원의 비공개심리를 통해 또는 사건과 관련된 공적 문서를 통해 알게 된 사실의 공표 행위'에 대해 처벌 규정을 두고 있음²⁴

- 언론의 보도가 문제될 경우 언론중재위원회의 중재를 통해 기사 삭제 및 손해배상 등으로 일부 사건이 해결되고 있을 뿐, 피해자에 대한 언론보도 관련 규정 및 비밀엄수의무 관련 통계도 부존재

→ 피고인 등이 열람·등사를 통해 확보한 **소송기록 또는 재판 진행 과정에서 알게 된 피해자의 사적 정보를 유출·공개하는 행위**에 대해 **처벌 및 양형 참작 규정 신설 필요**

※ 현행 법원 양형기준상 성폭력 사건의 가중요소로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항목 있으나, 통상 범행사실을 공개 또는 공개할 의사를 표명하여 압력을 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합의를 강요한 경우'를 의미, 범행사실 자체가 아닌 피해자의 성적 이력 정보 등이 합의와 무관하게 악의적 또는 공격적으로 노출되는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않음

나. 소송 기록 열람·등사권 보장의 미흡

- 디지털 성범죄의 경우, ①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거나, ② 구체적인 가해 유형이나 피고인을 특정하기 어렵고, ③ 수사기관에서 증거물로 확보된 후에야 피해사실을 특정할 수 있는 경우가 많음
 - 피해자가 재판절차에 참여하여 의견을 개진하거나, 피해 회복 내지 확산 방지를 위해 증거를 직접 확인할 필요가 있음에도, 현행법상 재판 진행 중이라거나 다른 피해자들의 개인정보 문제 등으로 피해자에 대한 소송기록 열람·등사가 제한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음
 - 또한, 현행법상 피고인과 변호인의 소송기록 열람·등사 청구권은 권리로 인정되고 재판장의 허가사항이 아니나, 피해자와 그 변호사는 재판장이 권리구제 필요성 등을 인정하여 허가하는 경우에 한하여 소송기록을 열람·등사할 수 있고(형사소송법 제294조의4), 대부분 피해자 본인 진술 또는 제출 서류로 제한됨
- 피해자의 신체 등이 촬영·녹음된 증거물이 포함된 소송기록은 피해자의 접근을 보장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열람·등사 허가 절차를 개선함이 상당함

등을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신문 등 인쇄물에 실거나 「방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방송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성폭력처벌법 제50조(벌칙)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4조제1항 또는 제38조제2항에 따른 피해자의 신원과 사생활 비밀 누설 금지 의무를 위반한 자
2. 제24조제2항을 위반하여 피해자의 인적사항과 사진 등을 공개한 자

24 독일 형법 제353조d(금지된 법원심리의 전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형에 처한다.

1. 법률상 금지에 위반하여 그 공개가 배제된 법원의 심리 또는 사건과 관련된 공적 문서의 내용을 공연히 전달한 자
2. 법률을 근거로 법원으로부터 명해진 묵비의무를 위반하여 법원의 비공개심리를 통해서 또는 사건과 관련된 공적 문서를 통하여 알게 된 사실을 권한 없이 공개한 자
3. 공판에서의 낭독 또는 소송절차 종료 이전에 공소장 또는 형사소송절차·과태료부과절차·징계절차에 관한 기타 공적 문서의 전부 또는 주요부분을 원문 그대로 공연히 전달한 자

3 권고사항

가. 성폭력 피해자 증언방식 선택권 보장

- 성폭력처벌법 등 법률에 규정된 다양한 피해자 증언방식의 보장을 위해 수사과정 및 기소 시 피해자에게 제공되는 정보(피해자지원 신청서 등)에 법정 증언 방식을 안내하도록 구체화하고, 법원의 '증인지원절차 신청서'양식을 변경하여 피해자에게 증언방식 선택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것을 권고합니다.

나. 성범죄 피해자 증인신문 절차 개선

- 재판장의 소송지휘권에 근거한 성범죄 피해자 보호장치가 명확한 근거와 기준에 따라 작동될 수 있도록, 형사 재판에서 유·무죄 인정과 무관한 피해자의 성적 이력·평판 등 사적 정보에 관한 신문 제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할 것을 권고합니다.
- 피해자에 대한 증인 신문시 부적절한 신문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재판장이 미리 신문사항을 제출받아 검토하고, 그 결과 제한된 신문사항을 피해자에게 질문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신문사항과 그에 대한 답변의 증거능력을 제한하는 규정을 형사소송법에 신설할 것을 권고합니다.

| 현행 형사소송법 | 개정안 |
|--------------------------------------------------------------------------------------------------------------------------------|---------------------------------------------------------------------------------------------------------------------------------------------------------------------------------------------------------------------------------------------------------------------------------------------------------------------------------------------------------------------------------------------------------------------------------------------------------------------------------------------|
| <p>제299조(불필요한 변론등의 제한) 재판장은 소송관계인의 진술 또는 신문이 중복된 사항이거나 그 소송에 관계없는 사항인 때에는 소송관계인의 본질적 권리를 해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이를 제한할 수 있다.</p> | <p>제299조(불필요한 변론등의 제한)</p> <p>① <좌동></p> <p>② 재판장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규정된 성폭력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이하 “성폭력범죄”)의 사건에 대한 심리를 하는 때에는 유죄 또는 무죄의 인정과 무관한 피해자의 성적 이력, 사생활 등 인격권을 침해할 여지가 있는 신문내용을 제한하여야 한다.</p> |
| <p><신설></p> | <p>제299조의2(성범죄 피해자 신문에 관한 특례) ①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 전에 미리 재판장에게 신문사항을 제출하여야 한다.</p> <p>② 재판장은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제출한 신문사항을 사전에 검토하여 제299조 제2항에 해당하는 신문사항을 제한하여야 한다.</p> <p>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재판장이 제한한 신문사항을 피해자에게 질문한 경우, 다음 각 호와 같은 사정이 없는 한 그 신문사항 및 답변은 증거로 할 수 없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있는 때 2. 피해자의 성 이력과 관련한 정보가 피고인의 무죄 또는 형의 감면 사유를 입증하는 결정적인 증거일 때 <p>④ 제3항 단서에 따른 증거 조사 및 그에 대한 진술은 공개하지 아니한다.</p> |

| 현행 형사소송법 | 개정안 |
|----------|--------------------------------------------------------------------------------------------------------------|
| | ⑤ 피해자는 제299조 제2항에 해당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답변을 하지 아니하고 재판장에게 이를 제한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⑥재판장은 제5항의 취지를 미리 피해자에게 설명하여야 한다. |

다. 디지털증거의 증거조사 방식 개선

- 디지털 성범죄 등 성범죄 사건 재판에서 피해자의 신체 등이 촬영된 사진·영상물에 대한 증거 조사시, 필수적 비공개 심리가 진행되도록 성폭력처벌법에 심리 원칙을 규정할 것을 권고합니다.
- 또한, 비공개 심리를 실질적으로 담보하기 위해 영상 증거물에 대한 증거 조사 방법으로 (대형 스크린이 아닌) 판사,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별 개별 영상·음성장치를 통한 재생을 명시할 것을 권고합니다.

| 현행 성폭력처벌법 | 개정안 |
|---------------------------------------------------------------------------------------|---------------------------------------------------------------------------------------------------------------------------------------------------------------------------------------------------------------------------------------------------------------------------------------------------------------------------------------------------------------------------------------------------------------------------------------------------------------------------------------------------------|
| 제31조(심리의 비공개) ① 성폭력범죄에 대한 심리는 그 피해자의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결정으로써 <u>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u> | 제31조(심리의 비공개) ① 성폭력범죄에 대한 심리는 그 피해자의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결정으로써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피해자의 신체 일부 또는 전부가 등장하는 성범죄 영상녹화물에 대한 증거조사 시에는 그 심리를 비공개로 하여야 한다. |
| <신설> | 제31조의2(증거조사에 관한 특례) 법원은 피해자의 신체 전부 또는 일부가 등장하는 등 피해자의 인격이나 명예, 사적인 비밀을 보호할 필요가 있는 녹음·녹화테이프, 컴퓨터디스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방법으로 음성이나 영상을 녹음 또는 녹화하여 재생할 수 있는 매체(이하 "녹음·녹화매체 등")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증거조사를 하여야 한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해당 녹음·녹화매체를 판사, 검사, 변호인별 개별 모니터를 통해 재생하는 방법 2. 해당 녹음·녹화매체의 음향을 판사, 검사, 변호인별 개별 모니터에 연결된 개별음향장치를 통해 재생하는 방법 3. 범죄사실의 증명 등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를 지정하여 해당 녹음·녹화매체를 재생하는 방법 4. 기타 피해자의 인격이나 명예, 사적인 비밀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방법 |

라. 사적 정보 유출로 인한 2차 가해 행위 금지

- 소송기록 또는 재판 진행 과정에서 알게 된 피해자의 사적 정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유출 또는 공개함으로써 2차 피해를 유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시 처벌규정을 마련할 것을 권고합니다.
- 아울러, 피고인이 위와 같은 2차 피해를 야기한 경우, 가중적 양형 요소로 필수적으로 참작되도록 양형기준에 명시할 것을 권고합니다.

| 현행 성폭력처벌법 | 개정안 |
|--------------------------------------------------------------------------------------------------------------------------------------------------------------------------------------------------------------------------------------------------------------------------------------------------------------------------------------------------------------------------------------------|-----------------------------------------------------------------------------------------------------------------------------------------------------------------------------------------------------------------------------------------------------------------------------------------------------------------------------------------------------------------------------------------------------------------------------------------------------------------------------------------------|
| <p>제24조(피해자의 신원과 사생활 비밀 누설 금지) ① 성폭력범죄의 수사 또는 재판을 담당하거나 이에 관여하는 공무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피해자의 주소, 성명, 나이, 직업, 학교, 용모, 그 밖에 피해자를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게 하는 인적사항과 사진 등 또는 그 피해자의 사생활에 관한 비밀을 공개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p> <p>② 누구든지 제1항에 따른 피해자의 주소, 성명, 나이, 직업, 학교, 용모, 그 밖에 피해자를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는 인적사항이나 사진 등을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신문 등 인쇄물에 실거나 「방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방송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p> | <p>제24조(피해자의 신원과 사생활 비밀 등 누설 금지) ① 성폭력범죄의 수사 또는 재판을 담당하거나 이에 관여하는 공무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피해자의 주소, 성명, 나이, 직업, 학교, 용모, 그 밖에 피해자를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게 하는 인적사항과 사진, <u>비공개 재판 및 소송기록 등 공적 문서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의 사적 정보 등</u> 또는 그 피해자의 사생활에 관한 비밀을 공개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p> <p>② 누구든지 제1항의 피해자의 주소, 성명, 나이, 직업, 학교, 용모, 그 밖에 피해자를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는 인적사항이나 사진과 <u>비공개 재판 및 소송기록 등 공적 문서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의 사적 정보</u> 등을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신문 등 인쇄물에 실거나 「방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방송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p> |
| <p>제50조(벌칙)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24조제1항 또는 제38조제2항에 따른 피해자의 신원과 사생활 비밀 누설 금지 의무를 위반한 자 2. 제24조제2항을 위반하여 피해자의 인적사항과 사진 등을 공개한 자 | <p>제50조(벌칙) ② <좌동></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24조제1항 또는 제38조제2항에 따른 피해자의 신원 및 <u>비공개 재판 및 공적 문서를 통해 알게 된 사적 정보</u>, 사생활 비밀 누설 금지 의무를 위반한 자 2. 제24조 제2항을 위반하여 피해자의 인적사항과 사진과 <u>비공개 재판 및 공적 문서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의 사적 정보</u> 등을 공개한 자 |

마. 소송 기록 열람·등사 제도 개선

- 소송 기록 중 피해자 본인 진술 및 제출 서류, 피해자의 신체 등이 촬영·녹음된 매체물에 대하여 피해자의 접근이 원칙적으로 보장되도록 열람·등사에 관한 명시적 규정을 마련할 것을 권고합니다.
- 성범죄 피해자측의 소송 기록 열람·등사 신청에 대해 재판장이 원칙적으로 허가하고, 불허시 그 사유를 통지하도록 소송기록 열람·등사 제도를 개선할 것을 권고합니다.

| 현행 성폭력처벌법 | 개정안 |
|------------------------------------------------------------------------------------------------------------------------------------------------------------------------------------------------------------------------------------------------------------------------------------------------------------------------------------------------------------------------------------------------------------------------------------------------------------------------------------------------------------------------------------------------------------------------------------------------------------------------------------------------------------------|-----------------------------------------------------------------------------------------------------------------------------------------------------------------------------------------------------------------------------------------------------------------------------------------------------------------------------------------------------------------------------------------------------------------------------------------------------------------------------------|
| <p>제27조(성폭력범죄 피해자에 대한 변호사 선임의 특례)</p> <p>① 성폭력범죄의 피해자 및 그 법정대리인(이하 “피해자등”이라 한다)은 형사절차상 입을 수 있는 피해를 방어하고 법률적 조력을 보장하기 위하여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다.</p> <p>② 제1항에 따른 변호사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피해자등에 대한 조사에 참여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다만, 조사 도중에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승인을 받아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p> <p>③ 제1항에 따른 변호사는 피의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 증거보전절차, 공판준비기일 및 공판절차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한 절차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p> <p>④ 제1항에 따른 변호사는 증거보전 후 관계 서류나 증거물, 소송계속 중의 관계 서류나 증거물을 열람하거나 등사할 수 있다.</p> <p style="text-align: center;">〈신설〉</p> <p>⑤ 제1항에 따른 변호사는 형사절차에서 피해자등의 대리가 허용될 수 있는 모든 소송행위에 대한 포괄적인 대리권을 가진다.</p> <p>⑥ 검사는 피해자에게 변호사가 없는 경우 국선변호사를 선정하여 형사절차에서 피해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다.</p> | <p>제27조(성폭력범죄 피해자에 대한 변호사 선임의 특례)</p> <p>① ~④ 〈좌동〉</p> <p>⑤ 재판장은 제4항의 열람 또는 등사 신청이 있는 때에는 이를 허가하되, 심리진행 상황, 개인정보보호의 필요성 등에 비추어 허가하지 아니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이를 거부하거나 그 범위를 제한할 수 있다. 열람 또는 등사를 거부하거나 범위를 제한하는 때에는 그 사유를 신청인에게 고지한다.</p> <p>⑥ 재판장이 제5항에 따라 열람 또는 등사를 허가하는 경우 등사한 소송기록의 사용목적에 제한하거나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p> <p>⑦ 제4항에 따라 소송기록을 열람 또는 등사한 자는 열람 또는 등사에 의하여 알게 된 사항을 사용함에 있어 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거나 수사와 재판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p> <p>⑧ 〈좌동〉</p> <p>⑨ 〈좌동〉</p> |
| <p style="text-align: center;">〈신설〉</p> | <p>제41조의1(성범죄 피해자의 소송기록 열람·등사) ① 성범죄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은 증거 보전 후 관계 서류나 증거물, 소송 계속 중의 관계 서류나 증거물 중 피해자 본인 진술서류 및 제출서류, 피해자의 신체 일부 또는 전부가 등장하는 사진 또는 영상물의 열람 또는 등사를 재판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p> <p>② 재판장은 제1항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이를 허가하되, 심리진행상황 등에 비추어 허가하지 아니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이를 거부하거나 그 범위를 제한할 수 있다. 열람 또는 등사를 거부하거나 범위를 제한하는 때에는 그 사유를 신청인에게 고지한다.</p> <p>③ 열람 또는 등사에 있어 허가의 조건, 사용 제한 등에 있어서는 제27조 제6항, 제7항의 규정을 준용한다.</p> |

4 기대효과

- 피해자에게 증언 방식 선택 기회를 제공하고, 피해자 본인 진술 및 제출 서류 뿐 아니라 관련 영상물의 열람·등사권을 명확히 규정하여 법정에서의 피해자 인권을 보호하고, 재판 절차 진술권의 실질적 보장
- 법률에 근거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소송지휘권의 행사 기준 마련하고, 사건과 무관한 피해자 사생활 공격 및 사적 정보의 유출을 금지하여 재판 과정에서의 2차 피해 방지
- 특히 최근 심각한 문제로 발생하고 있는 디지털 성범죄의 증거조사 방식의 원칙적 비공개 및 대형 스크린에 의한 상영 제한을 규정하여 신종 범죄에 대응하는 선진형 재판 절차 확립
- 2차 가해로 인한 실체 판단의 오류 가능성 감소에 따른 실체적 진실 발견 및 사법절차에 대한 신뢰도 향상

디지털 성범죄 등 전문위원회 제7차 권고안

- 피해 영상물 효율적 압수 및 재유포 방지방안 -

권고 개요

1. 기본 방침

- 전자파일 형태로 존재하여 제작되는 순간 무한 복제 가능성이 있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 영상물의 특성을 고려, 몰수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압수 방법 등에 관한 특별 규정을 도입할 것을 권고합니다.

2. 권고 사항

- 디지털 성범죄 피해 영상물에 관한 압수 방법으로 '전자파일의 사본을 취득하고 파일 원본을 삭제'하는 방식(일명 '잘라내기 방식')을 성폭력처벌법에 명시할 것을 권고합니다.
- 「유럽평의회 사이버범죄협약」에 신속히 가입하여 디지털 성범죄 수사에서의 국제 사법공조가 신속화·활성화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것을 권고합니다.
- 디지털 성범죄 피해영상물과 관련하여, 압수 전(前) 단계로 수사기관이 피해 영상물이 유포 또는 저장되어 있는 인터넷 플랫폼 운영자에게 해당 영상물을 보존하도록 명하는 제도(보전명령제도)를 도입할 것을 권고합니다.
- 디지털 성범죄 수사단계에서 법원이 발부하는 영장이나 허가가 필요한 사항과 관련하여, 피해자의 주소, 거소 또는 현재지도 법원의 토지관할 기준으로 인정하는 특별 규정을 성폭력처벌법에 신설할 것을 권고합니다.

3. 기대 효과

- 디지털 성범죄의 특성을 고려한 압수 방법 및 수사 단계에서의 토지관할 특례를 규정하여 신속한 수사 및 피해 영상물의 재유포 방지
- 신속하고 효율적인 국가간 사법공조가 가능한 법적 기반 마련
- 보전명령을 통해 증거물인 피해 영상물을 보존하는 동시에 몰수 대상에 대한 피의자 등의 접근을 차단하여, 증거 확보 및 재유포 방지로 피해자 보호

1 권고 배경

가. 디지털 성범죄의 특징

- 디지털 성범죄의 피해 영상물은 유체물이 아닌 전자파일로, 무한 복제될 수 있어 원본·사본의 구별이 큰 의미가 없고, (PC, USB 등 정보저장매체뿐만 아니라) 웹하드 또는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 업체를 통해 온라인 저장공간에 저장될 수 있어 원본 및 모든 사본이 삭제되지 않는 한 언제든지 재유포될 수 있음
- 제작된 피해 영상물을 중심으로 다수 범죄행위 및 범죄자가 관련됨
 - ※ 피해 영상물을 제작,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하는 행위 모두 범죄로 처벌됨(성폭력처벌법 제14조)
- 해외 서버를 이용한 인터넷 사이트를 통한 유통이 가장 문제가 되고 있음

나. 현행 압수 및 몰수 제도 개선의 필요성

- 현행 형법 및 형사소송법은 압수 및 몰수에 관해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음

형법 제48조(몰수의 대상과 추정) ① 범인 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하거나 범죄 후 범인 외의 자가 사정을 알면서 취득한 다음 각 호의 물건은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있다.

1.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
2.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겼거나 취득한 물건
3. 제1호 또는 제2호의 대가로 취득한 물건

② 제1항 각 호의 물건을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價額)을 추징한다.

③ 문서, 도화(圖畵), 전자기록(電磁記錄) 등 특수매체기록 또는 유가증권의 일부가 몰수의 대상이 된 경우에는 그 부분을 폐기한다.

형사소송법 제106조(압수) ① 법원은 필요한 때에는 피고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하여 증거물 또는 몰수할 것으로 사료하는 물건을 압수할 수 있다. 단,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개정 2011. 7. 18.)

② 법원은 압수할 물건을 지정하여 소유자, 소지자 또는 보관자에게 제출을 명할 수 있다.

③ 법원은 압수의 목적이 컴퓨터디스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정보저장매체(이하 이 항에서 “정보저장매체등”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기억된 정보의 범위를 정하여 출력하거나 복제하여 제출받아야 한다. 다만, 범위를 정하여 출력 또는 복제하는 방법이 불가능하거나 압수의 목적을 달성하기에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정보저장매체등을 압수할 수 있다.

- 또한, 특별법에서는 범죄의 특성에 따라 재산에 대한 몰수 또는 필요적 몰수 규정 존재
 - ex) 범죄수익은닉규제법, 마약류관리법, 관세법, 문화재보호법 등
- 범죄 결과물이 전자파일이고, 제작과 동시에 무한 복제 가능한 디지털 성범죄의 특성을 고려, 압수 및 몰수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압수 방법 등에 대한 특별규정의 도입을 검토할 필요 있음

2 디지털 성범죄에서 압수 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 방안

가. 압수의 방법

- 압수·수색단계에서 휴대전화, 외장하드와 같은 물리적 저장매체 외에 클라우드와 같이 비물리적 공간에 저장되는 피해 영상물의 존재 및 위치 탐지 범위가 협소하고, 수사기관의 역량·의지에 따라 편차 발생
- 완전히 동일한 복제본의 생성, 전파가 용이한 디지털 데이터 특성상, 수사기관의 배타적 지배가 가능한 전통적인 압수와 달리, 정보저장 매체를 압수하더라도 클라우드에 복제본이 있는 경우 피압수자와 수사기관 및 제3자의 동시 공유·점유가 가능

* 피압수자 및 제3자의 동시 공유를 차단하기 위한 접근제한 조치로 기존에는 수사기관이 수사대상자인 피압수자에게 해당 파일이나 정보의 삭제를 요청하거나, 전기통신 사업자에게 공문을 발송하여 삭제 요청시,

전기통신사업자가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 7조(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와 자체 약관을 고려하여 접근제한의 임시조치를 취한 후 소명 절차를 거쳐 접근제한 여부 결정

- 실무상 일명 'N번방 사건' 이후, 이른바 '잘라내기'식 압수·수색* 방식을 고안, '영장의 집행에 필요한 처분'(형사소송법 제120조)의 하나로 원본 삭제 조치를 함으로써 피압수자의 점유를 배제할 수 있게 된 것은 긍정적이나, 피압수자가 아닌 제3자의 동시 공유·점유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음

* 압수·수색 영장 청구시 '정보저장매체에서 피해영상물 원본 파일을 복제해 압수한 다음 원본 파일을 삭제'하는 방법으로 영장 집행한다는 취지를 기재하고, '추후 성착취물로 인정되지 않는 압수물이 나오면 복제물을 돌려주는 조건'으로 발부된 영장에 따라 클라우드 등 저장매체에서 원본을 복제하여 압수한 후 원본 삭제

- 피해 영상물이 웹하드, 클라우드, 이메일, 메신저와 같이 제3자인 전기통신사업자 소유 정보저장매체에 저장된 경우 압수가 어려움

※ 전기통신사업자의 정보저장매체에는 범죄 행위와 관련 없는 개인 정보도 저장되어 있고, 서비스 제공 상황에서 정보저장매체를 압수할 수 없으며, 전기통신사업자나 수사 대상자에게 정보 삭제를 강제할 명확한 근거 규정 없음

※ 실무상 수사기관이 전기통신사업자의 협조를 받아 해당 데이터에 대한 출력·복사 또는 하드카피(hard copy), 이미징(imaging) 방식으로 사본 압수

- 유럽평의회 「사이버범죄 협약」(후술)은 사이버범죄에서의 압수 방법에 대해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음

제19조 컴퓨터데이터의 수색과 압수

3. 각 당사국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접근가능한 컴퓨터데이터를 권한 있는 당국이 압수하거나 유사하게 보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입법적 조치 및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그러한 조치들은 다음의 권한을 포함해야 한다:

- a. 컴퓨터시스템 또는 그러한 시스템의 일부 또는 컴퓨터데이터 저장매체를 압수하거나 유사하게 보전하는 권한
- b. 그러한 컴퓨터데이터의 사본을 만들고 보관하는 권한
- c. 해당 컴퓨터데이터의 온전히 유지하는 권한
- d. 그러한 컴퓨터데이터를 해당 컴퓨터시스템에서 삭제하거나 해당 컴퓨터시스템을 통해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

※ 이는 사이버범죄 압수의 원칙적 집행 방법을 보여주는 것으로, 전자파일의 생성을 범죄 결과로 하는 디지털 성범죄에서 압수는 해당 전자파일의 사본을 취득하고, 해당 전자파일에 대한 접근을 차단하도록 하거나 해당 전자파일을 삭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원칙이라고 보아야 함

- 현재 실무에서는 디지털 성범죄에서 피해 영상물 재유포 방지를 위해 원본 파일을 복제해 압수한 다음 원본 파일을 삭제하는 방식(일명 '잘라내기식')으로 압수가 이루어지고 있는바, 이와 같은 압수 방법을 성폭력처벌법에 명시하고, 시행령 또는 시행규칙에 디지털 성범죄에서의 압수·수색 영장의 표본을 제시할 필요 있음

나. 국제 형사사법 공조

- 디지털 성범죄에서 가장 큰 문제는 해외서버를 통한 피해 영상물의 유포임
- 「유럽 평의회(Council of Europe) 사이버범죄 협약(Convention on Cybercrime)」(2022. 1. 25. 기준, 유럽평의회 회원국 46개국 포함 66개 국가 체결)*은 사이버 범죄관련 국가간 형사사법공조의 신속화·효율화를 위해 컴퓨터 데이터에 대한 초국경적 접근 등을 규율하고 있음

※ 한국은 미가입 상태이나, 동 협약의 규율 내용은 세계 많은 나라에서 인정되고 있는 사이버범죄에서의 일반적 수사방법을 보여줌

*유럽평의회 사이버 범죄협약의 주요 내용

- 협약당사국이 범죄화해야 할 사이버 범죄행위 나열 및 사이버 범죄 수사방법으로 긴급보전명령, 정보제출명령, 사이버 범죄를 위한 압수·수색 방법 등 인정
 - 정보제출명령
 - 가입자 정보 등에 대한 제출명령(production order)(제18조) 인정
 - 제2추가협정서는 일정 요건 하에 정보제출명령이 사법공조 절차를 거치지 않고 직접 외국의 인터넷서비스 제공자에게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제7조)
 - 사이버 범죄를 위한 압수·수색
 - 압수·수색 대상 컴퓨터 시스템과 연결되어 있는 자국 내 컴퓨터 시스템으로의 압수·수색 인정(제19조제2항)
 - 사법공조를 통한 외국 소재 시스템으로의 접근 규율(제31조)
- 「사이버범죄 협약」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사이버범죄 수사에서 국가간 형사사법공조를 신속화하는 것인바, 우리나라도 이에 신속히 가입할 필요

다. 피해 영상물에 대한 보전명령제도

- 현행법상 압수영장을 발부받기 전까지 압수 대상을 보전할 수 있도록 명령하는 제도가 인정되지 않음
 - ※ 형사소송법상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는 예외가 인정되나, 피의자를 체포 또는 구속하는 경우이거나, 범행 중 또는 범행 직후 범죄 장소에서 긴급을 요하는 경우로 한정(제216조 내지 제218조)
- 수사기관이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포 중인 피해 영상물을 발견해도 영장을 발부받지 않는 한 적극적으로 압수하기 어렵고, 압수영장을 발부받는 동안 피해 영상물은 광범위하게 유포될 수 있음
- 피해 영상물은 디지털 성범죄 범행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로서의 가치를 가지는 동시에, 범죄로 인해 생성된 결과로서, 추가 범행 방지 및 피해자보호를 위해 몰수해야 할 대상임

→ 수사기관이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포되고 있는 피해 영상물을 발견한 경우, 피해 영상물의 소지자 또는 관리자인 전기 통신사업자에게 피해 영상물이 소유자에 의해 삭제되지 않도록 피해 영상물을 보존하도록 하는 동시에 추가 유포되지 않도록 피해 영상에 대한 접근을 차단하도록 명령하는 제도의 도입 필요

- 「유럽평의회 사이버범죄 협약」은 '컴퓨터 데이터* 긴급 보존명령 제도'²⁵를 규정(제16, 17조), '전기 통신사업자가 관련 법령 또는 회사 정책에 따라 적법하게 수집·저장하고 있는 컴퓨터 데이터(정보)'를 일정 기간 보존하도록 명령

* '컴퓨터 데이터'란 '컴퓨터 시스템을 통해 기능을 수행하기 적합한 프로그램뿐 아니라, 컴퓨터 시스템에서 처리하는데 적합한 형태로 되어 있는 일체의 사실, 정보 및 개념'

※ 위 협약 상의 보존명령제도를 자국법으로 이행하고 있는 국가는 미국²⁶, 이탈리아, 프랑스, 네덜란드, 포르투갈, 노르웨이, 핀란드 등²⁷

25 제16조 (저장된 컴퓨터데이터의 신속한 보존)

1. 컴퓨터 시스템에 의해서 저장되어 있는 통신데이터를 포함한 특정한 컴퓨터 데이터가 특히 손실되거나 변경될 수 있다고 믿을 만한 근거가 있는 경우, 가입국은 이러한 데이터의 신속한 보존을 자국의 권한 있는 기관이 명령하거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획득할 수 있도록 필요한 입법적 조치와 그 밖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가입국은 어떤 자가 소유하거나 지배하고 있는 특정한 저장된 컴퓨터 데이터를 보존하도록 명령을 통하여 요구함으로써 제1항을 실행한다면, 필요한 만큼의 기간 동안(최장 90일) 그 자가 이러한 컴퓨터 데이터의 무결성을 보존하고 유지하여 이를 권한 있는 기관에게 전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입법적 조치와 그 밖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가입국은 그러한 명령이 연속하여 연장될 수 있도록 규정할 수 있다.
3. 각 가입국은 국내법에 의해 규정된 기간 동안 이러한 절차의 수행을 비밀리에 할 수 있도록 보관자 또는 컴퓨터데이터를 확보해야 할 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기 위해 필요한 입법적 조치와 그 밖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4. 이 조에 의한 권한과 절차는 제14조와 제15조를 기초로 하여야 한다.

제17조 (트래픽데이터의 신속한 보존과 일부 공개)

1. 각 가입국은 제16조에 의하여 보존될 트래픽 데이터와 관련하여, a)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서비스제공자가 그 통신의 중개에 참여하고 있는지에 관계없이 트래픽 데이터의 신속한 보존이 가능하고, b) 가입국이 서비스제공자 및 통신의 전송 경로를 확정할 수 있도록 충분한 양의 트래픽 데이터가 가입국의 관할기관이나 이 기관으로부터 지명받은 자에게 즉시 공개(제출)되도록 필요한 입법적 조치와 그 밖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2. 이 조에 의한 권한과 절차는 제14조와 제15조를 기초로 하여야 한다

※ '트래픽 데이터(traffic data)'란 '컴퓨터 시스템을 이용한 통신과 관련된 모든 컴퓨터 데이터로서 통신망의 일부를 구성하는 컴퓨터 시스템에 의해서 생성되고 통신의 발신지, 수신지, 경로, 일시, 크기(용량), 지속시간 또는 이용된 서비스의 유형을 나타내는 데이터'

- 26 미국 연방 법전 제18편 제2703조 (a)~(e)항에서 정부 기관이 고객의 통신기록 정보를 소지하는 전기통신사업자에게 그러한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권한(즉, 정보제출명령)에 대해서 규정, 법원의 명령/허가를 받아서 가능하게 함. 반면 제(f)항은 정보제출에 대한 법원의 명령 전까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정보를 보존하도록 하는 정부기관(수사기관)의 명령을 인정하면서, 법원의 명령 없이 할 수 있는 것으로 인정. 이는 보존명령은 압수가 아니고, 법원의 명령에 기한 정보제출 또는 압수명령 발부까지 시간이 걸리므로, 긴급처분으로서 증거를 단지 보존하도록 명령하는 것이기 때문임

※ 제18편 제2703조 - '고객의 통신 또는 기록 정보' 제공 요구

(f) 증거를 보존하기 위한 요건

(1) 일반적으로, 유선 또는 전기 통신 서비스제공자 또는 원거리 컴퓨팅서비스 제공자는 정부기관의 요청에 기해, 법원의 명령이 발부되기 전까지 또는 기타 절차가 진행되기 전까지 그의 소지자에 있는 기록 및 기타 증거를 보존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

(2) 보존기간 : 제(1)호에서 언급된 기록은 90일 동안 보존되어야 한다. 그 기간은 정부 기관의 요청에 기해 1차에 한해 90일 연장될 수 있다.

- 27 해당 국가 및 해당 규정은 Council of Europe, Assessment report - Implementation of the preservation provisions of the Budapest Convention on Cybercrime, 25 January 2013, 7, 80면 이하 참조.

- 국내에서는 보전명령제도 도입을 목적으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발의되어 왔으나²⁸, 형사소송법을 개정할 필요 있음

| 발의일 대표발의 | 내용 | 비고 |
|---------------------|--------------------------------------------------------------------------------------------------------------------------------------------------------------------------------------------------------------------------------------------------------------------------------------|------------|
| 2009. 5. 13. 이종걸 | 제106조(압수) ② ---제1항에 따른 압수의 목적이 컴퓨터용 디스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정보저장매체(이하 이조에서 “정보저장매체 등”이라고 한다)에 기억된 정보를 얻기 위한 것이고 그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긴급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정보를 보관·관리하고 있는 자에게 관련 정보의 보전을 명함---. 이 경우 보전기간은 필요한 최소한도의 범위 안에서만 하여야 한다. | 임기만료 폐기 |
| 2015. 2. 2. 김도읍 | 제108조의2(정보의 보존요청 등) ① 법원은 정보를 압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3호에 정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30일의 범위 내에서 당해 정보가 삭제·변경되지 않도록 보존할 것을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0일의 범위 내에서 1회에 한해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당해 정보를 압수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지체 없이 보존요청을 취소하여야 한다. | 임기만료 폐기 |
| 2021. 2. 4. 김희곤 | 제216조의2(전자정보 긴급보전)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영상정보, 문자기록 등 정보저장매체에 저장된 전자정보를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거나 전자정보 확보를 위하여 긴급한 경우에는 해당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검증의 긴급보전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지체 없이 법원에 압수·수색·검증영장을 청구하거나 증거보전 신청을 하여야 한다. | |

라. 수사 관할

- 현행법상 수사단계에서 영장 발부 담당 법원 결정 기준으로서의 토지관할에 대해서는 특별한 규정이 없어, 재판 담당 법원을 결정하는 토지관할에 따라 수사단계 영장 발부 담당 법원이 정해짐

28 법원행정처는 ① 압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압수영장을 발부·집행하면 족하고 별도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보존요청을 할 필요성이 있는지 의문이며, ② 전기통신서비스 사업자에게 불필요한 부담을 지울 수 있고, ③ 제도를 도입한다 하더라도 수사기관의 남용 가능성에 대한 사법적 통제가 필요하므로, 통신비밀보호법상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요청 허가와 같이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반대.

그러나, ① 「사이버범죄협약」은 트래픽데이터를 포함한 컴퓨터데이터에 대한 보전명령제도를 인정하고 있고, 이미 여러 국가들에서 보전명령이 인정되고 있는 바, 범죄행위의 결과로서 ‘증거로 기능하는 동시에 몰수할 대상인 피해 영상물’에 대해, 압수에 선제하는 보전조치로서 ‘수사기관이 행하는 보전명령’을 인정할 필요 있고, ② 보전명령은 수사기관이 범죄피의자가 아니라, 피해 영상물을 소지·관리하는 전기통신사업자(예컨대 클라우드서비스업체, 피해 영상물이 유포되고 있는 인터넷플랫폼 운영자 등)에게 피해 영상물이 소유자에 의해 삭제되지 못하도록 보전하는 동시에 소유자 등의 접근을 차단하도록 명령하는 것으로, 압수가 아니라, 압수영장이 발부되기 전까지의 피해 영상물의 유포 및 증거로 기능하는 피해 영상물의 삭제를 방지하기 위해 압수에 선제하는 긴급조치로 행해지는 것으로 불필요한 부담으로 보기 어렵고, ③ 보전명령은 영장을 발부받기까지는 시간이 걸리기에 법원에 의한 압수영장 또는 압수명령이 발부되기 전까지 단지 증거를 보전하도록 명령하는 것으로 압수가 아니라, 압수에 선제하는 긴급처분으로 인정되는 것이고, 법원의 명령/허가 없이 수사기관이 독립적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을 그 본질적 속성으로 하는 것으로, 보전명령제도의 도입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법원의 명령/허가에 기한 정보제출명령의 일종이라고 할 수 있음)의 경우 법원의 영장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유로 보전명령의 경우에도 법원의 영장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은 보전명령제도와 정보제출명령의 차이를 오해하는 것임

※ 보전명령과 정보제출명령은 그 목적 및 성격이 상이한바, 정보제출명령의 경우 강제성은 인정되지만, 수사기관이 직접 수색·압수하는 것이 아니라, 전기통신사업자가 법원의 허가에 기해 수사기관이 행하는 명령에 따라 정보를 제출하는 것으로(수사기관이 직접 수색·압수를 행하는 본래 의미에서의 압수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기본권제한이 약한 것으로 이해될 수 있지만), 수사기관이 정보를 취득하는 것이므로 광의의 압수의 한 형태이고, 긴급성을 요건으로 하지 않으므로 법원의 허가(또는 영장)이 있는 경우에 가능하다고 보아야 함.

형사소송법 제4조(토지관할) ① 토지관할은 범죄지, 피고인의 주소, 거소 또는 현재지로 한다.

※ 검찰의 관할구역은 법원의 관할에 따르고²⁹, 검사는 사건이 소속 검찰청에 대응한 법원의 관할에 속하지 않으면 관할 검찰청에 사건을 송치해야 함³⁰

- 토지관할 기준으로서의 '범죄지'의 의미*와 관련, 인터넷을 통해 행해지는 '추상적 위험범' 관련 범죄지 확정 기준에 대해 논란이 있고³¹, 아래 판례는 이러한 현재 상황을 잘 보여 주고 있음

* 일반적으로 형사소송법상 토지관할로 규정된 범죄지는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한 장소로, △ 행위지, △ 결과발생지, △ (행위와 결과가 이동하는 과정에서 중간현상이 발생한) 중간지 포함

- 인천 소재 주거지에서 음란물 동영상을 게시하여 배포한 혐의로 광주지방법원에 기소된 사안에서, 음란물유포죄는 추상적 위험범이므로 실행 행위지(인천) 외에 결과 발생지에 대한 관할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관할 위반 선고(2017노4725)
- 불상지에서 컴퓨터로 '일베' 사이트 게시판에 피해자에 대한 모욕적인 글을 게시하였다는 혐의로 인천지방법원에 기소된 사안에서, 추상적 위험범에서 실행 행위지 뿐만 아니라 결과 발생지 또한 발생할 위험성이 높은 장소로 피고인이 합리적으로 예측할 수 있거나 그 장소에서의 결과 발생을 의도한 경우 '범죄지'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생활 근거지(인천)에 결과 발생지로서 범죄지 관할 인정(2015노60)
- 서울 노원 소재 주거지에서 '네이버'카페에 악성 파일을 몰래 설치하는 다운로드 등을 게시하여 악성프로그램 유포 혐의로 서울동부지방법원에 기소된 사안에서, 범죄지는 범인이 악성프로그램을 게시한 장소 또는 악성프로그램이 게시된 정보통신망인 도메인 서버가 있는 곳(성남)이라는 이유로 관할 위반 선고(2020노1511호, 대법원 확정)

- 디지털 성범죄 수사시 토지관할 위반을 이유로 영장 신청이 기각되어 수사가 지체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바, 디지털 성범죄의 특성을 고려, 수사단계 강제처분과 관련된 토지 관할 특별 규정 도입할 필요

* 인적사항이 특정된 디지털 성범죄 피의자에 대해 압수수색영장을 신청했으나, 범죄지나 피고인의 주소, 거소 또는 현재지 관할이 아니므로 관할 위반을 이유로 검찰 또는 법원의 영장 기각한 사례. 이 경우 현행법상의 토지관할기준에 따른 관할법원 지역 소재 경찰청 또는 검찰청으로 이송은 가능하나, 수사의 지체는 피하기 어려움

29 **검찰청법 제3조(검찰청의 설치와 관할구역)** ④ 각급 검찰청과 지청의 관할구역은 각급 법원과 지방법원 지원의 관할구역에 따른다.

30 **형사소송법 제256조(타관송치)** 검사는 사건이 그 소속검찰청에 대응한 법원의 관할에 속하지 아니한 때에는 사건을 서류와 증거물과 함께 관할법원에 대응한 검찰청검사에게 송치하여야 한다.

31 일반적인 인터넷 범죄의 경우, '인터넷으로 접속 가능한 모든 곳이 범죄지이다'라는 것은 너무 광범위한 범죄지 확장인바, 광범위한 범죄지 확장의 위험성이 문제되고 있는 반면, 인터넷을 수단으로 범해지는 추상적 위험범의 경우, 통설적 견해에 의하면 결과 발생이 범죄 구성요건이 아니므로, 행위지만 범죄지로 인정될 수 있으나, 이는 너무 좁게 범죄지를 인정하는 문제 발생. 다수설은 추상적 위험범에서는 범죄지로서의 결과발생지가 인정될 수 없으므로, 행위를 확장하여(예컨대, 행위지 범위를 도메인 서버지 등으로 확장하여) 범죄지 범위를 확장하고자 함. 한편, 독일에서는 추상적 위험범 중에서도 '~에 적합한 행위 또는 ~의 적성'을 범죄성립요건으로 하면서 언어적 표현행위 또는 유포행위를 처벌하는 범죄의 경우 이러한 범죄를 '추상·구체적 위험범' 또는 '적성범'이라고 하면서, 이러한 범죄의 경우 결과발생지가 인정될 수 있고, 그러한 범죄의 결과발생지는 그러한 적성이 실현된 곳 또는 표현·유포의 결과가 발생한 곳이라고 하는 견해가 유력설로 주장되고 있음.(위 판례 중 '추상적 위험범에서도 결과발생지가 인정될 수 있다'고 하면서 "피해자의 생활근거지"를 결과발생지로 인정하고 있는 "2015노60판결"은 독일의 위와 같은 견해와 유사). 추상적 위험범 특히, '인터넷을 통해 범해지는 추상적 위험범'의 경우, '결과 발생지를 인정할 수 있는지'라는 문제부터 시작하여, 어떠한 곳을 범죄 행위지로 볼 수 있는지, 범죄 결과지를 인정하는 견해에 의한 경우 어떠한 곳을 범죄 결과지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 견해 대립이 있음

- 외국 입법례

- ◆ 오스트리아³²
 - 수사단계와 공판단계를 구분하여 법원의 토지관할을 규정(형사소송법 제36조)
 - 수사단계에서 법원이 발부하는 영장의 경우, 수사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검찰이 소재하는 지역의 관할법원이 토지관할권 가짐
- ◆ 스위스³³
 - 형법 제28조에³⁴ 의해 미디어의 가벌성이 인정되는 사건에서의 법원의 토지관할기준 규정(형사소송법 제35조)
 - 미디어업체 소재지, 피의자 주소지 또는 거소지 및 불명시 유효된 곳

- 디지털 성범죄의 경우 수사단계에서는 피해자의 주소, 거소 또는 현재지도 토지관할 기준으로 추가할 필요 있음

※ 현행 형사소송법 제4조는 1950년대에 마련된 규정으로, 인터넷을 통한 범죄를 고려한 규정은 아님. 형사소추가 범죄자 소추를 목적으로 하기에 피의자의 주소 등을 주요 토지관할 기준으로 보아야 하지만, 현행 형사소송법 제4조는 토지관할 기준으로 피고인의 이익만 고려하고 있고, 수사 단계에서의 피해자의 이익은 전혀 고려하지 않음. '추상·구체적 위험범' 또는 적성범의 경우 결과발생지가 인정될 수 있다는 견해에 의하면, 피해자의 주소·거소·현재지도 범죄지로 인정 가능

※ 경찰청 훈령은³⁵ 정보통신망을 통한 범죄에서 범죄지와 피의자가 불명확한 경우 최초 사건 접수 관서에 수사 관할 인정

3 권고 사항

가. 디지털 성범죄 피해 영상물의 '잘라내기식 압수'명시 규정 신설

- 디지털 성범죄의 피해영상물에 관한 압수 방법으로 '해당 전자 파일의 사본을 취득하고 파일 원본을 삭제'하는 방식(일명 '잘라내기식 압수')을 성폭력처벌법에 명시할 것을 권고함

32 형사소송법 제36조 관할권 (1) 수사단계에서 법원의 판단 및 증거채택은 수사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검찰이 소재하는 지역의 관할법원이 담당한다.

33 형사소송법 제35조 미디어에 의한 범죄에서 법원의 관할권
 1. 제28조에 따른 미디어의 범죄가 스위스에서 범해진 경우 미디어 업체 소재지의 기관이 관할권을 가진다.
 2. 저자의 신원이 밝혀졌고, 그의 주거 또는 거소가 스위스라면, 피의자의 주거지 또는 거소지의 기관이 관할권을 가진다. 이 경우 소송절차는 최초로 소추행위가 개시된 지역에서 이루어진다. 친고죄의 경우 고소인이 두 가지 토지관할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
 3.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관할권이 정해질 수 없는 경우, 미디어 작품이 유효된 곳의 담당기관이 관할권을 가진다. 유효가 여러 곳에서 이루어진 경우, 최초로 소추행위를 개시한 곳의 기관이 관할권을 가진다.

34 스위스 형법 제28조는 "미디어의 가벌성"에 대한 규정임.

35 【사건의 관할 및 관할사건수사에 관한 규칙】(경찰청 훈령)
 제5조(사건의 관할) ① 사건의 관할은 범죄지, 피의자의 주소·거소 또는 현재지를 관할하는 경찰서를 기준으로 한다.
 제6조(사건관할이 불분명한 경우의 관할지정) ① 다음 각 호의 사건 중 범죄지와 피의자가 모두 불명확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건을 최초로 접수한 관서를 사건의 관할 관서로 한다. 1. 전화, 인터넷 등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한 범죄 2. 지하철, 버스 등 대중교통수단 이동 중에 발생한 범죄 3. 그 밖에 경찰청장이 정하는 범죄

- 개정안(예시)

| 현행 성폭력처벌법 | 개정안 |
|-----------|-----------------------------------------------------------------------------------------------------------------------------------------------------------|
| 〈신 설〉 | 제41조의3(피해영상에 대한 압수) 제14조 내지 제14조의 2의 각 죄의 피해 영상물을 전기통신사업자가 소지 또는 관리하는 경우 검사는 법원이 발부하는 압수영장을 발부받아 피해 영상물의 사본을 취득하고, 피해 영상물의 삭제를 명함으로써 피해 영상물을 압수한다. |

※ 시행령 또는 시행규칙에 '피해 영상물의 원본, 원본과 동일한 사본, 원본을 편집한 사본'이 압수의 대상임을 압수영장에 기재하도록 할 필요 있음

나. 사이버범죄 협약 가입

- 유럽평의회 사이버범죄 협약 가입은 사이버범죄 수사시 외국과의 사법공조를 신속·강화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안 중 하나인바, 신속히 협약에 가입함으로써 디지털 성범죄 수사에서의 사법공조가 신속화·활성화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것을 권고함

다. 피해 영상물에 대한 보존명령 신설

- 디지털 성범죄의 피해영상물과 관련하여, 압수의 전 단계로 수사기관이 피해영상물이 유포 또는 저장되어 있는 인터넷 플랫폼의 운영자에게 해당 영상물을 보존하도록 명하는 제도를 도입할 것을 권고함
- 개정안(예시)

| 현행 성폭력처벌법 | 개정안 |
|-----------|-----------------------------------------------------------------------------------------------------------------------------------------------------|
| 〈신 설〉 | 제41조의2(피해영상에 대한 보존명령)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14조 내지 제14조의2의 각 죄의 피해 영상물을 정보통신망에서 발견한 경우, 그 영상을 소지하거나 관리하는 전기통신사업자에게 그 영상이 삭제·변경되지 않도록 보존할 것을 명할 수 있다. |

라. 수사 단계 토지관할에 관한 특례 규정 신설

- 디지털 성범죄의 경우 수사단계에서 법원이 발부하는 영장이나 허가가 필요한 사항과 관련하여, 피해자의 주소, 거소 또는 현재지도 법원의 토지관할 기준지로 인정하는 특별규정을 성폭력처벌법에 신설할 것을 권고함

- 개정안(예시)

| 현행 성폭력처벌법 | 개정안 |
|-----------|------------------------------------------------------------------------------------------------------------------------------------------------------------------------------------------|
| 〈신 설〉 | 제41조의2(관할의 특례) ① 제14조 내지 제14조의2의 각 죄의 범죄에서는 피해자의 주소, 거소 또는 현재지를 관할하는 수사관서가 수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수사단계에서 법원이 발부하는 영장이나 법원의 허가가 필요한 사항과 관련하여 피해자의 주소, 거소 또는 현재지도 법원의 토지관할 기준지로 본다. |

※ 향후 범죄지 및 피의자 등이 불명확한 경우, 최초 사건을 접수한 관서에 수사 관할을 인정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 있음

4 기대 효과

- 원본을 삭제하는 방식의 디지털 성범죄 피해 영상물에 대한 압수 방법을 명확히 법률상 규정하고, 디지털 성범죄의 특성을 고려한 수사 단계에서의 토지관할 특례를 인정하여 신속한 수사 및 피해 영상물의 재유포 방지
- 디지털 성범죄 수사에서 신속하고 효율적인 국가간 사법공조가 가능한 법적 기반 마련
- 보전명령을 통해 증거물인 피해 영상물을 보전하는 동시에 몰수 대상에 대한 피의자 등의 접근을 차단하여, 증거 확보 및 재유포 방지로 피해자 보호

디지털 성범죄 등 전문위원회 제8차 권고안

- '성적수치심' 등 부적절한 용어개선 -

권고개요

1. 기본 방침

- 성범죄 처벌 법령 등 형사 사법 작용의 근거 법규에 적시된 '성적 수치심' 등 부적절한 용어를 가해 행위 위주의 성 중립적 법률 용어로 변경할 것을 권고합니다.

2. 권고 사항

가. 성범죄 처벌 법령상 '성적 수치심' 용어 삭제

- 성폭력처벌법 제13조 내지 제14조의3 '성적 수치심' 등의 용어를 삭제하고, 침해되는 법익과 가해 행위 중심의 법률 용어인 '사람의 신체를 성적 대상으로 하는' 문구로 대체할 것을 권고합니다

※ 청소년성보호법, 아동복지법, 노인복지법,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장애인복지법, 장애인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등 '성적 수치심'을 규정하고 있는 다수 법률이 동일 취지로 개정될 필요 있음을 강조

나. 수사 및 형 집행 관련 법규상 '성적 수치심' 용어 삭제

- 인권보호수사규칙 제56조, 형집행법 시행규칙 제214조 '성적 수치심' 용어를 삭제하고, 성 중립적 법률용어인 '사람의 신체를 성적 대상으로 하는' 등의 문구로 변경할 것을 권고합니다.

다. '성희롱' 용어 삭제

- 성범죄를 희화화하고 범죄성을 희석시킬 우려가 높은 '성희롱' 용어를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성적 괴롭힘'으로 대체할 것을 재차 권고합니다.

3. 기대 효과

- '수치심'에서 비롯된 고정관념과 피해자다움을 요구하는 2차 가해로부터 성범죄 피해자 보호
- 성범죄 피해자가 느끼는 감정의 차이와 다양성에 대한 사회적 이해 증진, 이를 통한 실질적 범죄피해 회복 등 치료적 사법 실현
- 성범죄에 대한 형사책임의 판단기준이 가해행위 자체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법률적 개념으로 명확하게 정립, 형사사법에 대한 신뢰 회복

1 권고 배경

- 성범죄 처벌 법령 또는 판결문에 등장하는 '성적 수치심'이라는 용어는 피해자의 복합적인 피해 감정을 배제하고 피해자다움 등 편견을 조장하는 문제로 지적되어 오¹
- 주관적이고 도덕적 개념인 '수치심'이 범죄 성립과 형사책임의 판단기준으로 작용하여 법적 판단의 객관성과 중립성을 해한다는 불필요한 오해**가 유발되기도 함

1 2020. 8. 15. 한겨레, 「성적 수치심, 안 느꼈는데요? '성적 수치심'을 느꼈어요.」, 2021. 9. 28. 한겨레 「성폭력으로 성적 수치심? 불쾌하고 짜증 나고 역겨웠어요」 등

* 사전적 의미: '다른 사람들을 볼 낮이 없거나 스스로 떳떳하지 못함. 또는 그런 일'(표준국어대사전)

** 판례는 '성적 수치심'의 판단 기준이 해당 피해자의 주관적 개념이 아닌, 일반인 관점의 개념으로 판시하여 왔으나, 수사 실무에서는 여전히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느꼈는지' 여부를 질문하고 이를 범죄 성립 여부의 판단 기준으로 삼고 있음

- 공공기관·지자체 등 공적 영역에서 성차별적 용어 개선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후술하는 바와 같이 성폭력처벌법, 아동성보호법 등 일반 국민에게 직접 적용되는 형사 사법 영역의 다수 법령에 성차별적 용어가 여전히 존재하여 시급한 개선이 필요

2 성범죄 처벌 법령상 '성적 수치심' 개념의 한계

가. 성범죄 판단기준으로서 '성적 수치심'

- 형법, 성폭력처벌법 등 현행 성범죄 처벌 법률을 적용함에 있어 통상 성기 삽입 이외의 성적 행위에 대한 법적 개념으로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가 적시됨*

* "강제추행죄에서 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의미함"(2016도17733 등)

- 특히, 비접촉 성범죄인 디지털 성범죄에서 '성적 수치심'은 범죄 성립 요건인 핵심 구성요건으로 법문에 직접 명시됨

| 법률 | 내용 |
|----------|--------------------------------------------------------------------------------------------------------------------------------------------------------------------------------------------------------------------------------------------------------------------------------------------------------------------------------------------------------------------------------------------------------------------------------------------------------------------------------------------------------------------------------------------------------------------------------------------------------------------------------------------------------------------------------------------------------------------------|
| 성폭력 처벌법 | <p>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p> <p>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 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p> <p>제14조의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 ① 반포등을 할 목적으로 사람의 얼굴·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영상물 또는 음성물(이하 이 조에서 "영상물 등"이라 한다)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 또는 가공(이하 이 조에서 "편집등"이라 한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p> <p>제14조의3(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①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p> |
| 청소년 성보호법 | <p>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4. (생략) 다.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접촉·노출하는 행위로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p> <p>5.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란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비디오물·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말한다.</p> |

| 법률 | 내용 |
|----|--------------------------------------------------------------------------------------------------------------------------------------------------------------------------------------------------------------------------------------------------------------------------------------------------------------------------------------------------------------------|
| | <p>제11조(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배포 등) ①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이하 생략)</p> <p>제15조의2(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착취 목적 대화 등) ① 19세 이상의 사람이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아동·청소년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p> <p>1.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거나 그러한 대화에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참여시키는 행위 (이하 생략)</p> |

※ 기타 법문상'성적 수치심'이 규정된 법률

| 법률 | 내용 |
|--------------------------|------------------------------------------------------------------------------------------------------------------------------------------------------------------------------------------------------------------------------------------------------------------------------------------------------------------------------------------------------------------------|
| 아동복지법 | <p>제17조(금지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p> <p>2.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 행위</p> |
| 노인복지법 | <p>제39조의9(금지행위) 누구든지 65세 이상의 사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p> <p>2. 노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폭행·성희롱 등의 행위</p> |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 <p>제23조(제공자 등록의 취소 등) ①시장·군수·구청장은 제공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정하여 영업을 정지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2호, 제4호 및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p> <p>6. 소속 종사자가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이용자에 대하여 폭행, 상해,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또는 성폭력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p> |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 <p>제37조(장기요양기관 지정의 취소 등) ①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장기요양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의 범위에서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2호의2, 제3호의5, 제7호, 또는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p> <p>6. 장기요양기관의 종사자 등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다만, 장기요양기관의 장이 그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p> <p>나. 수급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폭행·성희롱 등의 행위</p> |
| 장애인 복지법 | <p>제59조의9(금지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p> <p>장애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성폭력 등의 행위</p> |
|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 <p>제24조(활동지원기관 지정의 취소 등) ①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활동지원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업무 정지하거나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p> <p>6. 활동지원인력이나 그밖의 활동지원기관 종사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p> <p>나. 수급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폭행·성희롱 등의 행위</p> |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 구제 등에 관한 법률 | <p>제32조(괴롭힘 등의 금지) ⑥누구든지 장애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거나 수치심을 자극하는 언어표현, 희롱, 장애 상태를 이용한 추행 및 강간 등을 행하여서는 아니된다.</p> |

- ‘성적 수치심’은 형법상 ‘음란’ 개념에서 도출된 것으로,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을 음란한 행위로 정의하고(2003도6514), 이에 도달하는 행위를 처벌 가능한 성적 행위로 설정한 것에 따른 것임
- 강간과 추행의 죄는 개인적 법익을 침해하는 범죄임에도(형법 제31장) 주요 행위 태양인 ‘추행’의 개념을 성풍속에 관한 죄(형법 제22장)인 사회적 법익 침해 관련 개념인 ‘음란’에서 도출한 것인바, 이는 형법 제정 당시 참조한 일본 형법의 영향으로 볼 수 있음

※ 일본 형법은 개인적 법익 침해와 사회적 법익 침해 구분 없이 강간 등 성폭력범죄와 성풍속범죄를 같은 장(제22장 음란, 간음 및 중혼의 죄)에서 다루고 있고 강제음란죄(제176조)를 규정하여 성폭력 행위에서 ‘음란’을 구성요건으로 하고 있음

- 그러나, 성폭력 범죄와 성풍속 범죄의 보호법익에 차이가 있는 우리 형법상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범죄는 음란행위로 처벌되는 성적 행위와 다른 기준으로 행위 여부를 판단할 필요가 있음

나. 해외 입법례

- 독일, 영국은 구 형법상 도덕주의적 법규정을 정비하는 법률 개정을 통해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범죄에서 ‘외설’, ‘음란’ 개념을 삭제하고 ‘성적(sexual) 행위’ 개념을 신설하였음

| | |
|---------------------------------|--------------------------------------------------------------------------------------------------------------------------------------------------------------------------------------------------------------|
| 독일 형법 (2015년 개정) | 제184h조(정의) 1. 성적 행위란, 각 조문에서 보호하는 법익의 관점에 비추어 일정한 현저함(von einiger Erheblichkeit)을 가진 행위만을 말한다. 2. 타인 앞에서의 성적행위란, 행위 과정을 지각하는 타인의 앞에서 이루어진 행위만을 말한다 |
| 영국 성범죄법 (2003년 개정) | 제78조(성적 행위) 제1부(15조A, 71조 제외)의 목적상, 삽입, 신체접촉 또는 기타 행위에 대해 합리적인 사람이 다음과 같이 판단하면 그 행위는 성적이다. (a) 그와 관련되어 사정과 사람의 목적이 무엇이든지 그 속성이 성적인 것이거나, (b) 그 속성이 성적일 수 있거나 그와 관련된 그 사정과 목적이 성적이기 때문에 성적인 것 |

- 특히, 영국은 1956년 성범죄법에서 ‘외설 폭행(Indecent assault)’을 여성과 남성에게 대한 것으로 성별에 따라 구별하여 규정한 내용을 ‘성적 폭행(sexual assault)’이라는 개념으로 변경함으로써, 가해자의 행위가 일반인의 관점에서 성적인지 여부만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것으로 명시함

다. 성차별적 법률 용어 개정에 대한 사회적 인식 확산

- ‘성적 수치심’이 성차별적 법률 용어로서 편견을 유발하고 피해자를 위축시킨다는 문제 의식과 함께 용어 개정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 확산

※ 한국여성민우회가 2021년 6~7월 여성 503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성적 수치심' 용어에 대해 "불쾌감 등 다른 용어로 바뀌어야 한다(39.2%)", "가해자의 행위가 강조되는 다른 표현이 들어가야 한다(59.2%)"는 삭제·변경 의견이 대다수²

※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이 2018년 교수, 검사, 판사, 경찰, 변호사, 비정부기구(NGO) 등 전문가 48명을 대상으로 '처벌법상 사회적 법적 관련 용어 변경의 필요성'을 조사한 결과, '성적 수치심'을 '성적 불쾌감'(65.2%) 또는 '성적 모욕감'(63%)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응답³

- 2021년 대검찰청은 「대검찰청 공무원 등 근로자 관리지침」 등 훈령 및 예규상 '성적 수치심'을 '성적 불쾌감'으로 변경하고, 서울시는 '성희롱' 용어를 '성적 괴롭힘'으로 변경하는 '성폭력 제로 서울시' 정책 시행
- 최근 대법원 판결(2019도16258호, 이른바 '레깅스' 판결)은 "성적 자유를 침해당했을 때 느끼는 성적 수치심은 부끄럽고 창피한 감정 뿐 아니라 분노·공포·무기력·모욕감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고 설시하며 성적 수치심 유발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피해 감정의 다양한 층위와 구체적 범행 상황에 놓인 피해자의 처지와 관점을 고려해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
- 입법적으로는 21대 국회에 성폭력처벌법상 '성적 수치심'을 '성적 불쾌감'으로 변경하는 법률개정안⁴을 포함, 남녀고용평등법, 항공보안법 등에서 '성적 수치심'을 '성적 불쾌감' 내지 '성적 모욕감'으로 개정하는 법률 개정안 13건이 발의되어 계류 중임

라. '성적 수치심' 용어 개정의 필요성

- '성적 수치심'은 과거 정조 관념에 근거한 개념으로, 평가의 대상이 가해자의 행위가 아닌 피해자인 것으로 오인되게 할 만한 소지 있음
- 이와 같은 용어가 성범죄의 유·무죄 판단기준으로 제시되면서 피해자는 형사절차에서 성차별적인 태도를 취해야 한다는 심리적 부담을 느끼거나 성적 수치심이 실제 피해자가 느껴야 하는 기준으로 오인되는 등 왜곡된 피해자다움이 강요될 수 있음

※ 피해자들이 고소장을 작성하거나 수사기관 또는 법정에서 증언할 때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진술하는 것이 성폭력 피해임을 인정받는 데에 용이·유리하다고 인식하거나, 성범죄 양형기준상 가중요소인 '피해자의 극도의 성적 수치심의 증대'에 해당할 수 있도록 해당 기준에 맞추어 진술하도록 변호사가 조언하는 사례⁵ 발생

- 또한, 피해자의 주관적 감정이 범죄 성립 여부를 결정하거나 법적 판단에 영향을 미친다는 오해를 일으켜, 형사사법 체계에 대한 불신을 야기할 수 있음

2 2021. 9. 28. 한국여성민우회 "성적 수치심, 괜찮지 않습니다" 토론회

3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젠더 폭력 관련 법체계 개선방안」(2018)

4 고민정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03173

5 2021. 9. 28. 한국여성민우회 "성적 수치심, 괜찮지 않습니다" 토론회

-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은 음란이나 외설에 바탕을 둔 성풍속상 도덕적 개념이며 사회적 법익 침해의 기준을 개인적 법익 침해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타인에게 해악을 주는 행위를 중심으로 국가 형벌권을 작동시키는 근대 형사법 원리에도 부합하지 않음
- 성이 아닌 성을 매개로 한 폭력 자체에 초점을 맞추어 가해자의 행위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중립적인 법적 개념을 설정하여 '성적 수치심'이라는 용어를 대체할 필요가 있음
 - ☞ 지난 20대 국회 발의 법안 중 성폭력처벌법상 불법촬영죄(제14조)의 '성적 수치심' 용어를 '사람의 신체를 성적 대상으로 하여'로 변경하는 내용의 개정안⁶은 침해되는 법익을 중심으로 가해행위에 대한 판단기준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참조할 만함
- 수사절차, 형 집행 단계에서 일반 국민에게 직접 적용되거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법령, 규칙 또한 처벌 법령과 함께 형사사법 작용의 근거 법규이므로 해당 법문상 '성적 수치심' 용어를 성 중립적 용어로 변경할 필요 있음

3 권고사항

가. 성폭력 처벌 법령상 '성적 수치심' 용어 개정

- 성폭력처벌법 제13조 내지 제14조의3의 '성적 수치심' 등의 용어를 삭제하고 침해되는 법익과 가해 행위 중심의 법률 용어인 '사람의 신체를 성적 대상으로 하는' 문구로 대체할 것을 권고합니다.
- 구체적 법률 내용(안)

| 현행 성폭력처벌법 | 개정안 |
|-----------------------------------------------------------------------------------------------------------------------------------------------------------------------------------------------|------------------------------------------------------------------------------------------------------------------------------------------------------------------------------------------------------|
| <p>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p> | <p>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u>사람의 신체를 성적 대상으로 하는</u>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p> |
| <p>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p> | <p>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u>촬영대상자 동의 없이 사람의 신체를 성적 대상으로 하여</u>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p> |

6 **[개정안(윤소하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019185호)] 성폭력처벌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촬영대상자 동의 없이 사람의 신체를 성적 대상으로 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합성·도용·편집 그 밖의 방법으로 재촬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현행 성폭력처벌법 | 개정안 |
|------------------------------------------------------------------------------------------------------------------------------------------------------------------------------------------------------------------------------------------------------------------------------------------------------------------------------------------------------------------|-----------------------------------------------------------------------------------------------------------------------------------------------------------------------------------------------------------------------------------------------------------------------------------------------------------------------------------------------------------|
| <p>제14조의2(하위영상물 등의 반포등) ① 반포등을 할 목적으로 사람의 얼굴·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영상물 또는 음성물(이하 이 조에서 “영상물 등”이라 한다)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 또는 가공(이하 이 조에서 “편집 등”이라 한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p> <p>제14조의3(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①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p> | <p>제14조의2(하위영상물 등의 반포등) ① 반포등을 할 목적으로 사람의 얼굴·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영상물 또는 음성물(이하 이 조에서 “영상물 등”이라 한다)을 영상물 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람의 신체를 성적 대상으로 하는 형태로 편집·합성 또는 가공(이하 이 조에서 “편집 등”이라 한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p> <p>제14조의3(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① 사람의 신체를 성적 대상으로 하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p> |

※ 전술한 청소년성보호법, 아동복지법, 노인복지법,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장애인복지법, 장애인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및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P.3)도 동일 취지로 개정될 필요 있음

※ ‘성적 수치심’에 관한 대체 용어로 ‘성적 불쾌감’, ‘성적 모욕감’등도 제시되었으나, 가해자의 행위를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가해 행위 중심의 성 중립적 표현이 보다 적절할 것으로 판단함

나. 수사 및 형 집행 관련 법규상 ‘성적 수치심’용어 개정

- 법무부 소관 법령인 인권보호 수사규칙(제56조), 형집행법 시행규칙 (제214조)에 규정된 ‘성적 수치심’ 용어를 삭제하고, 침해되는 법익과 가해 행위 중심의 법률 용어인 ‘사람의 신체를 성적 대상으로 하는’ 등으로 대체할 것을 권고합니다.
- 구체적 법률 내용(안)

| 현행 인권보호수사규칙 | 개정안 |
|------------------------------------------------------------------------------------------------------------------------------------------------------------------------------------------------------------------------------------------------------------------------------------|----------------------------------------------------------------------------------------------------------------------------------------------------------------------------------------------------------------------------------------------------------------------|
| <p>제56조(성폭력 등 피해자의 보호) ① 성폭력·가정폭력(이하 “성폭력등”이라 한다) 범죄의 피해자를 조사하는 경우에는 특히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유의해야 한다.</p> <p>5. 성적 수치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촬영한 사진이나 영상물(CD, 비디오테이프 등을 말한다)이 증거자료로 제출된 경우에는 이를 수사기록과 분리·밀봉하여 수사기록 끝에 첨부하거나 압수물로 처리하는 등 일반인에게 공개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p> | <p>제56조(성폭력 등 피해자의 보호) ① 성폭력·가정폭력(이하 “성폭력등”이라 한다) 범죄의 피해자를 조사하는 경우에는 특히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유의해야 한다.</p> <p>5. 사람의 신체를 성적 대상으로 하여 촬영한 사진이나 영상물(CD, 비디오테이프 등을 말한다)이 증거자료로 제출된 경우에는 이를 수사기록과 분리·밀봉하여 수사기록 끝에 첨부하거나 압수물로 처리하는 등 일반인에게 공개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p> |

| 현행 형집행법 시행규칙 | 개정안 |
|-------------------------------------------------------------------------------------------------------------------------------------|------------------------------------------------------------------------------------------------------------------------------|
| <p>제214조(규율) 수용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p> <p>4. 음란한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성적(性的) 언동 등으로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p> | <p>제214조(규율) 수용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p> <p>4. 음란한 행위를 하거나 성적 욕망 내지 만족을 위한 목적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언동을 하는 행위</p> |

다. 기타 - '성희롱' 용어 개정

- 현재 다수 법률⁷⁾에 사용되고 있는 '성희롱'이라는 용어는 '21. 1. 28.자 디지털 성범죄 등 전문위원회 5차 권고안 내용과 같이 성범죄를 희화화하고 범죄성을 희석시킬 우려가 높아 부적절하므로 '성적 괴롭힘'으로 대체함이 바람직함을 재차 권고합니다.

7 [아동복지법]

제17조(금지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

[노인복지법]

제39조의9(금지행위) 누구든지 노인(65세 이상의 사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폭행·성희롱 등의 행위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21. "괴롭힘 등"이라 함은 집단따돌림, 방치, 유기, 괴롭힘, 희롱, 학대, 금전적 착취,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 등의 방법으로 장애인에게 가해지는 신체적·정신적·정서적·언어적 행위를 말한다.

제32조(괴롭힘 등의 금지) ①누구든지 장애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거나 수치심을 자극하는 언어표현, 희롱, 장애 상태를 이용한 추행 및 강간 등을 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정의) 3.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 지역(출생지, 등록기준지, 성년이 되기 전의 주된 거주지 등을 말한다), 출신 국가, 출신 민족, 용모 등 신체 조건, 기혼·미혼·별거·이혼·사별·재혼·사실혼 등 혼인 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 형태 또는 가족 상황, 인종,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前科), 성적(性的) 지향, 학력, 병력(病歷) 등을 이유로 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라. 성희롱[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공공기관(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초·중등교육법」 제2조, 「고등교육법」 제2조와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공직유관단체를 말한다)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그 직위를 이용하여 또는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한다] 행위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정의) 2. '성희롱'이란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제31조의2(성희롱 사건 발생 시 조치) ① 국가기관등의 장은 해당 기관에서 성희롱 사건이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국가기관등의 장이 해당 성희롱 사건의 행위자인 경우를 포함한다) 피해자의 명시적인 반대조건이 없으면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여성가족부장관에게 통보하고, 해당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제31조제1항에 따른 재발방지대책을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1조의3(성희롱 방지 조직문화 진단 및 개선 권고)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성희롱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가기관 등의 조직문화를 진단하고 개선권고를 할 수 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2조(정의)

2. '직장 내 성희롱'이란 사업주·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근로조건 및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한다.

제12조(직장 내 성희롱의 금지) 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 내 성희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7조(벌칙) ② 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14조 제6항을 위반하여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불리한 처우를 한 경우

제39조(과태료) ① 사업주가 제12조를 위반하여 직장 내 성희롱을 한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4 기대 효과

- ‘수치심’이라는 용어에서 비롯된 고정 관념 및 피해자다움을 요구하는 2차 가해로부터 성범죄 피해자 보호
- 성범죄 피해자가 느끼는 감정의 차이와 다양성에 대한 사회적 이해도 증진, 이를 통한 실질적 범죄피해 회복 등 치료적 사법 실현
- 성범죄에 대한 형사 책임의 판단기준을 가해 행위 자체를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법률적 개념으로 명확하게 정립, 형사 사법에 대한 신뢰 회복

디지털 성범죄 등 전문위원회 제9차 권고안

- 디지털 성범죄 압수 및 몰수 등 개선, 피해자 경제적 지원 강화 -

권고개요

1. 기본 방침

- 형사사법 절차에서 디지털 성범죄 피해 영상물의 (재)유포 차단과 범죄수익의 철저한 박탈을 위해 필요적 몰수·추징 및 긴급 압수·수색 규정을 신설하고, 법령 정비 및 독립된 예산 편성으로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확대할 것을 권고합니다.

2. 권고 사항

가. 디지털 성범죄 관련 필요적 몰수·추징 규정 마련

- 불법촬영물·합성물·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및 촬영(제작)·소지 등에 사용된 저장매체 자체를 실효적으로 몰수·폐기할 수 있도록 성폭력 처벌법 등에 필요적 몰수·추징 규정을 신설할 것을 권고합니다.
- 디지털 성범죄로 취득한 범죄 수익에 대해 필요적 몰수·추징 규정을 신설할 것을 권고합니다.

나. 디지털 성범죄 관련 긴급 압수·수색 규정 신설

- 적법하게 압수한 정보저장매체의 탐색 과정에서 우연히 발견된 영상물이 불법 촬영물이 명백한 경우,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해 영장 없는 압수·수색을 허용하고 추후 사후영장을 발부받도록 형사소송법에 독립적 긴급 압수·수색 규정을 신설할 것을 권고합니다.

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경제적 지원 확대를 위한 법령 정비 및 독립 예산 편성

- 피해 발생 직후부터 명확한 기준에 의해 즉각적·체계적·지속적으로 피해자를 지원할 수 있도록 경제적 지원 실질화를 위한 법령 정비를 권고합니다.
- 디지털 성범죄로 인한 범죄 수익 환수금을 법무부 예산 중 '피해자 지원' 예산으로 편성하고, 범죄피해자보호기금에 피해 영상물 삭제 등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에게 필요한 실질적 지원 사업에 할애할 것을 권고합니다.

※ 장기적으로는 범죄피해자보호기금에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항목 별도 편성 권고

3. 기대 효과

- 피해 영상물 및 저장 매체 원본에 대한 필요적 몰수·폐기를 통해 영상물 재유포를 확실히 방지, 재유포·확산에 대한 피해자들의 영구적 불안감 해소
- 디지털 성범죄로 인한 범죄 수익을 필요적으로 환수하여 경제적 동기를 제거함으로써 범죄 억지력 강화, 재범 방지 및 범죄 대응에 소요되는 사회적 비용 감소
- 디지털 성범죄 압수·수색 관련 신속한 적법 수사의 법적·제도적 기반 마련, '드러나지 않은' 디지털 성범죄에 적극 대응하여 피해자 보호에 만전
- 국가의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사업에 추가 사업 편성, 안정적 재원을 확충하여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확대, 피해자의 일상으로의 회복 촉진

1 권고 배경

- 디지털 성범죄는 1인의 가해자가 수인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가 많고*,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인식하기 어려운 경우도 다수이며, 피해 영상은 무한 복제 가능성을 특성으로 하여 제작된 순간부터 유포 가능성이 높으므로, 신속한 증거 수집과 재유포 방지를 위한 철저한 압수·수색 및 몰수·폐기의 중요성 높음
 - * '22. 3. 24. 여성가족부 발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발생 추세와 동향 분석」에 따르면, '20.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 유죄 판결이 확정되어 신상 정보 등록 처분을 받은 범죄자의 판결문을 기초로 분석한 결과, 통신매체이용음란 가해자는 23명이나, 피해자는 45명, 카메라등이용촬영 가해자는 157명이나, 피해자는 301명, 성착취물제작 등 가해자는 102명이나, 피해자는 167명인바, 1명의 범죄자가 평균 1.8명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행
- 형사사법에서 수사 과정의 적법절차,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 등 절차적 정의를 준수하면서도, 변화된 형사사법 환경에서 디지털 성범죄 관련 수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사 지연, 피해 영상물 재유포 가능성 등 문제에 대응하여 신속한 증거 수집 및 범죄 대응력 강화의 필요성 높음
- 또한, 디지털 성범죄는 신원 노출, 피해의 무한 확산 가능성, 전파성, 재유포 위험으로 이사·퇴사 등 생활 기반의 전반적 변화나 사회활동 제한을 가져오는 등 피해자에게 정신적·경제적 피해를 입게 하고, 피해의 영구적 지속 위험이 있음에도, 범죄로 인한 피해액 산정이 어려워 민·형사소송을 통한 구제가 어려운바, 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확대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2 현행 압수·수색 및 몰수·폐기의 문제점

가. 전자정보 저장매체에 대한 몰수의 임의성

- 디지털 성범죄 피해 영상물은 형법 제48조¹에 따라 몰수·폐기 대상에 해당하되, 피해 영상물이 휴대전화 등 정보저장매체에 저장된 경우 수사기관은 ① 저장매체 내 범행 관련 전자정보만을 선별 압수 후 피의자의 동의 하에 해당 전자정보를 삭제하여 저장매체 원본을 반환하거나, ② 원본을 삭제하더라도 복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저장매체 자체를 압수한 후 몰수 판결을 선고받아 폐기해 왔음

1 형법 제48조(몰수의 대상과 추정)

① 범인 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하거나 범죄 후 범인 외의 자가 사정을 알면서 취득한 다음 각 호의 물건은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있다.

1.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
2.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겼거나 취득한 물건
3. 제1호 또는 제2호의 대가로 취득한 물건

- 그러나, 최근 하급심 판결에서 형법 제48조가 '임의적 몰수'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피해 영상물이 담긴 휴대전화 등 저장매체에 대하여 몰수 판결을 선고하지 않은 사례가 발생하고, 몰수·폐기의 범위와 의미도 전자정보, 저장매체 등으로 판결마다 다르며, 대법원은 '임의적 몰수'로 판시하고 있어 피해 영상물의 복원 및 재유포의 우려 있음

※ 1심의 몰수 누락에 대해 임의적 몰수에 대한 재량권의 한계를 넘어서는 것으로 위법하다고 보아 항소심에서 1심을 파기하고 몰수 선고한 사례도 있으나(서울고등법원 2021. 4. 22. 선고 2020노1683호 판결 등), 대법원은 몰수 여부는 법원의 재량이므로 몰수 선고를 하지 않더라도 위법하지 않다고 판시

참고 판례

대법원 2017. 10. 23. 선고 2017도5905 판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상해·특수폭행 등 사건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강간범행 장면을 촬영하여 저장한 동영상은 저장된 휴대전화에 대하여 몰수 판결을 선고하지 않은 항소심이 위법하다고 검사가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이 사건 휴대전화기는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가 정하는 '범죄행위에 제공된 물건'에, 이 사건 동영상은 이 사건 휴대전화기에 저장된 전자기록으로서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가 정하는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긴 물건'에 각각 해당하고, 이러한 경우 이 사건 휴대전화기와 이 사건 동영상의 몰수 여부는 법원의 재량이므로, 법원이 이 사건 휴대전화기를 몰수하지 않고 이 사건 휴대전화기 중 이 사건 동영상만을 몰수하였다고 하여 이를 위법하다고까지 할 수는 없다."고 판시

대법원 2021. 9. 9. 선고 2021도7233 판결

1심 및 항소심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에 사용한 휴대전화에 대하여는 몰수하지 않고 해당 영상물만 몰수하였고, 이에 대하여 검사가 항소 및 상고하자, 대법원은 "형법 제48조 제1항에 따른 몰수는 임의적인 것이므로, 피고인으로부터 압수한 물건들에 대한 몰수를 선고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형법 제48조 제1항에서 정한 몰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

⇒ 피해 영상물의 복원·재유포로 인한 2차 피해를 막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수사 과정에서 압수한 피해 영상물 및 그 저장매체에 대해 철저한 몰수·폐기방안이 필요함

나. 범죄수익에 대한 몰수·추징의 임의성

- 불법 촬영물의 제작·배포로 가해자가 취득하는 범죄 수익은 당해 범행의 동기가 될 뿐 아니라, 수사 또는 재판 이후 가해자 또는 제3자가 피해 영상물의 복원 또는 재유포를 감행하는 요인으로 작용함
- 최근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의 적용을 받는 중대범죄에 디지털 성범죄 일부가 포함*되었으나, 위 법에 규정된 몰수·추징은 '임의적' 몰수·추징으로 디지털 성범죄로 인한 범죄 수익의 환수 역시 법원의 재량에 맡겨져 있음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약칭: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특정범죄"란 재산상의 부정한 이익을 취득할 목적으로 범한 죄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가. 사형, 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제2호나목에 규정된 죄는 제외한다)
2. "범죄수익"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가.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재산 또는 그 범죄행위의 보수(報酬)로 얻은 재산

제8조(범죄수익등의 몰수) ① 다음 각 호의 재산은 몰수할 수 있다.

1. 범죄수익
2.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
3. 제3조 또는 제4조의 범죄행위에 관계된 범죄수익등
4. 제3조 또는 제4조의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재산 또는 그 범죄행위의 보수로 얻은 재산
5. 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재산의 과실 또는 대가로 얻은 재산 또는 이들 재산의 대가로 얻은 재산, 그 밖에 그 재산의 보유 또는 처분에 의하여 얻은 재산

제10조(추징) ① 제8조제1항에 따라 몰수할 재산을 몰수할 수 없거나 그 재산의 성질, 사용 상황, 그 재산에 관한 법인 외의 자의 권리 유무, 그 밖의 사정으로 인하여 그 재산을 몰수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가액(價額)을 범인으로부터 추징할 수 있다.

→ 디지털 성범죄 및 피해 영상물의 복원·재유포로 인한 2차 피해를 막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디지털 성범죄로 취득한 수익에 대해 철저한 몰수, 추징 방안이 필요함

다. 임의제출된 전자정보 저장매체의 압수 범위 관련

- 최근 법원은 불법 촬영에 사용한 휴대전화 등 전자정보 저장매체를 임의 제출받아 압수하는 경우, 영장에 의한 압수수색절차와 동일하게 ▲ 관련성 있는 정보의 선별적 사본 압수 원칙, ▲ 피의자 참여권 보장 등의 절차를 엄격히 준수하여야 한다고 판시함(21. 11. 18. 선고 2016도348호 전합)
- 이에 따르면, 수사기관이 피해 영상물이 저장된 저장매체를 임의제출받아 탐색하던 중 다른 피해 영상물을 발견한 경우, 압수의 효력은 임의제출의 동기가 된 혐의사실과 관련성 있는 범위에만 미치므로, 별건 피해 영상물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즉시 탐색을 중단하고 영장을 발부받아야 하는 등 절차가 복잡하고 별도 영장을 발부받는 동안 증거 인멸·소실 우려 있음
- 또한, 압수의 동기가 된 혐의사실과의 객관적 관련성이 인정되는 범위에 관한 법원의 판단이 일관되지 않아(※ 참고 판례 참조), 수사 현장에서 관련성 판단이 용이하지 않고, 그로 인해 압수된 피해 영상물이 위법수집증거가 되어 무죄판결이 선고되는 사례가 증가
 - 증거 수집 절차상의 문제로 무죄 선고시 피해 영상물에 대한 몰수 및 삭제가 불가능하여, 피해 영상물 재유포를 통한 피해 확산 우려 있음

대법원 2021. 11. 18 선고 2016도348 전원합의체 판결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피해자 A가 피고인의 핸드폰 2대를 임의제출한 사건에서, 휴대전화 등 정보저장매체가 임의제출된 경우에도 최초 압수의 동기가 된 범죄사실(피해자 A에 대한 카메라등이용촬영범죄) 자체와 구체적, 개별적 연과관계가 있는 전자정보로 임의제출물 압수의 범위가 제한되고(①엄격한 관련성 요구),
- 제3자가 정보저장매체를 임의제출한 경우 제출할 정보의 범위를 확인하여야 하고, 제3자가 임의제출의 동기가 된 혐의사실과 관련된 것 이상의 정보를 제출한 경우에도, 그 혐의사실과 객관적 관련성이 인정되는 정보만 압수할 수 있고, 저장매체에서 정보의 탐색·복제·출력시 실질적 피압수자인 피의자에게 참여권을 보장하고 피의자에게 압수한 전자정보 목록을 교부하여야 하며(②실질적 피압수자인 피의자에게 참여권 보장),
- 피해자 B, C에 대한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범죄가 비록 동종·유사한 범죄라고 하더라도 별건 범죄에 해당하여, B, C에 대한 영상물이 발견된 즉시 탐색을 중단하고, 별도의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야 하며, 이러한 절차가 미비된 경우 위 영상물은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에 해당하여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음.

※ 1심: 유죄 → 2심 및 대법원 무죄(객관적 관련성 부정, 참여권 미보장 등)

대법원 2021. 11. 25 선고 2019도7342 판결

- 피고인이 불법촬영을 목적으로 모텔에 방실에 은밀하게 설치한 위장형카메라 8개를 모델 주인인 피해자 A로부터 임의제출받아 압수한 사건에서, 항소심은 위장카메라를 발견하여 신고한 피해자 B, C가 아닌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한 불법촬영물은 임의제출의 동기가 된 혐의사실과 객관적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 별건 증거이고 임의제출자인 A의 임의제출의사 불분명, 피의자의 참여권 미보장 및 전자목록 미교부 등을 이유로 증거능력을 부정하고 이 부분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으나
- 대법원은 오로지 불법촬영을 목적으로 은밀하게 설치된 ‘위장형 카메라’를 피해자가 임의제출한 경우에는 임의제출물 압수절차 외에 다른 절차가 필요하지 않고, 피의자의 사생활의 비밀보호 등의 필요가 없으므로 피의자 등에게 참여권 미보장, 압수목록 미교부 사실이 있다는 점만으로 곧바로 위 촬영물 등의 증거능력을 부정할 것은 아니라고 보아 항소심 판결을 파기환송함

※ 1심: 유죄 → 2심: 무죄 → 대법원: 유죄취지로 파기환송

대법원 2021. 11. 25 선고 2016도82 판결

- 지하철 내에서 피해자 A의 신체를 촬영한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된 피고인으로부터 임의제출은 스마트폰에서, 피해자 A에 대한 영상물은 발견하지 못하고, 여자 친구인 피해자 B 몰래 나체 등을 촬영한 사진 등을 발견하여 압수하고, 피해자 B에 대한 카메라등이용촬영 범죄로 기소한 사건에서, 피해자 B에 대한 사진은 임의제출의 동기가 된 A에 대한 혐의사실과 객관적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고, 피의자의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아 위법하다며 증거능력을 부정하였음

※ 1심: 유죄 → 2심: 무죄 → 대법원: 무죄(상고기각)

※ 다만, 공중화장실에서 불법촬영하려다가 발각된 경우(카메라등촬영은 미수) 위 혐의에 대하여 영장에 발부받아 휴대전화를 압수한 사건에서, 다른 일시, 장소에서 다른 피해자를 촬영한 동영상이 발견된 경우 대법원은 객관적 관련성을 인정한 바 있음(대법원 2021. 12. 30 선고 2019도10309 판결)

대법원 2021. 11. 25 선고 2019도6730 판결

- 지하철 역 내에서 피해자 A의 신체를 임의로 촬영한 혐의[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사실로 피고인으로부터 임의제출받은 휴대전화를 경찰이 피고인의 면전에서 피고인과 함께 탐색하다가 피고인이 버스정류장, 지하철 역사 등에서 다른 피해자를 촬영한 것을 발견하여 압수한 사건에서, 항소심은 범죄일시, 장소, 피해자가 다른 불법촬영물은 임의제출의 동기가 된 혐의사실과 객관적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고, 피고인의 다른 불법촬영물까지 임의제출한 것이라는 점이 불명확하며, 피고인의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았고 압수한 전자정보의 목록도 미교부하였다는 점을 들어 다른 피해자들에 대한 동영상 부분을 증거능력이 없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하였으나,
- 대법원은 피해자 A에 대한 영상과 다른 피해자들에 대한 영상은 모두 지하철, 버스정류장 등 공공장소에서 촬영된 것으로 범죄의 속성상 상습성이 의심되거 피고인의 성적 기호 내지 경향성의 발현에 따른 것으로 의심되는바

간접증거나 정황증거에 해당하여 객관적 관련성이 인정되고, 경찰이 피고인과 함께 휴대전화를 탐색하는 과정에서 다른 범죄에 대한 영상이 발견된 것으로 실질적으로 참여의 기회가 보장되었고, 피고인이 직접 불법촬영물을 특정하여 범죄일시, 장소를 특정하고 범죄일람표를 수기로 작성하여 경찰에게 교부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상세목록을 교부한 것과 같다고 보아 임의제출에 의하여 적법하게 압수된 것이라고 보았다.

※ 1심: 유죄→2심: 무죄→대법원: 유죄(파기환송)

3 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의 한계

-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는 피해 영상물이 압수된 이후에도 추가 영상물의 존재 또는 재유포의 불안감·두려움, 신원 노출 등으로 인해 직장을 사직하는 등 사회 활동이 제한되어 경제 활동을 중지하거나, 이사 등으로 생활 터전을 완전히 잃는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하는 경우가 많음
- 또한, 범행 후 장기간 지속되는 심리적 고통, 사설업체에 피해 영상물 삭제를 의뢰하며 들이는 비용 지출*등 물적·정신적 피해가 상당함

* 디지털 장의 비용은 삭제 난이도에 따라 적게는 월 50만 원에서 300만 원 이상으로 알려짐

- 그럼에도 디지털 성범죄는 피해액 확정이 어려워 가해자를 상대로 한 형사배상명령 또는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도 용이하지 않고, 이와 관련된 지원이 미비한 것이 현실임²

※ 2020년 디지털 성범죄 발생 건수는 전년 대비 약 79.6% 증가('19년 2,690건 → '20년 4,831건)하였으나, 2019~2020년 법무부에서 지급한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금(합계 3억 6,369만원)은 전체 경제적 지원금(188억 6,354만원)의 1.92%에 불과함 [출처: 경찰청, 법무부 범죄피해자센터]

⇒ 디지털 성범죄로 환수한 범죄 수익 중 일부를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을 위해 사용하도록 하는 등 피해 특성을 고려한 경제적 지원 제도를 마련할 필요성 높음

4 권고 내용

가. 디지털 성범죄 관련 필요적 몰수·추징 규정 마련

- 불법 촬영물·합성물·아동 청소년 성착취물과 촬영(제작)·소지에 사용된 저장매체 원본에 대해 필요적 몰수·추징 규정을 신설하여 필요적으로 저장매체 자체를 몰수하고 폐기할 법적 근거를 마련할 것을 권고함

2 2021. 9. 6.자 한겨레신문, "디지털 성범죄로 인한 손해를 산정할 수 없어 지원이 어렵습니다", <https://www.hani.co.kr/arti/society/women/1010625.html>

- 디지털 성범죄로 인한 범죄 수익에 대해 필요적 몰수·추징 규정을 신설하여 디지털 성범죄로 인한 경제적 이익 취득을 원천적으로 금지할 법적 근거를 마련할 것을 권고함
- 구체적 법률 내용(안)

| 현행 성폭력처벌법 | 개정안 |
|-----------|------------------------------------------------------------------------------------------------------------------------------------------------------------------------------------------------------------------------------------------------------------------------------------------------------------------------------------------------------------------------------------------------|
| 〈신설〉 | <p>제14조의4(몰수 및 추징) ① 제14조 내지 제14조의3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이 소유 또는 점유하는 범행에 사용·제공되거나 취득한 물건(전자정보 포함), 범죄 후 법인 외의 자가 정을 알면서 취득한 물건은 몰수하고, 이를 몰수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p> <p>② 제14조 내지 제14조의3에 규정된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수익(이하“범죄수익”이라 한다)과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은 몰수하고, 이를 몰수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p> <p>③ 제2항에서 규정한 범죄수익 및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의 몰수·추징과 관련되는 사항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내지 제1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p> |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도 동일 취지 개정 필요

나. 독립적 긴급 압수·수색 규정 신설

- 영장 또는 임의제출에 의해 적법하게 압수한 정보저장 매체의 탐색 과정에서 발견된 영상물이 불법 촬영물이 명백한 경우에는, 별도 영장 없이 신속히 압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추가적인 영장 청구·발부 절차로 인한 수사 중단 및 피해 확산을 방지할 필요가 있음
- 다만, 이는 영장주의의 예외에 해당하므로 엄격한 요건을 설정하여 영장 없는 압수·수색을 허용하고 사후영장을 발부받도록 함으로써 사법 통제와 조화를 이루는 방법으로 형사소송법에 독립적 긴급 압수·수색 규정을 마련할 것을 권고함

- 현행 형사소송법상 임의제출물 외에 영장 없이 압수·수색할 수 있는 규정이 있으나* 체포·구속에 수반하거나 범행 중 또는 범행 직후 범죄장소에서의 압수·수색을 전제로 하는바, 이와 별개로 체포·구속에 수반하지 않고 범죄장소가 아닌 곳에서 긴급한 경우 영장 없이 압수·수색이 가능한 독립적 긴급 압수·수색을 도입할 필요 있음³

3 이에 대해, 긴급 압수·수색이 수사의 효율과 편의를 위해 영장주의를 제한하고, 이른바 ‘투망식 압수수색’으로 개인의 프라이버시 또는 기업의 영업 비밀에 관한 침해를 유발할 수 있다는 이유로 독립적 긴급 압수·수색을 허용하여서는 안된다는 반대론이 있으나, ① 수사 현장에서 사전에 예상하지 못했던 본건 또는 별건 증거가 얼마든지 발견될 수 있고 현장에서 즉각적으로 증거 훼손 또는 인멸을 방지해야 할 현실적인 필요성이 존재하는 점, ② 현행 형사소송법은 극히 제한적으로만 긴급압수수색을 인정(형소법 제217조 긴급체포된 자의 소유·소지물 등에 대한 압수수색)하고 있어 증거인멸 등 긴급상황에 대처하는데 한계가 있고 비교법적인 관점에서도 지나치게 제한적인 점, ③ 현행 규정에 의하면 수사기관이 수사현장에서 새롭게 인지, 파악한 범죄 증거물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별건 혐의로 피의자를 긴급체포 또는 현행범체포한 후 그에 수반한 압수수색을 집행할 수 밖에 없는데(임의제출을 받을 수도 있으나 피의자가 자신에게 불리한 증거에 관한 임의제출에 응할 가능성은 낮음) 수사기관의 목적이 기본권 침해 정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대물적 강제처분임에도

* 체포·구속 현장에서의 압수·수색(제216조 제1항 제2호, 제2항), 범죄장소에서의 압수·수색(제216조 제3항), 긴급체포된 자의 소유·소지물 등에 대한 압수·수색(제217조)

※ 미국, 독일 등 해외 여러 나라에서 인신구속과 별개로 당해 또는 별건 사건의 증거에 대해 영장 없는 압수·수색을 허용하고 있음

| | |
|--------------|-------------------------------------------------------------------------------------------------------------------------------------------|
| 미국 | 압수·수색에 관한 영장주의 예외로서 판례 ⁴ 상 확립된 Plain view 원칙(명백한 목격의 원칙)에 따라 수사기관이 합법적으로 진입하여 소재하는 장소에서 자연적 시야에 들어온 명백한 범죄 증거물에 대해 영장 없이 압수 가능 |
| 독일 | 형사소송법에 '독립적 기압수' 규정 ⁵ 을 두어 적법한 수색의 기회에 우연히 발견된 피의자 또는 제3자의 다른 범행의 증거물에 대해 수사기관이 법관의 압수명령 없이 잠정적으로 압수 가능 |
| 오스트리아 | 독일과 유사하게 형사소송법에 수색의 기회에 발견된 다른 범행의 증거물을 압수영장 없이 보존할 수 있다는 규정 ⁶ 존재 |

• 구체적 법률 내용(안)

| 현행 형사소송법 | 개정안 |
|----------|----------------------------------------------------------------------------------------------------------------------------------------------------------------------------------------------------------------------------------------------------------------------------------------------------------------------------------------------------------------------------------------------------------------------------------------------------------------------------------------------------------------------------------------------------------------------------|
| (신설) | <p>제217조의1 (체포 또는 구속과 독립된 영장에 의하지 아니 하는 강제처분)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전자정보저장매체에 대한 제215조의 압수, 수색 또는 검증, 제218조의 소유자, 소지자 또는 보관자가 임의로 제출한 전자정보저장매체에 대한 압수, 수색 또는 검증에 있어 해당 사건과 관계가 없는 다른 범죄에 관한 전자정보를 우연히 발견한 때에는 피의자가 사형·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 또는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범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긴급히 압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다.</p> <p>②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1항에 따라 압수한 전자정보를 계속 압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압수수색영장의 청구는 압수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하여야 한다.</p> <p>③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하지 않거나 제2항에 따라 청구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지 못한 때에는 압수한 전자정보를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p> |

이를 실행하기 위해 기본권 침해 정도가 보다 높은 대인적 강제처분에 들어가는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하고 이는 비례의 원칙에 반하는 점, ④ 피의자를 체포할 수 없는 상황에서 공범 등에 의한 증거인멸이 우려되는 긴급상황도 있을 수 있는 점, ⑤ 디지털 증거는 삭제나 조작이 용이하고 습도 등 자연현상, 물리적 충격 등에 취약하여 멸실·훼손 가능성이 높으므로 긴급 압수수색을 통한 증거 확보 필요성이 특히 높은 점 등을 고려하여 대상범죄 범위를 제한하고 일정한 요건을 설정하여 디지털 증거에 관하여 예외적으로 독립적 긴급 압수·수색을 허용하고 사법통제를 통해 사후적으로 적법성·타당성 심사를 받게 함이 상당함

4 Coolidge v. New Hampshire(403 U.S. 443(1971))

5 **독일 형사소송법 제108조(다른 범죄에 대한 증거물)** ① 수색의 기회에 조사와 관련은 없으나 다른 범죄의 범행을 시사하는 물건이 발견된 경우에는 이를 잠정적으로 압수할 수 있다. 이에 관하여는 검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6 **오스트리아 형사소송법 제122조** ② 수색에 있어서 수색이 실시되는 당해 범죄와 다른 범죄의 범행을 추론할 수 있는 물건이 발견된 경우 이를 보존할 수 있다. 이에 관하여 별도의 조서를 작성하고 지체없이 검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현행 형사소송규칙 | 개정안 |
|-----------|-----------------------------------------------------------------------------------------------------------------------------------------------|
| 〈신설〉 | 제108조의1 (체포 또는 구속과 독립된 영장에 의하지 아니하는 강제처분) 법 제218조의 제1항에서 정하는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범죄'란 아래와 같다. 1.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2. 성폭력범죄처벌법 제14조, 제14조의 2 |

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경제적 지원 확대

▶ 경제적 지원 실질화를 위한 법령 정비

- 경제적 지원은 범죄피해자에게 '실비'로 일차적인 피해 복구 비용을 지급하는 것으로 피해자의 일상 회복을 지원할 수 있는바, 피해 발생 초기부터 즉각적으로 실시되고 체계적으로 지속될 필요가 있음
-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들이 명확한 기준에 의해 신속하고 확정적으로 경제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업무처리지침」(대검 예규)을 개정하여 ▲대상 범죄에 디지털 성범죄를 명시하고, ▲유포 범위에 시간적·물리적 제약이 없는 피해의 특성을 고려*하여 범죄 발생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한 후라도 경제적 지원을 개시할 수 있도록 하며, ▲치료비 지원 요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규정을 정비할 것을 권고함

* 미국 AVAA법(The Amy, Vicky, and Andy Child pornography victim assistance Act of 2018)은 디지털 성범죄의 경우 그 피해가 인생 전반에 걸쳐 언제라도 다시 일어날 수 있음을 전제한 전면 배상 등 실질적 배상제도 마련(미래에 예상되는 손실 포함, 종합적 인과관계 판단 등)

- 구체적 내용(안)

| 현행 「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업무처리지침」 (대검 예규) | 개정안 |
|-----------------------------------------------------------------------------------------------------------------------------------------------------------------------------------------------------------------------------------------------------------------------------------------------------------------------------------------------------------------------------------------------------|--------------------------------------------------------------------------------------------------------------------------------------------------------------------|
| <p>제3조(경제적 지원의 대상) ① 이 지침은 다음 각 호 범죄로 인해 신체적 또는 정신적 피해를 입은 범죄피해자의 경우에 적용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형법 제13장, 제24장 내지 제26장, 제28장, 제29장, 제31장, 제32장의 범죄, 제36장의 범죄 2. 형법 제333조 내지 제342조의 범죄 3. 형법 제88조, 제124조, 제125조, 제136조, 제144조의 범죄 4. 형법 및 형사특별법에서 전 3호의 각 범죄를 가중처벌하는 죄 및 그 미수범을 처벌하는 경우 미수의 죄 5. 기타 생명·신체의 안전을 해하는 범죄 | <p>제3조(경제적 지원의 대상) ① <좌 등> 1. ~ 4. <좌 등></p> |
| <p>제4조(경제적 지원의 기한) ① 이 지침에 의한 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절차는 범죄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p> | <p>5.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내지 제14조의 3 및 그 미수의 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5조의2의 범죄 6. <현행 5.호와 동일></p> <p>제4조(경제적 지원의 기한) ① <좌 등></p> |

| 현행 「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업무처리지침」 (대검 예규) | 개정안 |
|--------------------------------------------------------------------------------------------------------------------------------------------------------------------------------------------------------------------------------------------------------------------------------------------------------------------------------------------------------------|----------------------------------------------------------------------------------------------------------------------------------------------------------------------------------------------------------------------------------------------------------------------------------------------------------------------------------------------------------------|
| <p>그 피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이 지나거나 해당 범죄피해가 발생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개시할 수 없다.</p> <p>② 전항에도 불구하고 미성년자가 성폭력, 성추행, 성희롱, 그 밖의 성적(性的) 침해를 당한 경우에 이에 대한 경제적 지원 절차 기한은 그가 성년이 될 때까지는 진행하지 아니한다.</p> <p>제28조 (지원요건) 치료비는 제3조가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범죄피해자가 범죄로 인하여 5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신체적 피해를 입어 의료기관에서 의료서비스를 제공받는 것이 필요한 경우에 그 실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범죄피해구조금은 고려하지 아니한다.</p> | <p>② 전항에도 불구하고 제3조 제5호에 규정된 범죄에 대해서는 해당 범죄 피해가 발생한 날부터 10년이 지난 경우에도 경제적 지원을 개시할 수 있다.</p> <p>③ <현행 ②항과 동일></p> <p>제28조 (지원요건) 치료비는 제3조가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범죄피해자가 범죄로 인하여 5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신체적 피해를 입어 의료기관에서 의료서비스를 제공받는 것이 필요한 경우(다만, 제3조 제5호에 규정된 범죄에 대해서는 5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신체적 피해를 입을 것을 요하지 않는다)에 그 실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범죄피해구조금은 고려하지 아니한다.</p> |

▶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을 위한 예산 편성

- 디지털 성범죄로 인한 범죄수익 환수금을 우선적으로 법무부 피해자 지원 예산으로 편성할 것을 권고함
 - 재산범죄의 경우 범죄피해자산을 몰수하여 피해자에게 환부할 수 있으나(부패재산몰수법 제6조), 디지털 성범죄로 취득한 범죄수익은 '범죄피해재산'이 아니므로 피해자 환부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 현행법상 범죄수익 환수금은 법무부 일반회계에 편입되어 이를 바로 피해자 지원기금으로 사용하기도 어려움⁷
 - 디지털 성범죄로 인한 범죄수익금은 범죄행위로 인한 직접적 수익으로 피해와 밀접한 연관이 있는바, 환수한 범죄수익 중 일부를 별도 기금으로 조성하여 피해자를 위해 사용할 필요 있음
- 법무부 예산 항목 중 범죄피해자 보호기금에 피해 영상물 삭제 비용, 생계비 등 실질적 경제적 지원 사업에 할애할 것을 권고함
 - 피해 영상물 삭제, 심리 치료 등 장기간에 걸쳐 지속적 지원이 필요한 디지털 성범죄 피해 특성을 고려하여 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확대할 필요 있음

※ 장기적으로는 범죄피해자보호기금에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항목 별도 편성 권고

7 범죄수익 환수금의 운용 주체는 법무부로, 몰수 및 추징금은 형의 종류에 해당하기 때문에(형법 제41조 제9호, 형소법 제48조), 관련 법령에 의하여 국가가 수납할 몰수금, 몰수 물품 등은 법무부의 일반회계에 편입됨
 - 몰수금 및 추징금은 국고에 귀속하여, 법무부 일반회계에 편입, 피해자 지원 등을 포함하여 법무부의 각종 사업에 사용되고, 범죄수익환수금만을 따로 분리하여 피해자 지원에 사용하도록 하고 있지는 않음 (2020년 법무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사업설명자료 참조)

5 기대 효과

- 디지털 성범죄 피해 영상물이 저장된 매체 원본에 대한 필요적 몰수·폐기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피해 영상물 재유포 가능성을 보다 확실히 차단하고 2차 유포·확산에 대한 피해자들의 영구적 불안감 해소
- 필요적 몰수·추징을 통해 범죄수익을 국고에 귀속시킴으로써 디지털 성범죄로 인한 이익 취득을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경제적 요인 제거를 통해 범죄 억지력 강화, 재범 방지 및 범죄 대응에 소요되는 사회적 비용 감소
- 체포·구속과 독립된 긴급 압수·수색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디지털 성범죄와 관련하여 신속하고 절차의 중단 없는 적법한 수사가 진행될 수 있는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드러나지 않은' 디지털 성범죄에 적극 대응하여 피해자 보호에 만전
- 국가의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사업의 안정적 자원 확충으로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확대, 피해자의 일상으로의 회복 촉진

디지털 성범죄 등 전문위원회 제0차 권고안

- 범죄 피해자의 진술권 및 알권리 보장을 위한 통지제도 개선 -

권고 개요

1. 기본 방침

- 성범죄를 비롯한 범죄 피해자가 '법률'에 근거한 구체적 권리로서 형사절차 진행 상황에 관한 정보를 충실히 제공받을 수 있도록 법령과 실무 제도를 정비할 것을 권고합니다.

2. 권고 사항

가. 피해자 통지에 관한 형사소송법 조항 개정

- 형사 절차상 피해자 통지 대상에 '수사진행상황', '사건처분결과', '형 집행 및 보호관찰 집행 상황'을 포함하고, 피해자 신청과 무관하게 통지를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형사소송법」을 개정할 것을 권고합니다.

나. 절차 진행 상황에 대한 실질적 통지 체계 마련

- 수사진행상황 및 처분결과 통지와 관련하여 일반인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용어를 사용하고, 피해자의 절차 참여를 배제하지 않도록 진행 상황에 대해 실질적인 정보를 포함하는 내용으로 통지 양식을 개선할 것을 권고합니다.

다. 기타 - 징계절차상 피해자 통지 제도 정비

- 디지털 성범죄 등 피해자가 존재하는 중대한 법익침해 행위를 징계처분 결과 통보 대상에 포함시키고, 처분 결과를 피해자에게 의무적으로 통보하도록 징계 관련 법령을 정비할 것을 권고합니다.

3. 기대 효과

- 형사절차 진행 상황에 관한 충실한 정보 제공으로 범죄 피해자의 알권리 및 진술권 보장
- 형사사법에서 범죄 피해자의 능동적인 절차 참여 확대
- 수사·재판 과정에서 가해자의 거짓 주장, 증거 판단 오류 가능성 등 조기 차단하여 실체적 진실 발견에 이르는 형사사법비용 감소

1 권고 배경

- 현행 형사소송법 등은 가해자 처분 결과 등 형사 절차 진행 상황을 범죄 피해자에게 알려주는 피해자 통지제도를 규정*하고 있음

* 형사소송법(제258조, 제259조의 2), 범죄피해자보호법(제8조의2) 및 시행령(제10조) 등¹

1 【형사소송법】

제258조(고소인등에의 처분고지) ①검사는 고소 또는 고발 있는 사건에 관하여 공소를 제기하거나 제기하지 아니하는 처분, 공소의 취소 또는 제256조의 송치를 한 때에는 그 처분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고소인 또는 고발인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검사는 불기소 또는 제256조의 처분을 한 때에는 피의자에게 즉시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259조(고소인등에의 공소불제기이유고지) 검사는 고소 또는 고발 있는 사건에 관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처분을 한 경우에 고소인 또는 고발인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7일 이내에 고소인 또는 고발인에게 그 이유를 서면으로 설명하여야 한다.

제259조의2(피해자 등에 대한 통지) 검사는 범죄로 인한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를 포함한다)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당해 사건의 공소제기여부, 공판의 일시·장소, 재판결과, 피의자·피고인의 구속·석방 등 구금에 관한 사실 등을 신속하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45조의6(고소인 등에 대한 송부통지) 사법경찰관은 제245조의5제2호의 경우에는 그 송부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피해자에게 제공되는 형사절차 관련 정보

- 사건처분결과 통지 : 기소, 불기소, 이송, 보호사건 송치 등 검사의 처분 및 그 일자
- 공판개시 통지 : 공판일시 및 공소제기된 법원 등
- 재판결과 통지 : 판결주문, 선고일자, 재판 확정 및 상소 여부 등 재판 결과
- 구금상황 통지 : 구속일자 및 구금장소, 구속적부심사·보석 등 신병 관련 상황
- 출소 등 통지 : 가석방일자, 자유형 집행종료에 의한 석방일자 등 신병 관련 사항
- 보호관찰 집행상황 통지 : 보호관찰 개시 및 종료일자, 정지일자, 관할 보호관찰소 등

- 피해자 통지는 피해자들에게 당해 형사사건의 실제적·절차적 내용에 충분히 접근할 수 있게 함으로써 알권리를 강화하고, 헌법상 보장된 피해자 진술권* 행사 등 절차상 참여 기회를 실질적으로 보장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함

* 대한민국 헌법

제27조 제5항 : 형사피해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사건의 재판절차에서 진술할 수 있다.

고소인·고발인·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를 포함한다)에게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지 아니하는 취지와 그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범죄피해자보호법】

제8조(형사절차 참여 보장 등) ① 국가는 범죄피해자가 해당 사건과 관련하여 수사담당자와 상담하거나 재판 절차에 참여하여 진술하는 등 형사절차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범죄피해자가 요청하면 가해자에 대한 수사 결과, 공판기일, 재판 결과, 형 집행 및 보호관찰 집행상황 등 형사절차 관련 정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공할 수 있다.

제8조의2(범죄피해자에 대한 정보 제공 등) ① 국가는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범죄피해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1. 범죄피해자의 해당 재판절차 참여 진술권 등 형사절차상 범죄피해자의 권리에 관한 정보
2. 범죄피해 구조금 지급 및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단계 현황 등 범죄피해자의 지원에 관한 정보
3. 그 밖에 범죄피해자의 권리보호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② 제1항에 따른 정보 제공의 구체적인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범죄피해자보호법 시행령】

제10조(범죄피해자에 대한 형사절차 관련 정보의 제공) ① 법 8조에 따라 범죄피해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형사절차 관련 정보의 세부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사관련사항: 수사기관의 공소 제기, 불기소, 기소증지, 참고인증지, 불송치, 수사증지, 이송 등 결과
2. 공판진행사항: 공판기일, 공소제기된 법원, 판결 주문, 선고일, 재판의 확정 및 상소 여부 등
3. 형 집행상황: 가석방·석방·이송·사망 및 도주 등
4. 보호관찰 집행상황: 관할 보호관찰소, 보호관찰·사회봉사·수감명령의 개시일 및 종료일, 보호관찰의 정지일 및 정지해제일

② 형사절차 관련 정보는 범죄피해자에게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범죄피해자의 명시적인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범죄피해자지원 법인에도 해당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제10조의2(범죄피해자에 대한 정보 제공 등)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는 범죄피해자를 조사할 때에 범죄피해자에게 법 제8조의2제1항 각 호의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다만, 범죄피해자에 대한 조사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1. 사법경찰관리: 사건 송치 또는 불송치 시

2. 검사: 사건 처분 시

②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는 범죄피해자의 피해상황·연령 또는 지능 등을 참작하여 범죄피해자의 보호자(친권자, 후견인, 피해자를 보호·양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피해자를 보호·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또는 범죄피해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자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 제1항에 따른 정보 제공을 갈음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는 범죄피해자가 정보 수령을 명시적으로 거부한 경우, 범죄피해자의 소재가 불명한 경우 등 정보 제공이 곤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정보를 제공할 때에는 서면을 교부하는 방법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범죄피해자가 출석 요구에 불응하는 경우 등 서면을 교부하는 것이 곤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구두, 전화, 팩스, 우편,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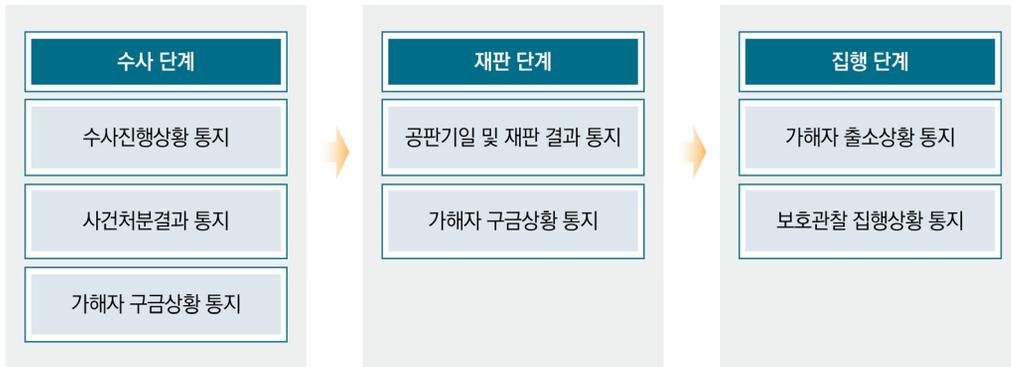
- 특히 성범죄의 경우, 가해자가 애인 등 지인인 경우가 30% 이상이고*(가해자가 피해자와 애인 등 지인관계인 경우가 폭행죄는 약 23%, 강도죄는 약 11%, 절도죄는 약 7%임), 2차 가해 등이 이어지는 성범죄의 특수성 상 피해자에게 당해 사건의 수사 및 재판 진행 상황, 가해자의 구금상황 등에 관한 정보 제공의 필요성 높음

* 「2020 대검 범죄분석」에 의하면, 가해자가 성인인 경우, 피해자와 애인 등 지인관계인 경우가 35.3%, 타인인 경우가 59.3%, 기타 5.5%이고, 가해자가 소년범인 경우, 피해자와 애인 등 지인관계인 경우가 42.4%, 타인인 경우가 52.8%, 기타 4.8% 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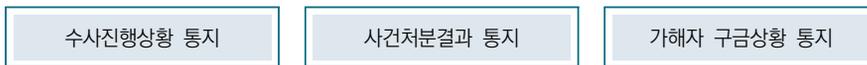
- 피해자에게 형사사법 절차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권리를 보장하는 것은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는 실질적인 방법 중 하나인바, 성범죄 피해자를 비롯한 범죄 피해자들에게 형사사법 절차 진행 상황 및 결과에 관한 정보가 적시에 실질적으로 제공되도록 관련 법제를 정비하여야 함

2 피해자 통지 관련 법제 현황

가. 현행 규정상 형사절차 단계별 피해자 통지



▶ 수사 단계



- 수사진행상황 통지는 법률상 명확한 근거 규정이 없고, 대통령령인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²⁾」을 비롯한 하위 법령*에서 원칙적 의무, 예외적 재량 사항으로 규정

2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12조(수사 진행상황의 통지)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수사에 대한 진행상황을 사건관계인에게 적절히 통지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지의 구체적인 방법·절차 등은 법무부장관,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정한다.

* 「고소·고발사건 중간 통지 지침」(대검예규), 「경찰수사규칙」(행안부령), 「범죄수사규칙」(경찰청훈령),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규칙」(경찰청훈령) 등³

3 【고소·고발사건 중간통지에 관한 지침】

제3조(통지의 종류) ① 중간통지는 고소·고발사건 수사지휘통지(이하 "수사지휘통지"라 한다), 고소·고발사건 보완수사지휘통지(이하 "보완수사지휘통지"라 한다), 고소·고발사건 수사중간통지(이하 "수사중간통지"라 한다)의 3종으로 한다.

② 검사가 직접 수리한 고소·고발사건을 사법경찰관에게 수사지휘하는 경우에는 고소·고발인에게 고소·고발사건 수사지휘통지를 한다.

③ 검사가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송치받은 고소·고발 사건을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지휘하는 경우에는 고소·고발인 및 피고소·고발인에게 고소·고발사건 보완수사지휘통지를 한다. 다만 사법경찰관이 기소중지 의견으로 송치하거나 인적사항 불명인 피고소·고발인에 대하여는 통지하지 아니한다.

④ 검사가 수사 중인 고소·고발사건을 접수한 날(검사가 직접 수리하여 사법경찰관에게 수사지휘한 사건은 수리한 날,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송치받은 사건 또는 타청에서 이송받은 사건은 접수한 날, 재기수사한 사건은 재기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처리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고소·고발인에게 수사중간통지를 한다. 검사가 직접 수리하여 사법경찰관에게 수사지휘한 사건이 수리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송치되지 아니하거나 검사가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송치받아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지휘한 사건이 송치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재송치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수사중간통지를 한 이후에는 고소·고발인의 희망이 있거나 기타 통지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계속하여 수사중간통지를 할 수 있다.

【경찰수사규칙(행안부령)】

제11조(수사 진행상황의 통지) ① 사법경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7일 이내에 고소인·고발인·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를 포함한다. 이하 "고소인등"이라 한다)에게 수사 진행상황을 통지해야 한다. 다만, 고소인등의 연락처를 모르거나 소재가 확인되지 않으면 연락처나 소재를 알게 된 날부터 7일 이내에 수사 진행상황을 통지해야 한다.

1. 신고·고소·고발·진정·탄원에 따라 수사를 개시한 날
2. 제1항에 따른 수사를 개시한 날부터 매 1개월이 지난 날
- ② 제1항에 따른 통지는 서면, 전화, 팩스, 전자우편, 문자메시지 등 고소인등이 요청한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고소인등이 별도로 요청한 방법이 없는 경우에는 서면 또는 문자메시지로 통지한다. 이 경우 서면으로 하는 통지는 별지 제9호서식의 수사 진행상황 통지서에 따른다.
- ③ 사법경찰관은 수사 진행상황을 서면으로 통지한 경우에는 그 사본을, 그 밖의 방법으로 통지한 경우에는 그 취지를 적은 서면을 사건기록에 편철해야 한다.
- ④ 사법경찰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사 진행상황을 통지하지 않을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실을 수사보고서로 작성하여 사건기록에 편철해야 한다.

1. 고소인등이 통지를 원하지 않는 경우
2. 고소인등에게 통지해야 하는 수사 진행상황을 사전에 고지한 경우
3.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경우
4. 사건관계인에 대한 보복범죄나 2차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범죄수사규칙(제13조(수사 진행상황의 통지)) ① 경찰관은 「경찰수사규칙」 제11조제1항의 통지대상자가 사망 또는 의사능력이 없거나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 또는 가족(이하 "법정대리인등"이라 한다)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통지대상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본인에게도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미성년자인 피해자의 가해자 또는 피의자가 법정대리인등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등에게 통지하지 않는다. 다만, 필요한 경우 미성년자의 동의를 얻어 그와 신뢰관계 있는 사람에게 통지할 수 있다.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규칙】 제18조(사건처리 진행상황에 대한 통지) ① 피해자보호관 또는 사건 담당자는 피해자가 수사 진행상황에 대해 문의하는 경우 수사에 차질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피해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하여야 한다.

② 그 밖에 피해자에 대한 수사 진행상황의 통지와 관련된 사항은 「경찰수사규칙」 제11조 및 「범죄수사규칙」 제13조를 준용한다.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지침】

제24조(형사절차 정보제공) ① 검사 또는 수사관은 범죄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나 변호사의 신청이 있는 경우 가해자(피해를 가한 피의자·피고인에 한한다)에 대한 사건처분결과, 공판의 일시·장소, 재판결과, 구속·석방 등 구금에 관한 사실, 출소 등 형집행상황 등 형사절차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건처분결과에 대하여는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53조 제1항에 따라 범죄피해자의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형사절차 관련 정보 제공으로 사건 관계인의 명예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생명, 신체의 안전이나 생활의 평온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제공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신청은 언제든지 별지 제14호 '형사절차 정보 제공 신청서'를 작성하여 민원실 또는 피해자지원실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한다. 다만, 출소 등 형집행상황은 재판이 확정된 다음에 신청할 수 있고, 제19조 제1항에 의하여 범죄피해자의 의사를 확인한 경우에는 해당 정보제공에 대한 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한다.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53조(수사 결과의 통지)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51조 또는 제52조에 따른 결정을 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고소인·고발인·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를 포함한다. 이하 "고소인등"이라 한다)과 피의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제51조제1항제4호기목에 따른 피의자중지 결정 또는 제52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기소중지 결정을 한 경우에는 고소인등에게만 통지한다.

- 위 규정에 따르면, ▲경찰은 수사 개시일 및 매 1개월 경과일마다 수사진행상황 통지를, ▲검찰은 고소·고발사건에 대해 배당통지, 수사지휘통지, 보완수사지휘통지 및 접수일 등으로부터 3개월 경과시 수사중간통지를 의무적으로 하여야 함
- 사건처분결과 통지는 형사소송법에 근거 조항이 있으며 의무적 통지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그 범위가 제한적임
 - 구체적으로, ▲검찰은 사건처분 결과(기소·불기소·이송·보완 수사 요구 등)에 대해 ① 고소·고발사건의 경우 고소인 등의 신청과 무관하게 의무적으로 통지하나, ② 비(非)고소·고발사건은 피해자 등의 신청이 있는 경우만 통지(형소법 제258조, 제259조의2)*하고, ▲경찰은 ‘불송치’ 처분만** 의무적으로 통지하도록 규정(형소법 제245조의6)
 - * 대검 예규인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지침」은 피해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사건처분 결과를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규정⁴
 - ** 대통령령인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⁵은 송치·불송치·이송 등 모든 결정 내용을 의무적으로 통지하도록 규정
- 가해자 구금사항 통지는 형사소송법 및 대검 예규인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지침」상 피해자 등의 신청이 있는 경우, 검찰에서 가해자 구속 일자 및 구금장소, 구속적부심사·구속취소 등에 의한 석방 등 신병 관련 정보를 제공하도록 규정
 - ※ 대통령령인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은 형집행 상황(가석방·석방·이송·사망 및 도주 등)에 관하여 원칙적으로 피해자에게 정보를 제공하도록 규정

4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지침】제24조(형사절차 정보제공) ① 검사 또는 수사관은 범죄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나 변호사의 신청이 있는 경우 가해자(피해를 가한 피의자·피고인에 한한다)에 대한 사건처분결과, 공판의 일시·장소, 재판결과, 구속·석방 등 구금에 관한 사실, 출소 등 형집행상황 등 형사절차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건처분결과에 대하여는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53조 제1항에 따라 범죄피해자의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형사절차 관련 정보 제공으로 사건 관계인의 명예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생명, 신체의 안전이나 생활의 평온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제공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신청은 언제든지 별지 제14호 ‘형사절차 정보 제공 신청서’를 작성하여 민원실 또는 피해지원실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한다. 다만, 출소 등 형집행상황은 재판이 확정된 다음에 신청할 수 있고, 제19조 제1항에 의하여 범죄피해자의 의사를 확인한 경우에는 해당 정보제공에 대한 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한다.

5 【범죄피해자보호법 시행령】

제10조(범죄피해자에 대한 형사절차 관련 정보의 제공) ① 법 8조에 따라 범죄피해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형사절차 관련 정보의 세부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사관련사항: 수사기관의 공소 제기, 불기소, 기소중지, 참고인중지, 불송치, 수사중지, 이송 등 결과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53조(수사 결과의 통지)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51조 또는 제52조에 따른 결정을 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고소인·고발인·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를 포함한다. 이하 “고소인등”이라 한다)과 피의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제51조제1항제4호가목에 따른 피의자중지 결정 또는 제52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기소중지 결정을 한 경우에는 고소인등에게만 통지한다.

▶ 재판 단계

공판기일 및 재판 결과 통지

가해자 구금상황 통지

- 공판기일 통지 및 재판 결과 통지는 형사소송법, 범죄피해자보호법 및 대법원 규칙인 「성폭력 범죄 등 사건의 심리·재판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규칙」⁶ 등에 규정

- 구체적으로 ▲ 검찰은 피해자 등의 신청이 있는 경우 공판 개시 일자 및 공소 제기된 법원 등 공판 개시 통지, 판결주문, 선고일자, 상소 여부 및 재판의 확정 등 재판 결과 통지를, ▲ 법원은 성폭력 범죄 또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피해자 및 법정대리인이 변호사를 선임하거나, 검사가 피해자를 위하여 국선변호사를 선정한 경우, 그 피해자 변호사에게 공판기일을 통지하도록 규정

※ 대통령령인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은 공판진행 사항(공판기일, 공소 제기된 법원, 판결 주문, 선고일, 재판의 확정 및 상소 여부 등)에 관하여 원칙적으로 피해자에게 정보를 제공하도록 규정

- 가해자 구금상황 통지는 형사소송법 및 대검 예규인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지침」상 피해자 등의 신청이 있는 경우, 검찰에서 가해자 구속 일자 및 구금장소, 구속적부심사·구속취소 등에 의한 석방 등 신병 관련 정보를 제공하도록 규정

※ 대통령령인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은 형집행 상황(가석방·석방·이송·사망 및 도주 등)에 관하여 원칙적으로 피해자에게 정보를 제공하도록 규정

▶ 집행 단계

가해자 출소 상황 통지

보호관찰 집행상황 통지

- 가해자 출소상황 통지는 형사소송법 및 대검 예규인 「범죄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지침」상 피해자 등의 신청이 있는 경우, 검찰에서 형집행정지, 가석방일자, 자유형 집행종료에 의한 석방일자 등 신병상황과 피고인의 형 집행 관련 정보를 통지하도록 규정

** 대통령령인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은 형집행 상황(가석방·석방·이송·사망 및 도주 등)에 관하여 원칙적으로 피해자에게 정보를 제공하도록 규정

6 【성폭력 범죄 등 사건의 심리·재판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규칙】 제4조(공판기일의 통지) ① 법원은 성폭력범죄,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아동학대범죄의 피해자 및 그 법정대리인이 변호사를 선임하거나 검사가 피해자를 위하여 국선변호사를 선정한 경우, 그 변호사(이하 "피해자 변호사"라 한다)의 선임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제출된 때에는 피해자 변호사에게 공판기일을 통지한다. ② 제1항의 통지는 서면, 전화, 전자우편, 모사전송, 휴대전화 문자전송 그 밖에 적당한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제6조 ① 법원은 공판절차에서 피해자 변호사로부터 피해의 정도 및 결과, 피고인의 처벌에 관한 의견, 그밖에 당해 사건에 관한 의견 진술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공판 기일에서 그 의견을 진술하게 한다.

제7조 ① 제6조의 제1항의 신청을 받은 법원은 의견진술을 신청한 피해자 변호인에게 의견진술을 할 기일을 통지하여야 한다.

- 보호관찰 집행상황 통지는 범죄피해자 보호법 및 동 시행령⁷상 원칙적으로 관할보호관찰소, 보호관찰·사회봉사·수감명령의 개시일 및 종료일, 보호관찰의 정지일 및 정지 해제일 등 보호관찰 집행 관련 정보를 제공하도록 규정

나. 구체적인 통지 절차

- (대상) 고소·고발인(의무적 통지), 피해자(신청이 있는 경우만 통지) 또는 그 법정대리인, 성폭력 사건의 피해자 변호사(신청과 무관하게 사건처분결과, 공판기일, 의견진술기일은 의무적 통지)*
- (시기) △ 경찰은 수사 개시일, 개시 후 매 1개월마다, 수사종결시로부터 각 7일 이내 수사진행상황 및 사건처분결과 통지, △ 검찰은 ① 사건 배당일, 사건 접수 후 3개월 경과일로부터 각 7일 이내 수사진행상황 통지, 사건처분 즉시 처분결과 통지, ② 그 외 사항은 각 사유 발생시 즉시 정보 제공
- (방식) 서면(원칙), 구두, 전화, 우편, 모사전송, 전자우편, 휴대전화 문자 전송 등 가능
- (대국민 포털서비스 제공) 형사사법포털 홈페이지(kics.go.kr)를 통해 각종 형사사법정보* 온라인 제공

* ① 사건조회(경찰·검찰·법원의 사건 진행상황 및 벌과금 정보 등 확인) ② 통지서 및 재판서 조회 ③ 민원 신청 및 증명서 발급 ④ 피해자 지원 서비스 제공 등

3 피해자 통지 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가. 수사진행상황 통지의 법률적 근거 마련

- 형사사건이 진행되는 동안 범죄피해자가 가해자나 사건진행 상황에 관한 정보를 적시에 신속하게 제공받는 것은 피해자의 생명·신체의 안전 확보와 직결될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원활한 절차 참여를 위한 필요조건임

7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8조(형사절차참여보장 등) ①국가는 범죄피해자가 해당 사건과 관련하여 수사담당자와 상담하거나 재판 절차에 참여하여 진술하는 등 형사절차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②국가는 범죄피해자가 요청하면 가해자에 대한 수사 결과, 공판기일, 재판 결과, 형 집행 및 보호관찰 집행상황 등 형사절차 관련 정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공할 수 있다.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제10조(범죄피해자에 대한 형사절차 관련 정보의 제공) ①법 제8조에 따라 범죄피해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형사절차 관련 정보의 세부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4. 보호관찰 집행상황: 관할 보호관찰소, 보호관찰·사회봉사·수감명령의 개시일 및 종료일, 보호관찰의 정지일 및 정지해제일
- ②형사절차 관련 정보는 범죄피해자에게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범죄피해자의 명시적인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에도 해당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 피해자의 절차 참여는 공판 단계에 한하지 않으며, 오히려 기소 여부가 결정되는 수사단계에서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거나 관련 증거를 제출하여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절차 참여를 폭넓게 보장할 필요가 있음
- 이를 위해 범죄피해자에게 수사 진행상황 및 결과에 관한 실체적·절차적 정보가 충분히 제공되어야 할 것이나, 현재 각종 지침과 법 규정에 근거 규정이 중복되고 제공되는 정보 내용이 달라 실무상 규정의 해석과 운영에 혼란이 초래될 수 있음

ex) 형사소송법과 대검 예규에는 ‘보호관찰 집행상황’에 관한 통지 규정이 없으나, 범죄피해자보호법은 이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규정, 형사소송법에는 피해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사건처분결과를 제공하도록 규정하나 대통령령인 수사준칙은 피해자의 신청과 무관하게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규정 등

- 특히 수사단계에서 ‘사건진행상황’ 통지의 법적 근거가 법률이 아닌 하위법규(훈령, 예규 등)에 규정되어 있는바, 이처럼 내부규칙 등 하위법규로 절차가 규율될 경우 수사기관의 재량에 따라 임의적으로 운용되어 피해자들 사이에 형평의 문제가 발생하거나 통지 제도 자체가 유명무실화될 우려 있음

- 현실적으로도 고소·고발인이 아닌 범죄 피해자에 대해서는 피해자 등이 신청한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통지가 이루어져, 사건처분 전까지는 피해자가 수사진행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적절한 대응을 하기 어려움

※ 특히 경찰 보완수사 이행 후 검찰에 사건기록 추송시, 관련 통지(기록반환 및 새 검찰사건번호 부여 등) 누락으로 피해자가 검찰 단계에서 대응하기 전에 사건 종결되는 경우 빈번

⇒ 사건진행상황 통지는 범죄 피해자의 알권리 등 기본권 보장을 위한 중요한 절차이므로 하위 법규가 아닌 법률에 명시적이고 구체적인 근거가 규율될 필요가 있음

※ 다만, 피해자가 본인의 주소로 통지받기를 원치 않는 경우 등 통지방식에 있어 피해자의 사생활과 의사가 존중될 필요가 있고 이는 대통령령에서 충분히 반영될 수 있어야 함

나. ‘피해자의 신청’에 따른 통지 관행 개선

- 고소·고발 사건이 아닌 경우, 실무상 대부분의 형사 절차 통지가 범죄 피해자의 신청에 따라 이루어지나, 정작 피해자들이 통지 신청권의 존재 및 그 내용을 충분히 알지 못해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음

※ 인터넷 기반의 형사사법포털(KICS)나 모바일 앱을 통해 범죄피해자들이 사건진행상황을 조회할 수 있는 검색시스템이 존재하나, 살인·강도·성범죄·방화 등 5개 중대범죄에 한하고 피해자가 별도의 정보제공 동의를 서면으로 제출해야 하는 등 한계가 있음

- 피해자가 통지 신청권의 존재와 내용을 충분히 인식하고 행사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사전에 이에 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통지 주체인 수사기관 및 법원의 업무 담당 직원들의 직무교육에 반영하여 실질화하는 노력이 필요함
- 다만, 형사절차 통지는 수사기관의 시혜적 조치가 아닌 재판절차 진술권 등 헌법 및 법률에 의해 보장된 피해자의 권리를 실현하기 위해 존재하는 제도인바, 현행과 같이 구체적인 절차의 작동 여부를 피해자의 신청 또는 고소·고발 여부에 따라 달리하는 것은 충실한 권리 보장이 어려워 제도 취지를 반감시키는 것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음

⇒ 권리의 최대한 보장을 위해 피해자의 신청 또는 고소·고발 여부와 무관하게 원칙적으로 피해자에게 형사절차 진행 상황에 관한 정보를 의무적으로 제공함이 바람직함

다. 통지의 내실화

- 수사진행상황 및 처분결과 통지의 경우, 일반적으로 서면·문자로 통지하나 그 내용적 상세성이 부족하고 일반인의 이해가 어려운 법률 용어 위주 문구로 형식적인 결과 통보에 그쳐 실질적 권리 보호에 미흡

⇒ 범죄 피해자가 사건 진행에 따라 절차에 참여하여 진술권 등 권리를 제대로 행사할 수 있도록, 통지 내용에 수사의 밀행성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수사 계속 중인 이유 및 처분의 취지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일반인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용어 사용*을 통해 이해도를 높이는 등 통지 내용 및 양식 개선 노력이 필요

ex) 현재 검찰의 처분결과통지서의 처분란에 ‘구약식’, ‘구공판’이라는 문구만 기재되나, 일반인들은 이와 같은 법률 용어가 친숙하지 않으므로 각 처분 의미 및 효과에 관해 설명 추가 필요

- 또한, 현재 수사기관 담당자가 수동으로 처리*하는 통지 누락을 최소화하기 위해 업무 이해도 제고 등 역량 증진을 위한 교육을 체계적·실질적으로 실시하고, 통지 관련 업무 시스템을 자동화·고도화하는 작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음

* 검찰 실무상 배당통지, 처분통지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상으로 자동 통지되나, 그 외 수사진행상황, 공판개시, 구금상황 통지는 수동 통지

** ex) 통지 사유 발생 또는 시기 경과시 KICS에 안내 문구 자동 현출 조치

라. 기타 - 징계 절차에서의 피해자 통지 제도 개선

- 현행 공무원 징계 관련 법령상⁸, 가해자가 성범죄 혐의로 징계를 받는 경우, 피해자의 알권리, 진술권 등 피해자 권리 보장을 위한 절차가 미흡함
 - 징계 혐의자가 국가·지방 공무원인 경우, 일부 성폭력 및 성희롱 피해자에 한정하여 피해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만 징계처분 결과를 통보하고⁹, 중징계(파면, 해임, 강등, 정직) 등 요구 사건에 대해서만 피해자에게 출석 및 의견 진술 기회 부여. 절차 진행 상황 및 결과와 관련된 정보 제공이 필수 절차가 아니며, 징계위원회 재량으로 배제 가능
 - ※ 징계 혐의자에 대해서는 징계 위원회 출석 및 의견 진술 기회, 징계결과 통보 등 방어권 보장을 위한 다양한 장치가 마련되어 있음
- ⇒ 성폭력·성희롱 등 징계 대상 행위로 인한 피해자에 대한 통보제도를 개선할 필요 있음

3 권고사항

가. 형사소송법 상 피해자 통지 근거 조항 개정

- 형사 절차상 피해자 통지 대상에 '수사진행상황', '사건처분결과' 및 '형 집행 및 보호관찰 집행상황'을 포함하고 피해자 신청과 무관하게 통지를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형사소송법」상 피해자 통지 근거 조항을 개정할 것을 권고합니다.

8 【국가공무원법】

제75조(처분 사유 설명서의 교부) ② 처분권자는 피해자가 요청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및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 제2호에 따른 성희롱에 해당하는 사유로 처분 사유 설명서를 교부할 때에는 그 징계처분 결과를 피해자에게 함께 통보하여야 한다.

【공무원 징계령】

제11조의2(피해자의 진술권) 징계위원회는 중징계등 요구사건의 피해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피해자에게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해당 사건에 대해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피해자가 이미 해당 사건에 관하여 징계의결 등 요구 과정에서 충분히 의견을 진술하여 다시 진술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피해자의 진술로 인하여 징계위원회 절차가 현저하게 지연될 우려가 있는 경우

※ 지방공무원법 제67조②(처분사유 설명서의 교부 및 심사의 청구),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5조의 2(피해자의 진술권)도 각 동일 내용 규정

- 9 2019. 4. 16. 법 개정을 통해 피해자 의견 진술권 등이 신설된 것으로, 개정 전에는 피해자 절차 참여 규정 부재

- 구체적 법률 내용(안)

| 현행 형사소송법 | 개정안 |
|----------------------------------------------------------------------------------------------------------------------------------------------------------------------------------------------------|---------------------------------------------------------------------------------------------------------------------------------------------------------------------------------------------------------------------------------------------------------------------------------------------------------------------------------------------------------------------------------------------------------------------------------------------------------------------------------------------------------------------------------------|
| <p>제259조의2(피해자 등에 대한 통지) 검사는 범죄로 인한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를 포함한다)의 <u>신청이 있는 때에는</u> 당해 사건의 공소제기여부, 공판의 일시·장소, 재판결과, 피의자·피고인의 구속·석방 등 구금에 관한 사실 등을 신속하게 통지하여야 한다.</p> | <p>제259조의2(피해자 등에 대한 통지)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범죄로 인한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를 포함한다)에게 당해 사건의 <u>피의자·피고인에 대한 수사진행상황, 사건처분결과, 공소제기여부, 공판의 일시·장소, 재판결과, 피의자·피고인의 구속·석방 등 구금에 관한 사실, 피의자·피고인의 형집행에 관한 사실</u> 등을 신속하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때 통지는 피해자의 사생활을 침해하지 아니하는 방식으로 하여야 한다.</p> <p>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형사절차 관련 정보 제공으로 피의자·피고인·피해자 등을 포함한 사건 관계인의 <u>명예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생명, 신체의 안전이나 생활의 평온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거부 의사를 밝힌 경우</u> 이를 제공하지 아니할 수 있다.</p> <p>③ 제1항에 따른 통지 방법과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

나. 절차 진행 상황에 대한 실질적 통지 체계 마련

- 수사진행 상황 및 처분결과 통지와 관련하여 일반인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용어를 사용하고, 피해자의 절차 참여를 배제하지 않도록 진행 상황에 대해 실질적인 정보를 포함하는 내용으로 통지 양식을 개선할 것을 권고합니다.

다. 기타 - 징계 절차상 피해자 통지 제도 정비

- 성폭력·성희롱 등 징계 대상 행위로 인한 피해자에게 본인 의사에 따라 징계 절차에 참여하고,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것을 권고합니다.

- (대상 행위) 국가·지방 공무원법 및 징계 관련 법령상 징계 처분 결과 피해자 통보 대상을 성착취물 제작·유통 등 디지털 성범죄, 상해 등 피해자가 존재하는 중대한 법익 침해행위로 확대하고, (요건) 피해자의 요청과 무관하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통보하도록 개정

- 판사·검사·경찰·군인·소방·교육 공무원 등에 대해 별도로 징계 절차를 규율하는 개별 법령에(ex: 법관징계법, 검사징계법, 경찰공무원법, 소방공무원법, 교육공무원법, 군인사법 및 각 징계령 또는 규칙)에 피해자 의견 진술 및 결과 통보 근거 규정 신설

4 기대효과

- 형사절차에 관한 충실한 정보 제공으로 범죄 피해자의 알권리 및 헌법상 보장된 권리인 피해자 진술권의 실질적 보장
- 형사사법에서 범죄 피해자의 능동적인 절차 참여 확대
- 수사 또는 재판 과정에서 가해자의 거짓 주장, 증거 판단 오류 가능성 등 조기 차단하여 실체적 진실 발견에 이르는 형사사법

디지털 성범죄 등 전문위원회 제1차 권고안

-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를 위한 형사배상명령제도 개선 -

권고 개요

1. 기본 방침

- 디지털 성범죄 등 성범죄 피해자가 형사절차에서 신속·간이하게 피해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현행 형사배상명령 제도를 개선할 것을 권고합니다.

2. 권고 사항

가. 디지털 성범죄 전반으로 배상명령 대상 확대

- 형사 배상의 근거 법률인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을 개정하여, 배상명령 대상에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유포 및 불법 '합성물' 제작·유포, 촬영물 이용 협박·강요 범행 등 디지털 성범죄 전반으로 확대할 것을 권고합니다.

나. 일부 인용 및 직권 배상명령 활용 규정 신설

- 배상 신청의 일부만 이유 있는 경우, 전부 기각이 아닌 일부 인용을 원칙으로 하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 한 법원 직권에 의한 배상명령을 할 수 있도록 배상명령의 활용 및 운영에 관한 기준을 법률에 규정할 것을 권고합니다.

다.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배상명령 익명 송달 도입

- 디지털 성범죄 등 성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해 배상명령이 인용되어 재판서를 송달 할 때, 피해자의 신원 자료를 가리고 송달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할 것을 권고합니다.

3. 기대 효과

- 디지털 기술을 매개로 한 신종 성범죄 일반으로 배상명령 대상을 확대하여,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들이 별도의 민사소송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형사 절차를 통해 신속하고, 실질적·총국적 피해 회복할 수 있도록 함
- 일부 인용 및 직권 배상명령 활용에 관한 원칙을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배상명령 제도의 실무상 활용 및 실효성 제고
- '익명 송달'의 법적 기반을 마련하여 배상명령의 송달 및 집행 과정에서 디지털 성범죄 등 성범죄 피해자의 신상정보 노출로 인한 2차 피해 방지 및 피해자 보호

1 권고 배경

- 디지털 성범죄는 디지털매체에 친화적이나 경제적 기반이 희박한 아동·청소년이 주 피해자이고*, 신원 노출, 피해의 무한 확산 가능성, 전파성, 재유포 위험으로 이사·퇴사 등 생활 기반의 전반적 변화나 사회활동 제한을 가져오는 등으로 피해자가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는 경우가 많음

* 「사이버성폭력 불법유통망·유통사범 집중 단속('21. 3. ~ 6.) 결과」연령대별 피해자 현황

| 구분 | 총계 | 10대 | 20대 | 30대 | 40대 | 50대 이상 |
|--------|-----|--------|------|-----|-----|--------|
| 비율(%) | 100 | 50.2 | 38.9 | 9.5 | 0.5 | 0.8 |
| 총인원(명) | 378 | 190 | 147 | 36 | 2 | 3 |
| | | 98.6 % | | | | |

출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들이 범죄로 인해 입은 물적·정신적 손해에 대해 간편하고 신속하게 피해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형사절차 내에서 범죄 피해를 배상받는 형사배상명령 제도를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음

2 현행 형사배상명령 제도 현황

가. 범죄 피해 회복을 위한 형사배상명령 제도

- 배상명령이란, 형사 재판 절차에서 법원이 유죄 판결을 선고하면서 판결과 동시에 범죄행위로 인해 발생한 피해에 대해 민사적인 손해 배상을 명하는 것임

※ 근거 규정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¹

- 형사절차 상 범죄 피해로 인한 피해자의 손해를 변상케 하는 방법은 ▲ 형벌 또는 독자적인 제재로 원상회복을 규정하는 실체법적 방식(미국, 영국), ▲ 형사절차에서 피해자가 민사상 손해배상을 구하는 절차법적 방식(독일, 프랑스, 일본)으로 구별되며, 우리는 후자에 속함

| 주요 입법례 |

| | |
|-----|------------------------------------------------------------------------------------------------------------------------------------------------------------------------------------------------------------------------------------------------------------------------------------------------------------------------------------------------------------------------------------------|
| 미국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손해회복명령(Order of restitution)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죄 판결을 받은 피고인에 대해 법원이 법정형에 부가 또는 대체하여 범죄 피해자에 대한 손해회복을 명령 - 연방법전 제18편에 기재된 형법범죄와 일부 약물범죄, 제조물 밀거래범으로 그 대상이 넓고, 성적학대 및 폭력사건 등 일정한 범주는 원칙적으로 배상명령이 필수적임 - 손해회복은 금액 지급 외에 재산반환, 서비스 형태도 가능, 배상가능한 손해에 물적 손해는 포함되나 위자료는 미포함 |
| 독일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대소송제도(피해자권리개혁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해자가 범죄로 인해 발생한 재산법적 청구권을 형사절차에서 청구 - 대상범죄에 생명범, 신체범, 재산범 등 제한 없고, 청구권 대상에는 물질적 손해 외에 위자료, 장물 반환청구, 이득청구, 부작위 청구 등도 포함 - 공소 제기된 법원 및 수사단계에서 검사에게도 신청 가능 ※ 우리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정 당시 독일 모델을 입법례로 하여 반영 |
| 프랑스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소(Action Civile)제도(형사소송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범죄피해자가 범죄로 인해 발생한 손해의 배상을 요구할 권리인 사소권(私訴權)을 민사법원 또는 형사법원에서의 형사사건(공소)에 부대하여 행사 권리 - 법인도 사소의 당사자가 될 수 있고, 사소원고가 된 피해자는 당사자로서 형사재판에 대한 관여가 인정되며, 당해 범죄의 정범, 공범 뿐 아니라 상속인, 범죄에 책임 있는 제3자를 상대로도 사소 제기 가능 |

1 소송촉진법 제25조 내지 제35조, 형사배상명령제도는 1981. 3. 1. 소송촉진법 제정 시 도입되었으며, 1997.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제정되면서 가정보호사건에도 도입됨

| | |
|-----------|--------------------------------------------------------------------------------------------------------------------------------------------------------------------------------------------------------------------------------------------------------------------------------------------------------------------------------------------------------------|
| 일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손해배상명령제도(범죄피해자보호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형사법원이 범죄피해자로부터 피고인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의 신청이 있는 때 형사사건에 대한 유죄 선고 “후” 배상청구에 대해 심리·결정 - 대상은 살인·상해·강간·추행·약취·유인죄에 한정, 재산범 및 과실범 미포함 - 손해배상 재판에 대해 당사자의 적법한 이의신청이 있으면 신청인이 지정한 지역 관할지방법원 또는 간이법원에 소 제기 간주, 민사소송절차로 이행 |
|-----------|--------------------------------------------------------------------------------------------------------------------------------------------------------------------------------------------------------------------------------------------------------------------------------------------------------------------------------------------------------------|

- 배상명령을 통해 피해자는 별도의 민사소송을 제기하지 않고도 소송비용의 부담 없이 신속하게 집행권원을 취득할 수 있음
 - ※ 현행법상, 배상명령의 절차 비용은 국고 부담이 원칙이고, 확정된 배상명령 또는 가집행선고가 있는 배상명령이 기재된 유죄 판결서 정본은 민사 판결 정본과 동일한 집행력이 있음²,
- 가해자와의 형사 합의를 통해 피해 배상이 이루어질 수도 있으나, 성범죄의 경우 합의와 관련하여 피해자가 고소 또는 신고 동기의 순수성이나 내용의 진실성을 의심받는 등 부정적 인식이 있고, 가해자의 양형 감경 수단으로 악용되어 2차 피해가 유발되기도 하므로, 합의보다는 정당한 권리행사로서 배상명령제도를 활용할 필요성이 더욱 큼
- 형사배상명령제도 개관

| | |
|-------------|---------------------------------------------------------------------------------------------------------------------------------------------------------------------------------------------------------------------------------------------------------------------------------------------------------------------------------------|
| 대상범죄 | 형법상 강도·절도·폭력·사기·횡령죄 등과 일부 성폭력 범죄* <div style="border: 1px solid #ccc; padding: 5px; margin-top: 5px;"> * 성폭력처벌법상 업무상위력추행(제10조), 공중밀집장소추행(제11조), 성적목적 다중이용 장소침입(제12조), 통신매체이용음란(13조), 카메라등이용촬영(14조) 및 청소년성보호법상 아동·청소년 매매(제13조),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요행위(제14조) </div> ※ 그 외 형사사건에서 피고인과 범죄피해자 사이에 합의된 손해배상액 |
| 예외사유 | ▲ 피해자의 성명·주소 불분명, ▲ 피해 금액 불특정, ▲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범위 불확정, ▲ 배상명령으로 인한 공판절차의 현저한 지연 우려 또는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배상명령 불가 |
| 배상범위 | 범죄행위로 인해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 및 치료비 손해, 위자료 또는 피고인과 범죄피해자 사이에 합의된 손해배상액 |
| 절차개시 | ▲ (신청) 범죄피해자등(본인, 상속인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항소심 변론종결시까지 사건이 계속된 법원에 서면 또는 구두로 피해배상 신청 - 검사는 신청 대상사건으로 공소 제기시 범죄피해자등에게 배상 신청 통지 의무, 법원은 배상명령 신청이 있는 경우 신청인에게 공판기일 통지 의무 ※ 범죄 피해에 대해 다른 절차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가 법원에 계속 중인 경우 배상신청 불가 ▲ (직권) 법원 직권으로 배상명령 가능 |

2 【소송촉진법】 제34조(배상명령의 효력과 강제집행) ① 확정된 배상명령 또는 가집행선고가 있는 배상명령이 기재된 유죄판결서의 정본은 「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집행에 관하여는 집행력 있는 민사판결 정본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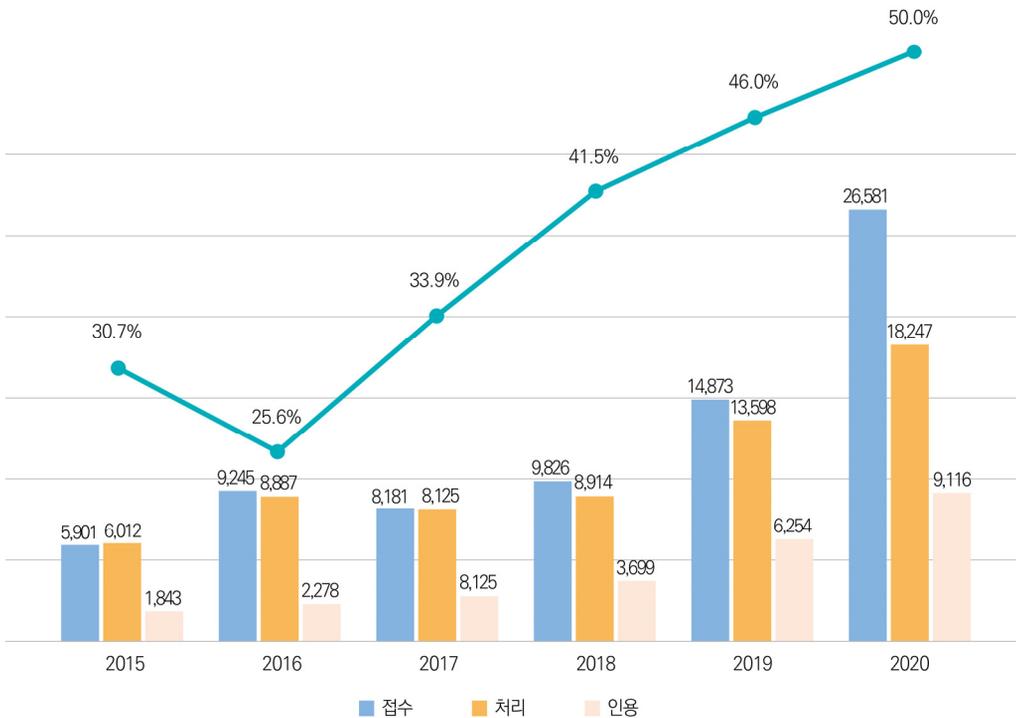
제35조(소송비용) 배상명령의 절차비용은 특별히 그 비용을 부담할 자를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고의 부담으로 한다.

| | |
|--------------------------|---------------------------------------------------------------------------------------------------------------------------------------------------------------------------------------------------------------------------------------------------------------------------------------------------------------|
| 배상신청의 취하 및 각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인은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진술할 수 있고 불출석한 경우에도 법원은 그 진술 없이 배상신청에 관하여 재판 가능 - 배상신청은 배상명령 확정 전까지 언제든지 취하 가능 - 법원은 ▲ 배상신청이 적법하지 않거나, ▲ 이유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배상신청 각하 <p>※ 배상신청 각하 또는 일부 인용 재판에 대해 불복 신청 및 다시 동일한 배상 신청 불가</p> |
| 배상명령의 선고 및 효력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배상명령은 유죄판결의 선고와 동시에 하며, 일정액의 금전지급을 명하는 방법으로 배상 대상 및 금액을 주문에 표시, 가집행 선고 가능 - 확정된 배상명령 또는 가집행 선고 있는 배상명령이 기재된 유죄 판결서 정본은 민사집행법상 집행력 있는 민사판결 정본과 동일 효력 <p>※ 배상명령이 확정된 경우 인용된 금액의 범위에서 다른 절차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불가</p> |

나. 형사배상명령 운영 현황

- 배상명령 활성화 노력에 따라 피해자의 배상명령 신청은 지속적으로 증가(2019. 14,873건→2020. 26,581건으로 78% 증가)하고 있으나, 인용 비율은 2019년은 역대 최대치(1심 50%, 항소심 포함 49.9%)임에도 불구하고 최근 8년간 1심 평균 32.5%에 그쳐 전반적으로 저조하고, 신청 건수 증가 추세 대비 인용 건수에서 유의미한 증가 격차 없음

[지방법원(1심) 배상명령사건 신청 및 처리현황]



출처 : 법원행정처, 2021 사법연감

- 또한, 배상명령 사건의 신청 및 처리가 배상액 산정이 비교적 용이한 사기나 절도 등 재산범죄에 치중되어 있고, 성범죄는 최근 5년간 인용된 1심 배상 명령액이 연간 합계 평균 320,570,000원으로 연간 전체 평균 인용액의 0.49%에 불과하며, 성범죄 중에서도 직접적인 신체 침해를 동반하는 강간 등을 제외하면 극히 활용 저조

| 지방법원(1심) 배상명령사건 죄명별, 금액별 현황 |

| 구분 연도 | 합계 | | 성폭력 | | 절도·강도 | | 사기·공갈 | | 특경법위반 (절도, 사기, 횡령 등) | |
|----------|-------|-----------------------|-----|--------------------|-------|--------------------|-------|-----------------------|-------------------------|-----------------------|
| | 건수 | 명령액 | 건수 | 명령액 | 건수 | 명령액 | 건수 | 명령액 | 건수 | 명령액 |
| 2016 | 2,278 | 6,100,702 (100.0%) | 13 | 18,445 (0.30%) | 85 | 62,929 (1.03%) | 1,968 | 2,716,977 (44.54%) | 76 | 2,945,131 (48.28%) |
| 2017 | 2,758 | 5,819,275 (100.0%) | 8 | 10,100 (0.17%) | 85 | 133,990 (2.30%) | 2,359 | 2,910,553 (50.02%) | 166 | 2,507,849 (43.10%) |
| 2018 | 3,699 | 5,314,754 (100.0%) | 17 | 104,165 (1.96%) | 95 | 54,574 (1.03%) | 3,247 | 2,642,124 (49.71%) | 166 | 2,293,755 (43.16%) |
| 2019 | 6,254 | 6,301,802 (100.0%) | 19 | 19,105 (0.30%) | 126 | 28,704 (0.46%) | 5,769 | 3,122,413 (49.55%) | 96 | 2,871,068 (45.56%) |
| 2020 | 9,116 | 9,307,713 (100.0%) | 15 | 8,471 (0.09%) | 187 | 26,107 (0.28%) | 8,287 | 4,457,314 (47.89%) | 153 | 4,376,307 (47.02%) |
| 평균 | | 6,568,849 (100.0%) | | 32,057 (0.49%) | | 61,261 (0.93%) | | 3,169,876 (48.26%) | | 2,998,822 (45.65%) |

출처 : 법원행정처, 2021 사법연감

3 디지털 성범죄 관련 형사배상명령의 한계 및 개선 방안

가. 대상 범죄의 제한 문제

- 현행법상 디지털 성범죄는 성폭력처벌법상 통신매체이용음란죄(제13조), 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소지죄(제14조)만 배상명령 신청 대상으로 규정되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유포 및 불법 '합성물' 제작·유포 범행 등 발생 빈도가 높거나 불법성이 중한 범죄가 배상명령 신청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음³

3 【소송촉진법】 제25조(배상명령) ① 제1심 또는 제2심의 형사공판 절차에서 다음 각 호의 죄 중 어느 하나에 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할 경우, 법원은 직권에 의하여 또는 피해자나 그 상속인(이하 "피해자"라 한다)의 신청에 의하여 피고사건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物的) 피해, 치료비 손해 및 위자료의 배상을 명할 수 있다.

1. 「형법」 제257조제1항, 제258조제1항 및 제2항, 제258조의2제1항(제257조제1항의 죄로 한정한다)·제2항(제258조제1항·제2항의 죄로 한정한다), 제259조제1항, 제262조(준속폭행치사상의 죄는 제외한다), 같은 법 제26장, 제32장(제304조의 죄는 제외한다), 제38장부터 제40장까지 및 제42장에 규정된 죄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부터 제14조까지, 제15조(제3조부터 제9조까지의 미수범은 제외한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제14조에 규정된 죄
 3. 제1호의 죄를 가중처벌하는 죄 및 그 죄의 미수범을 처벌하는 경우 미수의 죄

② 법원은 제1항에 규정된 죄 및 그 외의 죄에 대한 피고사건에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합의된 손해배상액에 관하여도 제1항에 따라 배상을 명할 수 있다.

- 2020년 및 2021년 성폭력처벌법 및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으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유포 및 불법 '합성물' 제작·유포 범행 등이 신설, 정비되었으나, 배상명령제도를 규정한 소송촉진법에 이를 반영하는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임

※ 규정상 대상범죄에 해당하지 않아도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손해배상액에 관하여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배상명령이 가능하나, 현실적으로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그와 같은 합의를 기대하기 어려움

※ 실무상 범죄피해자들의 제도 활용이 활발하지 않은 이유는 근본적으로 민사소송과 이념과 절차가 다른 형사소송절차에서 손해의 배상을 명하는 데서 기인

→ 현실적으로 형사절차에서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한 철저한 파악이 쉽지 않아 실제 판단에 집중해야 할 형사 재판이 손해액 산정의 민사 재판으로 변질될 우려가 있고, 그와 관련된 절차적 복잡성으로 재판 지연 시 피고인의 신속한 재판받을 권리가 제한될 수 있으므로, 신속한 피해구제라는 배상명령제도의 취지와 민사사건의 형사 사건화 문제 등을 고려하여 대상 범죄 범위를 설정할 필요가 있음

⇒ 디지털 성범죄는 피해영상물 유포 차단을 위해 △ 신속한 손해배상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 피해자가 형사소송과 별도로 통상의 민사소송을 통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곤란한 경우(예. 민사소송을 제기할 때 예상되는 피해 배상 산정 금액이 작아, 민사소송을 통해 배상받을 수 있는 실익이 낮음)에 해당하며, 성인 대상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 현행법 규정과의 형평상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 및 불법 '합성물' 제작·유포 범행도 배상명령 대상으로 규정함이 상당함

나. 배상 범위의 한계 문제

- 디지털 성범죄는 디지털 기술을 매개로 시공간을 초월하여 이루어지는 특성상, 전체 범행을 완전히 규명하기 어렵고 피해 사실 일부만 밝혀진 단계에서 일부 범죄사실만으로 기소되는 경우가 많음
- 그로 인해 전체 피해 규모의 정확한 추산이 어렵고 피해액 산정을 위해 입증자료를 확보하는 데도 한계가 존재하여, '피해 금액 불특정 또는 배상범위 불확정' 등을 이유로 배상명령 신청 각하 소지가 큼
- 배상명령이 인용되더라도 그 범위는 범행으로 인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 치료비 손해 및 위자료에 한정되어, 신체 접촉 없이 이루어지는 디지털 성범죄에서 피해자들이 배상받을 수 있는 금액은 소액의 위자료 정도에 그치는 등 실제 피해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음*

| *2020년 성폭력 사건에서의 배상신청 인용 건수 및 인용금액 |

| 죄명 | 합계 | 100만원까지 | 500만원까지 | 1,000만원까지 | 5,000만원까지 | 5,000만원 초과 |
|-----------|----|---------|---------|-----------|-----------|------------|
| 강간과 추행의 죄 | 11 | 5 | 6 | · | · | · |
| 성폭력처벌법 | 7 | 2 | 2 | · | 3 | · |
| 청소년성보호법 | 2 | 1 | · | 1 | · | · |
| | 20 | 40% | 40% | 5% | 15% | |

출처 : 법원행정처, 2021 사법연감, 단위 : 건수

⇒ ①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들이 평생 겪어야 하는 유포 불안 등의 정신적 고통을 고려하여 위자료 산정 기준을 상향 현실화하고, ② 피해 영상물 유포·확산 방지를 위한 피해자들의 자구적 활동과 관련된 비용은 적극적으로 물적 손해에 포함시키며, ③ 배상 지연 시 지연 손해 배상도 인정하여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에 관하여 도입을 검토할 필요 있음

※ 디지털 성범죄의 특성상 피해자의 손해 중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정신적 손해의 심리 및 손해액 산정이야말로 형사소송이 민사소송에 비해 더 효율적이고 정확한 결론을 도출할 수 있는바, 2017년 대법원이 마련한 불법행위 유형별 위자료 산정방안 중 명예훼손 부분(별지 참고)을 참고하여 신청함으로써 인용률을 높일 수 있을 것임

※ 현행법상 형사 배상 범위에 일실소득은 제외되어 있는바, 디지털 성범죄의 경우 그 자체로 신체장애 또는 노동 능력의 상실이라는 피해 발생을 상정하기 어렵고, 일실수입 산정을 위한 별도의 광범위한 증거조사 및 그로 인한 심리의 복잡화, 장기화 가능성이 있어, 일실소득을 배상 범위에 포함시킬 실익은 크지 않음

* 미국 AVAA법(The Amy, Vicky, and Andy Child pornography victim assistance Act of 2018)은 디지털 성범죄의 경우 그 피해가 인생 전반에 걸쳐 언제라도 다시 일어날 수 있음을 전제한 전면 배상 등 실질적 배상제도 마련(미래에 예상되는 손실 포함, 종합적 인과관계 판단 등)

다. 배상명령 상대방 범위 문제

- 최근 디지털 성범죄 근절 노력의 일환으로 성폭력처벌법 등 관련 법 개정을 통해 범죄에 대한 처벌 및 수사가 강화되었고, 특히, 검찰은 사건처리기준을 재정비('21. 2.)하여, 불법촬영물 등의 소지·시청 범행의 경우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뿐 아니라 성인 대상 범죄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 구공판 하도록 하는 등 강화된 기준을 적용함
- 그러나 이에 의하더라도 가해자가 초범인 경우 예외적으로 불법 촬영물 제작 사범에 대해 기소유예 또는 약식명령 청구가 가능하고, 이 경우 피해자는 형사배상명령을 신청조차 할 수 없음
- 배상명령의 상대방은 당해 형사공판 절차의 피고인이므로, 기소되지 않은 다른 공범자나 약식명령이 청구된 피고인을 상대로 배상명령을 내릴 수 없음

- 또한, 디지털 성범죄 가운데 강간, 추행 등 전통적인 성폭력 범죄와 결부되지 않거나 재범 이상 전력이 없는 단순 소비형 범행, 일회성 유포형 범행이 빈번*하나, 이들 가해자에 대해 약식명령이 청구되는 경우, 피해자들이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없으므로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짐

*「사이버성폭력 불법유통망·유통사범 집중 단속(‘21. 3. ~ 10.) 결과」, 범행유형별 분석

| 구분 | 총계 | 구매·소지등 | 유통·판매 | 촬영·제작 | 개설·운영 |
|--------|-----|--------|-------|-------|-------|
| 비율(%) | 100 | 41.4 | 40 | 10.7 | 5.9 |
| 총인원(명) | 378 | 706 | 650 | 174 | 95 |

출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 피해자에게 형사배상을 통한 피해 회복 기회를 충실히 보장하기 위해서는 기소 전 단계부터 수사기관이 혐의 유무와 관련된 자료 뿐만 아니라 형의 가중·감경 요소 등 양형인자 관련 자료를 충분히 파악하고 사건처리 기준을 숙지하여, 이에 실질적으로 부합하는 처분이 이루어지도록 지속적으로 업무 매뉴얼을 점검해야 함

라. 배상명령으로 인한 신원 공개 우려 문제

- 배상명령 신청시 피해자는 신청서에 인적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나, 배상명령 신청서 부분 송달 또는 배상신청 각하 시에는 성명과 주소 등 피해자의 신원을 알 수 있는 사항을 피고인에게 알리지 않을 수 있음⁴
- 그러나, 디지털 성범죄 등 성범죄 사건에 대해 비공개로 재판을 진행하더라도 (배상명령의 집행시는 채권자 특정이 요구되므로) 배상명령 인용시는 당사자 동일성 확인, 강제집행 또는 채무이행을 위한 채권자 특정 문제로 피해자의 성명과 주소, 생년월일*의 기재가 필요하고, 배상명령 인용 주문이 포함된 유죄판결서 송달 또는 강제집행 신청 과정에서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인적 사항이 그대로 노출됨

* 별도 집행문 부여 절차가 예정되어 있는 민사판결서와 다른 부분임

* 「배상신청에 관한 예규」 별지 기재례

4 【소송촉진법】

제28조(피고인에 대한 신청서 부분의 송달) 법원은 서면에 의한 배상신청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신청서 부분을 피고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원은 직권 또는 신청인의 요청에 따라 신청서 부분 상의 신청인 성명과 주소 등 신청인의 신원을 알 수 있는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가리고 송달할 수 있다.

제32조(배상신청의 각하) ①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결정(決定)으로 배상신청을 각하(却下)하여야 한다.

1. 배상신청이 적법하지 아니한 경우
 2. 배상신청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② 유죄판결의 선고와 동시에 제1항의 재판을 할 때에는 이를 유죄판결의 주문에 표시할 수 있다.
 ③ 법원은 제1항의 재판서에 신청인 성명과 주소 등 신청인의 신원을 알 수 있는 사항의 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

⇒ 배상명령 인용 시나 집행단계에서 강제집행에 제약이 있지 않은 범위에서, 피해자 신원이 드러나지 않도록 인적 사항을 익명으로 처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함

마. 낮은 인용률 제고를 위한 제도 정비

▶ 신속·정확한 배상 신청 유도

- 형사 공판절차 진행 중 피해자가 배상 신청을 하는 경우, 소송절차 지연을 이유로 배상 신청이 각하될 가능성이 있음⁵

⇒ 배상 신청의 지연 또는 누락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공판 개시 단계에서 피해자가 신속하게 배상명령을 신청하고 재판부도 이를 염두하여 심리를 진행할 수 있도록 피해자에 대한 통지⁶ 등 절차 안내를 강화하고 피해자 국선번호인의 조력 등 법률 구조를 충분히 제공하여야 함

- 또한, 민사상 손해배상에서 배상액의 산정은 '손해 3분설'에 따라 적극적 재산 손해, 소극적 재산 손해, 정신적 손해로 구분되고 각각에 대해 기판력이 부여되나, 형사 배상 실무상 피해자들은 위와 같은 손해의 구분 없이 총액을 기준으로 배상명령을 신청하는 경우가 빈번한바, 이는 민사소송과의 관계에서 기판력이 문제 될 수 있고, 배상명령이 확정된 경우 피해자는 그 인용된 금액의 범위 내에서는 다른 절차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어⁷, 배상 신청 인용을 주저하는 사유가 될 수 있음

⇒ 배상 신청 단계부터 피해자가 손해 3분설에 따른 구체적인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충분히 안내할 필요 있음

▶ 일부 인용과 직권 배상명령 활성화

- 법원의 재판 실무 규칙인 「배상신청에 관한 예규」는 배상명령신청의 일부만이 이유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그 일부를 인용하여야 하고 전부를 기각하여서는 아니되며, 배상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직권에 의한 배상명령제도를 활용하도록 정하고 있음

5 【소송촉진법】 제25조(배상명령) ③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상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해자의 성명·주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2. 피해 금액이 특정되지 아니한 경우
3.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4. 배상명령으로 인하여 공판절차가 현저히 지연될 우려가 있거나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6 【소송촉진법】 제25조의2(배상신청의 통지) 검사는 제25조제1항에 규정된 죄로 공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를 포함한다)에게 제26조제1항에 따라 배상신청을 할 수 있음을 통지하여야 한다.

7 【소송촉진법】 제34조(배상명령의 효력과 강제집행) ② 이 법에 따른 배상명령이 확정된 경우 피해자는 그 인용된 금액의 범위에서 다른 절차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배상신청에 관한 예규】(재판예규 제1470호)

제6조(일부 인용 및 직권 명령의 활용) ① 배상명령신청의 일부만이 이유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일부를 인용하여야 하고 전부를 기각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배상명령의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가능한 한 직권에 의한 배상명령제도를 활용하되 특히 공소제기된 범죄의 피해품이 현금인 경우에는 소속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25조 제3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는 한 원칙적으로 직권에 의하여 배상명령을 선고한다.

⇒ 배상명령의 낮은 인용률을 보완하기 위해, 위 예규에서 규정하는 바와 같이 배상명령의 신청을 전부 인용할 수 없는 경우 곧바로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로 보아 각하할 것이 아니라, 일부 인용 사유에 해당하는지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또한, 범죄피해자의 권리 구제를 위해 법원이 직권 배상명령을 보다 활성화할 필요가 있고, 배상명령 확정시 인용된 금액 범위에서는 다른 절차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불가능하므로, 사전에 피해자 의사를 확인하는 조치가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임

※ 다만, 이를 법원 내부 규칙인 예규로만 정하는 것은 실제 운영 여부에 명령 주체의 재량영역을 넓혀 실효성이 떨어지므로 법률인 소송촉진법에 원칙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음

4 권고 사항

가. 디지털 성범죄 전반으로 배상명령 대상 범죄 확대

-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들이 형사절차에서 손쉽게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소속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을 개정하여 배상명령 대상을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유포 및 불법 '합성물' 제작·유포, 촬영물 이용 협박·강요 범행 등 디지털 성범죄 전반으로 확대할 것을 권고함
- 구체적 법률 내용(안)

| 현행 소송촉진법 | 개정안 |
|--------------------------------------------------------------------------------------------------------------------------------------------------------------------------------------------------------------------------------------------------------------------------------------------------------------------------------------------------------------------------------------------------------------------------------------------------------------------------------------------------------------------------------------------------------------------------------------------------------------------------|------------------------------------------------------------------------------------------------------------------------------------------------------------------------------------------------------------------------------------------------------------------------------------------------------------------------------------------------------------------------------|
| <p>제25조(배상명령) ① 제1심 또는 제2심의 형사공판 절차에서 다음 각 호의 죄 중 어느 하나에 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할 경우, 법원은 직권에 의하여 또는 피해자나 그 상속인(이하 “피해자”라 한다)의 신청에 의하여 피고사건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物的) 피해, 치료비 손해 및 위자료의 배상을 명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형법」 제257조제1항, 제258조제1항 및 제2항, 제258조의2제1항(제257조제1항의 죄로 한정한다)·제2항(제258조제1항·제2항의 죄로 한정한다), 제259조제1항, 제262조(준속폭행치사상의 죄는 제외한다), 같은 법 제26장, 제32장(제304조의 죄는 제외한다), 제38장부터 제40장까지 및 제42장에 규정된 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부터 제14조까지, 제15조(제3조부터 제9조까지의 미수범은 제외한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제14조에 규정된 죄 제1호의 죄를 가중처벌하는 죄 및 그 죄의 미수범을 처벌하는 경우 미수의 죄 | <p>제25조(배상명령) ① <좌동></p> <ol style="list-style-type: none"> <좌동>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부터 제15조까지(제3조부터 제9조까지의 미수범은 제외한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2조 및 제14조, 제15조의 2에 규정된 죄 ※ 추가되는 부분 :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허위영상물 등 제작·반포), 제14조의3(촬영물 이용 협박·강요),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반포 등), 제15조의2(성착취 목적 대화 등) <좌동> |

나. 일부 인용 및 직권 배상명령 활용 규정 신설

- 배상 신청의 일부만 이유 있는 경우, 전부 기각이 아닌 일부 인용을 원칙으로 하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 한 법원 직권에 의한 배상명령을 할 수 있도록 배상명령의 활용 및 운영에 관한 기준을 법률(「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명확히 규정할 것을 권고함
- 구체적 법률 내용(안)

| 현행 소송촉진법 | 개정안 |
|----------|-------------------------------------------------------------------------------------------------------------------------------------------------------------------------------|
| <신설> | <p>제25조의1(일부 인용 및 직권 명령의 활용) ① 배상명령 신청의 일부만이 이유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일부를 인용하여야 하고 전부를 기각하여서는 아니된다.</p> <p>② 배상명령의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 한 가급적 직권에 의하여 배상명령을 선고한다.</p> |

다.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배상명령 익명 송달 도입

- 디지털 성범죄 등 성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해 배상명령이 인용되어 판결서 송달시, 피해자의 신원 자료를 가리고 송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할 것을 권고함

- 구체적 법률 내용(안)

| 현행 소송촉진법 | 개정안 |
|--------------------------------------------------------------------------------------------------------------------------------------------------------------------------------------------------------------------------------------------------------------------------------------------------------------------------------------------------------------|---------------------------------------------------------------------------------------------------------------------------------------------------------------------------------------------------------------------------------------------------------------|
| <p>제31조(배상명령의 선고 등) ① 배상명령은 유죄판결의 선고와 동시에 하여야 한다.</p> <p>② 배상명령은 일정액의 금전 지급을 명함으로써 하고 배상의 대상과 금액을 유죄판결의 주문(主文)에 표시하여야 한다. 배상명령의 이유는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아니면 적지 아니한다.</p> <p>③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음을 선고할 수 있다.</p> <p>④ 제3항에 따른 가집행선고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213조제3항, 제215조, 제500조 및 제501조를 준용한다.</p> <p>⑤ 배상명령을 하였을 때에는 유죄판결서의正本(正本)을 피고인과 피해자에게 지체 없이 송달하여야 한다.</p> | <p>제31조(배상명령의 선고 등)</p> <p>① ~ ⑤ (좌동)</p> <p>⑥ 법원은 직권 또는 신청인의 요청에 따라 피고인에게 송달하는 제5항의 유죄판결서의 정본에 신청인의 성명과 주소 등 신원을 알 수 있는 사항의 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 다만, 제25조 제1항 제1호 중 형법 제32장에 규정된 죄 및 같은 항 제2호에 규정된 범죄에 대해 배상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의 신원을 알 수 있는 사항을 기재하여서는 아니된다.</p> |

라. 기타 - 실질적 배상명령 활성화 방안 마련 필요

- 실질적으로 배상명령을 활성화하기 위해 ① 위자료 산정 기준을 상향 현실화하고, ② 디지털 성범죄 특성을 반영해 물적 손해 인정 범위를 확대하고, ③ 배상 지연 시 지연 손해 배상을 인정하고, ④ 피해자에 대한 절차 안내를 강화하고 법률 구조를 충분히 제공하는 등 지속적으로 업무 매뉴얼을 점검할 필요 있음

5 기대 효과

- 디지털 기술을 매개로 한 신종 성범죄 일반으로 배상명령 대상을 확대하여,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들이 별도의 민사소송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형사 절차를 통해 신속하고 실질적·종국적인 피해 회복 가능
- 일부 인용 및 직권 배상명령 활용에 관한 원칙을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배상명령 제도의 실무상 활용 및 실효성 제고
- ‘익명 송달’의 법적 기반을 마련하여, 배상명령의 송달 및 집행 과정에서 디지털 성범죄 등 성범죄 피해자의 신상정보 노출로 인한 2차 피해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별지]

명예훼손의 위자료 산정방안

명예훼손으로 인하여 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평가가 침해되거나 피해자가 기존의 개인생활·사회생활·경제활동 등을 회복할 수 없게 되는 경우, 피해자는 사망이나 중대한 상해에 못지않게 매우 큰 정신적 고통을 겪을 수 있다. 또한, 명예훼손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손해를 입었음에도 이에 대한 배상이 충분하지 못한 경우 피해자는 더욱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겪게 된다. 아울러 명예훼손행위가 피해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중대한 점에 비추어 재발에 대한 억제 및 예방의 필요성이 크다. 이러한 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절한 위자료를 산정할 필요성이 있다.

산정방안

| 구 분 | 개념 정의 | 기준금액 및 증감 비율 | | | | |
|-----------------------|--------------------------------------------------------------------------------------------------------------------------------------------------------------------------------------------------------------------------------------------------------------------------------------------------------------------------------------------------------------------------------------------------------------------------------------------------------------------------------------------------------------------------------------------------------------------------------------------------------------------------------------------------------------------------------------------------------------------------------------------------------------------------------------------------------------------------------------------------------------------------------------------------------------------------------------------------------------------------------------------------------------------------------------------------------------------------------------------------------------------------------------------------------------------------------------------------------------------------------------------------------------------------------------------------------------------------------------------------------------------------------------------------------------------------------------------------------------------------------------------------------------------------|-----------------------------------------------------------------------------------------------------------------------------------------------------------------------------------------------------------------------------------------------------------------------------------------------------------------------|----------------------------------------------------------------------------------------------------------------------------------------------------------------------------------------------------------|----------|-----------------------------------------------------------------------------------------------------------------------------------------------------------------------------------------------------------------------------------------------------------------------------------------------------------------------------------------------------------------------------------------------------------------------------------------------------------------------------------------------------------|-------------------------------------------------------------------------------------------------|
| 1단계- 적용대상/ 기준금액 | <input type="checkbox"/>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한 명예·신용의 훼손으로 인격권이 침해된 경우(피해가 경미한 정도를 넘어 상당한 정도에 이른 경우에만 한하여 적용) • 피해의 정도에 따라 유형을 「일반 피해」와 「중대 피해」로 구분 | <input type="checkbox"/> 기준금액 <table border="1" style="margin-left: 20px;"> <tr> <td style="width: 50%;">일반 피해</td> <td style="width: 50%;">5,000만 원</td> </tr> <tr> <td>중대 피해</td> <td>1억 원</td> </tr> </table> | 일반 피해 | 5,000만 원 | 중대 피해 | 1억 원 |
| 일반 피해 | 5,000만 원 | | | | | |
| 중대 피해 | 1억 원 | | | | | |
| 2단계- 특별가중 | <input type="checkbox"/> 허위사실에 기한 행위 <input type="checkbox"/> 악의적·모해적·영리적 목적에 의한 행위 <input type="checkbox"/> 상당한 영향력을 가진 사람이나 단체의 행위 및 이를 수단으로 한 경우 | <input type="checkbox"/> 가중금액 <table border="1" style="margin-left: 20px;"> <tr> <td style="width: 50%;">일반 피해</td> <td style="width: 50%;">1억 원</td> </tr> <tr> <td>중대 피해</td> <td>2억 원</td> </tr> </table> • 훼손된 명예·신용의 가치가 매우 커서 가중금액의 적용만으로는 피해를 전보하기 어려운 경우 그 훼손된 가치에 상응하는 배상이 가능하도록 위 가중금액을 초과하여 기준금액의 가중 가능 | 일반 피해 | 1억 원 | 중대 피해 | 2억 원 |
| 일반 피해 | 1억 원 | | | | | |
| 중대 피해 | 2억 원 | | | | | |
| 3 단 계 | <table style="width: 100%;"> <tr> <td style="width: 20%; text-align: center; vertical-align: middle;">일반 증액</td> <td> <input type="checkbox"/> 가해자의 과실·책임정도 및 가해행위의 동기 • 장기간의 계속적 불법행위 • 정보수집 과정의 불법성 <input type="checkbox"/> 가해자의 개별 사정 • 가해자의 조직규모, 재정상태가 상당한 경우 • 가해자가 상당한 이득을 얻은 경우 • 증거의 은폐·조작 또는 그 시도 </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 vertical-align: middle;">일반 감액</td> <td> <input type="checkbox"/> 피해자의 개별 사정 • 피해가 지속해서 잔존하고 있는 경우 • 명예·신용의 회복이 어려운 경우 • 재산상 손해배상으로 전보받기 어려운 상당한 손해가 발생한 경우 <input type="checkbox"/> 가해자의 과실·책임정도 및 가해행위의 동기 • 공익적 목적이 있는 경우 • 언론 등의 보도를 인용하는 경우 • 경위에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input type="checkbox"/> 가해자의 개별 사정 •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 정정보도나 반론보도가 이루어진 경우 <input type="checkbox"/> 피해자의 개별 사정 • 피해자가 원인제공을 하는 등 책임이 있는 경우 <input type="checkbox"/> 피해 회복의 정도 • 명예·신용의 회복이 상당 부분 이루어진 경우 • 위로금 또는 합의금을 지급받은 경우 </td> </tr> </table> | 일반 증액 | <input type="checkbox"/> 가해자의 과실·책임정도 및 가해행위의 동기 • 장기간의 계속적 불법행위 • 정보수집 과정의 불법성 <input type="checkbox"/> 가해자의 개별 사정 • 가해자의 조직규모, 재정상태가 상당한 경우 • 가해자가 상당한 이득을 얻은 경우 • 증거의 은폐·조작 또는 그 시도 | 일반 감액 | <input type="checkbox"/> 피해자의 개별 사정 • 피해가 지속해서 잔존하고 있는 경우 • 명예·신용의 회복이 어려운 경우 • 재산상 손해배상으로 전보받기 어려운 상당한 손해가 발생한 경우 <input type="checkbox"/> 가해자의 과실·책임정도 및 가해행위의 동기 • 공익적 목적이 있는 경우 • 언론 등의 보도를 인용하는 경우 • 경위에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input type="checkbox"/> 가해자의 개별 사정 •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 정정보도나 반론보도가 이루어진 경우 <input type="checkbox"/> 피해자의 개별 사정 • 피해자가 원인제공을 하는 등 책임이 있는 경우 <input type="checkbox"/> 피해 회복의 정도 • 명예·신용의 회복이 상당 부분 이루어진 경우 • 위로금 또는 합의금을 지급받은 경우 | <input type="checkbox"/> 기준금액 또는 가중금액을 ±1/2 범위 내에서 증액·감액 •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위 범위를 초과하여 증액·감액 가능 |
| 일반 증액 | <input type="checkbox"/> 가해자의 과실·책임정도 및 가해행위의 동기 • 장기간의 계속적 불법행위 • 정보수집 과정의 불법성 <input type="checkbox"/> 가해자의 개별 사정 • 가해자의 조직규모, 재정상태가 상당한 경우 • 가해자가 상당한 이득을 얻은 경우 • 증거의 은폐·조작 또는 그 시도 | | | | | |
| 일반 감액 | <input type="checkbox"/> 피해자의 개별 사정 • 피해가 지속해서 잔존하고 있는 경우 • 명예·신용의 회복이 어려운 경우 • 재산상 손해배상으로 전보받기 어려운 상당한 손해가 발생한 경우 <input type="checkbox"/> 가해자의 과실·책임정도 및 가해행위의 동기 • 공익적 목적이 있는 경우 • 언론 등의 보도를 인용하는 경우 • 경위에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input type="checkbox"/> 가해자의 개별 사정 •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 정정보도나 반론보도가 이루어진 경우 <input type="checkbox"/> 피해자의 개별 사정 • 피해자가 원인제공을 하는 등 책임이 있는 경우 <input type="checkbox"/> 피해 회복의 정도 • 명예·신용의 회복이 상당 부분 이루어진 경우 • 위로금 또는 합의금을 지급받은 경우 | | | | | |

디지털 성범죄 등 대응 TF· 전문위원회 활동과 성과

DIGITAL SEXUAL CRIMES TASK FORCE TEAM ·
EXPERT COMMITTEE ACTIVITIES AND ACHIEVEMENTS

| 도움 주신 분

주영환 법무부 기초실장

최정석 법무부 정책기획관

디지털 성범죄 등 대응 TF

서지현 팀장

정미란 검사

정길수 출입국관리사무관

김지영 주무관(교위)

발행일 | 2022. 5.

발행처 | 법무부 기획조정실 디지털 성범죄 등 대응 TF

연락처 | Tel 02-2110-4364

디자인 | 디자인페이지플러스(주) 02-2285-5278